

현안분석

Issue Paper 2017-02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현안분석 Issue Paper 2017-02

()
()



Issue Paper

CONTENTS

01. 서두	05
02. 미국	06
03. 영국	09
04. 독일	13
05. 프랑스	17
06. 일본	20
07. 우리나라	24
결론을 대신하여	29
참고문헌	30
참고자료	31

01

- 입법절차란
 - 법률안이 입안되면서부터 법률이 공포되기까지의 공식적인 입법과정
- 입법절차의 원칙
 - (민주성) 입법과정이 특정세력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고 국민 다수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여 입법 내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원칙
 - (경제성) 가능한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필요로 하는 양질의 법령이 적시에 입법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가 효율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원칙
- 입법현황
 - 법률안 전체제출 건수 및 법률의 성립수와 성립률은 국회 입법활동의 기본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나, 다만 주의가 필요한 것은 국가마다 법률안 제출요건 및 입법절차가 상이하여 단순비교는 어려움
 - 다만 새정부 주요 정책공약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20대 국회의 입법적 역할 수행에 관한 기본적 지표를 제공하여 미래 입법을 예측할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입법절차 및 입법현황을 검토한 후에 우리나라의 절차와 현황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입법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나아가 앞으로의 우리나라 입법절차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국가의 입법절차 관련 법령을 번역하여 제공하고자 함

02

(1) 입법절차

- (법률안 제출) 상원 및 하원의 의원은 각각 법률안을 소속원에 발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본회의에 보고됨
 - 의원만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원 1인만으로도 법률안 발의가 가능
 - 증세가 필요한 법률안은 헌법상, 세출예산법률안은 관례상 하원에서 먼저 논의되지만 법률안 제출요건의 가중은 없음
 -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지 않으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의 심의를 권고할 권한을 가짐
 - 행정부 역시 소관사항에 관심을 가지는 의원에게 법률안 발의를 의뢰하므로 의회에서 심의되는 법률안의 다수는 행정부에서 입안된 것임

- (심의 및 의결) 상원과 하원은 독자적인 의사규칙을 가지고 있으나, 대체로 발의된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심의 의결절차를 거침
 - 하원 또는 상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로 법률안이 회부
 - 해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며 축조작업을 실시
 - 위원회가 하원 또는 상원에 보고하면 본회의에서 법률안의 심의를 거친 후에 표결을 실시
 - 표결을 통과한 법률안은 타원에 이송되어 해당법률안이 처음 발의된 법률안처럼 위의 절차를 다시 밟게 됨

- (공포) 법률안이 양원을 통과하면 하원의장이 먼저 서명하고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서명한 후에 대통령에게 이송하여 공포
 - 상하원의 통과여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양원합동위원회(Conference Committee)에서 조정이 이루어짐
 - 법률안에 시행일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대통령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 발생하며, 대통령이 승인을 거부한 경우에도 의회는 재적의원의 2/3로 통과시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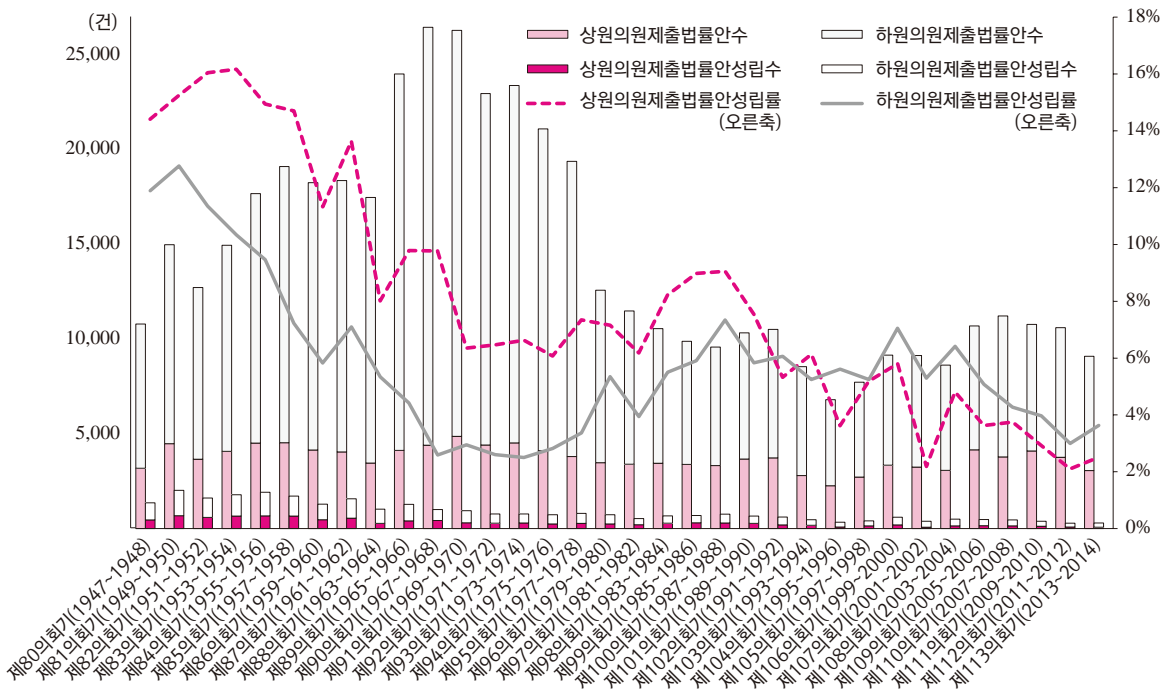
- (행정입법) 연방행정절차법은 공식적 행정입법절차와 비공식적 행정입법절차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음
 - 공식적 행정입법절차는 법률에 의하여 청문의 기회가 부여되고 그 기록에 의하여 규칙이 제정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 진행되며, 재판절차와 유사하게 행정기관이나 규칙제정을 찬성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을 짐
 - 비공식적 행정입법절차는 이해관계인이 적절한 의견진술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의 시간, 장소와 성격, 관련법령 등이 통보됨

(2) 입법현황

- 한 의회기(2년)마다 제출된 법률안 수는 1947년 이후 1만 건을 넘어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2만 건을 넘었다가 다시 1970년대 말 이후 1만 건 전후의 추이를 보임
 - 특히 상원의원 제출법률안 수는 3~4천 건을 유지하는 반면에, 하원의원 제출법률안 수는 변동이 큼
 - 하원의원 제출법률안 수가 1970년대 이후 감소한 이유에는 1974년 의회예산 및 집행유보통 제법의 시행에 따라 많은 법률안을 포괄법률안으로 제출하게 된 것과 1979년 하원규칙 개정으로 공동제안자의 상한을 25인으로 하는 규정을 폐지한 것이 지적되고 있음

- 성립수 및 성립률 모두 계속 저하되어 1950년대 한 의회기당 성립수 1000건 이상 및 성립률 10%에서 1970년대에는 1000건 이하 및 3~4%정도의 추이
 - 이와 같은 배경에는 민주당 의원은 보다 진보적, 공화당 의원은 보다 보수적으로 나누어져 당파의 결속이 강해지고 당파대립이 격화되어 온 점이 지적되고 있음
 - 특히 2011년~12년에는 상원에 민주당, 하원에 공화당이 다수파를 차지하는 분할정부가 출현하여 대통령이 지지하는 정책의 법률안 심의가 진행되지 못하여 법률안 성립수 및 성립률 모두 가장 낮았음

[그림 1] 의회기별 법률안 제출수, 법률 성립수 및 성립률



출처: 高澤美有紀 「主要国議会の法律案提出手続及び法律の成立状況」 レファレンス 791号(2016) 재인용, "Résumé of Congressional Activity." United States Senate website <http://www.senate.gov/pagelayout/reference/two_column_table/Resumes.htm>.

03

(1) 입법절차

- (법률안 제출) 공법률안은 정부제출 법률안과 의원제출 법률안으로 구분되며¹⁾, 공법률안과 사법률안은 제출요건 및 절차에서 차이가 있음
 - 일반적으로 공법률안(혼합법률안 포함)은 제목과 취지가 의원에게 통지되고 의사일정표에 게재됨으로써 제출되며, 사법률안은 공법률안과 달리 등록된 의회대리인이 제출
 - 공법률안의 경우 의원만이 제출할 수 있으며 의원 1인으로도 발의가 가능하며,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도 형식상 장관이 의원으로서 제출

- (심의 및 의결) 제출된 법률안은 이른바 3독회제를 거치며, 특히 공법률안은 상원이나 하원에 먼저 제출될 수 있지만 법률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원을 모두 통과하여야 함
 - 제1독회를 통하여 법률안이 상원이나 하원에 공식적으로 제출되나 이 단계는 형식적 단계로 법안의 짧은 명칭이 낭독된 후에 제2독회로 넘어감
 - 제2독회에서는 의원들이 처음으로 우려사항이나 수정을 요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관하여 발언할 기회를 가지게 되며 반대가 있는 경우에 표결이 진행되며, 특히 위원회단계에서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보고단계에서 비로소 본회의에서의 심사가 실시됨

1) 영국의 법률안은 공법률안(public bills), 사법률안(private bills) 및 이들 양자의 규정이 혼재된 혼합법률안(hybrid bills)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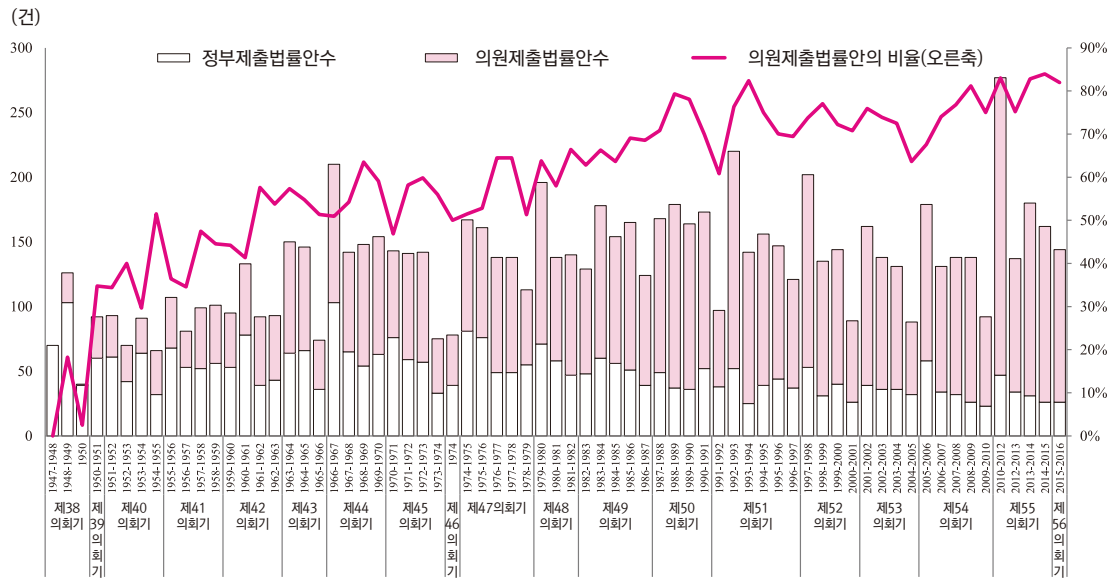
- 공법률안: 공공정책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는 법률안
- 사법률안: 특정 개인, 단체 등에 관한 법률안
- 혼합법률안: 공공정책에 관한 사항과 사법률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법률안

- 제3독회는 하원이나 상원에서 마지막으로 법률안 전체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는 이른바 법률안의 최종검토과정임
- 최초 제출된 원에서 제3독회를 모두 마치게 되면 다시 다른 원의 제1독회로 넘어가서 동일한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됨
- (공포) 법률안이 양원에서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되면 국왕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형식적으로 공포됨
 - 모든 절차를 마친 법률안은 즉시 시행되거나 정해진 기간 후에 시행되거나 또는 장관의 개시명령이 있는 후에 시행되는데 대체로 국왕의 승인을 받은 법률안은 2개월이 경과된 후에 개시
- (정부입법) 영국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국가로써 법률안 제출에 있어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 집권당이 행정부의 기능 뿐 아니라 의회의 심의도 사실상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절차에 있어서 법률안의 대부분이 당정간 협의를 거쳐 정부가 제출하며 의회는 사실상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

(2) 입법현황

- 제출된 전체 법률안 수에서 의원제출 법률안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7~2008년 회기 이후에는 전체 법률안의 3/4이상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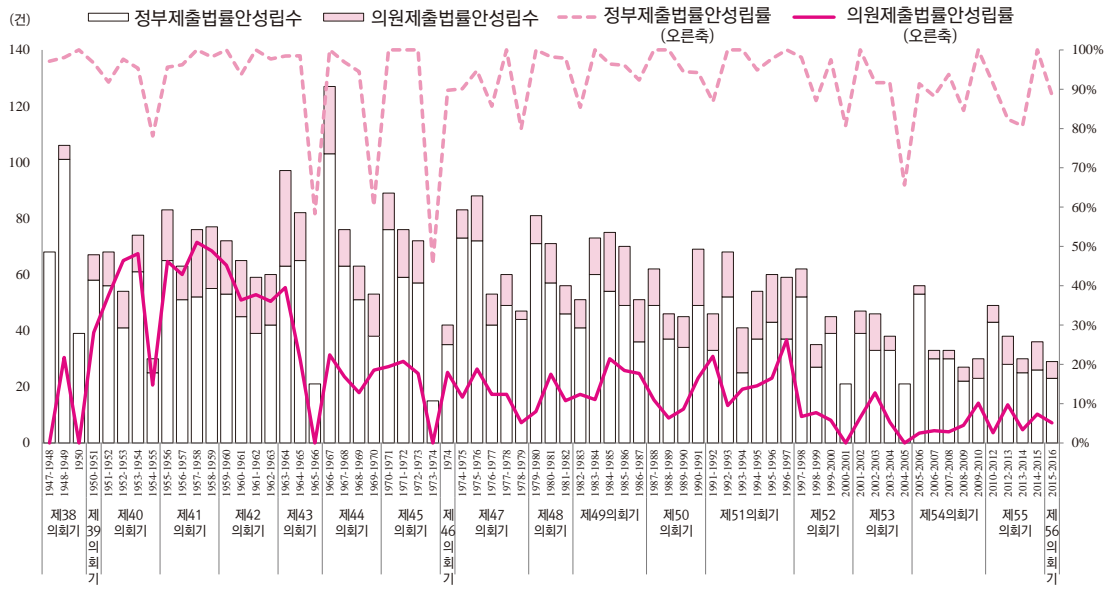
[그림 2] 의회기별 제출법률안 수 및 의원제출법률안의 비율



- 정부제출 법률안은 의회기 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회기에서 80%이상의 성립률을 보이는 반면에, 의회제출 법률안은 2000년대 이후 대부분 10% 미만
 - 이와 같은 이유로는 의회제출 법률안의 경우 심의일 및 심의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정부제출 법률안에서처럼 심의프로그램화²⁾(programming of legislation)라고 하는 심의촉진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점이 지적됨

2) 심의프로그램화란 법률안 심의를 자동적으로 진행시키는 구조로서 1997~1998 회기부터 시행되어 2004~2005 회기부터 하원규칙 제83A조~제83I 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내용으로는 제2독회 후에 제출되는 법률안의 심의 일정을 정하기 위한 프로그램 동의를 가결하여 성립한 프로그램 명령으로 정하고 있는 각 심의단계의 기간에 따라 심의를 진행함

[그림 3] 의회기별 법률 성립수 및 성립률



출처: 高澤美有紀 「主要国議会の法律案提出手続及び法律の成立状況」 レファレンス 791号(2016) 재인용, “Sessional Returns,” Parliament UK website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cmsetret.htm>>)(1997년 이후); “Sessional Returns,” ProQuest U.K. Parliamentary Papers database(1997년 이전).

04

(1) 입법절차

- (법률안 제출) 연방정부, 연방참의원(상원) 및 연방의회(하원) 의원단이 모두 연방의회에 제출³⁾
 - 하원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한 경우 1 회파 또는 하원의원의 5%의 서명이 필요하지만⁴⁾, 예산관련 법률안에 관해서 가중요건은 없음
 - 각 주에서 제출된 법률안의 원안을 상원에서 심의하고 가결된 것이 상원제출 법률안으로서 연방 정부를 통해 하원에 제출⁵⁾
 - 연방정부제출 법률안은 총리가 상원에 송부하면 상원의 논의를 거친 후에 상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반대의견을 첨부하여 하원에 제출⁶⁾
- (심의 및 의결) 독일 기본법 제42조 1항과 제77조 1항, 2항 및 3항은 연방의회가 심의하고 의결한다고 규정
 - 연방의회에서의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기본법이 아닌 연방의회의사규칙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연방의회에 의한 독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출 후 30일 이내에 개시되며 3독회제로 처리됨
 - 제1독회는 총론적 심의로서 법률안의 제출자에 의한 취지 설명 및 각 교섭단체의 총괄적 의견이 개진되며, 원내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의원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일반토론이 실시됨

3) 독일 기본법 제76조 1항

4) 연방의회의사규칙 제76조

5) 독일 기본법 제76조 3항

6) 독일 기본법 제76조 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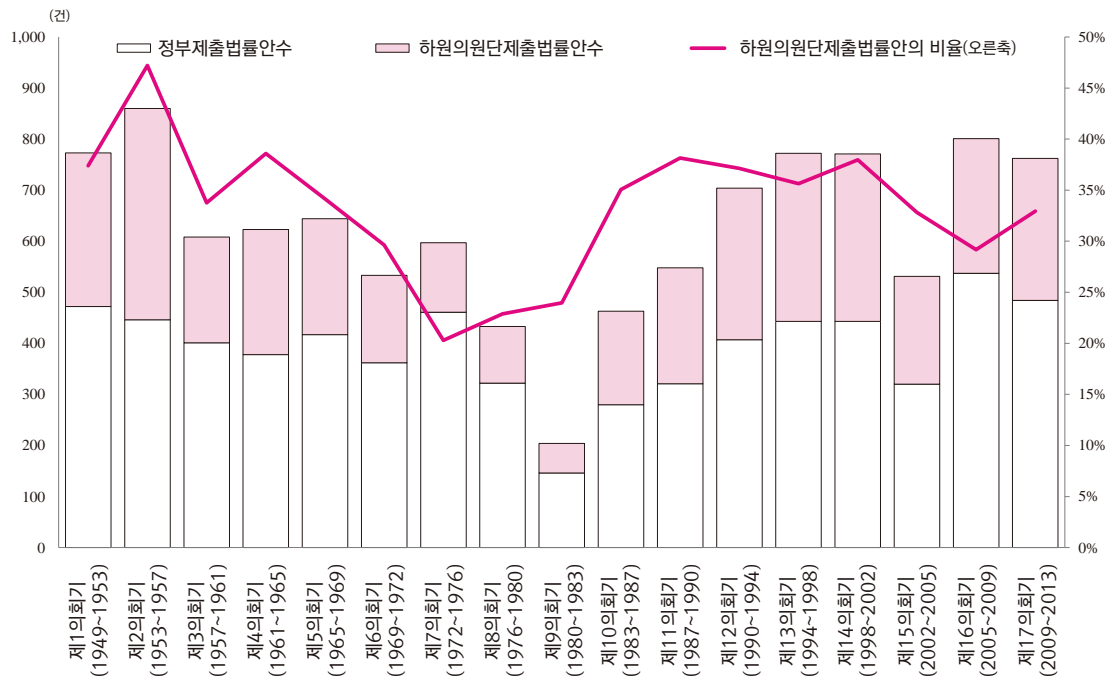
- 제2독회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원내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의원단의 동의로 연방의회 출석의원 2/3 다수로 의결한 경우 및 기본법 제81조에 의한 긴급사항은 연방의회의원 과반수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제3독회에 해당하는 본회의에서의 심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또는 연방의회 의장이 법률안을 회부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종결됨
- (공포) 기본법 82조 1항은 부서 후에 대통령이 서명하여 연방법률 공포에 공포되는 것으로 규정
 - 모든 법률은 효력발생일을 규정하여야 하지만 규정이 없는 경우 연방법률공보가 발행된 후 14일에 효력이 발생함⁷⁾
- (연방정부 법률안) 법률안 제출에 있어서는 정부가 입법부보다 우위에 서지만, 연방정부가 시간적인 이유에서 상원의 제1독회 심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률안을 여당의원으로 제출하게 하는 사례가 있음
 - 또한 이전회기에서 가결되지 않은 연방정부 법률안이 다음 회기에서 시간절감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여당에 의해 입법과정에 편승되는 경우나 연립정당 내부에서의 장기간의 대립 후에 작성된 타협안을 상원의 제1독회 심의를 회피하여 성립시키기 위해 여당이 제출하는 경우도 있음

(2) 입법현황

- 1980년대 이후 하원의원단제출(의원제출) 법률안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회파 및 의원단 중심의 운영 등 엄격한 제출요건으로 타국에 비해 높지는 않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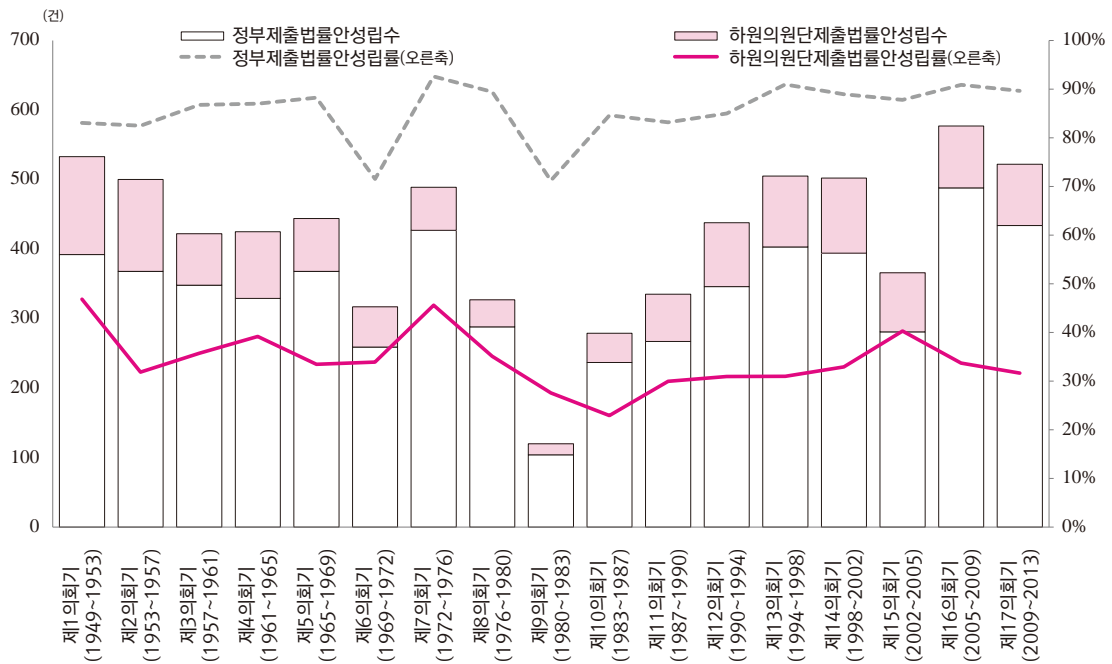
7) 기본법 제82조 2항

[그림 4] 의회기별 법률안 제출수 및 하원의원단 제출 법률안의 비율



- 정부제출 법률안은 약 90%의 성립률을 유지하는 반면에 하원의원단제출 법률안은 1980년대 이후 30~40%에 그침

[그림 5] 의회기별 법률 성립수 및 성립률



출처: 高澤美有紀 「主要国議会の法律案提出手続及び法律の成立状況」 レファレンス 791号(2016) 재인용, Peter Schindler, Hrsg., Datenhandbuch zur Geschichte des Deutschen Bundestages 1949 bis 1999, Baden-Baden: Nomos Verlagsgesellschaft, 1999, pp.2386-2395; “Kapitel 10.1 Statistik zur Gesetzgebung,” Datenhandbuch zur Geschichte des Deutschen Bundestages, 26.9.2014. Deutscher Bundestag website <https://www.bundestag.de/blob/196202/3aa6ee34b546e9ee58d0759a0cd71338/kapitel_10_01_statistik_zur_gesetzgebung-data.pdf>; Michael F. Feldkamp, “Deutscher Bundestag 1994 bis 2014: Parlaments- und Wahlstatistik für die 13. bis 18. Wahlperiode,” ZParl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 Heft 1, 2014, pp.3-16.

05

(1) 입법절차

- (법률안 제출)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법률안 제출권한을 행사
 - 프랑스 헌법상 일반법률⁸⁾의 안을 제출할 권한은 정부 수반인 총리와 양원의 의회의원 모두에게 있음
 - 의원제출 법률안에는 특별한 요건은 없으며 의원 1인으로도 법률안 제출이 가능함
 - 다만 의회의원은 재정수반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음
- (제정 절차) 법률안 제출 및 접수 → 양원 심사 및 의결 → 대통령 공포
 - 정부 발의안의 제출권은 총리에게 있는 반면, 공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음
 - 각 의회 소위에서의 심의 및 양원 간 수정안 교환을 거쳐 법률안을 확정하여 본회의에서 의결
 -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⁹⁾,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음
- (정부제출 법률안) 정부제출 법률안은 국사원¹⁰⁾(Conceil d'Etat)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되며, 의무적으로 입법영향평가를 받게 됨

8) '일반법률'이란 우리의 법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프랑스는 의회에서 법률로 의결하는 규범이 여러 가지가 있음. 일반법률 외에 헌법법률, 조직법률, 재정법률, 복지지원법률이 있으며, 각 법률마다 입법과정이 상이함.

9) 헌법 제1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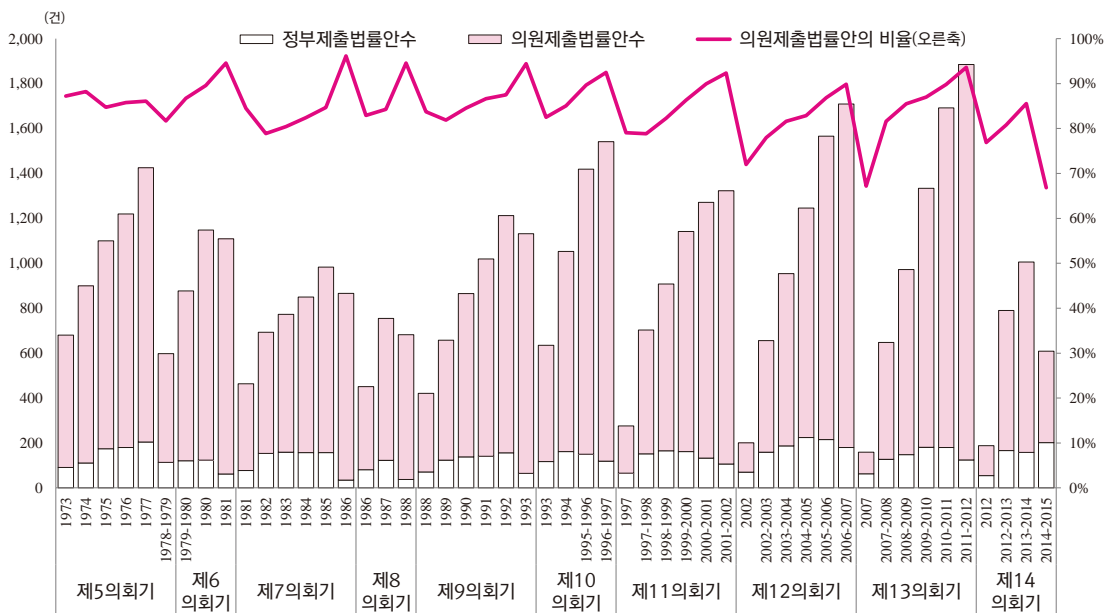
10) 국사원이라 크게 행정부와 소송부로 나뉘는데 소송부는 대법원으로서의 권한을 가지며, 행정부는 법률안 제출과 명령 제정 시 자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제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국사원은 법률안에 대해 전체 법체계와의 정합성 및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며, 의원제출 법률안도 국회의장의 재량에 따라 국사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입법영향평가 절차는 의회가 정부제출 법률안의 과잉을 억제하고, 국회의 심사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의회가 주도하여 국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음

(2) 입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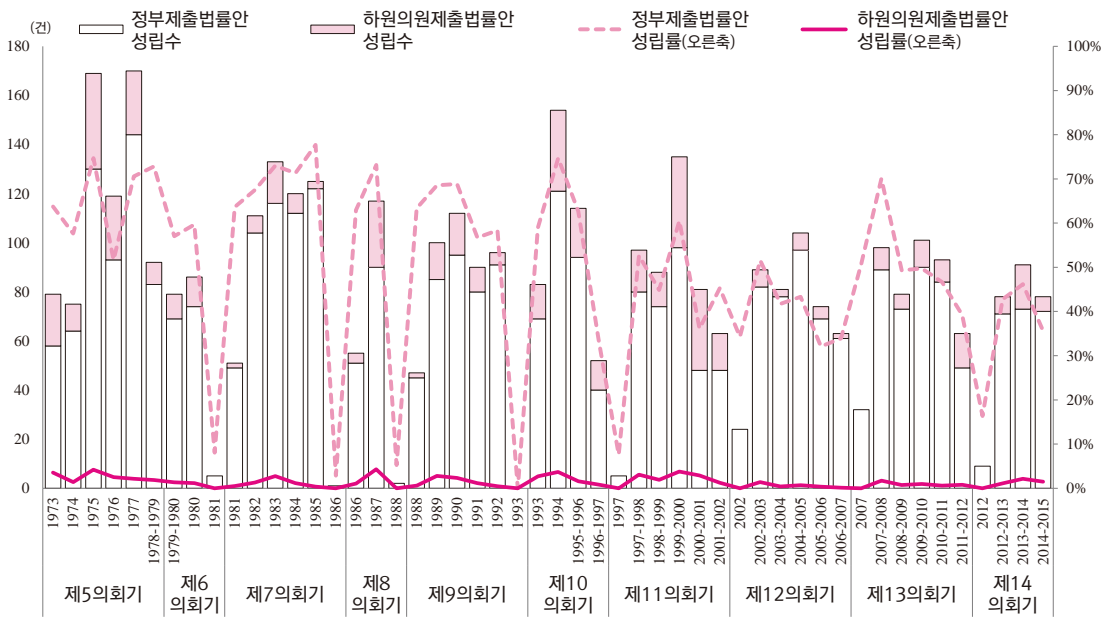
- 전체 제출법률안에서 의원제출 법률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임

[그림 6] 연도별 제출법률안 수 및 의원제출법률안의 비율



- 정부제출 법률안은 의회기말을 제외하고 60~80%의 성립률을 보이는 반면에 하원의원 제출법률안은 5% 미만
 - 이와 같은 배경에는 정부제출 법률안의 심의가 우선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그림 7] 연도별 법률 성립수 및 성립률



출처: 高澤美有紀 「主要国議会の法律案提出手続及び法律の成立状況」 レファレンス 791号(2016) 재인용, "Statistiques," Bulletin de l'Assemblée nationale, 1973-1994; "Statistiques de l'activiteparlementaire." Assemblée nationale website <<http://www2.assemblee-nationale.fr/14/statistiques-de-l-activite-parlementaire>>.

06

(1) 입법절차

- (법률안 제출) 일본의 법률안은 의원제출 법률안과 내각제출 법률안(각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¹¹⁾, 제출요건 및 절차가 상이
 - 의원제출 법률안은 하원의원 20명 이상 또는 상원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하며, 특히 예산 관련 법률안은 하원의원 50명 이상 또는 상원의원 2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¹²⁾
 - 양원의 위원회와 헌법조사회, 상원의원의 조사회는 해당 소관사항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자는 위원장, 조사회장 또는 심사회장이 됨¹³⁾
 - 의원제출 법률안에 관해서는 다시 하원의원장에게 제출되는 중법과 상원의원장에게 제출되는 참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각법은 각 정부 소관의 행정분야를 담당하는 부서가 원안을 작성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의회에 제출됨
- (심의 및 의결)
 - 제출된 법률안은 의장이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출자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위원회 심사에서는 제출자의 취지 설명, 질의답변 및 표결을 실시함

11) 일본 국회법 제56조 및 내각법 제5조

12) 국회법 제56조 1항

13) 국회법 제50조의2, 제54조의4 및 제102조의 7. 이와 같은 법률안은 강학상 위원회제출 법률안이라고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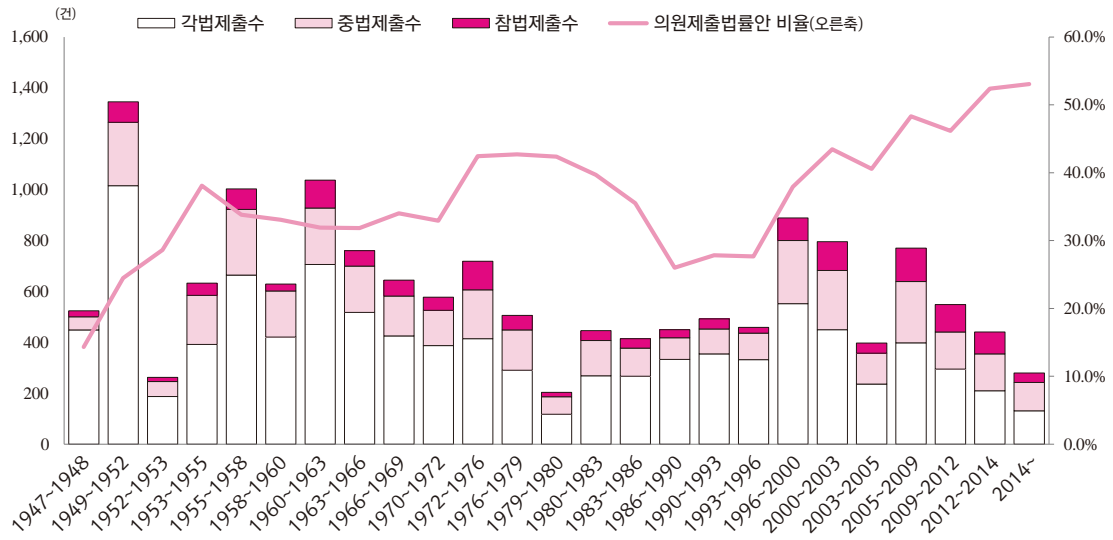
- 본회의에서는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질의토론 후에 표결을 실시함
- 마지막으로 최초 제출된 원에서의 절차 모두 마치게 되면 다시 다른 원으로 송부되어 양원에서 모두 의결하여야 법률로 성립되는데, 하원의원에서 가결된 법률이 상원의원에서 부결되거나 60일 이내에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의원 2/3 이상의 동의로 재의결되면 성립¹⁴⁾
- (공포) 법률안이 양원에서 모두 의결되면 실질적으로 법률로서 확정되는데, 확정된 법률은 관계대신의 서명과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한 후에 일왕이 공포
- (내각제출 법률안) 일본헌법은 의회를 유일한 입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각의 법률안제출권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2) 입법현황

- 전체 법률안 제출건수에서 의원제출 법률안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경향에 있으며, 최근에는 전체 법률안 제출건수의 절반정도를 차지
 - 의원제출 법률안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정치개혁을 계기로 한 연립정권의 수립과 그 후의 연립정권 재편성 등을 통하여 각 정당의 정책입안능력이 높아진 것과 사회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료주의에서 정치주도로 정책결정의 방식이 전환될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지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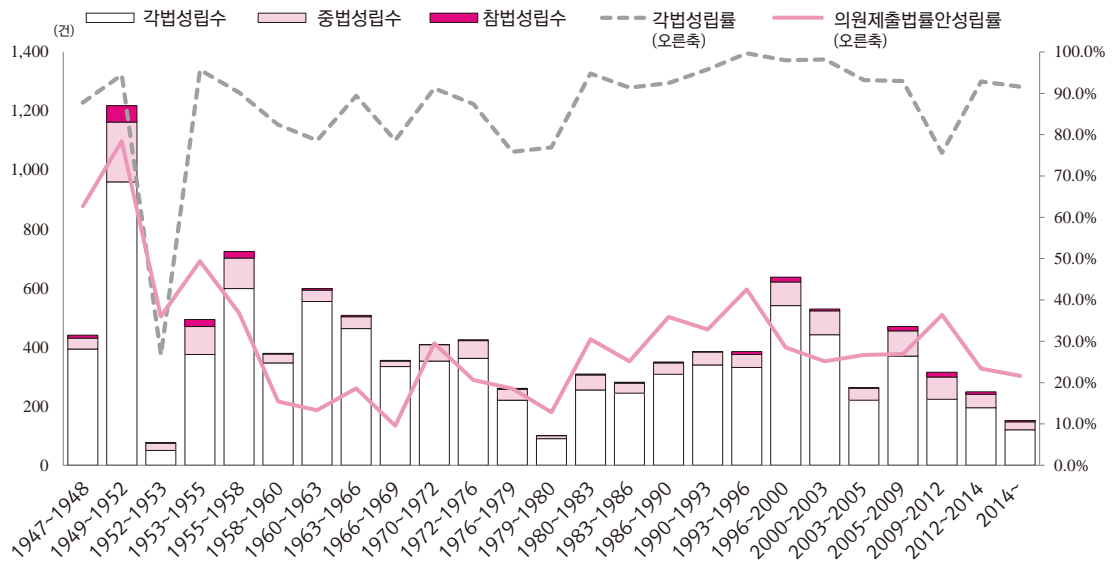
14) 헌법 제59조 1항, 2항 및 4항

[그림 8] 하원의원의 임기별 법률안 제출수 및 의원제출 법률안 비율



- 정부제출 법률안의 성립률은 높은 추이를 유지하고 있으나, 선거기간 및 이른바 상원과 하원내의 다수파가 다른 상황을 말하는 이른바 ‘꼬인 국회’의 기간에는 비교적 낮은 편임
 - 반면에 의원제출 법률안의 성립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하여 낮은 추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 9] 하원의원의 임기별 법률 성립수 및 성립률



출처: 高澤美有紀 「主要国議会の法律案提出手続及び法律の成立状況」 レファレンス 791号(2016) 재인용, 衆議院·參議院 『議會制度百年史 資料編』(1990) 226-234쪽; 參議院事務局 『參議院先例諸表 平成22年版』(2010) 540-580쪽; 衆議院公報 「付録 議案經過一覽」(各国会회次)等.

07

(1) 입법절차

- (법률안 제출) 헌법 제52조에 따라 국회의원과 정부는 각각 법률안 제출권을 가짐
 -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국회에 제출
 - 의원제출 법률안의 경우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의원은 물론 국회의 위원회도 해당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장 명의로 제출

- (심의 및 의결) 헌법 제40조에 따라 국회는 모든 법률안을 심의 의결함
 -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원회는 전체회의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률안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등 법률안 심사를 진행
 -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자구와 체제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 다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공포를 위하여 정부에 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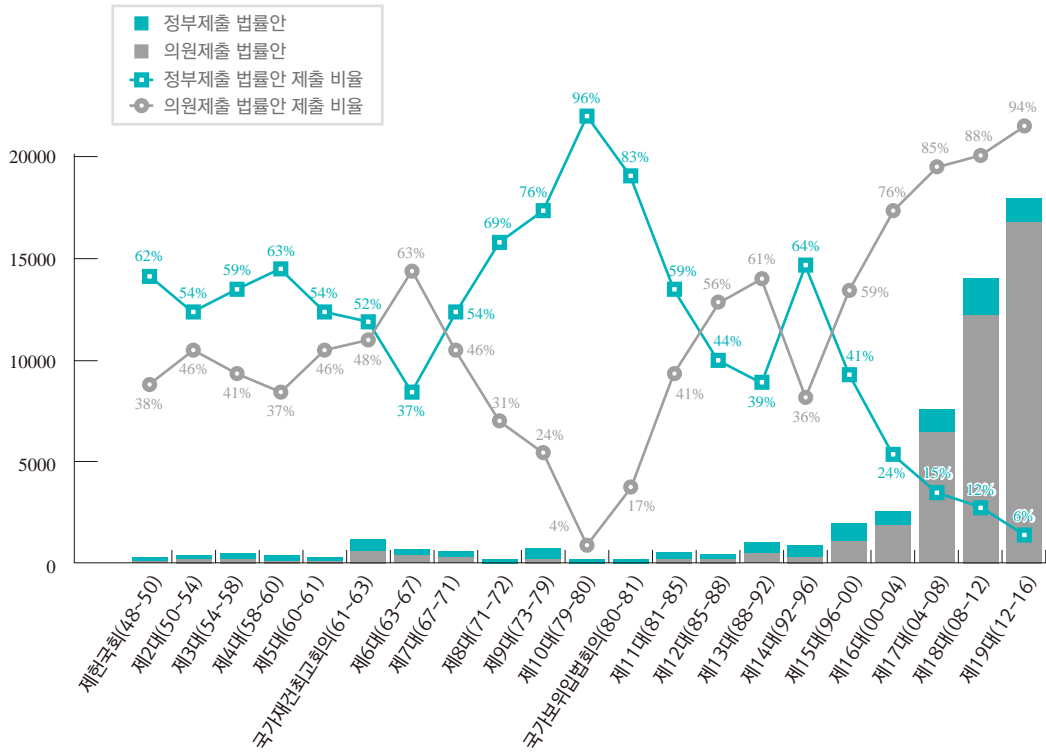
- (재의요구 및 공포)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관해서 정부는 재의요구 또는 공포함
 - 대통령은 법률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재의요구에 대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
 - 법률안에 관하여 이의가 없거나 재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하여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공포

- (정부제출 법률안) 헌법 제52조에 의하여 국회의원과 정부는 모두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국회의원 또는 정부에 의한 법률안 제출권에 관한 헌법 규정은 제헌헌법 제39조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이래 변함없이 유지
 - 다만 헌법은 법률안 제출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각각의 법률안 제출절차는 근거법률도 다르고 그 절차도 상이

(2) 입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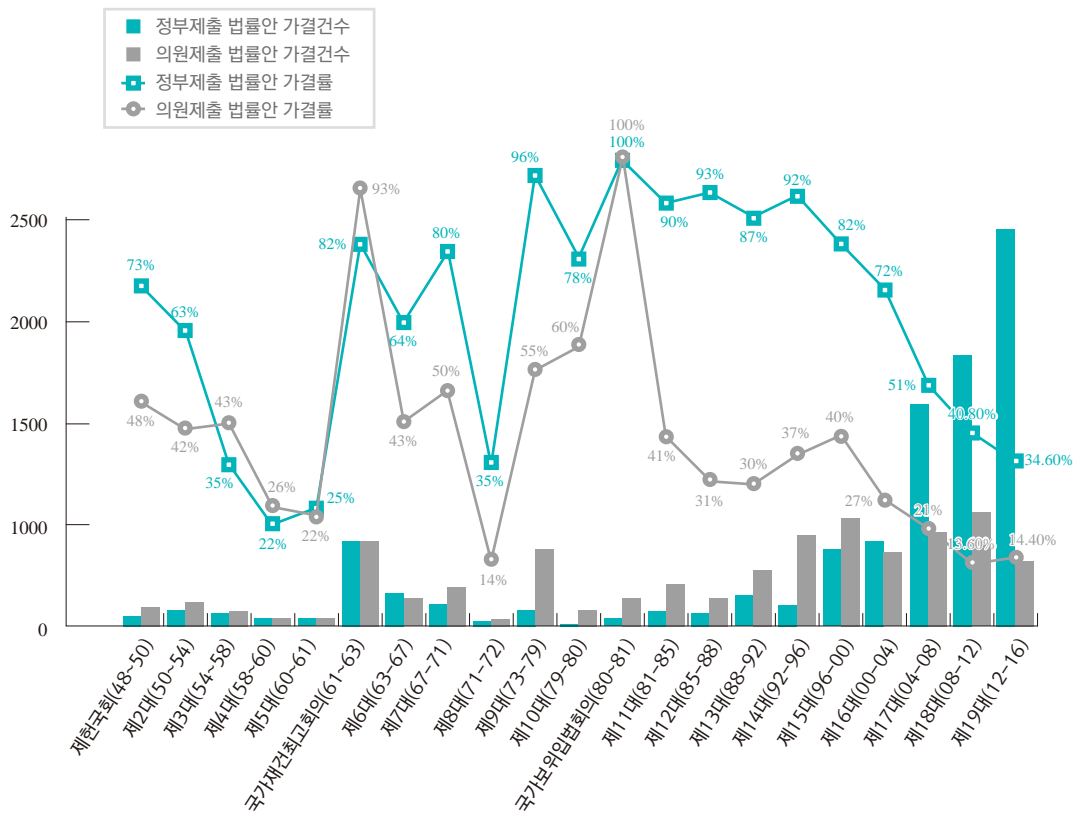
- 최근 제출법률안 전체건수와 특히 의원제출 법률안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제14대 국회까지는 제출건수가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제15대 국회에서 1,951건, 제16대 국회에서 2,507건, 제17대 국회에서 6,387건, 제18대 국회에서 12,309건, 제19대 국회에서는 17,822건으로 증가
 - 특히 제출법률안 전체건수 중에서도 의원제출 법률안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국회의원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국회의 입법지원조직이 확대됨과 함께 시민단체의 의정활동평가를 의식하여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 등이 지적

[그림 10] 회기별 각법률안 제출수 및 제출 비율



- 제11대 국회 이후 정부제출 법률안과 의원제출 법률안 모두 대체로 가결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가결률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이에 관해서는 다양하고 복잡해진 사회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많은 법률이 필요하고 법치주의원리 하에서 법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법률 입안에 있어서 현실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법제기술상 완성도가 미흡한 법률안이 제출된다는 점 등이 지적

[그림 11] 회기별 법률 가결건수 및 가결률



시기 구분 (연도)	전체 법률안	의원제출 법률안			정부제출 법률안		
		제출건수	가결건수	가결률	제출건수	가결건수	가결률
제헌국회(48~50)	234	89	43	48%	145	106	73%
제2대(50~54)	398	182	77	42%	216	137	63%
제3대(54~58)	410	169	72	43%	241	85	35%
제4대(58~60)	322	120	31	26%	202	44	22%
제5대(60~61)	296	137	30	22%	159	40	25%
국가재건최고회의(61~63)	1,162	554	514	93%	608	501	82%
제6대(63~67)	658	416	178	43%	242	154	64%
제7대(67~71)	535	244	123	50%	291	234	80%
제8대(71~72)	138	43	6	14%	95	33	35%
제9대(73~79)	633	154	84	55%	479	460	96%
제10대(79~80)	129	5	3	60%	124	97	78%
국가보위입법회의(80~81)	189	33	33	100%	156	156	100%
제11대(81~85)	489	202	83	41%	287	257	90%
제12대(85~88)	379	211	66	31%	168	156	93%
제13대(88~92)	938	570	171	30%	368	321	87%
제14대(92~96)	902	321	119	37%	581	537	92%
제15대(96~00)	1,951	1,144	461	40%	807	659	82%
제16대(00~04)	2,507	1,912	514	27%	595	431	72%
제17대(04~08)	7,489	6,387	1,350	21%	1,102	563	51%
제18대(08~12)	13,913	12,220	1,663	13.6%	1,693	690	40.8%
제19대(12~16)	17,822	16,728	2,414	14.4%	1,093	379	34.6%

출처: 국회 의원정보시스템 통계자료를 기초로 재구성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우리나라는 헌법 제52조에 따라 국회의원과 정부 모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법률안 제출권에 관한 헌법 규정은 제헌헌법 제39조에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이후로 변함없이 유지
 - 정부수립 이후 정부의 전문성에 입각하여 법률안 제출을 주도하여 왔으며, 제출되어진 법률안이 법률로 성립되는 비율은 제헌국회(1948년~1950년) 73%를 시작으로 하여 제6대 국회(1963년~1967년) 64%, 제11대 국회(1981년~1985년) 90%, 제16대 국회(2000년~2004년) 72% 등 높은 비율을 유지하여 왔음
 - 제헌국회부터 제14대 국회(1992년~1996년)까지는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이 대체로 많았는데 이를 보면 입법의 주도권을 정부가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한편 제15대 국회(1996년~2000년) 이후부터는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이 많아지면서 입법의 주도권을 국회가 행사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최근 선진국에서의 입법경향을 보면 전체적으로 법률안 제출건수가 증가하면서 특히 의원법률안이 제출법률안 전체에서 점하는 비율이 증가
 - 이와 같은 법률안의 증가는 우선 현대사회에 있어서 국민들의 생활관계에 대한 국가개입의 증대나 입법수요의 확대 등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복잡해진 사회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많은 법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는 물론 현대국가가 보편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다수의 입법이 행해지는 것은 법규범의 과잉·복잡화, 빈번한 개정에 의한 불필요·부적합·부정합한 규범의 증가 등 이른바 입법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입법의 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
- 권태웅, “미국의 입법절차와 사법심사” 법제처 (2007)
- 박균성, “입법과정의 선진화와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8)
- 박영도, “입법학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9)
- 박영도, “독일의 법령체계와 입법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5)
- 박영도 외, “선진 각국의 정부입법계획제도 운영 실태 분석” 법제처 (2011)
- 송상훈, “영국·스위스 입법계획제도 운영사례” 법제처 (2007)
- 유병곤 외, “주요국의 의회제도” 국정운영위원회 (2004)
- 유병훈, 이상희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에 관한 고찰” 법제처 (2001)
- 임종훈, “한국입법과정론” 박영사 (2011)
- 홍완식 외, “정부입법절차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법제처 (2012)
- 권영설, ‘입법과정의 헌법적 조명’ 공법연구 제34집 3호 (2006)
- 이상윤, ‘일본의 내각법제국의 헌법적 기능’ 헌법학연구 제13권 2호 (2007)
- 이희훈, ‘미국의 법령체계 및 입법절차상 시사점’ 미국헌법연구 제21권 3호 (2010)
- 茅野千江子 「議員立法序説」 レファレンス 776号(2015)
- 高澤美有紀 「主要国議会の法律案提出手続及び法律の成立状況」 レファレンス 791号(2016)

1.	32
(1)	32
(2)	74
2.	98

1. 외국법령

(1) 독일 연방의회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연방의회의사규칙
<p>BTGO 1980</p> <p>Ausfertigungsdatum: 25.06.1980</p> <p>Vollzitat: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vom 25. Juni 1980 (BGBl. I S. 1237), die zuletzt durch Beschluss d. Bundestages vom 3. April 2014 geändert worden ist"</p> <p>Stand: Zuletzt geändert durch Beschluss d. Bundestages v. 3.4.2014 gem. Bek. v. 23.4.2014 I 534</p> <p>Fußnote (+++ Textnachweis Geltung ab: 31.3.1982 +++) (+++ Zur Nichtanwendung d. § 126 vgl. § 126a Abs. 2 +++)</p> <p>Eingangsformel Der Deutsche Bundestag hat am 25. Juni 1980 die nachstehende Neufassung seiner Geschäftsordnung beschlossen. Die Neufassung tritt am 1. Oktober 1980 in Kraft. Sie ersetzt die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22. Mai 1970 (BGBl. I S. 628), zuletzt geändert durch Beschluß vom 19. Juni 1975 (Bekanntmachung vom 24. Juni 1975 - BGBl. I S. 1848).</p>	<p>BTGO 1980</p> <p>발행일: 1980년 6월 25일</p> <p>인용: "2014년 4월 3일자로 독일 연방의회 결의에 의하여 개정된 1980년 6월 25일자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BGBl. I S. 1237)"</p> <p>현황: 독일 연방의회 결의에 의하여 개정된 v. 3.4.2014 gem. Bek. v. 23.4.2014 I 534</p> <p>각주 (+++ 법의 효력 발생: 1982년 3월 31일부터 +++) (+++ 적용하지 않는 조항 제126조, 제126a조 제2항 +++)</p> <p>서문 독일 연방의회는 1980년 6월 25일자로 의사규칙에 대한 다음의 신규 법안을 의결하였다. 신규 법안은 1980년 10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은 1975년 6월 19일자로 의결(1975년 6월 24일 공시 - BGBl. I S. 1848)되어 최종 수정된 1970년 5월 22일자 공시 법안 (BGBl. I S. 628)의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을 대체한다.</p>
<p>I. Wahl des Präsidenten, der Stellvertreter und Schriftführer</p>	<p>I. 의장, 부의장 및 서기의 선거</p>
<p>§ 1 Konstituierung</p> <p>(1) Der neugewählte Bundestag wird zu seiner ersten Sitzung vom bisherigen Präsidenten spätestens zum dreißigsten Tage nach der Wahl (Artikel 39 des Grundgesetzes) einberufen.</p> <p>(2) In der ersten Sitzung des Bundestages führt das an Jahren äteste oder, wenn es ablehnt, das nächstälteste Mitglied des Bundestages den Vorsitz, bis der neugewählte Präsident oder einer seiner Stellvertreter das Amt übernimmt.</p> <p>(3) Der Alterspräsident ernennt Mitglieder des Bundestages zu vorläufigen Schriftführern. Hierauf erfolgt der Namensaufruf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p> <p>(4) Nach Feststellung der Beschlußfähigkeit wird die Wahl des Präsidenten, der Stellvertreter und der Schriftführer vorgenommen.</p>	<p>제1조 구성</p> <p>(1) 신규 선출된 연방의회(Bundestag)는 그 첫 회의(Sitzung)가 선거 후 늦어도 30일 이내(기본법 제39조)에 전임 의장에 의하여 소집된다.</p> <p>(2) 신규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이 취임할 때까지 연방의회의 첫 회의는 최연장자 의원 또는 최연장자 의원이 거부할 경우에는 그 다음 연장자 의원이 의장직을 수행한다.</p> <p>(3) 연장자 의장은 연방의회 의원을 임시 서기로 임명한다. 이어서 연방의회 의원의 호명이 이루어진다.</p> <p>(4) 의결 정족수(Beschlußfähigkeit)를 확인한 후에 의장(Präsidenten), 부의장(Stellvertreter) 및 서기(Schriftführer)의 선거가 시행된다.</p>
<p>§ 2 Wahl des Präsidenten und der Stellvertreter</p> <p>(1) Der Bundestag wählt mit verdeckten Stimmzetteln (§ 49) in besonderen Wahlhandlungen den Präsidenten und seine Stellvertreter für die Dauer der Wahlperiode. Jede Fraktion des Deutschen Bundestages ist durch mindestens einen Vizepräsidenten oder eine Vizepräsidentin im Präsidium vertreten.</p>	<p>제2조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p> <p>(1) 연방의회는 별도의 선거 절차에 따라서 비밀 투표지(제49조)로 임기가 주어진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독일 연방의회의 모든 교섭단체는 최소한 1명의 부의장 또는 의장단 부의장이 대행한다.</p>

- (2) Gewählt ist, wer die Stimmen der Mehrhei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erhält. Ergibt sich im ersten Wahlgang keine Mehrheit, so können für einen zweiten Wahlgang neue Bewerber vorgeschlagen werden. Ergibt sich auch dann keine Mehrheit der Stimmen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findet ein dritter Wahlgang statt. Bei nur einem Bewerber ist dieser gewählt, wenn er die Mehrheit der abgegebenen Stimmen auf sich vereinigt. Bei mehreren Bewerbern kommen die beiden Bewerber mit den höchsten Stimmenzahlen in die engere Wahl; gewählt ist, wer die meisten Stimmen auf sich vereinigt. Bei Stimmengleichheit entscheidet das Los durch die Hand des amtierenden Präsidenten.
- (3) Weitere Wahlgänge mit einem im dritten Wahlgang erfolglosen Bewerber sind nur nach Vereinbarung im Ältestenrat zulässig. Werden nach erfolglosem Ablauf des Verfahrens nach Absatz 2 neue Bewerber vorgeschlagen, ist neu in das Wahlverfahren gemäß Absatz 2 einzutreten.
- (2) 연방의회 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가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에서 새로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연방의회 의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3차 투표를 실시한다. 후보가 1인일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시킨다. 후보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수 득표자 2인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사회 의장이 직접 추천하여 결정한다.
- (3) 3차 선거 과정에서 실패한 후보에 대한 다음 선거는 원로회와 협의한 후에만 가능하다. 제2항에 따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거 절차로 새로 시작하여야 한다.

§ 3 Wahl der Schriftführer

Der Bundestag beschließt die Zahl der Schriftführer. Sie können gemeinsam auf Grund eines Vorschlages der Fraktionen gewählt werden. Bei der Festlegung der Zahl der Schriftführer und ihrer Verteilung auf die Fraktionen ist § 12 zu beachten.

제3조 서기의 선거

연방의회는 서기의 수를 의결한다. 서기는 교섭단체(Fraktionen)의 제의를 근거로 하여 공동으로 선출할 수 있다. 서기의 수와 교섭단체에 그들의 배정수를 확정할 때 제12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II. Wahl des Bundeskanzlers

II. 연방 수상의 선출

§ 4 Wahl des Bundeskanzlers

Die Wahl des Bundeskanzlers (Artikel 63 des Grundgesetzes) erfolgt mit verdeckten Stimmzetteln (§ 49). Wahlvorschläge zu den Wahlgängen gemäß Artikel 63 Abs. 3 und 4 des Grundgesetzes sind von einem Viertel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oder einer Fraktion, die mindestens ein Viertel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umfaßt, zu unterzeichnen.

제4조 연방수상의 선출

연방수상(Bundeskanzlers)의 선출(기본법 제63조)은 비밀 투표용지로 실시한다.(제49조) 기본법 제63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한 선거를 위한 선거 제안은 연방의회 의원의 4분의 1 또는 연방의회 의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교섭단체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III. Präsident, Präsidium und Ältestenrat

III. 의장, 의장단 및 원로회

§ 5 Präsidium

Der Präsident und die stellvertretenden Präsidenten bilden das Präsidium.

제5조 의장단

의장과 부의장은 의장단(Präsidium)을 구성한다.

§ 6 Ältestenrat

- (1) Der Ältestenrat besteht aus dem Präsidenten, seinen Stellvertretern und dreiundzwanzig weiteren von den Fraktionen gemäß § 12 zu benennenden Mitgliedern. Die Einberufung obliegt dem Präsidenten. Er muß ihn einberufen, wenn eine Fraktion oder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es verlangen.
- (2) Der Ältestenrat unterstützt den Präsidenten bei der Führung der Geschäfte. Er führt eine Verständigung zwischen den Fraktionen über die Besetzung der Stellen der Ausschußvorsitzenden und ihrer Stellvertreter sowie über den Arbeitsplan des Bundestages herbei. Bei der Wahrnehmung dieser Aufgaben ist der Ältestenrat kein Beschlußorgan.

제6조 원로회

- (1) 원로회(Ältestenrat)는 의장, 부의장 및 제12조에 따른 교섭단체가 지명한 2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회의 소집의 의무가 있다. 교섭단체 또는 연방의원 의원의 5%가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2) 원로회는 의사 진행에서 의장을 지원한다. 원로회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직과 부위원장직의 배치 또는 연방의회 의 업무계획에 관해 교섭단체 사이의 의사소통을 유도한다. 이같은 업무 수행에서 원로회는 의결 기관이 아니다.

- (3) Der Ätstenrat beschließt über die inneren Angelegenheiten des Bundestages, soweit sie nicht dem Präidenten oder dem Präidium vorbehalten sind. Er verfügt über die Verwendung der dem Bundestag vorbehaltenen Räume. Er stellt den Voranschlag für den Haushaltseinzelnplan des Bundestages auf, von dem der Haushaltsausschuß nur im Benehmen mit dem Ätstenrat abweichen kann.
- (4) Für die Angelegenheiten der Bibliothek, des Archivs und anderer Dokumentationen setzt der Ätstenrat einen ständigen Unterausschuß ein, dem auch Mitglieder des Bundestages, die nicht Mitglied des Ätstenrates sind, angehören können.

§ 7 Aufgaben des Präidenten

- (1) Der Präident vertritt den Bundestag und regelt seine Geschäfte. Er wahrt die Würde und die Rechte des Bundestages, fördert seine Arbeiten, leitet die Verhandlungen gerecht und unparteiisch und wahrt die Ordnung im Hause. Er hat beratende Stimme in allen Ausschüssen.
- (2) Dem Präidenten steht das Hausrecht und die Polizeigewalt in allen der Verwaltung des Bundestages unterstehenden Gebäuden, Gebäudeteilen und Grundstücken zu. Der Präident erläßt im Einvernehmen mit dem Ausschuß für Wahlprüfung, Immunität und Geschäftsordnung eine Hausordnung.
- (3) Der Präident schließt die Verträge, die für die Bundestagsverwaltung von erheblicher Bedeutung sind, im Benehmen mit seinen Stellvertretern ab. Ausgaben im Rahmen des Haushaltsplanes weist der Präident an.
- (4) Der Präident ist die oberste Dienstbehörde der Bundestagsbeamten. Er ernennt und stellt die Bundestagsbeamten nach den gesetzlichen und allgemeinen Verwaltungsvorschriften ein und versetzt sie in den Ruhestand. Auch die nichtbeamteten Bediensteten des Bundestages werden von dem Präidenten eingestellt und entlassen. Maßnahmen nach Satz 2 und 3 trifft der Präident, soweit Beamte des höheren Dienstes oder entsprechend eingestufte Angestellte betroffen sind, im Benehmen mit den stellvertretenden Präidenten, soweit leitende Beamte (A 16 und höher) oder entsprechend eingestufte Angestellte eingestellt, befördert bzw. höhergestuft werden, mit Zustimmung des Präidiums.
- (5) Absatz 4 gilt auch für die dem Wehrbeauftragten beigegebenen Beschäftigten. Maßnahmen nach Absatz 4 Satz 4 erfolgen im Benehmen mit dem Wehrbeauftragten. Für die Bestellung, Ernennung, Umsetzung, Versetzung und Zuruhesetzung des Leitenden Beamten ist das Einvernehmen mit dem Wehrbeauftragten erforderlich. Der Wehrbeauftragte hat das Recht, für alle Entscheidungen nach Absatz 4 Vorschläge zu unterbreiten.
- (6) Ist der Präident verhindert, vertritt ihn einer seiner Stellvertreter aus der zweitstärksten Fraktion.

§ 8 Sitzungsvorstand

- (1) In den Sitzungen des Bundestages bilden der amtierende Präident und zwei Schriftführer den Sitzungsvorstand.

- (3) 원로회는 의장 또는 의장단에게 유보되지 않는 연방의회회의 내부 업무에 관해 결정한다. 원로회는 연방의회회의에 유보된 공간의 사용에 관해 처리한다. 원로회는 예산위원회가 오직 원로회와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연방의회회의 예산 계획안을 작성한다.

- (4) 도서관, 기록문서 및 기타 문헌의 업무를 위해서 원로회는 원로회의 의원이 아닌 연방의회회의 의원이 소속할 수 있는 상설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제7조 의장의 임무

- (1) 의장은 연방의회회의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총괄한다. 의장은 연방의회회의 품위와 권리를 유지하고, 그의 업무를 추진하며, 공정하고 공평하게 의사를 주재하며, 원내 질서를 유지한다. 의장은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권을 가진다.
- (2) 의장은 연방의회회의의 행정 관리 하에 있는 모든 건물, 부속건물 및 토지에서 가택권과 경호권을 갖는다. 의장은 선거 조사, 면책특권 및 의사규칙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원내 규칙을 공포한다.
- (3) 의장은 부의장과 협의하여 연방의회회의 행정을 위한 중요한 의의가 있는 계약을 체결한다. 의장은 예산안의 범위 이내에서 지출을 지시한다.
- (4) 의장은 연방의회회의 공무원의 최고위직 관청이다. 의장은 법률과 일반 행정법규에 따라 연방의회회의 공무원을 임명하고 채용하며, 그리고 퇴직시킬 수 있다. 연방의회회의 비정규 공무원도 역시 의장이 채용하고 해직한다. 의장은 고위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부의장과 협의하고, 관리직 공무원(A16 및 그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을 채용 및 승진시키는 경우에는 의장단의 동의를 얻어 제2문과 제3문에 의한 조치를 취한다.
- (5) 제4항은 국방전권수임자에 소속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4항 제4문에 따른 조치는 국방전권수임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관리직 공무원의 채용, 임명, 전직, 진급, 휴직을 위해서는 국방전권수임자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방전권수임자는 제4항에 따른 모든 결정을 위해서 제안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 (6) 의장이 유고시에는 두번째로 큰 교섭단체의 부의장의 1명이 의장을 대행한다.

제8조 회의 간부회

- (1) 연방의회회의 회의에서 사회 의장과 2명의 서기가 회의 간부회(Sitzungsvorstand)를 구성한다.

<p>(2) Der Präsident bestimmt im Einvernehmen mit seinen Stellvertretern die Reihenfolge der Vertretung. Sind Präsident und Stellvertreter gleichzeitig verhindert, so übernimmt der Alterspräsident die Leitung.</p> <p>(3) Stehen die gewählten Schriftführer für eine Sitzung des Bundestages nicht in ausreichender Zahl zur Verfügung, so bestellt der amtierende Präsident andere Mitglieder des Bundestages als Stellvertreter.</p>	<p>(2) 의장은 부의장과 협의하여 대리의 순서를 정한다. 의장과 부의장이 동시에 유고일 경우에는 연장의장(Alterspräsident)이 사회를 맡는다.</p> <p>(3) 연방의회의 회의를 위하여 선출된 서기가 업무 처리에 충분한 수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 의장은 연방의회의 다른 의원을 부의장으로 임명한다.</p>
<p>§ 9 Aufgaben der Schriftführer</p> <p>Die Schriftführer unterstützen den Präsidenten. Sie haben die Schriftstücke vorzulesen, die Verhandlungen zu beurkunden, die Rednerlisten zu führen, die Namen aufzurufen, die Stimmzettel zu sammeln und zu zählen, die Korrektur der Plenarprotokolle zu überwachen und andere Angelegenheiten des Bundestages nach den Weisungen des Präsidenten zu besorgen. Der Präsident verteilt die Geschäfte.</p>	<p>제9조 서기의 임무</p> <p>서기는 의장을 지원한다. 서기는 문서를 낭독하고 의사를 기록하며, 발언자의 명부를 적성하며, 호명 점검하며, 투표 용지를 집계하며, 회의록의 교정을 감독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연방의회의 기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의장은 업무를 배정한다.</p>
<p>IV. Fraktionen</p>	<p>IV. 교섭단체</p>
<p>§ 10 Bildung der Fraktionen</p> <p>(1) Die Fraktionen sind Vereinigungen von mindestens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die derselben Partei oder solchen Parteien angehören, die auf Grund gleichgerichteter politischer Ziele in keinem Land miteinander im Wettbewerb stehen. Schließen sich Mitglieder des Bundestages abweichend von Satz 1 zusammen, bedarf die Anerkennung als Fraktion der Zustimmung des Bundestages.</p> <p>(2) Die Bildung einer Fraktion, ihre Bezeichnung, die Namen der Vorsitzenden, Mitglieder und Gäste sind dem Präsidenten schriftlich mitzuteilen.</p> <p>(3) Fraktionen können Gäste aufnehmen, die bei der Feststellung der Fraktionsstärke nicht mitzählen, jedoch bei der Bemessung der Stellenanteile (§ 12) zu berücksichtigen sind.</p> <p>(4) Mitglieder des Bundestages, die sich zusammenschließen wollen, ohne Fraktionsmindeststärke zu erreichen, können als Gruppe anerkannt werden. Für sie gelten die Absätze 2 und 3 entsprechend.</p> <p>(5) Technische Arbeitsgemeinschaften zwischen Fraktionen können nicht zu einer Äderung der Stellenanteile führen, die den einzelnen Fraktionen nach ihrer Stärke zustehen.</p>	<p>제10조 교섭단체의 구성</p> <p>(1) 교섭단체(Fraktionen)는 동일 정당 또는 동일한 정치적 목적에 근거를 두고 주(Land)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지 않는 연방의회 의원의 최소 5%의 결합체이다. 연방의회 의원이 제1문과는 다르게 결합할 경우에는 교섭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p> <p>(2) 교섭단체의 결성, 그의 명칭, 총무, 회원 및 임시회원(Gäste)의 성명은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3) 교섭단체는 교섭단체 회원수의 확인에는 가산되지 않지만 간부 배정의 계산(제12조)에는 고려되어야 하는 임시회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p> <p>(4) 결합하기를 원하는 연방의회 의원이 교섭단체의 최소 의원수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원 집단(Gruppe)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원 집단에 대해서는 제2항과 제3항이 적용된다.</p> <p>(5) 교섭단체 사이의 기술적 업무 공동체는 교섭단체의 회원수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에 배정하는 가부 배정에 병동을 가져올 수 없다.</p>
<p>§ 11 Reihenfolge der Fraktionen</p> <p>Nach der Stärke der Fraktionen bestimmt sich ihre Reihenfolge. Bei gleicher Fraktionsstärke entscheidet das Los, das vom Präsidenten in einer Sitzung des Bundestages gezogen wird. Erledigte Mitgliedersitze werden bis zur Neubesetzung bei der Fraktion mitgezählt, die sie bisher innehatte.</p>	<p>제11조 교섭단체의 순위</p> <p>교섭단체의 순위는 교섭단체의 인원수에 따라서 결정한다. 교섭단체의 인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방의회 회의에서 의장이 실시하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결원이 된 의원 자리는 신규 보완될 때까지 지금까지 소속되었던 교섭단체에 가산된다.</p>
<p>§ 12 Stellenanteile der Fraktionen</p> <p>Die Zusammensetzung des Ätstenrates und der Ausschüsse sowie die Regelung des Vorsitzes in den Ausschüssen ist im Verhältnis der Stärke der einzelnen Fraktionen vorzunehmen. Derselbe Grundsatz wird bei Wahlen, die der Bundestag vorzunehmen hat, angewandt.</p>	<p>제12조 교섭단체의 간부 배정</p> <p>상임위원회는 교섭단체의 세력에 비례하여 구성된다. 원로회와 상임위원회의 조직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조정은 각 교섭단체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연방의회가 실시하는 선거의 경우에 적용된다.</p>

V. Die Mitglieder des Bundestages	V. 연방의회 의원
<p>§ 13 Rechte und Pflichten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p> <p>(1) Jedes Mitglied des Bundestages folgt bei Reden, Handlungen, Abstimmungen und Wahlen seiner Überzeugung und seinem Gewissen.</p> <p>(2) Die Mitglieder des Bundestages sind verpflichtet, an den Arbeiten des Bundestages teilzunehmen. An jedem Sitzungstag wird eine Anwesenheitsliste ausgelegt, in die sich die Mitglieder des Bundestages einzutragen haben. Die Folgen der Nichteintragung und der Nichtbeteiligung an einer namentlichen Abstimmung ergeben sich aus dem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Abgeordnetengesetz).</p>	<p>제13조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와 의무</p> <p>(1) 모든 연방의회 의원(Mitglied des Bundestages)은 발언, 행동, 투표 및 선거에서 그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행한다.</p> <p>(2) 연방의회 의원은 연방의회의 업무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모든 회의 일자에 연방의회 의원이 기재하여야 하는 출석부가 비치된다. 기명 투표에서의 불참 결과는 독일 연방의회 의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원법)에 의해 나타난다.</p>
<p>§ 14 Urlaub</p> <p>Urlaub erteilt der Präsident. Urlaub auf unbestimmte Zeit wird nicht erteilt.</p>	<p>제14조 휴가</p> <p>휴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무기한의 휴가는 허가되지 않는다.</p>
<p>§ 15 Anfechtung und Verlust der Mitgliedschaft</p> <p>Die Rechte eines Mitgliedes des Bundestages, dessen Mitgliedschaft angefochten ist, regeln sich nach den Bestimmungen des Wahlprüfungsgesetzes. Nach diesem Gesetz richtet sich auch der Verlust der Mitgliedschaft.</p>	<p>제15조 의원 자격의 이익과 상실</p> <p>연방의회 의원의 자격에 대한 이익이 제기된 권리는 선거 조사법의 규정에 따라서 규율된다. 의원 자격의 상실도 이 법률에 따른다.</p>
<p>§ 16 Akteneinsicht und -abgabe</p> <p>(1) Die Mitglieder des Bundestages sind berechtigt, alle Akten einzusehen, die sich in der Verwahrung des Bundestages oder eines Ausschusses befinden; die Arbeiten des Bundestages oder seiner Ausschüsse, ihrer Vorsitzenden oder Berichterstatter dürfen dadurch nicht behindert werden. Die Einsichtnahme in persönliche Akten und Abrechnungen, die beim Bundestag über seine Mitglieder geführt werden, ist nur dem betreffenden Mitglied des Bundestages möglich. Wünschen andere Mitglieder des Bundestages etwa als Berichterstatter oder Ausschußvorsitzende oder Persönlichkeiten außerhalb des Hauses Einsicht in diese Akten, dann kann dies nur mit Genehmigung des Präsidenten und des betreffenden Mitgliedes des Bundestages geschehen. Akten des Bundestages, die ein Mitglied des Bundestages persönlich betreffen, kann es jederzeit einsehen.</p> <p>(2) Zum Gebrauch außerhalb des Bundeshauses werden Akten nur an die Vorsitzenden oder Berichterstatter der Ausschüsse für ihre Arbeiten abgegeben.</p> <p>(3) Ausnahmen kann der Präsident genehmigen.</p> <p>(4) Für Verschlusssachen gelten die Bestimmungen der Geheimschutz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17).</p>	<p>제16조 문서의 열람과 교부</p> <p>(1) 연방의회 의원은 연방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모든 문서를 열람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연방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또는 보고자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 연방의회가 의원에 관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적인 문서와 회계에 관한 열람은 연방의회의 관련 의원에게만 가능하다. 연방의회의 다른 의원이 보고자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는 원외의 개인용도로 이 문서의 열람을 원할 때는 연방의회의 의장과 관련 의원의 승인에 의해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연방의회 의원이 개인적으로 접할 수 있는 연방의회의 문서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p> <p>(2) 연방의회 외부에서 사용하려는 문서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보고자에게만 그들의 업무를 위해 제공된다.</p> <p>(3) 의장은 예외를 허가할 수 있다.</p> <p>(4) 독일 연방의회의 비밀 유지규칙의 규정은 비밀 자료에 대하여 유효하다.(제17조)</p>
<p>§ 17 Geheimschutzordnung</p> <p>Der Bundestag beschließt eine Geheimschutzordnung, die Bestandteil dieser Geschäftsordnung ist (Anlage 3). Sie regelt die Behandlung aller Angelegenheiten, die durch besondere Sicherungsmaßnahmen gegen die Kenntnisnahme durch Unbefugte geschützt werden müssen.</p>	<p>제17조 비밀 유지 규칙</p> <p>연방의회는 이 의사규칙의 일부인 비밀유지 규칙(부록 3)을 의결한다. 비밀유지규칙은 무자격자에 의한 인지에 대응하여 특별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모든 업무처리를 규율한다.</p>

<p>§ 18 Verhaltensregeln</p> <p>Die vom Bundestag gemäß § 44b des Gesetzes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Abgeordnetengesetz) zu beschließenden Verhaltensregeln sind Bestandteil dieser Geschäftsordnung (Anlage 1).</p>	<p>제18조 행위 규율</p> <p>독일 연방의회 의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연방의회 의원법)의 제44b 조에 근거하여 연방의회에 의하여 결의된 행위규율은 이 의사규칙의 구성 요소이다.(부칙 1)</p>
<p>VI. Tagesordnung, Einberufung, Leitung der Sitzung und Ordnungsmaßnahmen</p>	<p>VI. 의사 일정, 소집, 회의의 사회 및 질서 유지</p>
<p>§ 19 Sitzungen</p> <p>Die Sitzungen des Bundestages sind öffentlich. Die Öffentlichkeit kann nach Artikel 42 Abs. 1 des Grundgesetzes ausgeschlossen werden.</p>	<p>제19조 회의</p> <p>연방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공개는 기본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서 제외될 수 있다.</p>
<p>§ 20 Tagesordnung</p> <p>(1) Termin und Tagesordnung jeder Sitzung des Bundestages werden im Ältestenrat vereinbart, es sei denn, daß der Bundestag vorher darüber beschließt oder der Präsident sie nach § 21 Abs. 1 selbständig festsetzt.</p> <p>(2) Die Tagesordnung wird den Mitgliedern des Bundestages, dem Bundesrat und der Bundesregierung mitgeteilt. Sie gilt, wenn kein Widerspruch erfolgt, mit Aufruf des Punktes 1 als festgestellt. Nach Eröffnung jeder Plenarsitzung kann vor Eintritt in die jeweilige Tagesordnung jedes Mitglied des Bundestages eine Änderung der Tagesordnung beantragen, wenn es diesen Antrag bis spätestens 18 Uhr des Vortages dem Präsidenten vorgelegt hat.</p> <p>(3) Nach Feststellung der Tagesordnung dürfen andere Verhandlungsgegenstände nur beraten werden, wenn nicht von einer Fraktion oder von anwesenden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widersprochen wird oder diese Geschäftsordnung die Beratung außerhalb der Tagesordnung zuläßt. Der Bundestag kann jederzeit einen Verhandlungsgegenstand von der Tagesordnung absetzen, soweit diese Geschäftsordnung nichts anderes bestimmt.</p> <p>(4) Vorlagen von Mitgliedern des Bundestages müssen auf Verlangen der Antragsteller auf die Tagesordnung der nächsten Sitzung gesetzt und beraten werden, wenn seit der Verteilung der Drucksache (§ 123) mindestens drei Wochen vergangen sind.</p> <p>(5) Ist eine Sitzung wegen Beschlußunfähigkeit aufgehoben worden, kann der Präsident für denselben Tag einmal eine weitere Sitzung mit derselben Tagesordnung einberufen. Innerhalb dieser Tagesordnung kann er den Zeitpunkt für die Wiederholung der erfolglosen Abstimmung oder Wahl festlegen oder sie von der Tagesordnung absetzen, es sei denn, daß von einer Fraktion oder von anwesenden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widersprochen wird.</p>	<p>제20조 의사 일정</p> <p>(1) 연방의회 회의의 기간과 의사 일정은 연방의회가 사전에 그에 관해 결의하지 않거나 의장이 제21조 제1항에 따라서 이를 독자적으로 확정하지 않으면 원로회에서 협의하도록 한다.</p> <p>(2) 의사 일정(Tagesordnung)은 연방의회 의원, 연방참사원 및 연방정부에 통보된다. 의사 일정은 반대가 없을 때 의사 일정의 제1항을 호명하여 확정된 것으로 한다. 각 총회의 개원 후에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연방의회 의원이 개원 전일 늦어도 18시까지 의장에게 동의안을 제출하였을 때 의사 일정의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p> <p>(3) 의사 일정을 확정된 후에 1개의 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 출석의원 5%가 반대하지 않거나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이 의사 일정 외의 심의를 허용할 때만, 다른 안건이 심의될 수 있다. 연방의회는 이 의사규칙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언제나 안건을 의사 일정으로부터 삭제할 수 있다.</p> <p>(4) 연방의회 의원의 제안은 인쇄물의 부기 후(제123조) 적어도 6회의 주간에 경과되었을 때 제안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회의의 의사 일정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p> <p>(5) 회의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휴회되었을 때 의장은 동일한 의사 일정으로 바로 당일 다시 한 번 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의장은 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 출석의원 5%가 반대하지 않으면 이 의사 일정 내에서 성과 없는 표결 또는 선거의 재실시를 위한 시간을 확정하거나 또는 의사 일정으로부터 이를 삭제할 수 있다.</p>
<p>§ 21 Einberufung durch den Präsidenten</p> <p>(1) Selbständig setzt der Präsident Termin und Tagesordnung fest, wenn der Bundestag ihn dazu ermächtigt oder aus einem anderen Grunde als dem der Beschlußunfähigkeit nicht entscheiden kann.</p> <p>(2) Der Präsident ist zur Einberufung des Bundestages verpflichtet, wenn ein Drittel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der Bundespräsident oder der Bundeskanzler es verlangen (Artikel 39 Abs. 3 des Grundgesetzes).</p>	<p>제21조 의장에 의한 소집</p> <p>(1) 연방의회가 의장에게 회기와 의사 일정에 관하여 권한을 부여하였거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다른 이유가 있을 때 의장은 이를 독자적으로 확정한다.</p> <p>(2) 의장은 연방의회 의원의 3분의 1, 연방대통령 또는 연방수상이 요구하였을 때(기본법 제39조 제3항) 연방의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p>

<p>(3) Hat der Präsident in anderen Fällen selbständig eine Sitzung anberaumt oder Nachträge zur Tagesordnung festgesetzt, so muß er bei Beginn der Sitzung die Genehmigung des Bundestages einholen.</p>	<p>(3) 의장이 다른 경우에 독자적으로 의회를 소집하거나 추가적으로 의사 일정을 확정하였을 때 의장은 회의 시작 때 연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 22 Leitung der Sitzungen</p> <p>Der Präsident eröffnet, leitet und schließt die Sitzungen. Vor Schluß der Sitzung gibt der Präsident nach den Vereinbarungen im Ältestenrat oder nach Beschluß des Bundestages den Termin der nächsten Sitzung bekannt.</p>	<p>제22조 회의의 사회</p> <p>의장은 회의를 개최, 사회 및 폐회한다. 의장은 회의의 종료 이전에 원로회와 협의한 후 또는 연방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다음 회의의 기간을 공지한다.</p>
<p>§ 23 Eröffnung der Aussprache</p> <p>Der Präsident hat über jeden Verhandlungsgegenstand, der auf der Tagesordnung steht, die Aussprache zu eröffnen, wenn sie nicht unzulässig oder an besondere Bedingungen geknüpft ist.</p>	<p>제23조 토의의 시작</p> <p>의장은 토의(Aussprache)가 허용되지 않거나 특별한 조건과 연결된 경우에 의사 일정에 기재된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토의하도록 하여야 한다.</p>
<p>§ 24 Verbindung der Beratung</p> <p>Die gemeinsame Beratung gleichartiger oder im Sachzusammenhang stehender Verhandlungsgegenstände kann jederzeit beschlossen werden.</p>	<p>제24조 심의의 병합</p> <p>동일한 종류 또는 의제가 연관된 안건에 대한 공동 심의는 언제나 의결될 수 있다.</p>
<p>§ 25 Vertagung der Beratung oder Schluß der Aussprache</p> <p>(1) Ist die Rednerliste erschöpft oder meldet sich niemand zum Wort, so erklärt der Präsident die Aussprache für geschlossen.</p> <p>(2) Der Bundestag kann auf Antrag einer Fraktion oder von anwesenden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die Beratung vertagen oder die Aussprache schließen. Der Antrag auf Schluß der Aussprache geht bei der Abstimmung dem Antrag auf Vertagung vor. Ein Antrag auf Schluß der Aussprache darf erst zur Abstimmung gestellt werden, wenn jede Fraktion mindestens einmal zu Wort gekommen ist.</p>	<p>제25조 심의의 연기 또는 토의의 종결</p> <p>(1) 발언자 명단을 남김없이 이용하였거나 발언을 아무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의장은 토의의 종료를 선언한다.</p> <p>(2) 연방의회는 한 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 출석의원 5%의 제안에 따라 심의를 연기하거나 토의를 종료할 수 있다. 표결의 경우 토의 종료에 관한 제안이 연기에 관한 제안보다 우선한다. 모든 교섭단체가 한 번 발언하였을 때 토의 종료에 관한 제안을 하고 표결에 붙여도 된다.</p>
<p>§ 26 Vertagung der Sitzung</p> <p>Die Sitzung kann nur vertagt werden, wenn es der Bundestag auf Vorschlag des Präsidenten oder auf Antrag einer Fraktion oder von anwesenden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beschließt.</p>	<p>제26조 회의의 연기</p> <p>의장의 제의 또는 교섭단체 혹은 연방의회 출석의원 5%의 제안에 따라 연방의회가 회의의 연기를 의결하였을 때만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p>
<p>§ 27 Worterteilung und Wortmeldung</p> <p>(1) Ein Mitglied des Bundestages darf nur sprechen, wenn ihm der Präsident das Wort erteilt hat. Will der Präsident selbst sich als Redner an der Aussprache beteiligen, so hat er während dieser Zeit den Vorsitz abzugeben. Mitglieder des Bundestages, die zur Sache sprechen wollen, haben sich in der Regel bei dem Schriftführer, der die Rednerliste führt, zum Wort zu melden. Zur Geschäftsordnung und zur Abgabe von Erklärungen können Wortmeldungen durch Zuruf erfolgen.</p> <p>(2) Für Zwischenfragen an den Redner und für Zwischenbemerkungen in der Aussprache über einen Verhandlungsgegenstand melden sich die Mitglieder des Bundestages über die Saalmikrofone zum Wort. Zwischenfragen und Zwischenbemerkungen, die kurz und präzise sein müssen, dürfen erst gestellt werden, wenn der Redner sie auf eine entsprechende Frage des Präsidenten zuläßt. Im Anschluß an einen Debattenbeitrag kann der Präsident das Wort zu einer Zwischenbemerkung von höchstens drei Minuten erteilen; der Redner darf hierauf noch einmal antworten.</p>	<p>제27조 발언 허용과 발언 신청</p> <p>(1) 연방의회 의원은 의장이 발언을 허용하였을 때만 발언할 수 있다. 의장 자신이 발언자로서 토의에 참여하고자 원할 때는 이 기간 동안에는 의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기를 원하는 연방의회 의원은 규정상 발언자 명부를 작성하여 서기에게 발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의사원칙과 성명 발표를 위해서는 구두로 발언을 신청할 수 있다.</p> <p>(2) 안건에 관한 토의에서 발언자에 대한 중간 질문과 중간 논평을 하기 위해서는 연방의회 의원이 실내 마이크를 사용하여 발언을 신청한다. 발언자가 의장의 해당 질문에 대하여 중간 질문과 중간 논평을 허용하였을 경우에 간결하고 정확하여야 하는 중간 질문과 중간 논평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된다. 토론과 관련하여 의장은 중간 논평에 대한 발언을 최고 3분간 허용할 수 있으며, 발언자는 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대답하게 된다.</p>

<p>§ 28 Reihenfolge der Redner</p> <p>(1) Der Präsident bestimmt die Reihenfolge der Redner. Dabei soll ihn die Sorge für sachgemäße Erledigung und zweckmäßige Gestaltung der Beratung, die Rücksicht auf die verschiedenen Parteirichtungen, auf Rede und Gegenrede und auf die Stärke der Fraktionen leiten; insbesondere soll nach der Rede eines Mitgliedes oder Beauftragten der Bundesregierung eine abweichende Meinung zu Wort kommen.</p> <p>(2) Der erste Redner in der Aussprache zu Vorlagen von Mitgliedern des Bundestages soll nicht der Fraktion des Antragstellers angehören. Antragsteller und Berichterstatter können vor Beginn und nach Schluß der Aussprache das Wort verlangen. Der Berichterstatter hat das Recht, jederzeit das Wort zu ergreifen.</p>	<p>제28조 발언자의 순서</p> <p>(1) 의장은 발언자의 순서를 결정한다. 이 때 의장은 심의의 적절한 처리와 합리적 구성을 위한 배려, 다양한 정당 노선, 주장과 반론, 교섭단체의 인원수를 고려하여 심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의원 또는 연방정부 위임자의 발언 후에는 상이한 견해가 발언되도록 하여야 한다.</p> <p>(2) 연방의회 의원의 제안에 대한 토의에서 최초 발언자는 제안자의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제안자와 보고자는 토의의 시작 이전과 종료 후에 발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보고자는 항상 발언을 파악하는 권리를 갖는다.</p>
<p>§ 29 Zur Geschäftsordnung</p> <p>(1) Zu einem Geschäftsordnungsantrag erteilt der Präsident vorrangig das Wort. Der Antrag muß sich auf den zur Beratung stehenden Verhandlungsgegenstand oder auf die Tagesordnung beziehen.</p> <p>(2) Der Präsident kann die Worterteilung bei Geschäftsordnungsanträgen, denen entsprochen werden muß (Verlangen), auf den Antragsteller, bei anderen Anträgen auf einen Sprecher jeder Fraktion beschränken.</p> <p>(3) Meldet sich ein Mitglied des Bundestages zur Geschäftsordnung zum Wort, ohne zu einem Geschäftsordnungsantrag sprechen oder einen solchen stellen zu wollen, so erteilt der Präsident das Wort nach seinem Ermessen.</p> <p>(4) Zur Geschäftsordnung darf der einzelne Redner nicht länger als fünf Minuten sprechen.</p>	<p>제29조 의사규칙에 관하여</p> <p>(1) 의장은 의사규칙 제안에 대하여 우선 발언권을 허용한다. 제안은 심의하려는 토의 대상 또는 의사 일정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p> <p>(2) 의장은 의사규칙 제안의 경우에 일치(요청)하여야 하는 제안자에게, 그리고 다른 제안의 경우에 모든 교섭단체의 발언자에게 발언권을 한정할 수 있다.</p> <p>(3) 연방의회 의원이 의사규칙 제안에 관하여 발언하지 않거나 의사규칙을 제안하려고 원하지 않으면서 의사규칙에 대한 발언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의장은 그의 재량에 따라 발언을 허용한다.</p> <p>(4) 의사 규칙에 대하여 개별 발언자는 5분 이상 발언하지 않아야 한다.</p>
<p>§ 30 Erklärung zur Aussprache</p> <p>Zu einer Erklärung zur Aussprache wird das Wort nach Schluß, Unterbrechung oder Vertagung der Aussprache erteilt. Vorrangig kann der Präsident das Wort zur direkten Erwiderung erteilen. Der Anlaß ist ihm bei der Wortmeldung mitzuteilen. Mit einer Erklärung zur Aussprache dürfen nur Äußerungen, die sich in der Aussprache auf die eigene Person bezogen haben, zurückgewiesen oder eigene Ausführungen richtiggestellt werden; sie darf nicht länger als fünf Minuten dauern.</p>	<p>제30조 토의에 관한 해명</p> <p>토의에 관한 해명으로 토의 종료, 중단 또는 연기 후의 발언이 허용된다. 의장은 직접적 응답을 위한 발언을 우선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발언 신청시에 동기는 의장에게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토의에 관한 해명을 통하여 토의에서 자신과 연관된 입장 표명만을 반박하거나 자신의 설명이 정정되도록 하며, 발언자는 5분 이상 발언하지 않아야 한다.</p>
<p>§ 31 Erklärung zur Abstimmung</p> <p>(1) Nach Schluß der Aussprache kann jedes Mitglied des Bundestages zur abschließenden Abstimmung eine mündliche Erklärung, die nicht länger als fünf Minuten dauern darf, oder eine kurze schriftliche Erklärung abgeben, die in das Plenarprotokoll aufzunehmen ist. Der Präsident erteilt das Wort zu einer Erklärung in der Regel vor der Abstimmung.</p> <p>(2) Jedes Mitglied des Bundestages kann vor der Abstimmung erklären, daß es nicht an der Abstimmung teilnehme.</p>	<p>제31조 표결에 관한 해명</p> <p>(1) 토의의 종료 후에 모든 연방의회 의원은 종결 표결에 관하여 5분 이내의 구두 해명 또는 회의록에 기재되는 간결한 서면 해명을 제시할 수 있다. 의장은 규정에 의하여 표결 이전에 해명에 관한 발언을 허용한다.</p> <p>(2) 모든 연방의회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결 이전에 해명할 수 있다.</p>
<p>§ 32 Erklärung außerhalb der Tagesordnung</p> <p>Zu einer tatsächlichen oder persönlichen Erklärung außerhalb der Tagesordnung kann der Präsident das Wort vor Eintritt in die Tagesordnung, nach Schluß, Unterbrechung oder Vertagung einer Aussprache erteilen. Der Anlaß ist ihm bei der Wortmeldung mitzuteilen. Die Erklärung darf nicht länger als fünf Minuten dauern.</p>	<p>제32조 의사 일정 이외의 해명</p> <p>의장은 토의의 종결, 중단 또는 연기 후에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의사 일정 이외의 사실적 또는 개인적인 해명을 위한 발언을 허용할 수 있다. 발언 신청시에 동기는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명은 5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p>

<p>§ 33 Die Rede</p> <p>Die Redner sprechen grundsätzlich in freiem Vortrag. Sie können hierbei Aufzeichnungen benutzen.</p>	<p>제33조 발언</p> <p>발언자(Redner)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발언한다. 이 때 발언자는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다.</p>
<p>§ 34 Platz des Redners</p> <p>Die Redner sprechen von den dafür bestimmten Saalmikrofonen oder vom Rednerpult aus.</p>	<p>제34조 발언자의 위치</p> <p>발언자는 지정된 실내 마이크 또는 발언 연단에서 발언한다.</p>
<p>§ 35 Rededauer</p> <p>(1) Gestaltung und Dauer der Aussprache über einen Verhandlungsgegenstand werden auf Vorschlag des Ältestenrates vom Bundestag festgelegt. Kommt es im Ältestenrat nicht zu einer Vereinbarung gemäß Satz 1 oder beschließt der Bundestag nichts anderes, darf der einzelne Redner in der Aussprache nicht länger als 15 Minuten sprechen. Auf Verlangen einer Fraktion kann einer ihrer Redner eine Redezeit bis zu 45 Minuten in Anspruch nehmen. Der Präsident kann diese Redezeiten verlängern, wenn der Verhandlungsgegenstand oder der Verlauf der Aussprache dies nahelegt.</p> <p>(2) Spricht ein Mitglied der Bundesregierung, des Bundesrates oder einer ihrer Beauftragten länger als 20 Minuten, kann die Fraktion, die eine abweichende Meinung vortragen lassen will, für einen ihrer Redner eine entsprechende Redezeit verlangen.</p> <p>(3) Überschreitet ein Mitglied des Bundestages seine Redezeit, so soll ihm der Präsident nach einmaliger Mahnung das Wort entziehen.</p>	<p>제35조 발언 시간</p> <p>(1) 안건에 관한 토의의 구성과 시간은 연방의회 원로회의 제안으로 확정된다. 원로회에서 제1문에 따른 합의를 얻지 못하거나 연방의회가 다른 아무것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 개별 발언자는 토의에서 15분 이상 발언하지 않아야 한다. 교섭단체의 요청에 따라서 발언자는 토의에서 45분까지 발언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안건 또는 토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 이를 연장할 수 있다.</p> <p>(2) 연방정부 위원, 연방의회 의원 또는 그들의 대표자가 20분 이상 발언하는 경우에 다른 견해를 표명하려는 교섭단체는 그의 발언자에게 상응하는 발언 시간을 요청할 수 있다.</p> <p>(3) 연방의회 의원의 발언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의장은 그에게 1회 경고 후 발언을 중지시켜야 한다.</p>
<p>§ 36 Sach- und Ordnungsruf, Wortentziehung</p> <p>(1) Der Präsident kann den Redner, der vom Verhandlungsgegenstand abschweift, zur Sache verweisen. Er kann Mitglieder des Bundestages, wenn sie die Ordnung oder die Würde des Bundestages verletzen, mit Nennung des Namens zur Ordnung rufen. Der Ordnungsruf und der Anlass hierzu dürfen von den nachfolgenden Rednern nicht behandelt werden.</p> <p>(2) Ist ein Redner während einer Rede dreimal zur Sache oder dreimal zur Ordnung gerufen und beim zweiten Male auf die Folgen eines dritten Rufes zur Sache oder zur Ordnung hingewiesen worden, so muss ihm der Präsident das Wort entziehen und darf es ihm in derselben Aussprache zum selben Verhandlungsgegenstand nicht wieder erteilen.</p>	<p>제36조 의제 복귀 및 질서유지 경고, 발언 중지</p> <p>(1) 의장은 안건으로부터 이탈하는 발언자에게 의제로 복귀하도록 시할 수 있다. 의장은 연방의회 의원이 연방의회의 질서 또는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 질서 유지를 위하여 연방의회 의원의 이름을 호명할 수 있다. 질서유지 경고와 그에 관한 경고를 다음 발언자가 실행해서는 안 된다.</p> <p>(2) 발언자가 발언하는 동안에 의제에 대하여 3회 또는 질서 유지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경고를 받고 3회 경고에 이어서 2회 의제 복귀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해 지적을 받은 경우에 의장은 그에게 발언을 중지시켜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발언권을 다시는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p>
<p>§ 37 Ordnungsgeld</p> <p>Wegen einer nicht nur geringfügigen Verletzung der Ordnung oder der Würde des Bundestages kann der Präsident gegen ein Mitglied des Bundestages, auch ohne dass ein Ordnungsruf ergangen ist, ein Ordnungsgeld in Höhe von 1 000 Euro festsetzen. Im Wiederholungsfall erhöht sich das Ordnungsgeld auf 2 000 Euro. § 38 Absatz 2 gilt entsprechend.</p>	<p>제37조 벌금</p> <p>의장은 연방의회 의원이 연방의회의 질서 또는 품위를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에 규칙 엄수 경고 없이도 1,000유로화의 벌금을 확정할 수 있다. 재발의 경우에는 벌금을 2,000유로화로 높게 된다. 이에 제38조 제2항이 적용된다.</p>
<p>§ 38 Ausschluss von Mitgliedern des Bundestages</p> <p>(1) Wegen gröblicher Verletzung der Ordnung oder der Würde des Bundestages kann der Präsident ein Mitglied des Bundestages, auch ohne dass ein Ordnungsruf ergangen oder ein Ordnungsgeld festgesetzt worden ist, für die Dauer der Sitzung aus dem Saal verweisen. Bis zum Schluss der Sitzung muss der Präsident bekanntgeben, für wie viele Sitzungstage das betroffene Mitglied ausgeschlossen wird. Ein Mitglied des Bundestages kann bis zu dreißig Sitzungstage ausgeschlossen werden.</p>	<p>제38조 연방의회 의원의 출석 정지</p> <p>(1) 연방의회의 질서 또는 품위를 중대하게 침해한 이유로 의장은 연방의회 의원을 질서유지 경고 또는 벌금 확정 없이도 회의 기간중에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의장은 해당 의원을 회의 종료시까지 며칠간의 회의일 동안 출석 정지시키는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연방의회 의원은 30일의 회의일까지 출석 정지시킬 수 있다.</p>

<p>(2) Ein Sitzungsausschluss kann auch nachträglich, spätestens in der auf die gröbliche Verletzung der Ordnung oder der Würde des Bundestages folgenden Sitzung, ausgesprochen werden, wenn der Präsident während der Sitzung eine Verletzung der Ordnung oder der Würde des Bundestages ausdrücklich feststellt und sich einen nachträglichen Sitzungsausschluss vorbehält. Absatz 1 Satz 2 und 3 gilt entsprechend. Ein bereits erteilter Ordnungsruf schließt einen nachträglichen Sitzungsausschluss nicht aus.</p> <p>(3) Das betroffene Mitglied hat den Sitzungssaal unverzüglich zu verlassen. Kommt es der Aufforderung nicht nach, wird es vom Präsidenten darauf hingewiesen, dass es sich durch sein Verhalten eine Verlängerung des Ausschlusses zuzieht.</p> <p>(4) Das betroffene Mitglied darf während der Dauer seines Ausschlusses auch nicht an Ausschusssitzungen teilnehmen.</p> <p>(5) Versucht das betroffene Mitglied, widerrechtlich an den Sitzungen des Bundestages oder seiner Ausschüsse teilzunehmen, findet Absatz 3 Satz 2 entsprechend Anwendung.</p> <p>(6) Das betroffene Mitglied gilt als nicht beurlaubt. Es darf sich nicht in die Anwesenheitsliste eintragen.</p>	<p>(2) 의장은 회의 기간 동안에 연방의회의 질서 또는 품위의 침해를 명확하게 확정하고 나중에 회의 출석정지를 유보한 경우에는 연방의회의 질서 또는 품위의 중대한 침해로 이어진 회의에 대하여 추후에도 회의 출석정지를 표명할 수 있다. 제1항 제2문과 제3문이 준용된다. 이미 허용된 질서유지 경고는 추후 회의 출석정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p> <p>(3) 당해 의원은 지체 없이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그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당해 의원은 그의 태도에 의하여 출석정지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의장으로부터 통보받게 된다.</p> <p>(4) 당해 의원은 출석 정지 기간에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p> <p>(5) 당해 의원이 연방의회 또는 위원회 회의에 위법적으로 출석하려고 시도할 때 제3항 제2문이 준용된다.</p> <p>(6) 당해 의원은 휴가 처리가 되지 않는다. 당해 의원은 출석부에 기록되지 않아야 한다.</p>
<p>§ 39 Einspruch gegen Ordnungsmaßnahmen</p> <p>Gegen den Ordnungsruf (§ 36), das Ordnungsgeld (§ 37) und den Sitzungsausschluss (§ 38) kann das betroffene Mitglied des Bundestages bis zum nächsten Plenarsitzungstag schriftlich begründeten Einspruch einlegen. Der Einspruch ist auf die Tagesordnung dieser Sitzung zu setzen. Der Bundestag entscheidet ohne Aussprache. Der Einspruch hat keine aufschiebende Wirkung.</p>	<p>제39조 질서유지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p> <p>질서 유지 경고(제36조), 벌금(제37조) 및 회의 출석정지(제38조)에 대하여 당해 연방의회 의원은 다음 총회일까지 서면으로 이유를 명시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이 회의의 의사 일정에 기재하여야 한다. 연방의회는 토의 없이 의결한다. 이의 제기는 유예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p>
<p>§ 40 Unterbrechung der Sitzung</p> <p>Wenn im Bundestag störende Unruhe entsteht, die den Fortgang der Verhandlungen in Frage stellt, kann der Präsident die Sitzung auf bestimmte Zeit unterbrechen oder aufheben. Kann er sich kein Gehör verschaffen, so verläßt er den Präsidentenstuhl; die Sitzung wird dadurch unterbrochen. Zur Fortsetzung der Sitzung beruft der Präsident ein.</p>	<p>제40조 회의의 중지</p> <p>연방의회에서 의사 진행에서 문제가 되는 심한 소란이 발생하였을 때 의장은 회의를 일정 기간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할 수 있다. 의장은 경청할 분위기를 만들 수 없을 경우에 의장석을 떠나게 되며, 이로 인하여 회의는 중지된다. 의장은 회의를 계속하기 위하여 소집한다.</p>
<p>§ 41 Weitere Ordnungsmaßnahmen</p> <p>(1) Sitzungsteilnehmer, die nicht Mitglieder des Bundestages sind, und Zuhörer unterstehen der Ordnungsgewalt des Präsidenten.</p> <p>(2) Wer auf den Tribünen Beifall oder Mißbilligung äußert oder Ordnung und Anstand verletzt, kann auf Anordnung des Präsidenten sofort entfernt werden. Der Präsident kann die Tribüne wegen störender Unruhe räumen lassen.</p>	<p>제41조 기타 질서유지 조치</p> <p>(1) 연방의회 의원이 아닌 회의 참석자와 방청인은 의장의 질서유지권에 복종한다.</p> <p>(2) 방청석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질서와 품위를 침해하는 자는 의장의 명령으로 즉시 퇴장시킬 수 있다. 의장은 심한 혼란을 이유로 방청석(Tribüne)을 정리하게 할 수 있다.</p>
<p>§ 42 Herbeirufung eines Mitgliedes der Bundesregierung</p> <p>Der Bundestag kann auf Antrag einer Fraktion oder von anwesenden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die Herbeirufung eines Mitgliedes der Bundesregierung beschließen.</p>	<p>제42조 연방정부 구성원의 출석</p> <p>연방의회는 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 출석의원 5%의 제안에 따라서 연방정부 구성원의 출석을 의결할 있다.</p>
<p>§ 43 Recht auf jederzeitiges Gehör</p> <p>Die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und des Bundesrates sowie ihre Beauftragten müssen nach Artikel 43 Abs. 2 des Grundgesetzes auf ihr Verlangen jederzeit gehört werden.</p>	<p>제43조 자유 청문권</p> <p>연방정부 구성원, 연방참사원 및 그들의 위임자는 기본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서 의원의 요구에 대하여 언제나 청문하여야 한다.</p>

<p>§ 44 Wiedereröffnung der Aussprache</p> <p>(1) Ergreift nach Schluß der Aussprache oder nach Ablauf der beschlossenen Redezeit ein Mitglied der Bundesregierung, des Bundesrates oder einer ihrer Beauftragten zu dem Verhandlungsgegenstand das Wort, so ist die Aussprache wieder eröffnet.</p> <p>(2) Erhält während der Aussprache ein Mitglied der Bundesregierung, des Bundesrates oder einer ihrer Beauftragten zu dem Verhandlungsgegenstand das Wort, so haben die Fraktionen, deren Redezeit zu diesem Tagesordnungspunkt bereits ausgeschöpft ist, das Recht, noch einmal ein Viertel ihrer Redezeit in Anspruch zu nehmen.</p> <p>(3) Ergreift ein Mitglied der Bundesregierung, des Bundesrates oder einer ihrer Beauftragten das Wort außerhalb der Tagesordnung, so wird auf Verlangen einer Fraktion oder von anwesenden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die Aussprache über seine Ausführungen eröffnet. In dieser Aussprache dürfen keine Sachträte gestellt werden.</p>	<p>제44조 토의의 재개</p> <p>(1) 토의의 종료 후 또는 결의된 발언 시간이 경과한 후 연방정부 구성원, 연방참사원 및 그들의 위임자의 한명이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였을 경우에 토의는 재개된다.</p> <p>(2) 토의 진행 중에 연방정부 구성원, 연방참사원 및 그들의 위임자의 한명이 안건에 대하여 발언권을 가질 경우에 의사 일정 조건에 대하여 이미 발언 시간이 종료된 교섭단체는 그의 발언 시간의 4분의 1을 한 번 더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p> <p>(3) 연방정부 구성원, 연방참사원 및 그들의 위임자가 의사 일정 이외에 대하여 발언할 경우에 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 출석의원 5%의 요구에 따라 그의 발언에 대한 토의는 개시된다. 이 토의에서 의제 제안은 제출되지 않아야 한다.</p>
<p>§ 45 Feststellung der Beschlußfähigkeit Folgen der Beschlußunfähigkeit</p> <p>(1) Der Bundestag ist beschlußfähig, wenn mehr als die Hälfte seiner Mitglieder im Sitzungssaal anwesend ist.</p> <p>(2) Wird vor Beginn einer Abstimmung die Beschlußfähigkeit von einer Fraktion oder von anwesenden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bezweifelt und auch vom Sitzungsvorstand nicht einmütig bejaht oder wird die Beschlußfähigkeit vom Sitzungsvorstand im Einvernehmen mit den Fraktionen bezweifelt, so ist in Verbindung mit der Abstimmung die Beschlußfähigkeit durch Zählung der Stimmen nach § 51, im Laufe einer Kernzeit-Debatte im Verfahren nach § 52 festzustellen. Der Präsident kann die Abstimmung auf kurze Zeit aussetzen.</p> <p>(3) Nach Feststellung der Beschlußunfähigkeit hebt der Präsident die Sitzung sofort auf. § 20 Abs. 5 findet Anwendung. Ein Verlangen auf namentliche Abstimmung bleibt dabei in Kraft. Stimmenthaltungen und ungütige Stimmen zählen bei der Feststellung der Beschlußfähigkeit mit.</p> <p>(4) Unabhängig von dem Verfahren nach den Absätzen 1 bis 3 kann der Präsident bei Kernzeit-Debatten im Einvernehmen mit den Fraktionen die Sitzung unterbrechen, wenn der Sitzungsvorstand bezweifelt, daß 25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anwesend sind. Die Feststellung der Anwesenheit erfolgt im Verfahren nach § 52.</p>	<p>제45조 의결정족수 확인, 의결정족수 부족 결과</p> <p>(1) 연방의회는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 의결정족수가 채워진다.</p> <p>(2) 의결 이전에 의결정족수가 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 출석의원 5%에 의하여 의심을 받거나 의회 간부회(Sitzungsvorstand)에 의해 만장일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표결과 연관된 의결정족수는 제52조에 따른 논쟁(Kernzeit-Debatte) 후에 제51조에 따른 투표수로 확인하여야 한다. 의장은 단시간 동안 표결을 연장할 수 있다.</p> <p>(3) 의결 정족수 부족이 확인된 후에는 의장이 즉시 회의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제5항을 준용한다. 호명 표결(namentliche Abstimmung)에 대한 요청은 이 때 유효하다. 기권과 무효표는 의결정족수를 확인할 때 함께 계산한다.</p> <p>(4)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절차에 관계없이 의회 간부회가 연방 의회 의원의 25%가 출석한 것에 대하여 문제 삼는 경우에 논쟁(Kernzeit-Debatte)이 일어나며 의장은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회의를 중단할 수 있다. 출석의 확인은 제52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p>
<p>§ 46 Fragestellung</p> <p>Der Präsident stellt die Fragen so, daß sie sich mit "Ja" oder "Nein" beantworten lassen. Sie sind in der Regel so zu fassen, daß gefragt wird, ob die Zustimmung erteilt wird oder nicht. Über die Fassung kann das Wort zur Geschäftsordnung verlangt werden. Bei Widerspruch gegen die vorgeschlagene Fassung entscheidet der Bundestag.</p>	<p>제46조 문제의 제기</p> <p>의장은 "가" 또는 "부"로 대답하도록 문제를 제시한다. 문제는 찬성 또는 반대를 묻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파악을 위해서는 의사규칙을 위한 발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시된 파악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생기는 경우에는 연방의회가 결정한다.</p>

<p>§ 47 Teilung der Frage</p> <p>Jedes Mitglied des Bundestages kann die Teilung der Frage beantragen. Ist die Zulässigkeit der Teilung zweifelhaft, so entscheidet bei Anträgen von Mitgliedern des Bundestages der Antragsteller, sonst der Bundestag. Unmittelbar vor der Abstimmung ist die Frage auf Verlangen vorzulesen.</p>	<p>제47조 문제의 분할</p> <p>연방의회의 모든 의원은 문제의 분할을 제안할 수 있다. 분할의 허용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연방의회 의원이 제안한 경우는 제안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연방의회가 결정한다. 표결 이전에 요청에 따라 직접 낭독하여야 한다.</p>
<p>§ 48 Abstimmungsregeln</p> <p>(1) Abgestimmt wird durch Handzeichen oder durch Aufstehen oder Sitzenbleiben. Bei der Schlußabstimmung über Gesetzentwürfe (§ 86) erfolgt die Abstimmung durch Aufstehen oder Sitzenbleiben.</p> <p>(2) Soweit nicht das Grundgesetz, ein Bundesgesetz oder diese Geschäftsordnung andere Vorschriften enthalten, entscheidet die einfache Mehrheit. Stimmgleichheit verneint die Frage.</p> <p>(3) Wird durch das Grundgesetz, ein Bundesgesetz oder diese Geschäftsordnung für einen Beschluß oder eine Wahl eine bestimmte Mehrheit vorgeschrieben, stellt der Präsident ausdrücklich fest, daß die Zustimmung der erforderlichen Mehrheit vorliegt.</p>	<p>제48조 표결 규칙</p> <p>(1) 표결은举手 또는 기립 또는 착석으로 실시한다. 법률안에 대한 최종 표결의 경우(제86조) 표결은 기립 또는 착석으로 실시한다.</p> <p>(2) 기본법, 연방법률 또는 이 의사규칙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단순 과반수로 결정한다. 득표 동수는 부결로 처리한다.</p> <p>(3) 기본법, 연방법률 또는 이 의사규칙에 의하여 의결 또는 선거에 일정한 다수가 규정된 경우에 의장은 동의에 일정한 다수가 요구되는 것을 명백히 확인한다.</p>
<p>§ 49 Wahlen mit verdeckten Stimmzetteln</p> <p>(1) Soweit in einem Bundesgesetz oder in dieser Geschäftsordnung Wahlen durch den Bundestag mit verdeckten (amtlichen) Stimmzetteln vorgeschrieben sind, findet die Wahl geheim statt. Die Stimmzettel dürfen erst vor Betreten der Wahlzelle (bei Namensaufruf) ausgehändigt werden. Die zur Gewährleistung einer geheimen Wahl aufzustellenden Wahlzellen sind bei der Stimmabgabe zu benutzen. Die gekennzeichneten Stimmzettel sind in einem Wahlumschlag in die dafür vorgesehenen Wahlurnen zu legen.</p> <p>(2) § 56 Abs. 6 Nr. 4 der Bundeswahlordnung gilt entsprechend.</p>	<p>제49조 비밀투표 용지에 의한 선거</p> <p>(1) 연방법률 또는 이 의사규칙에 연방의회의 선거가 비밀(직무상) 투표 용지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었을 때 선거도 비밀로 실시한다. 투표용지는 먼저 기표실에 들어가기 이전에 (호명에 의하여) 교부되어야 한다. 비밀 선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투표실은 투표를 할 때 이용하여야 한다. 표시된 투표용지를 접어서 투표를 위하여 준비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p> <p>(2) 연방선거규칙 제56조 제6항 제4호는 준용된다.</p>
<p>§ 50 Verfahren bei der Auswahl des Sitzes einer Bundesbehörde</p> <p>(1) Ist in einem Gesetzentwurf über den Sitz einer Bundesbehörde zu entscheiden, so erfolgt die Auswahl, wenn mehr als zwei Vorschläge für den Sitz der Behörde gemacht werden, vor der Schlußabstimmung.</p> <p>(2) Der Bundestag wählt mit Namensstimmzetteln, auf die der jeweils gewünschte Ort zu schreiben ist. Gewählt ist der Ort, der die Mehrheit der Stimmen erhält. Ergibt sich keine solche Mehrheit, werden in einem zweiten Wahlgang die beiden Orte zur Wahl gestellt, die im ersten Wahlgang die höchste Stimmenzahl erhalten haben. Gewählt ist dann der Ort, der die Mehrheit der Stimmen erhält.</p> <p>(3) Diese Bestimmung gilt entsprechend, wenn bei der Beratung eines Antrages über den Sitz einer Bundesbehörde zu entscheiden ist.</p> <p>(4) In gleicher Weise ist zu verfahren, wenn es sich um die Bestimmung von Zuständigkeiten und ähnliche Entscheidungen handelt und wenn mehr als zwei voneinander abweichende Anträge gestellt werden.</p>	<p>제50조 연방관청 소재지 선정시의 절차</p> <p>(1) 연방관청 소재지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되어 하는 경우 연방관청 소재지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제안이 제출되었을 때 선정은 최종 표결에서 실시한다.</p> <p>(2) 연방의회는 원하는 장소를 기입하여야 하는 기명 투표지를 사용하여 선정한다. 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장소를 선정한다. 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장소가 없을 경우 1차 표결에서 최고 투표수를 얻은 2개의 장소를 2차 투표에서 표결한다.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장소가 선정된다.</p> <p>(3) 이 규정은 연방관청 소재지에 관한 제안을 심의에서 결정할 때 준용된다.</p> <p>(4) 관할권(Zuständigkeiten)의 확정과 유사한 결정이 문제되었을 때 그리고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제안이 제기되었을 때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p>

<p>§ 51 Zählung der Stimmen</p> <p>(1) Ist der Sitzungsvorstand über das Ergebnis der Abstimmung nicht einig, so wird die Gegenprobe gemacht. Bleibt er auch nach ihr uneinig, so werden die Stimmen gezählt. Auf Anordnung des Sitzungsvorstandes erfolgt die Zählung gemäß Absatz 2.</p> <p>(2) Nachdem die Mitglieder des Bundestages auf Aufforderung des Präsidenten den Sitzungssaal verlassen haben, werden die Türen bis auf drei Abstimmungstüren geschlossen. An jeder dieser Türen stellen sich zwei Schriftführer auf. Auf ein Zeichen des Präsidenten betreten die Mitglieder des Bundestages durch die mit "Ja", "Nein" oder "Enthaltung" bezeichnete Tür wieder den Sitzungssaal und werden von den Schriftführern laut gezählt. Zur Beendigung der Zählung gibt der Präsident ein Zeichen. Mitglieder des Bundestages, die später eintreten, werden nicht mitgezählt. Der Präsident und die diensttuenden Schriftführer geben ihre Stimme öffentlich ab. Der Präsident verkündet das Ergebnis.</p>	<p>제51조 투표의 계산</p> <p>(1) 의회 간부회(의회)가 표결의 결과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을 경우 검사를 실시한다. 그 후에도 역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할 때는 투표수를 세어서 계산한다. 간부회의 명령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투표수를 센다.</p> <p>(2) 연방의회 의원이 의장의 요구에 따라서 회의장에서 퇴장한 후 문은 3개의 투표구를 제외하고 폐쇄된다. 각각의 문에는 2명의 서기가 배치된다. 의장의 신호에 따라서 연방의회 의원은 "가" 또는 "부" 또는 "기권"이라고 표시된 문을 통하여 다시 회의장에 입장하고, 서기는 소리내어 이들 숫자를 센다. 셈이 종료되면 의장은 신호를 한다. 늦게 입장하는 연방의회 의원은 셈에 포함하지 않는다. 의장과 근무 중인 서기는 그 수를 공개적으로 발표한다. 의장은 결과를 공포한다.</p>
<p>§ 52 Namentliche Abstimmung</p> <p>Namentliche Abstimmung kann bis zur Eröffnung der Abstimmung von einer Fraktion oder von anwesenden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verlangt werden. Schriftführer sammeln in Urnen die Abstimmungskarten, die den Namen des Abstimmenden und die Erklärung "Ja" oder "Nein" oder "Enthalte mich" tragen. Nach beendeter Einsammlung erklärt der Präsident die Abstimmung für geschlossen. Die Schriftführer zählen die Stimmen. Der Präsident verkündet das Ergebnis.</p>	<p>제52조 기명 표결</p> <p>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 의원의 출석의원 5%는 표결의 개시까지 기명 표결(Namentliche Abstimmung)을 요구할 수 있다. 서기는 표결자의 성명과 "가", "부" 또는 "기권"을 표시한 표결 카드를 투표함에 모은다. 모음이 종료된 후에 의장은 표결의 종료를 선언한다. 서기는 표를 센다. 의장은 그 결과를 공포한다.</p>
<p>§ 53 Unzulässigkeit der namentlichen Abstimmung</p> <p>Namentliche Abstimmung ist unzulässig über</p> <ol style="list-style-type: none"> Stärke des Ausschusses, Abkürzung der Fristen, Sitzungszeit und Tagesordnung, Vertagung der Sitzung, Vertagung der Beratung oder Schluß der Aussprache, Teilung der Frage, Überweisung an einen Ausschuß. 	<p>제53조 기명 표결의 불응인</p> <p>기명 표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의 구성원수 기간의 단축 회의 기간과 의사 일정 회의의 연기 심의의 연기 또는 토의의 종결 문제의 분리 위원회로의 회부
<p>VII. Ausschüsse</p>	<p>VII. 위원회</p>
<p>§ 54 Ständige Ausschüsse und Sonderausschüsse</p> <p>(1) Zur Vorbereitung der Verhandlungen setzt der Bundestag ständige Ausschüsse ein. Für einzelne Angelegenheiten kann er Sonderausschüsse einsetzen.</p> <p>(2) Soweit das Grundgesetz oder Bundesgesetze die Einsetzung von Ausschüssen vorschreiben oder zulassen, richtet sich die Einsetzung und das Verfahren nach den Bestimmungen dieser Geschäftsordnung, es sei denn, daß im Grundgesetz, in den Bundesgesetzen oder in besonderen Geschäftsordnungen etwas anderes bestimmt ist.</p>	<p>제54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p> <p>(1) 연방의회는 의사의 준비를 위하여 상임위원회(ständige Ausschüsse)를 설치한다. 연방의회는 개별적인 문제를 위하여 특별위원회(Sonderausschüsse)를 설치할 수 있다.</p> <p>(2) 기본법 또는 연방법률이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한, 그 설치와 절차는 기본법, 연방법률 또는 특별의사규칙에서 별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이 의사규칙의 규정에 따른다.</p>
<p>§ 55 Einsetzung von Unterausschüssen</p> <p>(1) Zur Vorbereitung seiner Arbeiten kann jeder Ausschuß aus seiner Mitte Unterausschüsse mit bestimmten Aufträgen einsetzen, es sei denn, daß ein Drittel seiner Mitglieder widerspricht. In Ausnahmefällen können die Fraktionen auch Mitglieder des Bundestages benennen, die nicht dem Ausschuß angehören.</p>	<p>제55조 소위원회의 설치</p> <p>(1) 위원회 업무를 준비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는 위원회 소속의원의 3분의 1이 반대하지 않으면 위원회 중에 일정한 임무가 부여된 소위원회(Unterausschüsse)를 설치할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 교섭단체는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는 연방의회 의원도 지명할 수 있다.</p>

- (2) Bei der Bestimmung des Vorsitzenden des Unterausschusses soll der Ausschuß sich nach dem Stärkeverhältnis der einzelnen Fraktionen richten (§ 12). Wird der Unterausschuß für eine bestimmte Dauer eingesetzt, kann er vorzeitig nur aufgelöst werden, wenn ein Drittel der Mitglieder des Ausschusses nicht widerspricht; im übrigen kann der Ausschuß den Unterausschuß jederzeit auflösen. Der Unterausschuß hat seinen Bericht dem Ausschuß vorzulegen.
- (3) In einem Unterausschuß muß jede Fraktion, die im Ausschuß vertreten ist, auf ihr Verlangen mindestens mit einem Mitglied vertreten sein. Im übrigen sind die Grundsätze des § 12 zu berücksichtigen.
- (4) Ist eine Vorlage mehreren Ausschüssen zur Beratung überwiesen worden oder fällt ein Verhandlungsgegenstand in den Geschäftsbereich mehrerer Ausschüsse, können diese einen gemeinsamen Unterausschuß bilden.
- (2) 소위원회 위원장을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교섭단체의 위원수의 비율을 참조하여야 한다.(제12조) 소위원회가 일정 기간 설치되었을 경우 위원회 소속의원 3분의 1이 반대하지 않을 경우에만 소위원회는 미리 해산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그의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위원회에서 대표하고 있는 모든 교섭단체는 그의 요청에 따라서 적어도 1명의 의원이 소위원회에서 대표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제12조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 (4) 법률안이 여러 위원회에서 심의되도록 위임되었거나 한 안건이 여러 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해당될 경우 공동 소위원회(gemeinsamen Unterausschuß)를 구성할 수 있다.

§ 56 Enquete-Kommission

- (1) Zur Vorbereitung von Entscheidungen über umfangreiche und bedeutsame Sachkomplexe kann der Bundestag eine Enquete-Kommission einsetzen. Auf Antrag eines Viertels seiner Mitglieder ist er dazu verpflichtet. Der Antrag muß den Auftrag der Kommission bezeichnen.
- (2) Die Mitglieder der Kommission werden im Einvernehmen der Fraktionen benannt und vom Präsidenten berufen. Kann ein Einvernehmen nicht hergestellt werden, so benennen die Fraktionen die Mitglieder im Verhältnis ihrer Stärke. Die Mitgliederzahl der Kommission soll, mit Ausnahme der in Absatz 3 genannten Mitglieder der Fraktionen, neun nicht übersteigen.
- (3) Jede Fraktion kann ein Mitglied, auf Beschluß des Bundestages auch mehrere Mitglieder, in die Kommission entsenden.
- (4) Die Enquete-Kommission hat ihren Bericht so rechtzeitig vorzulegen, daß bis zum Ende der Wahlperiode eine Aussprache darüber im Bundestag stattfinden kann. Sofern ein abschließender Bericht nicht erstattet werden kann, ist ein Zwischenbericht vorzulegen, auf dessen Grundlage der Bundestag entscheidet, ob die Enquete-Kommission ihre Arbeit fortsetzen oder einstellen soll.

제56조 조사위원회

- (1) 광범위하고 중요한 복합적 사안에 관한 결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연방의회는 조사위원회(Enquete-Kommission)를 설치할 수 있다. 의원 4분의 1의 제안이 있을 경우 연방의회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제안에는 위원회의 임무를 표시하여야 한다.
- (2) 조사위원회 의원은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지명되며 의장에 의하여 소집된다.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때 교섭단체는 교섭단체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서 의원을 지명한다. 조사위원회의 구성원수는 제3항에 따라 지명된 교섭단체의 의원은 예외로 하고 9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3) 각 교섭단체는 1명의 의원을 그리고 연방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더 많은 의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 (4) 조사위원회는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위원회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완결된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연방의회는 조사위원회가 그 업무의 계속 수행 여부 또는 중단 여부의 원칙을 결정하는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6a Technikfolgenanalysen

- (1) Dem Ausschuß für Forschung, Technologie und Technikfolgenabschätzung obliegt es, Technikfolgenanalysen zu veranlassen und für den Deutschen Bundestag aufzubereiten und auszuwerten. Er kann mit der wissenschaftlichen Durchführung von Technikfolgenanalysen Institutionen außerhalb des Deutschen Bundestages beauftragen.
- (2) Der Ausschuß für Forschung, Technologie und Technikfolgenabschätzung hat Grundsätze über die Erstellung von Technikfolgenanalysen aufzustellen und diese Grundsätze zum Ausgangspunkt seiner Entscheidung im Einzelfall zu machen.

제56a조 기술 결과 분석

- (1) 연구, 기술 및 기술 결과 예측에 관한 위원회에서는 기술 결과 분석을 실시하고 독일 연방의회를 위하여 평가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기술 결과 분석의 과학적 실행을 위하여 독일의회의 외부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2) 연구, 기술 및 기술 결과 예측에 관한 위원회는 기술 결과 분석의 작성에 관한 원칙을 설정하여야 하고 개별적인 결정에 대한 출발점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 57 Mitgliederzahl der Ausschüsse

- (1) Das System für eine dem § 12 entsprechende Zusammensetzung der Ausschüsse und die Zahl der Mitglieder bestimmt der Bundestag. Jedes Mitglied des Bundestages soll grundsätzlich einem Ausschuß angehören.

제57조 위원회의 위원수

- (1) 연방의회는 제12조에 상응하는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재와 위원수를 결정한다. 모든 연방의회 의원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상임위원회에 배정된다.

- (2) Die Fraktionen benennen die Ausschußmitglieder und deren Stellvertreter. Der Präsident benennt fraktionslose Mitglieder des Bundestages als beratende Ausschußmitglieder.
- (3) Der Präsident gibt die erstmalig benannten Mitglieder und die späteren Änderungen dem Bundestag bekannt.
- (4) Zur Unterstützung der Mitglieder kann die Teilnahme eines Fraktionsmitarbeiters jeder Fraktion zu den Ausschußsitzungen zugelassen werden.

- (2) 교섭단체는 위원회 위원과 그 대표자를 지명한다. 의장은 연방의회 교섭단체 없는 의원을 협의 위원으로 지명한다.
- (3) 의장은 처음 지명된 의원과 그 이후의 변동 내용을 연방의회에 통보한다.
- (4) 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교섭단체의 교섭단체 직원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58 Bestimmung des Vorsitzenden und seines Stellvertreters

Die Ausschüsse bestimmen ihre Vorsitzenden und deren Stellvertreter nach den Vereinbarungen im Ältestenrat.

제58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결정

위원회는 원로회(Ältestenrat)와 협의하여 위원회 위원장(Vorsitzenden)과 부위원장(Stellvertreter)을 결정한다.

§ 59 Rechte und Pflichten des Vorsitzenden

- (1) Dem Vorsitzenden obliegt die Vorbereitung, Einberufung und Leitung der Ausschußsitzungen sowie die Durchführung der Ausschußbeschlüsse.
- (2) Der Vorsitzende erteilt das Wort in der Reihenfolge der Wortmeldungen unter Berücksichtigung des Grundsatzes des § 28 Abs. 1 Satz 2.
- (3) Sitzungsteilnehmer, die nicht Mitglieder des Bundestages sind, und Zuhörer unterstehen während der Sitzung der Ordnungsgewalt des Vorsitzenden.
- (4) Ist der ordnungsgemäße Ablauf einer Sitzung nicht mehr gewährleistet, kann der Vorsitzende die Sitzung unterbrechen oder im Einvernehmen mit den Fraktionen im Ausschuß beenden.

제59조 위원장의 권리와 의무

- (1)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준비, 소집 및 사회를 비롯하여 위원회 결의의 이행에 대한 의무가 있다.
- (2) 위원장은 제28조 제1항 제2문의 원칙을 고려하여 발언 신청의 순서에 따라서 발언권을 허용한다.
- (3) 연방의회 의원이 아닌 회의 참석자와 방청인은 회의 중에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에 복종하여야 한다.
- (4) 회의의 질서 있는 진행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중단하거나 위원회에 있는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종결시킬 수 있다.

§ 60 Einberufung der Ausschußsitzungen

- (1) Der Vorsitzende kann im Rahmen der vom Ältestenrat festgelegten Tagungsmöglichkeiten für Ausschüsse (Zeitplan) Ausschußsitzungen selbständig einberufen, es sei denn, daß der Ausschuß im Einzelfall etwas anderes beschließt.
- (2) Der Vorsitzende ist zur Einberufung zum nächstmöglichen Termin innerhalb des Zeitplanes verpflichtet, wenn es eine Fraktion im Ausschuß oder mindestens ein Drittel der Mitglieder des Ausschusses unter Angabe der Tagesordnung verlangt.
- (3) Zur Einberufung einer Sitzung außerhalb des Zeitplanes oder außerhalb des ständigen Sitzungsortes des Bundestages ist der Vorsitzende nur berechtigt, wenn ein entsprechendes Verlangen einer Fraktion oder von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oder ein einstimmiger Beschluß des Ausschusses vorliegt und die Genehmigung des Präsidenten erteilt worden ist.

제60조 위원회 회의의 소집

- (1) 위원장은 위원회가 개별적인 경우에 달리 의결하지 않으면 원로회에 의하여 확정된 위원회의 회의 일정(시간표)의 범위 이내에서 독자적으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2) 위원장은 위원회에 있는 교섭단체 또는 적어도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이 의사 일정 이내에서 요청하였을 때 시간표 내에서 바로 다음에 시행할 수 있는 기간으로 소집할 의무가 있다.
- (3) 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 의원 5%의 요구 또는 위원회의 일치된 결의 그리고 의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위원장은 시간표 외에 또는 연방의회 상임회의장 외에서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 61 Tagesordnung der Ausschüsse

- (1) Termin und Tagesordnung werden vom Vorsitzenden festgesetzt, es sei denn, daß der Ausschuß vorher darüber beschließt. Die Tagesordnung soll den Ausschußmitgliedern in der Regel drei Tage vor der Sitzung zugeleitet werden.

제61조 위원회의 의사 일정

- (1) 위원회가 사전에 회의 기간과 일정에 관하여 의결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그에 관하여 확정한다.

- (2) Der Ausschuß kann die Tagesordnung mit Mehrheit ändern, erweitern kann er sie nur, wenn nicht eine Fraktion oder ein Drittel der Ausschußmitglieder widerspricht.
- (3) Die Tagesordnung jeder Ausschußsitzung ist mit Angabe des Ortes, des Termins und, soweit vereinbart, der Dauer der Sitzung den beteiligten Bundesministerien und dem Bundesrat mitzuteilen.
- (2) 교섭단체 또는 위원회 의원의 3분의 1이 반대하지 않을 경우에만 위원회는 의사 일정을 변경하고 연장할 수 있다.
- (3) 각 위원회 회의의 의사 일정은 장소, 기한 및 합의된 회의일 등의 표시로서 해당 연방 장관과 연방참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62 Aufgaben der Ausschüsse

- (1) Die Ausschüsse sind zu baldiger Erledigung der ihnen überwiesenen Aufgaben verpflichtet. Als vorbereitende Beschlußorgane des Bundestages haben sie die Pflicht, dem Bundestag bestimmte Beschlüsse zu empfehlen, die sich nur auf die ihnen überwiesenen Vorlagen oder mit diesen in unmittelbarem Sachzusammenhang stehenden Fragen beziehen dürfen. Sie können sich jedoch mit anderen Fragen aus ihrem Geschäftsbereich befassen; mit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die ihre Zuständigkeit betreffen, sollen sie sich auch unabhängig von Überweisungen zeitnah befassen. Weitergehende Rechte, die einzelnen Ausschüssen durch Grundgesetz, Bundesgesetz, in dieser Geschäftsordnung oder durch Beschluß des Bundestages übertragen sind, bleiben unberührt.
- (2) Zehn Sitzungswochen nach Überweisung einer Vorlage können eine Fraktion oder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verlangen, daß der Ausschuß durch den Vorsitzenden oder Berichterstatter dem Bundestag einen Bericht über den Stand der Beratungen erstattet. Wenn sie es verlangen, ist der Bericht auf die Tagesordnung des Bundestages zu setzen.

제62조 위원회의 임무

- (1) 위원회는 위원회에 위임한 임무를 조속히 해결할 의무가 있다. 연방 의회의 의결준비 기관으로서 위원회는 연방의회의 안건에 대하여 특정한 의결을 권고할 의무를 가지는데, 그 의결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만 또는 그것과 직접 내용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문제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위원회는 그 업무 범위에서 다른 문제도 포함할 수 있는데, 위원회의 관할권이 해당되는 유럽연합의 업무는 회부와 관계없이 시사성 있게 취급하여야 한다. 기본법, 연방법률, 이의 사규칙 또는 연방의회 의결에 의하여 위원회에 위임된 추가된 권리는 변동이 없다.
- (2) 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 의원 5%는 법안의 회부 후 10회의 주간 후에는 위원회가 위원장 또는 보고자를 통하여 심의의 상황에 대한 보고서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경우 보고에는 연방의회의 의사 일정에 기재되어야 한다.

§ 63 Federführender Ausschuß

- (1) Den Bericht an den Bundestag gemäß § 66 kann nur der federführende Ausschuß erstatten.
- (2) Werden Vorlagen an mehrere Ausschüsse überwiesen (§ 80), sollen die beteiligten Ausschüsse mit dem federführenden Ausschuß eine angemessene Frist zur Ermittlung ihrer Stellungnahme vereinbaren. Werden nicht innerhalb der vereinbarten Frist dem federführenden Ausschuß die Stellungnahmen vorgelegt oder kommt eine Vereinbarung über eine Frist nicht zustande, kann der federführende Ausschuß dem Bundestag Bericht erstatten, frühestens jedoch in der vierten auf die Überweisung folgenden Sitzungswoche.

제63조 소관 위원회

- (1) 제66조에 따른 연방의회 보고서는 소관 위원회(federführende Ausschuß)만 작성한다.
- (2) 법률안이 여러 위원회에 회부되었을 경우(제80조) 연관 위원회는 소관 위원회와 그의 입장 표명을 전달하기 위한 적절한 기간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합의된 기간 이내에 소관 위원회에 입장표명을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기간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였을 때 소관 위원회는 빠르면 회부 후 계속되는 4회의 주간 이내에 연방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 64 Verhandlungsgegenstände

- (1) Verhandlungsgegenstände sind die dem Ausschuß überwiesenen Vorlagen und Fragen aus dem Geschäftsbereich des Ausschusses (§ 62 Abs. 1 Satz 3).
- (2) Sind dem Ausschuß mehrere Vorlagen zum selben Gegenstand überwiesen, beschließt der Ausschuß, welche Vorlage als Verhandlungsgegenstand für seine Beschlußempfehlung an den Bundestag dienen soll. Andere Vorlagen zum selben Gegenstand können, auch wenn sie bei der Beratung nicht oder nur teilweise berücksichtigt wurden, für erledigt erklärt werden. Wird der Erledigterklärung von einer Fraktion im Ausschuß widersprochen, muß über die Vorlagen abgestimmt werden. Die Beschlußempfehlung, die Vorlagen für erledigt zu erklären oder abzulehnen, ist dem Bundestag vorzulegen.

제64조 안건

- (1) 안건(Verhandlungsgegenstände)은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Vorlage)과 위원회의 업무 범위에서 제기되는 문제이다.(제62조 제1항 제3문)
- (2) 다수의 의안이 위원회에 동일 조건으로 회부되었을 경우 위원회는 어느 의안이 연방의회에 의결 권고를 위한 안건으로 적절한 것인가를 의결한다. 동일 안건으로 된 다른 의안이 심의에 있어서 전혀 고려되지 못하였거나 부분적으로 고려되었다고 하여도 처리된 것으로 선언될 수 있다. 위원회에 있는 교섭단체의 처리 선언에 대하여 반대가 있을 경우 의안은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의안을 처리로 선언할 것인가 또는 부결할 것인가에 대한 결의 권고는 연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65 Berichtersterbenennung</p> <p>Vorbehaltlich der Entscheidung des Ausschusses benennt der Vorsitzende einen oder mehrere Berichtersteratter für jeden Verhandlungsgegenstand.</p>	<p>제65조 보고자의 임무</p> <p>위원회의 결정을 조건으로 위원회 위원장은 각 안건에 대하여 1명 또는 다수의 보고자를 지명한다.</p>
<p>§ 66 Berichterstattung</p> <p>(1) Ausschlußberichte an den Bundestag über Vorlagen sind in der Regel schriftlich zu erstatten. Sie können mündlich ergänzt werden.</p> <p>(2) Die Berichte müssen die Beschlüßempfehlung des federführenden Ausschusses mit Begründung sowie die Ansicht der Minderheit und die Stellungnahmen der beteiligten Ausschüsse enthalten. Wenn kommunale Spitzenverbände im Rahmen des § 69 Abs. 5 Stellung genommen haben, müssen, sofern Informationssitzungen nach § 70 Abs. 1 stattgefunden haben, sollen die dargelegten Auffassungen in ihren wesentlichen Punkten im Bericht wiedergegeben werden.</p>	<p>제66조 보고</p> <p>(1) 의안에 관하여 연방의회에 행하는 위원회 보고는 원칙적으로 문서의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구두로 보완할 수 있다.</p> <p>(2) 보고에는 이유가 포함된 기록위원회의 결의 권고, 소수의 견해 및 관련 위원회의 입장 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간부가 제69조 제5항의 범위에서 입장 표명을 하였을 때 제70조 제1항에 의한 정보회의(Informationssitzungen)가 개최되는 한 본질적 논점에서 표명된 견해는 보고에 다시 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p>
<p>§ 67 Beschlußfähigkeit im Ausschuß</p> <p>Der Ausschuß ist beschlußfähig, wenn die Mehrheit der Mitglieder anwesend ist. Er gilt solange als beschlußfähig, wie nicht vor einer Abstimmung ein Mitglied verlangt, die Beschlußfähigkeit durch Auszählen festzustellen. Der Vorsitzende kann die Abstimmung, vor der die Feststellung der Beschlußfähigkeit verlangt wurde, auf bestimmte Zeit verschieben und, wenn kein Widerspruch erfolgt, die Aussprache fortsetzen oder einen anderen Tagesordnungspunkt aufrufen. Ist nach Feststellung der Beschlußunfähigkeit die Sitzung auf bestimmte Zeit unterbrochen worden und nach Wiedereröffnung die Beschlußfähigkeit noch nicht gegeben, gilt Satz 3.</p>	<p>제67조 위원회의 의결정족수</p> <p>위원회는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였을 때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위원회는 표결 전에 의원이 의결정족수 충족을 선택을 통하여 확정하도록 요청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의결정족수 충족으로 효력이 있다. 위원장은 의결정족수 충족의 확인이 요청되는 표결을 일정 시간 동안 연장할 수 있으며, 반대가 없을 때 토의를 계속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의사 일정의 안건을 부를 수 있다. 의결정족수 부족을 확인한 후 회의는 일정 시간 동안 휴회되고 재개회 후 의결정족수가 아직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제3문이 유효하다.</p>
<p>§ 68 Herbeirufung eines Mitgliedes der Bundesregierung zu den Ausschußsitzungen</p> <p>Das Recht des Ausschusses, die Anwesenheit eines Mitgliedes der Bundesregierung zu verlangen, gilt auch, wenn es in einer öffentlichen Sitzung gehört werden soll. Über einen entsprechenden Antrag ist in nichtöffentlicher Sitzung zu entscheiden.</p>	<p>제68조 위원회 회의에 연방정부 구성원의 출석</p> <p>연방정부의 구성원의 출석을 요구할 위원회의 권리는 공개 회의에서 청문되어야 할 때 역시 유효하다. 상응한 제안에 관해서는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하여야 한다.</p>
<p>§ 69 Nichtöffentliche Ausschußsitzungen</p> <p>(1) Die Beratungen der Ausschüsse sind grundsätzlich nicht öffentlich. Der Ausschuß kann beschließen, für einen bestimmten Verhandlungsgegenstand oder Teile desselben die Öffentlichkeit zuzulassen. Die Öffentlichkeit einer Sitzung ist hergestellt, wenn der Presse und sonstigen Zuhörern im Rahmen der Raumverhältnisse der Zutritt gestattet wird.</p> <p>(2) An den nichtöffentlichen Ausschußsitzungen können Mitglieder des Bundestages, die dem Ausschuß nicht angehören, als Zuhörer teilnehmen, es sei denn, daß der Bundestag bei der Einsetzung der Ausschüsse beschließt, das Zutrittsrecht für einzelne Ausschüsse auf die ordentlichen Mitglieder und deren namentlich benannte Stellvertreter zu beschränken. Diese Beschränkung kann nachträglich für die Beratung bestimmter Fragen aus dem Geschäftsbereich der Ausschüsse erfolgen. Die Ausschüsse können für bestimmte Verhandlungsgegenstände im Einzelfall Ausnahmen von der Beschränkung des Zutrittsrechts beschließen.</p>	<p>제69조 비공개 위원회 회의</p> <p>(1) 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한다. 위원회는 일정한 안전 또는 안건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허용할 것인가를 의결할 수 있다. 회의의 공개는 언론인과 기타 방청객에게 장소 상황의 범위에서 출입이 허용될 때 이루어진다.</p> <p>(2)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연방의회 의원은 비공개 회의에 방청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의회가 위원회의 설치에서 통상적 의원과 그의 지명된 대리인에게 위원회 출입권(Zutrittsrecht)을 제한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이 같은 제한은 위원회의 업무 범위에서 일정한 문제의 심의에 대하여 추후에 실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개별적인 경우에 일정한 안건에 대하여 출입권 제한의 예외를 의결할 수 있다.</p>

- (3) Berä ein Ausschuß, dessen Verhandlungen nicht vertraulich sind, Vorlagen von Mitgliedern des Bundestages, so ist dem Erstunterzeichner, wenn er nicht Mitglied des Ausschusses ist, die Tagesordnung zuzuleiten. Er kann insoweit mit beratender Stimme an der Sitzung teilnehmen oder sich von einem der anderen Antragsteller vertreten lassen. In besonderen Fällen soll der Ausschuß auch andere Mitglieder des Bundestages zu seinen Verhandlungen mit beratender Stimme hinzuziehen oder zulassen.
- (4) Vorbehaltlich gesetzlicher Beschränkungen des Zutrittsrechts haben die Fraktionsvorsitzenden beratende Stimme in allen Ausschüssen und Sonderausschüssen (§ 54). Sie können ein Mitglied ihrer Fraktion beauftragen, sie zu vertreten.
- (5) Berä der Ausschuss einen ihm federführend überwiesenen Gesetzentwurf, durch den wesentliche Belange von Gemeinden und Gemeindeverbänden berührt werden, ist den auf Bundesebene bestehenden kommunalen Spitzenverbänden vor Beschlussfassung im Ausschuss Gelegenheit zur Stellungnahme zu geben. Wesentliche Belange im Sinne des Satzes 1 werden durch Gesetze berührt, die ganz oder teilweise von den Gemeinden oder Gemeindeverbänden auszuführen sind, ihre öffentlichen Finanzen unmittelbar betreffen oder auf ihre Verwaltungsorganisation einwirken. Von der Bestimmung des Satzes 1 kann bei Regierungsvorlagen abgesehen werden, wenn aus der Begründung der Vorlagen die Auffassungen der kommunalen Spitzenverbände ersichtlich sind. Die Rechte des Ausschusses aus § 70 Abs. 1 bleiben unberührt.
- (6) Ist bei Ausschußsitzungen die Teilnahme auf die ordentlichen Mitglieder und deren namentlich benannte Stellvertreter beschränkt, kann einer der Antragsteller, der nicht Mitglied des Ausschusses ist, zur Begründung der Vorlage teilnehmen.
- (7) Für die Beratung einer VS der Geheimhaltungsgrade VS-VERTRAULICH und höher gelten die Bestimmungen der Geheimschutz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8) Beraten mehrere Ausschüsse in gemeinsamer Sitzung über denselben Verhandlungsgegenstand, stimmen die Ausschüsse getrennt ab.
- (3) 비밀이 아닌 의사를 취급하는 위원회가 연방의회 의원의 의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첫번째 서명인에게 의사 일정을 전달하여야 한다. 그는 그 문제에서 회의에 심의권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고 다른 제안자의 한명에 의하여 대표가 되게 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 위원회는 타 연방의회 의원에게 심의권을 가지고 심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또는 허용할 수 있다.
- (4) 교섭단체 총무(Fraktionsvorsitzenden)는 출입권의 법적 제한을 조건으로 모든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권을 가진다.(제54조) 교섭단체 총무는 그의 교섭단체의 의원에게 그를 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5)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한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경우, 그 의결 이전에 연방차원에서 존재하는 지방자치 단체 최고 조합에게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문에 따른 중요한 관점은 심의 대상 법률안의 전체 혹은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의하여 집행되고 그들의 공공재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행정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의안일 경우에는 제1문에 따라서 중요하다. 의안의 제안 이유에서 지방상부단체의 견해가 명백한 정부제안의 경우 제1문의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70조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6) 위원회 회의에서 통상적 의원과 그의 지명된 대리인에게 참여가 제한되었을 때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제안자의 1명은 오로지 의안의 제안 이유에만 참가할 수 있다.
- (7) 독일 연방의회 비밀유지 규칙의 규정은 3급 비밀과 그 이외의 비밀유지도의 비밀문건 심의에 유효하다.
- (8) 다수 위원회가 공동 회의에서 동일한 안건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 위원회는 분리하여 표결한다

§ 69a Erweiterte öffentliche Ausschußberatungen

- (1) Die Ausschüsse sollen im Benehmen mit dem Ältestenrat und im Einvernehmen mit den mitberatenden Ausschüssen als Schlußberatung der überwiesenen Vorlagen öffentliche Aussprachen durchführen, in denen die Beschlußempfehlung und der Bericht des federführenden Ausschusses beschlossen wird. Der Vorsitzende des federführenden Ausschusses beruft die Sitzung im Einvernehmen mit den mitberatenden Ausschüssen ein. Die Tagesordnung wird den Mitgliedern des Bundestages, dem Bundesrat und der Bundesregierung mitgeteilt.
- (2) Der federführende Ausschuß legt Gestaltung und Dauer der Aussprache im Einvernehmen mit den mitberatenden Ausschüssen fest. Der Vorsitzende des federführenden Ausschusses leitet die Sitzung. Er hat die dem Präsidenten im Rahmen von Plenarsitzungen zur Verfügung stehenden Rechte zur Aufrechterhaltung der Ordnung mit Ausnahme der Rechte nach § 38.

제69a조 확장된 공개 위원회 심의

- (1) 위원회들은 원로회의와의 협의 및 공동으로 심의하는 위원회들과의 협의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한 종결적 심의로서 공개적인 토의를 실시하며, 이 토의를 통하여 소관 위원회의 결의권고안과 보고서가 의결된다.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 심의 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의사 일정은 연방의회, 연방참사원 및 연방정부의 구성원들에게 통지한다.
- (2) 소관 위원회는 공동 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토의의 형태와 기간을 확정한다.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다.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8조에 따른 권리의 예외와 함께 규칙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총회의 범위에서 의장이 가지도록 한다.

- (3) Soweit nicht anders beschlossen ist, erteilt der Vorsitzende das Wort nach Maßgabe von § 59 Abs. 2. Will der Vorsitzende sich als Redner an der Aussprache beteiligen, so hat er während dieser Zeit den Vorsitz abzugeben. Rederecht und das Recht, Anträge zur Sache zu stellen, haben alle Mitglieder des Bundestages. Anträge zur Geschäftsordnung können nur von den Mitgliedern des federführenden Ausschusses, deren Stellvertretern sowie beratenden Mitgliedern dieses Ausschusses gestellt werden.
- (4) Stimmberechtigt sind die Mitglieder des federführenden Ausschusses, im Falle der Stellvertretung deren Stellvertreter.
- (5) Hat der federführende Ausschuss eine Erweiterte öffentliche Ausschlußberatung beschlossen, kann ein Viertel seiner Mitglieder verlangen, daß die Vorlage statt dessen vom Bundestag in einer allgemeinen Aussprache beraten wird. Eine Vorlage, zu der eine Erweiterte öffentliche Ausschlußberatung stattgefunden hat, kann ohne besondere Vereinbarung im Ältestenrat nicht Gegenstand einer nochmaligen Aussprache im Plenum sein. Der federführende Ausschuss kann jedoch eine nochmalige Befassung im Plenum verlangen, wobei sich die Befassung auf eine Berichterstattung aus dem Ausschuss durch einen Sprecher zu beschränken hat. Der Sprecher hat die verschiedenen im Ausschuss vertretenen Positionen innerhalb von fünf Minuten darzulegen.

§ 70 Öffentliche Anhörungssitzungen

- (1) Zur Information über einen Gegenstand seiner Beratung kann ein Ausschuss öffentliche Anhörungen von Sachverständigen, Interessenvertretern und anderen Auskunftspersonen vornehmen. Bei überwiesenen Vorlagen ist der federführende Ausschuss auf Verlangen eines Viertels seiner Mitglieder dazu verpflichtet; bei nicht überwiesenen Verhandlungsgegenständen im Rahmen des § 62 Abs. 1 Satz 3 erfolgt eine Anhörung auf Beschluß des Ausschusses. Die Beschlußfassung ist nur zulässig, wenn ein entsprechender Antrag auf der Tagesordnung des Ausschusses steht.
- (2) Wird gemäß Absatz 1 die Durchführung einer Anhörung von einer Minderheit der Mitglieder des Ausschusses verlangt, müssen die von ihr benannten Auskunftspersonen gehört werden. Beschließt der Ausschuss eine Begrenzung der Anzahl der anzuhörenden Personen, kann von der Minderheit nur der ihrem Stäkeverhältnis im Ausschuss entsprechende Anteil an der Gesamtzahl der anzuhörenden Auskunftspersonen benannt werden.
- (3) Der mitberatende Ausschuss kann beschließen, im Einvernehmen mit dem federführenden Ausschuss eine Anhörung durchzuführen, soweit der federführende Ausschuss von der Möglichkeit des Absatzes 1 keinen Gebrauch macht oder seine Anhörung auf Teilfragen der Vorlage, die nur seinen Geschäftsbereich betreffen, beschränkt. Dem federführenden Ausschuss sind Ort und Termin sowie der zu hörende Personenkreis mitzuteilen. Mitglieder des federführenden Ausschusses haben während der Anhörung Fragerecht; dieses kann im Einvernehmen mit dem federführenden Ausschuss auf einzelne seiner Mitglieder beschränkt werden.
- (4) Betrifft die Anhörung durch den federführenden Ausschuss Gesetzentwürfe gemäß § 69 Absatz 5 Satz 1, ist den auf Bundesebene bestehenden kommunalen Spitzenverbänden Gelegenheit zur Teilnahme an der Anhörung zu geben, wobei eine Anrechnung nach Absatz 2 Satz 2 unterbleibt. § 69 Absatz 5 Satz 3 gilt entsprechend.

- (3) 별도로 다르게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위원장은 제59조 제2항에 따라서 발언을 허용한다. 위원장 자신이 발언자로서 토의에 참여하고자 원할 때는 이 기간 동안에는 위원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발언권과 안건 제안권은 모든 연방의회 의원들이 가진다. 업무 규칙에 대한 제안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 이 위원회의 대리인 및 심의 의원만이 할 수 있다.
- (4) 투표권은 소관 위원회의 의원이 가지며, 대행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다.
- (5) 소관 위원회가 확장된 공개 위원회 심의를 시행하기로 결의하면, 그 위원회 재적 4분의 1의 의원은 그 안건을 그 대신 본회의의 일반적인 토의에서 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확장된 공개 위원회 심의에서 시행되는 의안은 원로회와 특별한 협의 없이 총회에서 재차 토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소관 위원회는 총회에서 재차 취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발언자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발언자는 5분 이내에 다양한 위원회에서 대표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제70조 공개 청문회

- (1) 위원회는 법률안에 포함된 안건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 대표자, 그 밖의 정보제공인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하여 공개청문회(Öffentliche Anhörungssitzung)를 개최할 수 있다. 소관위원회는 화부된 의안의 경우 소관위원회 위원 4분의 1의 요구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다. 제62조 제1항 제3문의 범위 내에서 비회부 안건의 경우 청문회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행하여진다. 결의 작성은 상응한 제안이 위원회의 의사 일정에 상정되었을 때만 허용된다.
- (2) 제1항에 의한 청문의 수행이 위원회 위원 소수에 의하여 요구되었을 경우 소수에 의하여 지명된 정보인의 청문이 있어야 한다. 위원회가 청문인수의 제한을 의결하였을 때 위원회에서의 의석 비율에 상응한 소수 위원의 청문 정보인이 청문정보인의 전체 인원수에 지명될 수 있다.
- (3) 소관위원회가 제1항의 가능성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소관위원회의 청문이 그 업무 범위에 연관된 의안의 일부 문제에만 한정되는 한, 공동심의위원회는 소관위원과 협의하여 청문을 수행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장소와 기한 또는 청문하는 인적 범위는 소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관위원회는 청문하는 동안 질문권을 갖는다. 이 질문권은 소관위원회와 협의하여 그의 위원회의 몇몇 위원에게 제한할 수 있다.
- (4) 소관위원회를 통하여 제69조 제5항 제1문에 따른 법률안에 대하여 청문하는 개념은 연방차원에서 존재하는 지방자치 단체 최고조합에게 청문에 대한 참여를 표현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제2항 제2문에 따른 계산은 중지된다. 이에는 제69조 제5항 제3문이 적용된다.

- (5) Der Ausschuß kann in eine allgemeine Aussprache mit den Auskunftspersonen eintreten, soweit dies zur Klärung des Sachverhalts erforderlich ist. Hierbei ist die Redezeit zu begrenzen. Der Ausschuß kann einzelne seiner Mitglieder beauftragen, die Anhörung durchzuführen; dabei ist jede im Ausschuß vertretene Fraktion zu berücksichtigen.
- (6) Zur Vorbereitung einer öffentlichen Anhörung soll der Ausschuß den Auskunftspersonen die jeweilige Fragestellung übermitteln. Er kann sie um Einreichung einer schriftlichen Stellungnahme bitten.
- (7) Ersatz von Auslagen an Sachverständige und Auskunftspersonen erfolgt nur auf Grund von Ladungen durch Beschluß des Ausschusses mit vorheriger Zustimmung des Präsidenten.
- (8) Die Absätze 1 bis 7 gelten auch für Anhörungen in nichtöffentlicher Sitzung.
- (5) 위원회는 사실의 해명을 위하여 요구되는 한 정보인과 함께 일반적 토의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때 발언 시간은 제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몇몇 위원들에게 청문을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위원회에 대표된 각 교섭단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 (6) 공개 청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안내인에게 각각의 문제를 전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서면으로 입장 표명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7) 전문가와 정보인에 대한 비용의 보상은 의장의 사전 승인으로 위원회가 의결하는 부담을 근거로 하여 행하여진다.
- (8) 제1항 내지 제7항은 비공개 회의에서의 청취에도 역시 유효하다.

§ 71 Antragstellung im Ausschuß, Schluß der Aussprache

- (1) Antragsberechtigt sind die Ausschußmitglieder, deren Stellvertreter im Falle der Vertretung eines Ausschußmitgliedes aus ihrer Fraktion sowie beratende Ausschußmitglieder. Ein schriftlicher Antrag eines nicht anwesenden Mitgliedes des Ausschusses darf nur zur Abstimmung gestellt werden, wenn ein anwesendes stimmberechtigtes Mitglied ihn übernimmt.
- (2) Mitglieder des Bundestages, die nicht Ausschußmitglieder sind, können Änderungsanträge zu überwiesenen Vorlagen an den federführenden Ausschuß stellen. Die Antragsteller können insoweit außerhalb des Verfahrens nach § 69a mit beratender Stimme an der Sitzung des Ausschusses teilnehmen.
- (3) Ein Antrag auf Schluß der Aussprache darf frühestens zur Abstimmung gestellt werden, wenn jede Fraktion Gelegenheit hatte, zur Sache zu sprechen und von der jeweiligen Fraktionsauffassung abweichende Meinungen vorgetragen werden konnten.

제71조 위원회에 제안, 토의의 종결

- (1) 위원회 의원, 그들의 교섭단체의 위원회 의원을 대표하는 부의장 및 심의 위원회 의원이 제안권이 있다. 위원회의 불출석 의원의 서면 제안은 출석한 표결권 의원이 이를 인수하였을 대만 표결에 부쳐야 한다.
- (2) 위원회 의원이 아닌 연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수정 제안을 할 수 있다. 제안자는 제69a조에 따른 절차 이외에 신의 투표권을 가지고 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 (3) 토의 종료의 제안은 각 교섭단체가 안전에 관하여 발언할 기회를 가지고 각 교섭단체 견해와는 상이한 견해가 제시될 수 있었을 때 가능한 빨리 표결에 부쳐야 한다.

§ 72 Abstimmung außerhalb einer Sitzung

Der Ausschuß kann den Vorsitzenden einstimmig ermächtigen, außerhalb der Sitzungswochen über bestimmte Fragen in besonderen Eilfällen eine schriftliche Abstimmung durchführen zu lassen. Macht der Ausschuß von dieser Möglichkeit Gebrauch, hat der Vorsitzende den Mitgliedern des Ausschusses den Entwurf einer Beschlussempfehlung zuzuleiten, über die innerhalb einer bestimmten Frist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s § 46 Satz 1 abgestimmt werden kann. Eine schriftliche Abstimmung entfällt, wenn eine Sitzung des Ausschusses auf Grund der Bestimmungen des § 60 Abs. 2 oder 3 stattfindet.

제72조 회의 이외에서의 표결

위원회는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 일정한 문제에 관하여 회의 중간 이외에 서면 표결을 행하도록 위원장에게 만장일치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이 가능성을 이용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제46조 제1문에 상응하는 적용에서 표결될 수 있는 결의 권고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가 제60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최되었을 때 서면 표결은 취소된다.

§ 73 Ausschußprotokolle

- (1) Über jede Ausschußsitzung ist ein schriftliches Protokoll anzufertigen. Es muß mindestens alle Anträge und die Beschlüsse des Ausschusses enthalten. Stenographische Aufnahmen von Ausschußsitzungen bedürfen der Genehmigung des Präsidenten.
- (2) Protokolle über nichtöffentliche Sitzungen der Ausschüsse (§ 69 Abs. 1 Satz 1) sind grundsätzlich keine Verschlusssachen im Sinne der Geheimschutzordnung (vgl. § 2 Abs. 5 GSO). Soweit sie der Öffentlichkeit nicht ohne weiteres zugänglich sein sollen, sind sie vom Ausschuß mit einem entsprechenden Vermerk zu versehen; die Einzelheiten werden in den nach Absatz 3 zu erlassenden Richtlinien geregelt. Protokolle von öffentlichen Sitzungen (§ 69 Abs. 1 Satz 2, § 70 Abs. 1) dürfen diesen Vermerk nicht tragen.

제73조 위원회 회의록

- (1) 모든 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문서로서 회의록(Ausschußprotokolle)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최소한 모든 제안과 결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대한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 관한 회의록(제69조 제1항 제1문)은 비밀 유지 규칙(비교 비밀유지규칙(GSO) 제2조 제5항)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비밀자료가 아니다. 만약 회의록이 즉시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3항에 공포된 규정에 따른다. 공개 회의의 회의록(제69조 제1항 제2문, 제70조 제1항)에 대해서는 비공개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p>(3) Für die Behandlung der Protokolle erläßt der Präsident im Benehmen mit dem Präsidium besondere Richtlinien.</p>	<p>(3) 의장은 회의록을 보관하기 위하여 의장단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침을 공포한다.</p>
<p>§ 74 Anwendbarkeit der Bestimmungen der Geschäftsordnung</p> <p>Soweit die Verfahrensregeln für die Ausschüsse nichts anderes bestimmen, gelten für Ausschüsse und Enquete-Kommissionen die übrigen Bestimmungen der Geschäftsordnung, mit Ausnahme des § 126, entsprechend.</p>	<p>제74조 의사규칙 규정의 적용</p> <p>위원회의 절차 규칙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의사규칙 제126조를 예외로 한 그 이외의 규정은 위원회 및 조사위원회에도 준용한다.</p>
<p>VIII. Vorlagen und ihre Behandlung</p>	<p>VII. 의안과 그의 처리</p>
<p>§ 75 Vorlagen</p> <p>(1) Folgende Vorlagen können als Verhandlungsgegenstand auf die Tagesordnung des Bundestages gesetzt werden (selbständige Vorlage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Gesetzentwürfe, Beschlußempfehlungen des Ausschusses nach Artikel 77 Abs. 2 des Grundgesetzes (Vermittlungsausschuß), Anträge auf Zurückweisung von Einsprüchen des Bundesrates, Anträge, Berichte und Materialien zur Unterrichtung des Bundestages (Unterrichtungen), Große Anfragen an die Bundesregierung und ihre Beantwortung, Wahlvorschläge, soweit sie als Drucksachen verteilt worden sind, Beschlußempfehlungen und Berichte in Wahlprüfungs-, Immunitäts- und Geschäftsordnungsangelegenheiten, Beschlußempfehlungen und Berichte über Petitionen, Beschlußempfehlungen und Berichte des Rechtsausschusses über Streitsachen vor dem Bundesverfassungsgericht, Beschlußempfehlungen und Berichte von Untersuchungsausschüssen, Zwischenberichte der Ausschüsse, Rechtsverordnungen, soweit sie aufgrund gesetzlicher Grundlagen dem Bundestag zuzuleiten sind. <p>(2) Vorlagen zu Verhandlungsgegenständen sind (unselbständige Vorlage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Beschlußempfehlungen und Berichte der Ausschüsse, Änderungsanträge, Entschließungsanträge zu Gesetzentwürfen, Unterrichtungen, Regierungserklärungen, Großen Anfragen, Entschließungen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ionsdokumente, Stabilitätsvorlagen und Rechtsverordnungen. <p>(3) Als Vorlagen im Sinne des § 76 gelten auch Kleine Anfragen; sie können nicht als Verhandlungsgegenstand auf die Tagesordnung gesetzt werden.</p>	<p>제75조 의안</p> <p>(1) 다음의 의안(Vorlagen)은 연방의회 의사 일정의 안건으로서 기재될 수 있다.(독립적 의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안(Gesetzentwürfe) 기본법 제77조 제2항에 의한 위원회의 결의 권고(Beschlußempfehlungen)(중재위원회) 연방참사원의 이의제기에 대한 환부(Zurückweisung) 제안 제안(Anträge) 연방의회의 통보를 위한 보고와 자료(통보) 연방정부에 대한 대질의와 그의 답변 인쇄물로 교부되는 후보 추천 선거 심사, 정책특권, 의사규칙 문제에서의 결의권고와 보고 청원에 관한 의사권고와 보고 연방헌법법원에서 소송에 관한 법률위원회의 결의권고와 보고 조사위원회의 의결 권고와 보고 위원회의 중간 보고 법적 원칙에 근거하여 연방의회에 제출해야 할 법규 명령 <p>(2) 안건에 의한 의안은 다음과 같다(비독립적 의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의 결의 권고와 보고 수정 제안(Änderungsanträge) 법률안, 통보, 행정부 해명, 대질의, 유럽의회의 결의, 유럽공동체 제안, 경제한정화안 및 법규명령 등에 관한 결의 제안 <p>(3) 소질의(Kleine Anfragen)는 역시 제76조에 따른 의미에서의 제안으로서 효력이 있다. 이 소질의는 의사 일정의 안건으로 기재될 수 없다.</p>
<p>§ 76 Vorlagen von Mitgliedern des Bundestages</p> <p>(1) Vorlagen von Mitgliedern des Bundestages (§ 75) müssen von einer Fraktion oder von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unterzeichnet sein, es sei denn, daß die Geschäftsordnung etwas anderes vorschreibt oder zuläßt.</p> <p>(2) Gesetzentwürfe müssen, Anträge können mit einer kurzen Begründung versehen werden.</p>	<p>제76조 연방의회 의원에 의한 의안</p> <p>(1) 연방의회 의원에 의한 의안(제75조)은 이 의사규칙이 별도로 규정하거나 허용하지 않으면 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 의원 5%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p> <p>(2) 법률안(Gesetzentwürfe)은 간단한 제안 이유를 갖추어야 하고 제안은 간단한 제안 이유를 갖출 수 있다.</p>

§ 77 Behandlung der Vorlagen

- (1) Vorlagen werden an die Mitglieder des Bundestages, des Bundesrates und an die Bundesministerien in der Regel auf elektronischem Weg verteilt. Eine Verteilung in Papierform ist weiterhin zulässig.
- (2) Bei Vorlagen gemäß § 75 Abs. 1 Buchstabe e, die der Unterrichtung des Bundestages dienen (Berichte, Denkschriften, Programme, Gutachten, Nachweisungen und ähnliches), kann der Präsident, soweit sie nicht auf gesetzlichen Vorschriften oder Beschlüssen des Bundestages beruhen, im Benehmen mit dem Ätstenrat ganz oder teilweise von der Verteilung absehen. In diesen Fällen wird der Eingang dieser Vorlagen und im Benehmen mit dem Ätstenrat die Art ihrer Behandlung als amtliche Mitteilung durch den Präsidenten bekanntgegeben. Sie werden als Übersicht in einer Drucksache zusammengestellt, in der auch anzugeben ist, in welchen Räumen des Bundestages die Vorlagen eingesehen werden können.

§ 78 Beratungen

- (1) Gesetzentwürfe werden in drei Beratungen, Verträge mit auswärtigen Staaten und ähnliche Verträge, welche die politischen Beziehungen des Bundes regeln oder sich auf Gegenstände der Bundesgesetzgebung beziehen (Artikel 59 Abs. 2 des Grundgesetzes), grundsätzlich in zwei Beratungen und nur auf Beschluß des Bundestages in drei Beratungen, alle anderen Vorlagen grundsätzlich in einer Beratung behandelt. Für Nachtragshaushaltsvorlagen gilt § 95 Abs. 1 Satz 6.
- (2) Anträge können ohne Aussprache einem Ausschuß überwiesen werden. Auch wenn sie nicht verteilt sind, kann über sie abgestimmt werden, es sei denn, daß von einer Fraktion oder von anwesenden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widersprochen wird. Im übrigen gelten für Anträge sinngemäß die Vorschriften über die Beratung von Gesetzentwürfen.
- (3) Werden Vorlagen gemäß Absatz 1 in zwei Beratungen behandelt, so finden für die Schlußberatung neben den Bestimmungen für die zweite Beratung (§§ 81, 82 und 83 Abs. 3) die Bestimmung über die Schlußabstimmung (§ 86) entsprechende Anwendung.
- (4) Werden Vorlagen in einer Beratung behandelt, findet für Änderungsanträge § 82 Abs. 1 Satz 2 Anwendung.
- (5) Soweit die Geschäftsordnung nichts anderes vorschreibt oder zuläßt, beginnen die Beratungen der Vorlagen frühestens am dritten Tage nach Verteilung der Drucksachen (§ 123).
- (6) Wird im Ätstenrat vorab vereinbart, anstelle einer Aussprache die schriftlichen Redetexte zu Protokoll zu nehmen, werden die betreffenden Punkte in der Tagesordnung kenntlich gemacht. Eine Aussprache findet abweichend davon statt, wenn sie bis 18 Uhr des Vortages von einer Fraktion oder von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verlangt wird. Je Fraktion kann im Regelfall ein Redebeitrag in angemessenem Umfang zu Protokoll gegeben werden. Der Umfang je Fraktion soll sich an den auf die Fraktionen entfallenden Redezeiten bei einer Aussprache von 30 Minuten orientieren. Die Redetexte sollen dem Sitzungsvorstand spätestens bis zum Aufruf des Tagesordnungspunktes vorliegen.

제77조 의안의 처리

- (1) 의안(Vorlagen)은 규정상 전자문서 형태로 연방의회, 연방참사회 및 연방각료의 구성원에게 배부된다. 추가적으로 종이 형태로 배부하는 것도 허용된다.
- (2) 연방의회의 통보에 이용하는(보고, 진정서, 프로그램, 전문가의 감정, 입증 등) 제75조 제1항 e에 의한 의안의 경우에 의장은 그것이 법률적 규정 또는 연방의회의 결의에 근거하지 않는 한 원로회와 협의하여 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 의안의 접수 그리고 그 처리방법은 의장이 관보를 통하여 공포하는 것이다. 이 의안들은 인쇄물에서 개요(Übersicht) 형식으로 정리되고 그 개요에서는 의안이 연방의회의 어느 부서에서 고찰될 수 있는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8조 심의

- (1) 법률안은 3독회, 연방의 정치적 관계를 규율하거나 연방 입법사항에 관계하는 외국과의 조약과 유사한 조약(기본법 제5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2독회, 그리고 연방의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3독회, 그리고 모든 다른 의안은 원칙적으로 1독회에서 처리된다. 추가예산안은 제95조 제1항 제6문이 유효하다.
- (2) 제안(Anträge)은 토의 없이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 의원 5%가 반대하지 않으면 제안은 배부되지 않지만 그에 관해 표결할 수 있다. 그 밖에 법률안의 신의에 관한 규정이 제안에 대하여 적절히 적용된다.
- (3) 제1항에 의한 의안이 2독회로 처리되는 경우, 최종 심의를 위해서는 2독회를 위한 규정(제81조, 제82조 및 제83조 제3항)과 함께 최종 표결에 관한 규정(제86조)이 준용된다.
- (4) 1독회에서 의안이 처리되는 경우, 수정 제안에 대해서는 제82조 제1항 제2문이 적용된다.
- (5) 의사규칙이 다르게 규정하지 않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의안의 심의는 빠른 인쇄물 배부 후 3일째 되는 날에 시작된다.(제123조)
- (6) 토의를 서면의 발언록에 기록하는 대신에 원로회에서 사전에 협의하는 경우에 해당 관점은 의사 일정에 표시된다. 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 의원의 5%가 전날의 18시까지 토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토의는 이와 다르게 개최된다. 각 교섭단체는 규정에 따라서 연설문을 적절한 범위에서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다. 각 교섭단체의 범위는 토의에서 교섭단체에 할당된 30분의 발언 시간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발언록은 늦어도 의사 일정의 공시 시점까지 회의 간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79 Erste Beratung von Gesetzentwürfen

In der ersten Beratung findet eine allgemeine Aussprache nur statt, wenn es vom Ätstenrat empfohlen, bis zum Aufruf des betreffenden Punktes der Tagesordnung von einer Fraktion oder von anwesenden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verlangt oder gemäß § 80 Abs. 4 beschlossen wird. In der Aussprache werden nur die Grundsätze der Vorlagen besprochen. Sachanträge dürfen nicht gestellt werden.

§ 80 Überweisung an einen Ausschuß

- (1) Am Schluß der ersten Beratung wird der Gesetzentwurf vorbehaltlich einer abweichenden Entscheidung gemäß Absatz 2 einem Ausschuß überwiesen; er kann nur in besonderen Fällen gleichzeitig mehreren Ausschüssen überwiesen werden, wobei der federführende Ausschuß zu bestimmen ist. Weitere Ausschüsse können sich im Benehmen mit dem federführenden Ausschuß an der Beratung bestimmter Fragen der Vorlage gutachtlich beteiligen.
- (2) Auf Antrag einer Fraktion oder von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kann der Bundestag mit einer Zweidrittelmehrheit der anwesenden Mitglieder beschließen, ohne Ausschußüberweisung in die zweite Beratung einzutreten. Für den Antrag gilt die Frist des § 20 Abs. 2 Satz 3. Bei Finanzvorlagen soll vor Eintritt in die zweite Beratung dem Haushaltsausschuß Gelegenheit gegeben werden, die Vorlage gemäß § 96 Abs. 4 zu prüfen. Die Fristenregelung des § 96 Abs. 8 Satz 2 findet keine Anwendung.
- (3) Vorlagen gemäß § 75 Abs. 1 Buchstabe e kann der Präsident, ohne sie auf die Tagesordnung zu setzen, nach Vereinbarung im Ätstenrat einem Ausschuß überweisen. Eine Berichterstattung an den Bundestag erfolgt nur, wenn der Ausschuß einen über die Kenntnisnahme hinausgehenden Beschluß empfehlen will. Erhebt der Haushaltsausschuß gegen eine Unionsvorlage (§ 93), deren Finanzierung nicht durch den jeweiligen jährlichen Eigenmittelsatz der Europäischen Union gedeckt ist oder erkennbar nicht gedeckt sein wird, Bedenken zu ihrer Vereinbarkeit mit dem laufenden oder mit künftigen Haushalten des Bundes, hat der federführende Ausschuß Bericht zu erstatten.
- (4) Vorlagen, die nach Vereinbarung im Ätstenrat im vereinfachten Verfahren behandelt werden sollen, werden in einem gemeinsamen Tagesordnungspunkt zusammengefaßt. Über die Überweisung dieser Vorlagen wird ohne Aussprache in einer einzigen Abstimmung insgesamt abgestimmt. Wird die Teilung der Abstimmung beantragt (§ 47), bedarf es einer Abtrennung der Abstimmung über den Überweisungsvorschlag zu einer Vorlage nicht, falls dem Antrag eines Mitglieds des Bundestages zur Änderung des Überweisungsvorschlags des Ätstenrats nicht widersprochen wird. Wird zu einer Vorlage, für die das vereinfachte Verfahren vorgesehen ist, von einem Mitglied des Bundestages die Aussprache beantragt, ist über diesen Antrag zuerst abzustimmen. Findet der Antrag die Mehrheit, wird die betroffene Vorlage als Zusatzpunkt auf die Tagesordnung der laufenden Sitzungswoche gesetzt.

제79조 법률안의 제1독회

제1독회에서 일반적인 토의는 원로회가 권고하거나, 의사 일정 중 당해 안건을 지명해서 그 안건으로 넘어가는 시점까지 교섭단체 혹은 출석의원 5%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제80조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을 때만 시행된다. 토론에 있어서는 의안의 원칙에 대한 것만 논의한다. 의제 제안은 제기할 수 없다.

제80조 위원회에의 회부

- (1) 제1독회의 종결에서 법률안은 제2항에 의한 예외적 결정을 조건으로 원칙적으로 하나의 위원회(Ausschuß)에 회부되는데, 특별한 경우에만 동시에 복수의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가 결정하여야 한다. 그 밖의 위원회는 특정한 문제에 관한 심의에 있어서 소관 위원회와 협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 다른 위원회는 소관 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안의 일정한 문제에 대한 심의에 심사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 (2) 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 재적 의원 5%의 제안에 따라 위원회의 회부 없이 제2독회를 개시할 것을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제2항 제3문의 기간은 제안에 대하여 유효하다. 재정위원회의 경우에 제2독회를 시작하기 전에 예산위원회에게 제96조 제4항에 의한 의안심의의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제96조 제8항 제2문의 기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3) 제75조 제1항 e에 의한 의안은 의사 일정에 기재하지 않고 원로회와 협의한 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연방의회에의 보고는 위원회가 통보 이외의 결의를 권고하려고 할 때만 행한다. 연합 의안에 대하여 예산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제93조) 재정지원은 유럽연합의 매년 자체비용으로 충족시키거나 인식할 정도로 충족되지 않으며 현재 또는 미래의 연방 예산의 일치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관위원회는 보고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4) 원로회와 협의하여 단순화된 절차로 처리하여야 하는 의안은 공동된 의사 일정 조건에서 통합한다. 이러한 의안이 회부되면 토의 없이 단지 투표로 표결한다. 원로회의 회부 제안의 수정을 위한 연방의회 의원의 신청이 반대되지 않는 경우에, 표결의 분할을 신청하면(제47조), 의안에 대한 회부 제안에 대한 표결의 분할을 필요 없게 된다. 연방의회 의원이 간단한 절차가 예상되는 의안을 신청하면, 이 신청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게 된다. 다수의 의안이 신청되면, 해당 의안은 추가로 현재 회의 주간의 의사 일정에 기재한다.

<p>§ 80a Überprüfung von Gesetzentwürfen auf sprachliche Richtigkeit und Verständlichkeit</p> <p>(1) Ein beim Bundestag eingerichteter oder angesiedelter Redaktionsstab soll auf Beschluss des federführenden Ausschusses einen Gesetzentwurf auf sprachliche Richtigkeit und Verständlichkeit prüfen und bei Bedarf Empfehlungen an den Ausschuss richten. Der federführende Ausschuss kann den Redaktionsstab im gesamten Verlauf seines Beratungsverfahrens hinzuziehen und um Prüfung bitten. Dies gilt insbesondere für die Prüfung von Änderungsanträgen, deren Annahme zu erwarten ist.</p> <p>(2) Darüber hinaus bietet der Redaktionsstab auch sonstige sprachliche Beratung an.</p>	<p>제80a조 언어적 정확성과 이해 용이성에 대한 법률안의 검사</p> <p>(1) 연방의회에서 조정하고 근무하는 편집 참모는 소관 위원회에서 결의한 법률안에 대하여 언어상의 정확성과 이해 용이성을 검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권고하여 교정하게 하여야 한다. 소관 위원회는 협의 절차의 전체 진행 과정에 편집 참모를 임회시켜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승인을 앞두고 있는 수정 제안의 검사에 유효하다.</p> <p>(2) 이를 위하여 편집참모는 기타 언어상의 협의도 제공하게 된다.</p>
<p>§ 81 Zweite Beratung von Gesetzentwürfen</p> <p>(1) Die zweite Beratung wird mit einer allgemeinen Aussprache eröffnet, wenn sie vom Ältestenrat empfohlen oder von einer Fraktion oder von anwesenden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verlangt wird. Sie beginnt am zweiten Tage nach Verteilung der Beschlußempfehlung und des Ausschußberichts, früher nur, wenn auf Antrag einer Fraktion oder von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zwei Drittel der anwesenden Mitglieder des Bundestages es beschließen; bei Gesetzentwürfen der Bundesregierung, die für dringlich erklärt worden sind (Artikel 81 des Grundgesetzes), kann die Fristverkürzung mit der Mehrhei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beschlossen werden. Für den Antrag gilt die Frist des § 20 Abs. 2 Satz 3.</p> <p>(2) Über jede selbständige Bestimmung wird der Reihenfolge nach und zuletzt über Einleitung und Überschrift die Aussprache eröffnet und geschlossen. Nach Schluß der Aussprache über jede Einzelbestimmung wird abgestimmt.</p> <p>(3) Auf Beschluß des Bundestages kann die Reihenfolge geändert, die Aussprache über mehrere Einzelbestimmungen verbunden oder über Teile einer Einzelbestimmung oder über verschiedene Änderungsanträge zu demselben Gegenstand getrennt werden.</p> <p>(4) Über mehrere oder alle Teile eines Gesetzentwurfs kann gemeinsam abgestimmt werden. Über Verträge mit auswärtigen Staaten und ähnliche Verträge gemäß Artikel 59 Abs. 2 des Grundgesetzes wird im ganzen abgestimmt.</p>	<p>제81조 법률안의 제2독회</p> <p>(1) 제2독회는 원로회에 의한 권고가 있거나 또는 교섭단체 또는 연방 의회 의원의 5%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일반적인 토의는 개최된다. 제2독회는 의결권고와 위원회 보고서의 배부 후 2일째에 시작하며, 다만 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 의원의 5%의 제안에 따라서 연방의회 출석의원의 3분의 2가 의결하였을 경우에만 더 일찍 의결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것으로 설명된 연방정부의 법률안의 경우에는(기본법 제81조) 연방의회의 과반수로 기간 단축을 의결할 수 있다. 제안을 위해서는 제20조 제2항 제3문의 기간이 적용된다.</p> <p>(2) 모든 독립적인 의결에 있어서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서문과 표제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진다. 토의가 이루어진 후에 모든 개별 법률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진다.</p> <p>(3) 연방의회의 의결에 따라 다수 개별규정에 관한 토의를 결합시키거나 개별규정의 일부 또는 다양한 수정 제안을 같은 조건으로 분리시켜서 심의 순서를 변경시킬 수 있다.</p> <p>(4) 법률안의 다수 또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공동으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기본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외국과의 조약 및 유사한 조약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표결에 부쳐진다.</p>
<p>§ 82 Änderungsanträge und Zurückverweisung in zweiter Beratung</p> <p>(1) Änderungen zu Gesetzentwürfen in zweiter Beratung können beantragt werden, solange die Beratung des Gegenstandes, auf den sie sich beziehen, noch nicht abgeschlossen ist. Die Anträge müssen von mindestens einem Mitglied des Bundestages unterzeichnet sein und können mit einer kurzen Begründung versehen werden; wenn sie noch nicht verteilt sind, werden sie verlesen.</p> <p>(2) Zu Verträgen mit auswärtigen Staaten und ähnlichen Verträgen, welche die politischen Beziehungen des Bundes regeln oder sich auf Gegenstände der Bundesgesetzgebung beziehen (Artikel 59 Abs. 2 des Grundgesetzes), sind Änderungsanträge nicht zulässig.</p>	<p>제82조 제2독회에서의 수정제안과 재회부</p> <p>(1) 심의 대상 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2독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수정 제안(Änderungsanträge)을 할 수 있다. 제안을 위하여 최소한 1인의 연방의회 의원이 서명하여야 하며, 배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간략한 제안 이유를 기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p> <p>(2) 연방의 정치적 관계를 규율하거나 연방입법의 대상과 관계되는 외국과의 조약 및 유사한 조약(기본법 제59조 제2항)은 수정 제안이 허용되지 않는다.</p>

<p>(3) Solange nicht die letzte Einzelabstimmung erledigt ist, kann die Vorlage ganz oder teilweise auch an einen anderen Ausschuß zurückverwiesen werden; dies gilt auch für bereits beratene Teile.</p>	<p>(3) 최종 개별 표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의안은 전체 혹은 일부분을 다른 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으며, 이것에는 이미 심의된 부분도 포함된다.</p>
<p>§ 83 Zusammenstellung der Änderungen</p> <p>(1) Würden in der zweiten Beratung Änderungen beschlossen, so läßt sie der Präsident zusammenstellen.</p> <p>(2) Die Beschlüsse der zweiten bilden die Grundlage der dritten Beratung.</p> <p>(3) Sind in der zweiten Beratung alle Teile eines Gesetzentwurfs abgelehnt worden, so ist die Vorlage abgelehnt und jede weitere Beratung unterbleibt.</p>	<p>제83조 수정의 정리</p> <p>(1) 제2독회에서 수정이 의결되었을 때 의장은 이를 정리하도록 한다.</p> <p>(2) 제2독회에서의 결의는 제3독회의 기반이 된다.</p> <p>(3) 제2독회에서 법률안의 모든 부분이 부결되면, 그 의안은 부결되며, 모든 추가 심의는 중지된다.</p>
<p>§ 84 Dritte Beratung von Gesetzentwürfen</p> <p>Die dritte Beratung erfolgt,</p> <p>a) wenn in zweiter Beratung keine Änderungen beschlossen worden sind, anschließend,</p> <p>b) wenn Änderungen beschlossen sind, am zweiten Tage nach Verteilung der Drucksachen mit den beschlossenen Änderungen, früher nur, wenn auf Antrag einer Fraktion oder von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zwei Drittel der anwesenden Mitglieder des Bundestages es beschließen; bei Gesetzentwürfen der Bundesregierung, die für dringlich erklärt worden sind (Artikel 81 des Grundgesetzes), kann die Fristverkürzung mit der Mehrhei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beschlossen werden. Für den Antrag gilt die Frist des § 20 Abs. 2 Satz 3.</p>	<p>제84조 법률안의 제3독회</p> <p>제3독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된다.</p> <p>a) 제2독회에서 수정이 의결되지 않고, 이어서,</p> <p>b) 수정이 의결되었을 때 수정안에 대한 인쇄물의 배부 후 2일째에 시작하며, 다만 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 의원의 5%의 제안에 따라서 연방의회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의결하였을 경우에만 더 일찍 의결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것으로 설명된 연방정부의 법률안(기본법 제81조)의 경우에는 연방의회의 과반수에 의하여 기간 단축을 의결할 수 있다. 제안을 위해서는 제20조 제2항 제3문의 기간이 적용된다.</p>
<p>Sie beginnt mit einer allgemeinen Aussprache nur dann, wenn in zweiter Beratung keine allgemeine Aussprache stattgefunden hat und sie vom Ältestenrat empfohlen oder von anwesenden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verlangt wird.</p>	<p>제2독회에서 일반적인 토의가 시행되지 않았고, 원로회(Ältestenrat)의 권고가 있거나 연방의회 의원의 5%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제3독회에서 일반적인 토의를 시작한다.</p>
<p>§ 85 Änderungsanträge und Zurückverweisung in dritter Beratung</p> <p>(1) Änderungsanträge zu Gesetzentwürfen in dritter Beratung müssen von einer Fraktion oder von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unterzeichnet sein und können mit einer kurzen Begründung versehen werden. Sie dürfen sich nur auf diejenigen Bestimmungen beziehen, zu denen in zweiter Beratung Änderungen beschlossen wurden. Die Einzelberatung ist auf diese Bestimmungen beschränkt.</p> <p>(2) Vor der Schlußabstimmung kann die Vorlage ganz oder teilweise auch an einen anderen Ausschuß zurückverwiesen werden; § 80 Abs. 1 findet Anwendung. Schlägt der Ausschuß Änderungen gegenüber den Beschlüssen des Bundestages in zweiter Beratung vor, wird die Beschlußempfehlung erneut in zweiter Beratung behandelt.</p>	<p>제85조 제3독회에서 수정제안과 재회부</p> <p>(1) 제3독회에서 법률안 수정 제안은 교섭단체 혹은 재적 5%의 연방의회 의원이 서명하여야 하며 간략한 제안 사유를 기재할 수 있다. 제2독회에서 수정이 의결된 규정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개별 심의는 이 같은 규정에 제한된다.</p> <p>(2) 최종 투표(Schlußabstimmung) 이전에는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다른 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제80조 제1항이 적용된다. 만약 위원회가 제2독회에서 의결의 수정을 제안할 경우 의결권고는 제2독회에서 새로이 처리하여야 한다.</p>
<p>§ 86 Schlußabstimmung</p> <p>Nach Schluß der dritten Beratung wird über den Gesetzentwurf abgestimmt. Sind die Beschlüsse der zweiten Beratung unverändert geblieben, so folgt die Schlußabstimmung unmittelbar. Würden Änderungen vorgenommen, so muß die Schlußabstimmung auf Verlangen einer Fraktion oder von anwesenden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ausgesetzt werden, bis die Beschlüsse zusammengestellt und verteilt sind. Über Verträge mit auswärtigen Staaten und ähnliche Verträge findet keine besondere Schlußabstimmung statt.</p>	<p>제86조 최종투표</p> <p>제3독회 종결 이후에 법률안에 대한 최종투표가 시행된다. 제3독회에서 제2독회에서의 의결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최종투표는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수정하였을 경우에는 최종투표는 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 의원의 5%의 출석으로 그 의결들이 총괄 및 분류될 때까지 연기하여야 한다. 외국과의 조약 및 유사한 조약에 관해서는 별도의 최종 표결이 행하여지지 않는다.</p>

<p>§ 87 Verfahren zu Artikel 113 des Grundgesetzes</p> <p>(1) Macht die Bundesregierung von Artikel 113 Abs. 1 Satz 3 des Grundgesetzes Gebrauch, so ist die Beschlußfassung auszusetzen. Der Gesetzentwurf darf frühestens nach Eingang der Stellungnahme der Bundesregierung oder sechs Wochen nach Zugang des Verlangens der Bundesregierung beim Bundestagspräsidenten auf die Tagesordnung gesetzt werden.</p> <p>(2) Verlangt die Bundesregierung nach Artikel 113 Abs. 2 des Grundgesetzes, daß der Bundestag erneut Beschluß faßt, gilt der Gesetzentwurf als an den federführenden Ausschuß und an den Haushaltsausschuß zurückverwiesen.</p> <p>(3) Ist das beschlossene Gesetz dem Bundesrat gemäß § 122 bereits zugeleitet worden, hat der Präsident den Bundesrat von dem Verlangen der Bundesregierung in Kenntnis zu setzen. In diesem Fall gilt die Zuleitung als nicht erfolgt.</p>	<p>제87조 기본법 제113조를 위한 절차</p> <p>(1) 연방정부가 기본법 제113조 제1항 제3문을 채용할 경우 결의 작성은 연기하여야 한다. 법률안은 빠르면 연방정부의 입장 표명 접수 후 또는 연방정부의 요구 표시 6주 후에 연방의회 의장에 의하여 의사 일정에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p> <p>(2) 연방정부가 기본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연방의회가 새롭게 의결하도록 요구하였을 때 법률안은 소관위원회와 예산위원회에 재교부(zurückverwiesen)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p> <p>(3) 의결된 법률이 제122조에 의해 연방참사원에 이미 이송되었을 때 의장은 연방참사원에 연방정부의 요구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송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p>
<p>§ 88 Behandlung von Entschließungsanträgen</p> <p>(1) Über Entschließungsanträge (§ 75 Abs. 2 Buchstabe c) wird nach der Schlußabstimmung über den Verhandlungsgegenstand oder, wenn keine Schlußabstimmung möglich ist, nach Schluß der Aussprache abgestimmt. Über Entschließungsanträge zu Teilen des Haushaltsplanes kann während der dritten Beratung abgestimmt werden.</p> <p>(2) Entschließungsanträge können einem Ausschuß nur überwiesen werden, wenn die Antragsteller nicht widersprechen. Auf Verlangen einer Fraktion oder von anwesenden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ist die Abstimmung auf den nächsten Sitzungstag zu verschieben.</p>	<p>제88조 결의 제안의 처리</p> <p>(1) 결의 제안에 관해서는(제75조 제2항c) 안건에 대한 최종 표결 후 또는 최종 표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토의의 종료 후에 표결에 부쳐진다. 예산안 일부에 대한 결의 제안에 관해서는 제3독회 동안에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p> <p>(2) 결의 제안은 제안자가 반대하지 않을 경우에만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 출석의원 5%의 요구에 따라서 표결은 다음 회의 일자로 연기하여야 한다.</p>
<p>§ 89 Einberufung des Vermittlungsausschusses</p> <p>Auf Antrag einer Fraktion oder von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kann der Bundestag beschließen, zu Gesetzen, die der Zustimmung des Bundesrates bedürfen, die Einberufung des Vermittlungsausschusses zu verlangen (Artikel 77 Abs. 2 Satz 4 des Grundgesetzes, § 75 Abs. 1 Buchstabe d).</p>	<p>제89조 조정위원회의 소집</p> <p>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 5%의 제안에 따라서 연방의회는 그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법률에 대하여 조정위원회(Vermittlungsausschusses)의 소집을 요구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기본법 제77조 제2항 제4문, 제75조 제1항 d)</p>
<p>§ 90 Beratung von Beschlussempfehlungen des Vermittlungsausschusses</p> <p>(1) Sieht der Einigungsvorschlag des Vermittlungsausschusses eine Änderung des vom Bundestag beschlossenen Gesetzes vor, gilt für die Behandlung des Einigungsvorschlages im Bundestag § 10 der Geschäftsordnung des Vermittlungsausschusses.</p> <p>(2) Die Beratung der Beschlussempfehlung des Vermittlungsausschusses beginnt am zweiten Tag nach der Verteilung als Drucksache, früher nur, wenn auf Antrag einer Fraktion oder von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zwei Drittel der anwesenden Mitglieder des Bundestages es beschließen. Für den Antrag gilt die Frist des § 20 Absatz 2 Satz 3.</p>	<p>제90조 조정위원회의 결의 권고에 대한 심의</p> <p>(1) 조정위원회의 중재 제의가 연방의회에 의하여 의결된 법률의 개정을 예견하였을 경우 연방의회에서의 중재 제의의 처리를 위해서는 조정위원회의 의사규칙 제10조가 유효하다.</p> <p>(2) 조정위원회의 의결 권고의 심의는 인쇄물의 배부 후 2일째 날에 시작되며, 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 의원의 5%, 연방의회 출석의원의 3분의 2가 신청하여 결의하는 경우에만 조기에 시작된다. 제안에 대해서는 제20조 제2항 제3문의 기간이 유효하다.</p>
<p>§ 91 Einspruch des Bundesrates</p> <p>Über den Antrag auf Zurückweisung eines Einspruchs des Bundesrates gegen ein vom Bundestag beschlossenes Gesetz (Artikel 77 Abs. 4 des Grundgesetzes) wird ohne Begründung und Aussprache abgestimmt. Vor der Abstimmung können lediglich Erklärungen abgegeben werden. Über den Antrag wird durch Zählung der Stimmen gemäß § 51 abgestimmt, wenn nicht namentliche Abstimmung verlangt wird (§ 52).</p>	<p>제91조 연방참사원의 이의 제기</p> <p>연방의회에 의하여 의결된 법률에 대한 연방참사원 이의 제기의 재회부 제안(기본법 제77조제4항)에 관해서는 제안 이유와 토의 없이 표결에 부쳐진다. 표결 이전에 해명을 제시할 수 있다. 제안에 관하여 기명 표결이 요구되지 않을 때(제52조) 제51조에 의한 투표수의 셈을 통하여 표결된다.</p>

§ 92 Rechtsverordnungen

Rechtsverordnungen der Bundesregierung, die der Zustimmung des Bundestages bedürfen oder deren Aufhebung der Bundestag innerhalb einer bestimmten Frist verlangen kann, überweist der Präsident im Benehmen mit dem Ältestenrat unmittelbar an die zuständigen Ausschüsse. Dabei hat er eine Frist zu bestimmen, innerhalb der der federführende Ausschuß dem Bundestag einen Bericht vorzulegen hat. Der Bericht des Ausschusses ist auf die Tagesordnung der nächsten Sitzung des Bundestages zu setzen. Legt der Ausschuß diesen Bericht nicht rechtzeitig vor, ist die Vorlage auch ohne Ausschußbericht zur Beschlußfassung auf die Tagesordnung der nächsten Sitzung des Bundestages zu setzen.

§ 93 Zuleitung und Überweisung von Unionsdokumenten

- (1) Dokumente, Berichte, Unterrichtungen, Mitteilungen und sonstige Informationen in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die dem Bundestag von der Bundesregierung oder Organen der Europäischen Union übermittelt werden, sowie Unterrichtungen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ionsdokumente) dienen dem Bundestag als Grundlage zur Wahrnehmung seiner Rechte aus Artikel 23 des Grundgesetzes und zur Mitwirkung in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 (2) Ein Verzicht gegenüber der Bundesregierung auf die Zuleitung von Unionsdokumenten scheidet bei Widerspruch einer Fraktion oder von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aus.
- (3) Unionsdokumente, die Vorhaben oder Unterrichtungen im Sinne der §§ 3 und 8 des Gesetzes über die Zusammenarbeit von Bundesregierung und Deutschem Bundestag in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sowie Entschlüsse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beinhalten, kommen für eine Überweisung grundsätzlich in Betracht. Bei Vorbereitung der Überweisungsentscheidung wird die Beratungsrelevanz des Dokuments in Abstimmung mit den Fraktionen bewertet (Priorisierung). Andere Unionsdokumente werden in geeigneter Form für eine Kenntnisnahme angeboten; auf Verlangen einer Fraktion oder von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findet auch insoweit eine Überweisung statt.
- (4) Die zuständigen Ausschüsse können Unionsdokumente, die ihnen nicht oder noch nicht überwiesen sind, zum Verhandlungsgegenstand erklären. Die Ausschüsse haben dem Vorsitzenden des Ausschusses für die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anzuzeigen, welche Unionsdokumente sie zum Verhandlungsgegenstand erklärt haben.
- (5) Der Vorsitzende des Ausschusses für die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legt dem Präsidenten in Abstimmung mit den anderen Ausschüssen einen Überweisungsvorschlag für die eingegangenen Unionsdokumente und für die von den Ausschüssen zum Verhandlungsgegenstand erklärten Unionsdokumente vor. Der Präsident überweist die Unionsdokumente im Benehmen mit den Fraktionen unverzüglich an einen Ausschuss federführend und an andere Ausschüsse zur Mitberatung. Wird der vorgesehenen oder erfolgten Überweisung von einem Ausschuss oder einer Fraktion widersprochen, entscheidet der Ältestenrat.

제92조 법규 명령

연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거나 연방의회가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의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법규 명령은 의장이 원로회와 협의하여 직접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때 의장은 기록위원회가 연방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이 보고서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의결 작성을 위하여 위원회 보고 없이 의안을 연방의회의 다음 회의 의사 일정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3조 연합 문서의 송부와 회부

- (1) 연방정부가 연방의회 또는 유럽연합의 기관에 송부한 유럽연합의 업무에 대한 기록물, 보고서, 통지문, 공고문 및 기타 정보 그리고 유럽 의회의 통지문은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권리를 대표하고 유럽연합의 업무에 협력하기 위한 기반 역할을 한다.
- (2) 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 의원의 5%가 연방정부에 연합 문서를 송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 (3) 연합 문서, 유럽연합의 업무에서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의 협력에 관한 법의 제3조와 제8조에 따른 계획서 또는 통지서 및 유럽의회의 결의안은 원칙적으로 회부를 고려한다. 회부 결정을 준비할 때 교섭단체와 결의한 문서의 협의 필요성을 평가한다. (우선순위 설정, Priorisierung) 다른 연합 문서는 알아보도록 적합한 형태로 제공하며, 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 의원의 5%가 요청한 것은 회부하도록 한다.
- (4) 소관 위원회는 회부되지 않았거나 대기중인 연합 문서의 처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어떠한 연합문서에 대한 처리 현황을 설명하였는지에 대한 유럽연합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5) 유럽연합의 업무를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출된 연합 문서와 위원회가 처리 상황을 설명한 연합 문서에 대한 회부 제안을 다른 위원회와 표결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의장은 교섭단체와 협력하여 연합 문서를 즉시 소관 위원회와 다른 심의 위원회에 회부한다. 예정되거나 성사된 위원회 또는 교섭단체의 회부가 모순되는 경우에는 원로회가 결정한다.

- (6) Die Titel der überwiesenen Unionsdokumente werden in eine Sammelübersicht aufgenommen, die verteilt wird und aus der ersichtlich ist, welchen Ausschüssen die Vorlagen überwiesen worden sind. Unionsdokumente im Sinne des Absatzes 3 Satz 1, zu denen von keiner Fraktion eine Beratungsrelevanz angemeldet bzw. eine Überweisung vorgeschlagen wird, werden in der Sammelübersicht gesondert aufgeführt.
- (7) Ein Unionsdokument wird als Bundestagsdrucksache verteilt, wenn es der Vorsitzende des Ausschusses für die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bei seinem Überweisungsvorschlag vorsieht oder wenn der federführende Ausschuss eine über die Kenntnisnahme hinausgehende Beschlussempfehlung vorlegt. Andere als in Absatz 3 Satz 1 aufgeführte Unionsdokumente werden nicht als Bundestagsdrucksache verteilt; bezieht sich eine Beschlussempfehlung auf ein derartiges Unionsdokument, wird unter Wahrung der Vertraulichkeit nur über dessen wesentlichen Inhalt berichtet.
- (8) Schriftliche Unterrichtungen der Bundesregierung nach § 9 Absatz 5 des Gesetzes über die Zusammenarbeit von Bundesregierung und Deutschem Bundestag in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müssen auf Verlangen einer Fraktion oder von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innerhalb von drei Sitzungswochen nach Eingang auf die Tagesordnung der Sitzung des Bundestages gesetzt und beraten werden.
- (6) 어떤 위원회에 제안이 회부되면 분할되고 잘보이는 일람표에 회부된 연합 문서의 제목을 기록한다. 교섭단체가 아니라 심의 필요성에 따라서 제3항 제1문에 의하여 등록되고 회부가 추천되는 연합 문서는 일람표에 특별히 열거된다.
- (7) 회부 제안시에 유럽연합의 업무에 관한 위원회의 위원장이 준비하거나 소관위원회가 알기 위하여 송신하는 결의 권고를 제출하면 연합 문서는 연방의회 인쇄물로 배부된다. 제3항제1문에 규정된 것과는 다르게 시행된 연합문서는 연방의회 인쇄물로 배부하지 않으며, 이러한 종류의 연합 문서에 대하여 결의 권고와 연관되면 비밀 유지를 위하여 그의 중요한 내용에 관해서만 보고한다.
- (8) 유럽연합의 업무에서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의 협력에 관한 법의 제9조 제5항에 연방정부의 서면 통지는 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 의원의 5%가 요청하여 연방의회 회의의 의사 일정에 기재된 후에 3회의주 이내에 규정하고 심의하여야 한다.

§ 93a Ausschussberatung von Unionsdokumenten

- (1) Bei der Beratung von Unionsdokumenten prüfen die Ausschüsse auch die Einhaltung der Grundsätze der Subsidiarität und Verhältnismäßigkeit. Wird beabsichtigt, insoweit eine Verletzung zu rügen, ist unverzüglich der Ausschuss für die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zu informieren, um diesem zunächst Gelegenheit zur Stellungnahme zu geben. Beabsichtigt der federführende Ausschuss nur eine Kenntnisnahme, ist dennoch dem Bundestag zu berichten, falls der Ausschuss für die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Bedenken wegen einer Verletzung der Grundsätze der Subsidiarität und Verhältnismäßigkeit geltend macht. Die Ausschüsse berücksichtigen bei ihrer Beschlussfassung die auf der Ebene der Europäischen Union maßgeblichen Fristvorgaben.
- (2) Die Ausschüsse können ihren Beratungen und einer Beschlussempfehlung ein Folgedokument zu dem ihnen überwiesenen Unionsdokument zugrunde legen. Ebenso kann ein federführender Ausschuss wiederholt eine Beschlussempfehlung vorlegen, insbesondere um neueren Entwicklungen Rechnung zu tragen. Die mitberatenden Ausschüsse sind zu unterrichten und erhalten Gelegenheit, innerhalb einer vom federführenden Ausschuss festgelegten Frist eine bereits abgegebene Stellungnahme zu ergänzen oder erneut eine Stellungnahme abzugeben.
- (3) Ein für ein bestimmtes Unionsdokument federführender Ausschuss ist auch nach Abgabe einer Stellungnahme des Bundestages für die Behandlung eines Bemüens der Bundesregierung zur Erzielung eines Einvernehmens mit dem Bundestag nach Einlegung eines Parlamentsvorbehalts zuständig. Absatz 2 Satz 3 gilt entsprechend. Der federführende Ausschuss hat dem Bundestag eine erneute Beschlussempfehlung vorzulegen.

제93a조 연합 문서의 위원회 심의

- (1) 연합 문서의 심의에서 위원회는 지원성(Subsidiarität)과 적절성(Verhältnismäßigkeit)의 원칙 준수도 검사한다. 손상을 추궁할 경우에 유럽연합의 업무에 관한 위원회는 입장표명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것을 즉시로 통보한다. 소관위원회가 지원성과 적절성의 원칙의 손상으로 인하여 유럽연합의 업무에 관한 위원회가 의심을 가지는 경우에 연방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결의 파악시에 유럽연합의 측면에서 중요한 기간 지침을 고려한다.
- (2) 위원회는 심의와 결의 권고가 회부된 연합 문서에 대한 결과 문서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소관 위원회는 특히 신규 개발을 계산하기 위하여 결의 권고를 반복할 수 있다. 공동 심의 위원회는 보고하여야 하고 소관 위원회가 확정된 기간 이내에 이미 제출한 입장표명을 보완하거나 입장표명을 전달하여야 한다.
- (3) 특정 연합 문서를 위한 소관 위원회는 연방정부의 노력을 다루기 위하여 연방의회의 입장표명을 제출한 후에 연방의회와 합의를 목표로 의회 유보를 추가한다. 제2항 제3문이 준용된다. 소관위원회는 연방 의회에 신규 결의 권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Absatz 3 gilt entsprechend für das Einvernehmen zwischen Bundestag und Bundesregierung über die Aufnahme von Verhandlungen über Beitritte und Vertragsänderungen nach § 10 des Gesetzes über die Zusammenarbeit von Bundesregierung und Deutschem Bundestag in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 (5) Die Ausschüsse können Mitglieder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sowie Mitglieder des Rates und der Kommission der Europäischen Union oder deren Beauftragte zu ihren Beratungen in Europaangelegenheiten hinzuziehen. Sie können Unionsdokumente gemeinsam mit Ausschüssen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gleicher Zuständigkeit beraten.
- (6) Die Ausschüsse können zur Vorbereitung von Entscheidungen über Unionsdokumente Delegationen zu einem Ausschuss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mit gleicher Zuständigkeit oder zu anderen Organen der Europäischen Union entsenden.

- (4) 제3항은 유럽연합의 업무에서 연방정부와 독일 연방의회의 공동작업에 관한 법의 제10조에 따라 가입과 계약 수정에 관한 협상의 수정을 위하여 제3항이 적용된다.
- (5) 위원회는 유럽연합을 심의하는 유럽의회의 구성원 및 참사원 구성원 그리고 유럽연합 위원 또는 그 위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동일한 관할로 유럽의회의 위원회와 공동으로 연합 문서를 심의할 수 있다.
- (6) 위원회는 연합 문서에 관하여 결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유럽의회의 위원회 또는 유럽연합의 다른 기관에 대표단을 파견할 수 있다.

§ 93b Ausschuss für die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 (1) Dem gemäß Artikel 45 des Grundgesetzes vom Bundestag zu bestellenden Ausschuss für die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obliegt nach Maßgabe der Geschäftsordnung und der Beschlüsse des Bundestages die Behandlung der Unionsdokumente gemäß § 93 Abs. 1.
- (2) Der Bundestag kann auf Antrag einer Fraktion oder von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den Ausschuss für die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ermächtigen, zu bestimmen bezeichneten Unionsdokumenten oder hierauf bezogenen Vorlagen die Rechte des Bundestages gemäß Artikel 23 des Grundgesetzes gegenüber der Bundesregierung sowie die Rechte, die dem Bundestag in den vertraglichen Grundlagen der Europäischen Union eingeräumt sind, wahrzunehmen. Soweit die Rechte im Integrationsverantwortungsgesetz ausgestaltet sind, kommt eine Ermächtigung nur in Betracht, wenn die Beteiligung des Bundestages nicht in der Form eines Gesetzes erfolgen muss. Auch ohne eine Ermächtigung nach Satz 1 kann der Ausschuss für die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die Rechte des Bundestages gemäß Satz 1 gegenüber der Bundesregierung wahrnehmen, sofern nicht einer der beteiligten Ausschüsse widerspricht. Satz 3 gilt nicht im Bereich der Gemeinsamen Außen- und Sicherheitspolitik sowie für Beschlüsse nach § 9 Absatz 1 des Integrationsverantwortungsgesetzes. Die Rechte des Bundestages nach Artikel 45 Satz 3 des Grundgesetzes kann er nach Maßgabe der nachfolgenden Regelungen wahrnehmen. Das Recht des Bundestages, über eine Angelegenheit der Europäischen Union jederzeit selbst zu beschließen, bleibt unberührt.
- (3) Der Ausschuss für die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hat im Falle einer Ermächtigung gemäß Absatz 2 Satz 1 vor der Abgabe einer Stellungnahme gegenüber der Bundesregierung zu dem Unionsdokument eine Stellungnahme der beteiligten Ausschüsse einzuholen. Will er von der Stellungnahme eines oder mehrerer Ausschüsse abweichen, soll eine gemeinsame Sitzung mit den mitberatenden Ausschüssen anberaumt werden. In eilbedürftigen Fällen können die Vorsitzenden der mitberatenden Ausschüsse entsprechend § 72 Satz 2 schriftlich abstimmen lassen.

제93b조 유럽연합의 업무를 위한 위원회

- (1) 연방의회의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유럽연합의 업무위원회 위원의 임명은 의사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연방의회 위원회는 제93조 제1항에 따라서 연합 문서를 처리한다.
- (2) 연방의회는 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 의원의 5%의 신청에 대하여 유럽연합 업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한다. 특정 표시된 연합 문서 또는 여기에 관련된 법안에 대하여 연방정부에 반하여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연방의회의 권리 및 유럽연합의 계약기반에서 연방의회에 허락된 권리를 이용하여야 한다. 통합책임법(Integrationsverantwortungsgesetzes)에서 부여된 권리에 따르면, 권한은 연방의회가 법의 형태로 관여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닐 때만 권한이 주어진다. 또한 소관 위원회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럽연합 업무 위원회가 제1문에 따른 권한 없이 연방정부에 반하여 제1문에 따른 연방의회의 권리를 이용할 수 있다. 제3문은 공동의 외교정치 및 안전 정치의 범위 그리고 통합책임법의 제9조 제1항에 따른 결의에는 유효하지 않다. 기본법의 제45조 제3문에 따른 연방의회의 권리는 이어지는 규정에 비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유럽연합 업무에 관한 연방의회의 권리는 언제나 자체적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영향을 받지 않는다.
- (3) 유럽연합 업무 위원회가 연합 문서에 대하여 연방정부에 입장표명을 제출하기 이전에 제2항 제1문에 따라 권한을 가진 경우에 소관 위원회의 입장표명을 거두어들여야 한다. 하나 또는 다수 위원회의 입장표명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공동 심의 위원회와 공동 회의 일자를 정하여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공동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제7조 제2항에 따라서 서면으로 결의하게 할 수 있다.

- (4) Will der Ausschuss für die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von seinem Recht gemäß Absatz 2 Satz 3 Gebrauch machen, gilt für das Verfahren Absatz 3 entsprechend. Ein federführender Ausschuss kann unter Angabe einer Begründung verlangen, dass der Ausschuss für die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prüft, ob er von seinem Recht gemäß Absatz 2 Satz 2 Gebrauch macht; bei Ablehnung gilt Absatz 6 entsprechend. Mitberatende Ausschüsse sind zu beteiligen, wenn der federführende und der Ausschuss für die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dies für erforderlich halten; Absatz 3 Satz 3 gilt entsprechend.
- (5) Zur Einberufung einer Sitzung des Ausschusses für die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außerhalb des Zeitplanes oder außerhalb des ständigen Sitzungsortes des Bundestages ist der Vorsitzende des Ausschusses abweichend von § 60 auch berechtigt, wenn es die Terminplanung der zuständigen Organe der Europäischen Union erfordert und die Genehmigung des Präsidenten erteilt worden ist.
- (6) Über den Inhalt und die Begründung der vom Ausschuss für die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beschlossenen Stellungnahme gegenüber der Bundesregierung zu einem Unionsdokument erstattet der Ausschuss für die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einen Bericht, der als Bundestagsdrucksache verteilt wird und innerhalb von drei Sitzungswochen nach der Verteilung auf die Tagesordnung zu setzen ist. Eine Aussprache findet jedoch nur statt, wenn diese von einer Fraktion oder von anwesenden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verlangt wird.
- (7) Der Ausschuss für die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kann bei einem Unionsdokument, das ihm zur Mitberatung überwiesen worden ist, Änderungsanträge zur Beschlussempfehlung des federführenden Ausschusses stellen; der Änderungsantrag muss bis spätestens 18 Uhr des Vortages der Beratung der Beschlussempfehlung zu dem Unionsdokument dem Präsidenten vorgelegt werden.
- (8) Zu den Sitzungen des Ausschusses für die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erhalten deutsche Mitglieder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Zutritt; weitere deutsche Mitglieder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sind als Vertreter zur Teilnahme berechtigt. Die mitwirkungsberechtigten Mitglieder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werden vom Präsiden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auf Vorschlag der Fraktionen des Bundestages, aus deren Parteien deutsche Mitglieder in das Europäische Parlament gewählt worden sind, bis zur Neuwahl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längstens bis zum Ende der Wahlperiode des Deutschen Bundestages berufen. Die berufenen Mitglieder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sind befugt, die Beratung von Verhandlungsgegenständen anzuregen sowie während der Beratungen des Ausschusses für die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Auskünfte zu erteilen und Stellung zu nehmen.
- (9) Der Ausschuss für die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hat Grundsätze über die Behandlung der ihm zugeleiteten Unionsvorlagen aufzustellen und diese zum Ausgangspunkt seiner Beschlussempfehlung an den Bundestag oder seiner Stellungnahme gegenüber der Bundesregierung zu machen.
- (4) 유럽연합 업무 위원회가 제2항 제3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3항의 절차가 이에 유효하다. 소관 위원회는 유럽연합 업무 위원회가 제2항 제2문에 따른 그의 권리의 행사 여부를 조사한 것에 이유 제시를 기재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거절되는 경우에는 제3항 제3문이 유효하다.
- (5) 연방의회 의 시간표 이외 또는 상설 회의 장소 이외에서 유럽연합 업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관할 기관의 일정 계획에 필요하고 의장의 승인이 배부된 경우에는 제60조와 차이가 있어도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권한이 있다.
- (6) 연합 문서에 대하여 연방정부에 비하여 유럽연합 업무 위원회가 의결한 입장표명의 내용과 사유에 관하여 유럽연합 업무 위원회가 연방의회 인쇄본으로 보고서를 배부하고 의사일정에 기재 후 3회의 주간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토의는 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 출석의원 5%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 (7) 유럽연합 업무 위원회는 공동 심의를 위하여 회부된 연합 문서에서 소관 위원회의 결의 권고를 위한 수정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 제안은 연합 문서에 대한 결의권고의 심의 전날의 늦어도 18시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 유럽연합 업무 위원회의 회의에서 유럽의회 독일 구성원은 출입 자격을 가지며, 유럽의회 독일 구성원은 참여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서의 권리가 있다. 유럽议회의 협력 권리가 있는 구성원은 독일 연방의회 의장이 연방의회 교섭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정당에서 유럽의회 독일 구성원으로 선발하게 되며, 유럽 의회의 새로운 선거까지 혹은 최장 독일 연방议회의 선거기간 끝까지 초빙된다. 초빙된 유럽의회 구성원은 협의 상황의 심의를 활성화시키고 유럽연합 업무 위원회가 심의하는 동안에 정보를 배부하고 견해를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 (9) 유럽연합 업무 위원회는 위원회에 송부된 연합 법안의 처리에 관한 원칙을 설정하고 이것이 연방의회에서 결의 권고 혹은 연방정부에 대한 입장표명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p>§ 93c Subsidiaritätsrüge</p> <p>Die Entscheidung, gemäß Artikel 6 des Protokolls über die Anwendung der Grundsätze der Subsidiarität und der Verhältnismäßigkeit eine Subsidiaritätsrüge zu erheben, wird grundsätzlich vom Bundestag getroffen; nach Maßgabe des § 93b Absatz 2 bis 4 kann hierüber auch der Ausschuss für die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entscheiden.</p>	<p>제93c조 지원성 질책</p> <p>지원성 질책(Subsidiaritätsrüge)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원성(Subsidiarität)과 타당성 (Verhältnismäßigkeit)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의정서(Protokoll)의 제6조에 따른 결정은 원칙적으로 연방의회와 합의하고, 제93b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기준에 따라서 유럽연합 업무 위원회도 이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p>
<p>§ 93d Subsidiaritätsklage</p> <p>(1) Beschließt der Bundestag die Erhebung einer Klage nach Artikel 8 des Protokolls über die Anwendung der Grundsätze der Subsidiarität und der Verhältnismäßigkeit (Subsidiaritätsklage), ist für deren Durchführung einschließlich der Prozessführung vor dem Europäischen Gerichtshof der Ausschuss für die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zuständig. Dies schließt die Formulierung der Klageschrift und die Benennung eines Prozessbevollmächtigten ein, falls dies nicht bereits durch den Bundestag beschlossen wurde.</p> <p>(2) Verlangt mindestens ein Viertel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die Erhebung der Klage (Artikel 23 Absatz 1a Satz 2 des Grundgesetzes), ist der Antrag so rechtzeitig zu stellen, dass innerhalb der Klagefrist eine angemessene Beratung im Bundestag gesichert ist. Der Antrag hat mindestens die wesentlichen Klagegründe zu benennen. Absatz 1 gilt mit der Maßgabe, dass die Benennung eines Prozessbevollmächtigten im Einvernehmen mit den Antragstellern erfolgt und bei der Formulierung der Klageschrift sowie der Durchführung des Klageverfahrens die Antragsteller angemessen zu beteiligen sind. Diese haben einen Bevollmächtigten zu benennen. § 69 Absatz 3 Satz 3 ist anzuwenden.</p> <p>(3) Abweichende Auffassungen, die gemäß § 12 Absatz 1 Satz 2 des Integrationsverantwortungsgesetzes von mindestens einem Viertel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vertreten werden, sind ebenfalls in die Klageschrift aufzunehmen. Absatz 2 Satz 3 zweiter Halbsatz, Satz 4 und 5 gilt entsprechend.</p> <p>(4) Fällt der Ablauf der Frist für die Einreichung einer Subsidiaritätsklage auf einen Zeitpunkt außerhalb des Zeitplanes des Bundestages, ist der Ausschuss für die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zur Erhebung der Klage ermächtigt, sofern nicht der Bundestag zuvor hierüber entschieden hat. § 93b Absatz 2 Satz 3 gilt entsprechend.</p>	<p>제93d조 지원성 질책</p> <p>(1) 지원성과 타당성의 원칙(지원성 소송(Subsidiaritätsklage))을 적용하기 위하여 의정서의 제8조에 따른 소송 제기를 연방의회가 의결한 경우에 유럽연합 업무 위원회의 유럽법원에 대한 소송 실시를 포함한 소송 실행에 대한 권한이 있다. 이것이 이미 연방의회에 의하여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 이는 소장(Klageschrift)의 작성과 소송 수권자(Prozessbevollmächtigten)의 지명을 포함한다.</p> <p>(2) 연방의회 의원의 4분의 1이 소송 실시(기본법 제23조 제1a항 제2문)를 요청하는 경우에 소송 기한 이내에 연방의회에서의 적절한 심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시에 제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안서에는 최소한 중요한 소송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안자와 협의하여 소송 수권자의 지명이 이루어지고 소장을 작성하고 소송 절차를 실시할 때 제안자가 적절하게 관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1항이 유효하다. 이것은 수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제69조 제3항 제3문이 적용되어야 한다.</p> <p>(3) 통합책임법의 제12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최소한 연방의회 의원의 4분의 1이 주장하게 되는 서로 다른 견해도 소장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제3문 제4문과 제5문이 유효하다.</p> <p>(4) 연방의회 의원의 시간표 이외의 시점에서 지원성 소송의 제기를 위한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연방의회가 사전에 이에 대하여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럽연합 업무 위원회가 소송을 제기를 위한 권한을 부여 받는다. 제93b조 제2항 제3문이 적용된다.</p>
<p>§ 94 Stabilitätsvorlagen</p> <p>Vorlagen der Bundesregierung gemäß § 8 Abs. 1 des Gesetzes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Stabilitätsvorlagen) werden vom Präsidenten unmittelbar dem Haushaltsausschuß überwiesen. Der Haushaltsausschuß hat die Vorlage spätestens innerhalb der auf den Eingang der Stellungnahme des Bundesrates folgenden Sitzungswoche zu beraten. Der Bericht des Haushaltsausschusses ist spätestens einen Tag vor Ablauf von vier Wochen nach Eingang der Vorlage beim Bundestag auf die Tagesordnung zu setzen. Hat der Haushaltsausschuß bis zu diesem Zeitpunkt keine Beschlüßempfehlung vorgelegt, ist die Vorlage ohne Ausschußbericht auf die Tagesordnung der nächsten Sitzung des Bundestages zu setzen. Änderungsanträge zu Stabilitätsvorlagen dürfen nur auf eine Kürzung der Ausgaben gerichtet sein (§ 42 der Bundeshaushaltsordnung).</p>	<p>제94조 안정화 의안</p> <p>경제의 안전과 성장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화 의안(Stabilitätsvorlagen)) 제8조 제1항에 의한 연방정부의 의안은 의장에 의해 직접 예산위원회에 회부된다. 예산위원회는 의안을 늦어도 연방참사원 입장표명의 접수 다음 회의 주간 이내에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산위원회의 보고는 늦어도 의안의 접수 후 4주의 경과 1일 전에 연방의회에 의해 의사 일정에 기재되어야 한다. 예산위원회가 이 시점까지 아무런 결의 권고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의안은 위원회 보고 없이 연방의회의 다음 회의의 의사 일정에 기재하여야 한다. 안정화 의제에 대한 수정 제안은 지출의 소명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연방예산규칙 제42조)</p>

§ 95 Haushaltsvorlagen

- (1) Haushaltsvorlagen sind der Entwurf des Haushaltsgesetzes und des Haushaltsplans, Änderungsvorlagen zu diesen Entwürfen (Ergänzungsvorlagen), Vorlagen zur Änderung des Haushaltsgesetzes und des Haushaltsplans (Nachtragshaushaltsvorlagen) sowie sonstige den Haushalt betreffende Vorlagen. Alle Haushaltsvorlagen sind dem Haushaltsausschuß zu überweisen; auf ihr Verlangen sind die Fachausschüsse gutachtlich zu hören. § 63 Abs. 2 gilt entsprechend. Der Haushaltsausschuß soll die Stellungnahmen der beteiligten Ausschüsse wiedergeben. Ergänzungsvorlagen überweist der Präsident grundsätzlich ohne erste Beratung. Nachtragshaushaltsvorlagen können auf Vorschlag des Ältestenrates durch den Präsidenten ohne erste Beratung überwiesen und in einer Beratung abschließend behandelt werden.
- (2) Die zweite Beratung des Entwurfs des Haushaltsgesetzes und des Haushaltsplans darf frühestens sechs Wochen, die abschließende Beratung von Nachtragshaushaltsvorlagen frühestens drei Wochen nach Zuleitung erfolgen, es sei denn, die Stellungnahme des Bundesrates geht vor Ablauf der in Artikel 110 Abs. 3 des Grundgesetzes vorgesehenen Frist ein.
- (3) Für die abschließende Beratung von Nachtragshaushaltsvorlagen findet neben den Bestimmungen für die zweite Beratung (§§ 81, 82) die Bestimmung über die Schlußabstimmung (§ 86) entsprechende Anwendung.
- (4) Nachtragshaushaltsvorlagen hat der Haushaltsausschuß spätestens innerhalb der auf den Eingang der Stellungnahme des Bundesrates folgenden Sitzungswoche zu beraten. Der Bericht des Ausschusses ist auf die Tagesordnung der nächsten Sitzung des Bundestages zu setzen. Hat der Ausschuß seine Beratungen nicht innerhalb der Frist abgeschlossen, ist die Vorlage ohne Ausschußbericht auf die Tagesordnung der nächsten Sitzung des Bundestages zu setzen.

§ 96 Finanzvorlagen

- (1) Finanzvorlagen sind alle Vorlagen, die wegen ihrer grundsätzlichen Bedeutung oder ihres finanziellen Umfangs geeignet sind, auf die öffentlichen Finanzen des Bundes oder der Länder erheblich einzuwirken und die nicht Haushaltsvorlagen im Sinne des § 95 sind. Bei Zweifeln über den Charakter der Vorlagen entscheidet der Bundestag nach Anhörung des Haushaltsausschusses.
- (2) Finanzvorlagen werden nach der ersten Beratung dem Haushaltsausschuß und dem Fachausschuß überwiesen. Werden Gesetzentwürfe durch die Annahme eines Änderungsantrags im Ausschuß zu Finanzvorlagen, hat der Ausschuß den Präsidenten hiervon in Kenntnis zu setzen. Dieser überweist die vom Ausschuß beschlossene Fassung dem Haushaltsausschuß; die Überweisung kann mit einer Fristsetzung verbunden sein.
- (3) Finanzvorlagen von Mitgliedern des Bundestages müssen in der Begründung die finanziellen Auswirkungen darlegen. Der Präsident gibt der Bundesregierung Gelegenheit, innerhalb von vier Wochen zu den Auswirkungen auf die öffentlichen Finanzen des Bundes und der Länder Stellung zu nehmen. Der Bericht des Haushaltsausschusses darf erst nach Eingang der Stellungnahme der Bundesregierung oder nach vier Wochen auf die Tagesordnung gesetzt werden.

제95조 예산 의안

- (1) 예산 의안(Haushaltsvorlagen)은 예산법과 예산계획의 초안, 이들 초안에 대한 수정안(보충안), 예산법과 예산계획의 수정안(추가예산안) 또는 그밖에 예산과 관련된 의안들이다. 모든 예산 의안은 예산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예산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서 전문위원회(Fachausschüsse)는 전문적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제63조 제2항은 준용된다. 예산위원회는 참여위원회의 입장을 다시 제시하여야 한다. 의장은 보충안을 원칙적으로 제1독회 없이 회부한다. 추가예산안은 의장에 의하여 원로회의 제의에 따라서 제1독회 없이 회부할 수 있으며, 제1독회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 (2) 연방참사원의 입장 표명이 기본법 제110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경과 이전에 제시되지 않으면 예산법과 예산계획안의 제2독회는 접수 후 빠르면 6주, 추가 예산안의 종결 심의는 빠르면 3주에 행하여야 한다.
- (3) 추가예산안의 최종 심의를 위해서는 제2독회를 위한 규정(제81조, 제82조)과 함께 최종 의결에 관한 규정(제86조)이 준용된다.
- (4) 예산위원회는 추가예산안을 늦어도 연방참사원의 입장표명 다음 회의의 주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보고는 연방의회의 다음 회의의 의사일정에 기재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기간 이내에 그의 심의를 종결하지 않을 경우 의안은 위원회의 보고 없이 연방의회의 다음 회의의 의사일정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6조 재정 의안

- (1) 재정의안(Finanzvorlagen)은 그의 원칙적 의미 또는 재정적 규모로 인해 연방 또는 주의 공공재정에 큰 영향을 주는데 적절하고 제 95조 의미에서의 예산 의안이 아닌 모든 의안들이다. 의안의 성격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 연방의회는 예산위원회로부터 청취 후 결정한다.
- (2) 재정의안은 제1독회 후에 예산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 회부된다. 법률안이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의 접수를 통하여 재정의안이 되는 경우에 위원회는 의장에게 이에 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에 의하여 의결된 작성문을 예산위원회에 회부한다. 회부는 기간 설정과 결합될 수 있다.
- (3) 연방의회 의원의 재정의안은 제안 이유에서 재정적 영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의장은 연방정부에게 4주 이내에 연방정부와 주의 공공재정에서의 영향에 관하여 입장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보고는 연방정부의 입장 표명을 접수한 후 또는 4주 후에 비로서 의사 일정에 기재하여야 한다.

- (4) Soweit die Finanzvorlage auf die öffentlichen Finanzen des Bundes einwirkt, prüft der Haushaltsausschuß ihre Vereinbarkeit mit dem laufenden Haushalt und künftigen Haushalten. Ergibt die Prüfung des Haushaltsausschusses, daß die Vorlage Auswirkungen auf den laufenden Haushalt hat, legt er zugleich mit dem Bericht an den Bundestag einen Vorschlag zur Deckung der Mindereinnahmen oder Mehrausgaben vor; hat sie Auswirkungen auf die künftigen Haushalte, äußert sich der Haushaltsausschuß in seinem Bericht zu den M ölichkeiten künftiger Deckung. Hat die Bundesregierung zu der Vorlage Stellung genommen, äußert sich der Haushaltsausschuß in seinem Bericht zu dieser Stellungnahme. Kann der Haushaltsausschuß keinen Deckungsvorschlag machen, wird die Vorlage dem Bundestag vorgelegt, der nach Begründung durch einen Antragsteller lediglich über die M ölichkeit einer Deckung berät und beschließt. Wird die M ölichkeit zur Deckung auch vom Bundestag verneint, gilt die Vorlage als erledigt.
- (5) Soweit die Finanzvorlage auf die öffentlichen Finanzen der Länder einwirkt, teilt der Haushaltsausschuß in seinem Bericht Art und Umfang der Einwirkungen mit.
- (6) Ergibt der Bericht des Haushaltsausschusses, daß Mitglieder oder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Bedenken gegen die finanziellen Auswirkungen der Vorlage, der Beschlüsse des federführenden Ausschusses oder des Deckungsvorschlages erheben, gibt der Präsident der Bundesregierung Gelegenheit zur Stellungnahme, soweit diese nicht bereits vorliegt. In diesem Fall kann der Bericht erst nach Eingang der Stellungnahme oder nach vier Wochen auf die Tagesordnung gesetzt werden. Hat die Bundesregierung Stellung genommen, soll der Haushaltsausschuß sich zu dieser Stellungnahme dem Bundestag gegenüber äußern.
- (7) Werden in der zweiten Beratung Änderungen mit finanziellen Auswirkungen von grundsätzlicher Bedeutung oder erheblichem finanziellen Umfang beschlossen, erfolgt die dritte Beratung - nach vorheriger Beratung im Haushaltsausschuß - erst in der zweiten Woche nach der Beschlußfassung.
- (8) Berichte des Haushaltsausschusses, die einen Deckungsvorschlag enthalten, können ohne Einhaltung der für die zweite Beratung von Gesetzentwürfen vorgeschriebenen Frist (§ 81 Abs. 1 Satz 2) beraten werden. Für Berichte, die keinen Deckungsvorschlag enthalten, kann die für die zweite Beratung vorgeschriebene Frist weder verkürzt noch aufgehoben werden, es sei denn, daß der Bundestag beschließt, gemäß § 80 Abs. 2 zu verfahren.
- (4) 재정안이 연방의 공공재정에 영향을 주는 한 예산위원회는 현행 예산과 장래 예산과의 일치성을 심사한다. 예산위원회의 심사 결과 의안이 현행 예산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위원회는 동시에 연방의회에 대한 보고로서 수입 감소 또는 지출 초과를 보완하기 위한 제안을 제출한다. 그 제안이 장래 예산에 영향을 줄 경우 예산위원회는 그의 보고에서 추후 보완의 가능성에 관한 견해를 밝힌다. 연방정부가 이 의안에 대하여 입장표명을 하였을 경우 예산위원회가 아무런 보완 제안을 할 수 없을 때 의안은 제안자에 의하여 제안 설명 후에 다만 보완의 가능성에 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연방의회에 제출된다. 보완 가능성이 연방의회에 의하여 부결되었을 경우 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 (5) 재정안이 주의 공공 재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 예산위원회는 그의 보고서에 영향의 종류와 범위를 보고한다.
- (6) 연방정부 위원 또는 그의 수임자가 의안, 기록위원회 결의 또는 보완 제안 등의 재정적 영향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는 것으로 예산위원회의 보고가 있을 경우 의장은 연방정부에 입장표명할 기회를 아직 갖지 못하는 한 이 기회를 준다. 이 경우에 보고는 입장표명 접수 후 비로서 4주 후에 의사 일정에 기재할 수 있다. 연방정부가 입장 표명하였을 경우 예산 위원회는 이 입장표명에 대하여 연방의회에 의견을 밝혀야 한다.
- (7) 제2독회에서 원칙적 의미 또는 중대한 재정적 규모의 재정적 영향을 가진 수정안이 의결될 경우 제3독회는, 예산위원회에서 미리 심의한 후에, 의결 작성 후 2주 이내에 행하여진다.
- (8) 보완 제안을 포함하고 있는 예산위원회의 보고는 법률안의 제2독회를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81조 제1항 제2문)을 준수하지 않고 심의될 수 있다. 보완 제안을 포함하지 않는 보고에 대해서는 연방의회가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하지 않으면, 제2독회를 위하여 규정된 기간이 단축 또는 취소될 수 없다.

§ 96a Verfahren nach dem Parlamentsbeteiligungsgesetz

- (1) Der Vorsitzende eines Ausschusses ist zur Einberufung einer Sitzung außerhalb des Zeitplans zur Beratung über einen Antrag gemäß § 4 Abs. 1 oder § 7 Abs. 1 in Verbindung mit § 4 Abs. 1 des Parlamentsbeteiligungsgesetzes verpflichtet, wenn es eine Fraktion im Ausschuss oder mindestens ein Drittel der Mitglieder des Ausschusses verlangt und die Genehmigung des Präsidenten erteilt worden ist.
- (2) Ein Verlangen auf Befassung des Bundestages gemäß § 4 Abs. 1 Satz 4 oder § 7 Abs. 1 in Verbindung mit § 4 Abs. 1 des Parlamentsbeteiligungsgesetzes muss binnen sieben Tagen seit der Verteilung der Drucksache beim Präsidenten eingehen. Nach Eingang des Verlangens unterrichtet der Präsident die Fraktionen und die Bundesregierung hierüber unverzüglich.

제96a조 의회협력법에 따른 절차

- (1) 위원회 위원장은 교섭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최소 3분의 1이 요청하고 의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의회협력법(Parlamentsbeteiligungsgesetz) 제4조 제1항과 연계된 제4조 제1항 또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심의를 위한 시간 계획 이외에 회의의 소집에 대한 의무가 있다.
- (2) 의회협력법 제4조 제1항과 연계된 제4조 제1항 제4문 또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연방위원회의 위임에 대한 요청은 인쇄물의 배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요청이 접수된 후에는 의장은 이에 관련된 교섭단체와 연방정부에 즉시 보고한다.

<p>(3) Unterrichtet die Bundesregierung den Bundestag gemäß § 6 Abs. 1 des Parlamentsbeteiligungsgesetzes durch einen schriftlichen Bericht, wird dieser als Drucksache verteilt. Das Gleiche gilt für sonstige schriftliche Unterrichtungen des Bundestages. In Fällen des § 5 Abs. 1 des Parlamentsbeteiligungsgesetzes werden gemäß Absatz 2 grundsätzlich die Vorsitzenden und Obleute des Auswärtigen Ausschusses und des Verteidigungsausschusses außerhalb einer Ausschusssitzung unterrichtet. Hat der Bundestag einem Antrag gemäß § 5 Abs. 3 des Parlamentsbeteiligungsgesetzes zugestimmt, gelten für weitere Unterrichtungen die allgemeinen Regelungen.</p> <p>(4) Die Geheimschutz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Anlage 3) findet Anwendung.</p>	<p>(3) 연방정부가 의회협력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연방의회에 서면보고로 보고하게 되면, 이들은 인쇄물로 배부된다. 동일하게 연방의회의 기타 서면 보고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의회협력법 제5조 제1항의 경우에 제2항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외부 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위원장과 대표자는 위원회 회의의 외부에 보고한다. 연방의회가 의회협력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결의한 경우에 또 다른 보고에는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p> <p>(4) 독일 연방의회의 비밀유지 규칙(부록 3)이 적용된다.</p>
<p>§ 97 Mißtrauensantrag gegen den Bundeskanzler</p> <p>(1) Der Bundestag kann auf Antrag gemäß Artikel 67 Abs. 1 des Grundgesetzes dem Bundeskanzler das Mißtrauen aussprechen. Der Antrag ist von einem Viertel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oder einer Fraktion, die mindestens ein Viertel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umfaßt, zu unterzeichnen und in der Weise zu stellen, daß dem Bundestag ein namentlich benannter Kandidat als Nachfolger zur Wahl vorgeschlagen wird. Anträge, die diesen Voraussetzungen nicht entsprechen, dürfen nicht auf die Tagesordnung gesetzt werden.</p> <p>(2) Ein Nachfolger ist, auch wenn mehrere Wahlvorschläge gemacht sind, in einem Wahlgang mit verdeckten Stimmzetteln (§ 49) zu wählen. Er ist nur dann gewählt, wenn er die Stimmen der Mehrhei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auf sich vereinigt.</p> <p>(3) Für den Zeitpunkt der Wahl gilt Artikel 67 Abs. 2 des Grundgesetzes.</p>	<p>제97조 연방수상에 대한 불신임 제안</p> <p>(1) 연방의회는 기본법 제67조 제1항에 의한 제안에 따라 연방수상에 대한 불신임을 제기할 수 있다. 제기는 연방의회 의원 4분의 1 또는 적어도 연방의회 의원 4분의 1을 포함하는 교섭단체가 서명하여야 하며, 또한 지명된 후보자가 후계자로 선출되도록 연방의회에 제안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같은 전제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제안은 의사 일정에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p> <p>(2) 많은 후보 추천안이 제기된다고 하여도 후계자는 비밀 투표지를 이용한 선거절차(제49조)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후계자는 연방의회의원 과반수의 투표가 찬성하였을 때만 선출된다.</p> <p>(3) 선거의 시점은 기본법 제67조 제2항이 적용된다.</p>
<p>§ 98 Vertrauensantrag des Bundeskanzlers</p> <p>(1) Der Bundeskanzler kann gemäß Artikel 68 des Grundgesetzes beantragen, ihm das Vertrauen auszusprechen; für den Zeitpunkt der Abstimmung über den Antrag gilt Artikel 68 Abs. 2 des Grundgesetzes.</p> <p>(2) Findet der Antrag nicht die Zustimmung der Mehrhei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kann der Bundestag binnen einundzwanzig Tagen auf Antrag eines Viertels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gemäß § 97 Abs. 2 einen anderen Bundeskanzler wählen.</p>	<p>제98조 연방수상의 신임 제기</p> <p>(1) 연방수상은 기본법 제68조에 의해 그에 대한 신임을 토의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제기에 대한 표결의 시점은 기본법 제68조 제2항이 적용된다.</p> <p>(2) 제기가 연방의회 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연방의회는 제 97조 제2항에 의해 연방의회 의원 4분의 1의 제안에 따라 21일 이내에 다른 연방수상을 선출할 수 있다.</p>
<p>§ 99 Dringliche Gesetzentwürfe der Bundesregierung nach Artikel 81 des Grundgesetzes</p> <p>(1) Gesetzentwürfe der Bundesregierung, die im Rahmen des Artikels 81 des Grundgesetzes von der Bundesregierung als dringlich bezeichnet oder nach Erklärung des Gesetzgebungsnotstandes dem Bundestag erneut vorgelegt worden sind, müssen auf Verlangen der Bundesregierung auf die Tagesordnung der nächsten Sitzung gesetzt werden. Absetzen von der Tagesordnung ist nur einmal möglich.</p> <p>(2) Der Gesetzentwurf gilt auch dann als abgelehnt, wenn zweimal in der zweiten oder dritten Beratung bei einer Einzel- oder Schlußabstimmung wegen Beschlußunfähigkeit ergebnislos abgestimmt worden ist.</p>	<p>제99조 기본법 제81조에 의한 연방정부의 긴급한 법률안</p> <p>(1) 기본법 제81조의 범위 내에서 연방정부에 의하여 긴급한 것으로 규정되었거나 입법비상의 선언한 후 연방의회에 새롭게 제출된 연방정부의 법률안은 연방정부의 요구에 따라 다음 회의의 의사 일정에 기재되어야 한다. 의사 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1 회만 가능하다.</p> <p>(2) 법률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 때문에 제2독회 또는 제3독회에서 2번의 개별 표결 또는 종결 표결에서 성과 없이 표결되었을 때 역시 부결된 것으로 본다.</p>

<p>§ 100 Große Anfragen</p> <p>Große Anfragen an die Bundesregierung (§ 75 Abs. 1 Buchstabe f) sind dem Präsidenten einzureichen; sie müssen kurz und bestimmt gefaßt sein und können mit einer kurzen Begründung versehen werden. Wird in der Begründung auf andere Materialien verwiesen, findet § 77 Abs. 2 entsprechende Anwendung.</p>	<p>제100조 대질문</p> <p>연방정부에 대한 대질문(Große Anfragen)(제75조 제1항 f)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질문은 간결하고 명백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간단한 증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증거에서 다른 자료가 제시되었을 때 제77조 제2항이 준용된다.</p>
<p>§ 101 Beantwortung und Beratung von Großen Anfragen</p> <p>Der Präsident teilt der Bundesregierung die Große Anfrage mit und fordert zur Erklärung auf, ob und wann sie antworten werde. Nach Eingang der Antwort wird die Große Anfrage auf die Tagesordnung gesetzt. Die Beratung muß erfolgen, wenn sie von einer Fraktion oder von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verlangt wird.</p>	<p>제101조 대질문에 대한 답변과 심의</p> <p>의장은 연방정부에 대질문을 통보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답변할 것인가를 밝히는 것을 요구한다. 답변이 접수된 후 대질문은 의사 일정에 기재된다. 심의는 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 의원 5%에 의해 요구되었을 때 행하여진다.</p>
<p>§ 102 Ablehnung der Beantwortung der Großen Anfragen</p> <p>Lehnt die Bundesregierung überhaupt oder für die nächsten drei Wochen die Beantwortung der Großen Anfrage ab, so kann der Bundestag die Große Anfrage zur Beratung auf die Tagesordnung setzen. Sie muß erfolgen, wenn sie von einer Fraktion oder von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verlangt wird. Vor der Aussprache kann einer der Anfragenden das Wort zu einer zusätzlichen mündlichen Begründung erhalten.</p>	<p>제102조 대질문에 대한 답변의 거부</p> <p>연방정부가 전반적으로 또는 다음 3주간 대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경우 연방의회는 대질문을 토의하기 위해 의사 일정에 기재할 수 있다. 대질문은 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 의원 5%에 의해 요구되었을 때 행하여진다. 토의 전에 질문자의 1명은 구두상 추가 증거를 위한 발언을 얻을 수 있다.</p>
<p>§ 103 Beschränkung der Beratung über Große Anfragen</p> <p>Gehen Große Anfragen so zahlreich ein, daß sie die ordnungsgemäße Erledigung der Geschäfte gefährden, so kann der Bundestag zeitweilig die Beratungen darüber auf einen bestimmten wöchentlichen Sitzungstag beschränken. Auch in diesem Fall kann der Bundestag die Beratung über einzelne Große Anfragen an einem anderen Sitzungstag beschließen.</p>	<p>제103조 대질문에 관한 심의의 제한</p> <p>대질문에 지나치게 질문수가 많아 업무의 질서 있는 처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 연방의회는 종종 대질문에 관한 심의를 매주의 특정 회의일로 제한할 수 있다. 역시 이 경우에 연방의회는 개개의 대질문에 관한 심의를 다른 회의일로 결정할 수 있다.</p>
<p>§ 104 Kleine Anfragen</p> <p>(1) In Kleinen Anfragen (§ 75 Abs. 3) kann von der Bundesregierung Auskunft über bestimmte bezeichnete Bereiche verlangt werden. Die Fragen sind dem Präsidenten einzureichen; sie dürfen keine unsachlichen Feststellungen oder Wertungen enthalten. Eine kurze Begründung kann angefügt werden.</p> <p>(2) Der Präsident fordert die Bundesregierung auf, die Fragen innerhalb von vierzehn Tagen schriftlich zu beantworten; er kann diese Frist im Benehmen mit dem Fragesteller verlängern.</p>	<p>제104조 소질문</p> <p>(1) 소질문(Kleinen Anfragen)(제75조 제3항)에서 연방정부에 대해 일정한 한정된 범위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질문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문은 비현실적 확인 또는 평가를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간단한 증거는 추가할 수 있다.</p> <p>(2) 의장은 14일 이내에 회장은 서면으로 회답할 질문을 연방정부에 요청한다. 의장은 이 기간을 질문제출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p>
<p>§ 105 Fragen einzelner Mitglieder des Bundestages</p> <p>Jedes Mitglied des Bundestages ist berechtigt, kurze Einzelfragen zur mündlichen oder schriftlichen Beantwortung an die Bundesregierung zu richten. Das Nähere wird in Richtlinien geregelt (Anlage 4).</p>	<p>제105조 연방의회 의원의 개별적 질문</p> <p>각 연방의회 의원은 연방정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는 간단한 개별적 질문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 지침에서 규정된다.(부록 4)</p>
<p>§ 106 Aktuelle Stunde und Befragung der Bundesregierung</p> <p>(1) Für die Aussprache über ein bestimmtes bezeichnetes Thema von allgemeinem aktuellem Interesse in Kurzbeiträgen von fünf Minuten (Aktuelle Stunde) gelten, soweit diese Geschäftsordnung nichts anderes vorschreibt, die Richtlinien (Anlage 5).</p>	<p>제106조 당면 시간과 연방정부의 조사</p> <p>(1) 이 의사규칙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당면 관심사의 특정 주제에 관한 토의를 위해서는 기본 지침(부록 5)이 5분의 간단한 기여(당면 시간)에서 유효하다.</p>

(2) In Sitzungswochen findet eine Befragung der Bundesregierung statt, bei der die Mitglieder des Bundestages Fragen von aktuellem Interesse an die Bundesregierung im Rahmen ihrer Verantwortlichkeit, vorrangig jedoch zur vorangegangenen Sitzung der Bundesregierung, stellen können. Das Nähere wird in Richtlinien geregelt (Anlage 7).

(2) 연방정부의 앞선 회의에서 이들의 책임감의 범위에서 연방정부에 대한 실제적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한 질문을 연방의회의 의원들이 행하는 경우에 연방정부의 질문이 회의 주간에 이루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지침에 규정되어 있다.(부록 7)

§ 107 Immunitätsangelegenheiten

- (1) Ersuchen in Immunitätsangelegenheiten sind vom Präsidenten unmittelbar an den Ausschuß für Wahlprüfung, Immunität und Geschäftsordnung weiterzuleiten.
- (2) Dieser hat Grundsätze über die Behandlung von Ersuchen auf Aufhebung der Immunität von Mitgliedern des Bundestages aufzustellen (Anlage 6) und diese Grundsätze zum Ausgangspunkt seiner in Einzelfällen zu erarbeitenden Beschlussempfehlungen an den Bundestag zu machen.
- (3) Die Beratung über eine Beschlussempfehlung ist an eine Fristen nicht gebunden. Sie soll frühestens am dritten Tage nach Verteilung der Vorlage (§ 75 Abs. 1 Buchstabe h) beginnen. Ist die Beschlussempfehlung noch nicht verteilt, wird sie verlesen.
- (4) Vor der Konstituierung des Ausschusses für Wahlprüfung, Immunität und Geschäftsordnung kann der Präsident dem Bundestag in Immunitätsangelegenheiten unmittelbar eine Beschlussempfehlung vorlegen.

제107조 불체포특권 사안

- (1) 불체포특권 사안(Immunitätsangelegenheiten)의 요청은 의장이 직접 “선거심사, 불체포특권과 의사규칙에 관한 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연방의회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청원의 논의에 관한 원칙을 설정하고(부록 6) 그 원칙이 연방의회에 대한 각각의 결의 권고안의 출발점으로 하여야 한다.
- (3) 결의 권고안에 대한 심의는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빨라도 제안안을 배포한 후 3일째 날에 시작하여야 한다.(제75조 제1항 제h호) 의결 권고안이 배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낭독하도록 한다.
- (4) “선거심사, 불체포특권과 의사규칙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이전에는 의장이 불체포특권 사안에 관한 의결 권고안을 연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IX. Behandlung von Petitionen

§ 108 Zuständigkeit des Petitionsausschusses

- (1) Dem gemäß Artikel 45c des Grundgesetzes vom Bundestag zu bestellenden Petitionsausschuß obliegt die Behandlung der nach Artikel 17 des Grundgesetzes an den Bundestag gerichteten Bitten und Beschwerden. Aufgaben und Befugnisse des Wehrbeauftragten des Bundestages bleiben unberührt.
- (2) Soweit sich aus dem Gesetz über die Befugnisse des Petitionsausschusses des Deutschen Bundestages nichts anderes ergibt, werden die Petitionen gemäß den nachfolgenden Bestimmungen behandelt.

IX. 청원의 처리

제108조 청원위원회의 권한

- (1) 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연방의회에 제출된 청원(Petitionen)과 이의 제기의 처리는 기본법 제45c조에 따라 연방의회에 의해 설치된 청원위원회에 위임된다. 연방의회의 방위수입자의 임무와 기능은 변함이 없다.
- (2) 독일 연방의회 청원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청원은 다음 규정에 의해 처리된다.

§ 109 Überweisung der Petitionen

- (1) Der Präsident überweist die Petitionen an den Petitionsausschuß. Dieser holt eine Stellungnahme der Fachausschüsse ein, wenn die Petitionen einen Gegenstand der Beratung in diesen Fachausschüssen betreffen.
- (2) Mitglieder des Bundestages, die eine Petition überreichen, sind auf ihr Verlangen zu den Ausschußverhandlungen mit beratender Stimme zuzuziehen.

제109조 청원의 회부

- (1) 의장은 청원(Petitionen)을 청원위원회(Petitionsausschüssen)에 회부한다. 청원이 전문위원회에서의 심의 대상과 관계가 있을 때 의장은 전문위원회의 입장표명을 첨부한다.
- (2) 청원을 제출한 연방의회 의원은 그의 요구에 따라 심의권을 갖고 위원회 의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 110 Rechte des Petitionsausschusses

- (1) Der Petitionsausschuß hat Grundsätze über die Behandlung von Bitten und Beschwerden aufzustellen und diese Grundsätze zum Ausgangspunkt seiner Entscheidung im Einzelfall zu machen.

제110조 청원위원회의 권리

- (1) 청원위원회(Petitionsausschuß)는 청원과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이 원칙을 개별적인 경우에 청원위원회 결정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 (2) Soweit Ersuchen um Aktenvorlage, Auskunft oder Zutritt zu Einrichtungen unmittelbar an Behörden des Bundes, bundesunmittelbare Körperschaften, Anstalten und Stiftungen des öffentlichen Rechts gerichtet werden, ist das zuständige Mitglied der Bundesregierung zu verständigen.
- (3) Von der Anhörung des Petenten, Zeugen oder Sachverständigen ist das zuständige Mitglied der Bundesregierung rechtzeitig zu unterrichten.

- (2) 기록물, 정보 또는 시설물 출입에 관한 요청이 연방관청, 연방직속기관, 시설 및 공법상의 재단법인에 직접 제출되었을 때 연방정부의 소관 위원은 이를 양해하여야 한다.
- (3) 청원자, 증인 또는 전문가의 청문에 관하여 연방정부의 소관 위원은 적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 111 Übertragung von Befugnissen auf einzelne Mitglieder des Petitionsausschusses

Die Übertragung von Befugnissen nach dem Gesetz nach Artikel 45c des Grundgesetzes auf eines oder mehrere seiner Mitglieder muß der Petitionsausschuß im Einzelfall beschließen. Inhalt und Umfang der Übertragung sind im Beschluß zu bestimmen.

제111조 각 청원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능의 위임

청원위원회는 기본법 제45c조에 의한 법률에 따라서 청원위원회의 한 위원 또는 다수 위원에 대한 기능의 위임(Übertragung)을 개개의 경우에 의결하여야 한다. 위임의 내용과 범위는 결의에서 확정하여야 한다.

§ 112 Beschlußempfehlung und Bericht des Petitionsausschusses

- (1) Der Bericht über die vom Petitionsausschuß behandelten Petitionen wird mit einer Beschlußempfehlung dem Bundestag in einer Sammelübersicht vorgelegt. Der Bericht soll monatlich vorgelegt werden. Darüber hinaus erstattet der Petitionsausschuß dem Bundestag jährlich einen schriftlichen Bericht über seine Tätigkeit.
- (2) Die Berichte werden verteilt und innerhalb von drei Sitzungswochen nach der Verteilung auf die Tagesordnung gesetzt; sie können vom Berichterstatter mündlich ergänzt werden. Eine Aussprache findet jedoch nur statt, wenn diese von einer Fraktion oder von anwesenden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verlangt wird.
- (3) Den Einsendern wird die Art der Erledigung ihrer Petition mitgeteilt. Diese Mitteilung soll mit Gründen versehen sein.

제112조 청원위원회의 결의 권고와 보고

- (1) 청원위원회에서 처리된 청원에 대한 보고는 결의 권고로서 연방의회에 종합개요로 제출된다. 보고는 월간으로 제출된다. 이에 관한 청원위원회는 연방의회에 연간으로 그의 활동에 관하여 서면 보고를 제출한다.
- (2) 보고는 인쇄되어 배부되며 배부 후 3회의 주간 이내에 의사 일정에 기재된다. 보고는 보고자가 구두로 보완할 수 있다. 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 출석의원 5%가 요구하였을 때만 토의도 진행된다.
- (3) 청원 처리 방법은 청원인에게 통보한다. 이 통보는 근거가 갖추어져야 한다.

X. Der Wehrbeauftragte des Bundestages

X. 연방의회의 방위 수임자

§ 113 Wahl des Wehrbeauftragten

Die Wahl des Wehrbeauftragten erfolgt mit verdeckten Stimmzetteln (§ 49).

제113조 방위 수임자의 선거

방위 수임자(Wehrbeauftragten)의 선거는 비밀 투표지로 시행된다.(제49조)

§ 114 Berichte des Wehrbeauftragten

- (1) Die Berichte des Wehrbeauftragten überweist der Präsident dem Verteidigungsausschuß, es sei denn, daß eine Fraktion oder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verlangen, ihn auf die Tagesordnung zu setzen.
- (2) Der Verteidigungsausschuß hat dem Bundestag Bericht zu erstatten.

제114조 방위 수임자의 보고

- (1) 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 출석의원 5%가 방위 수임자의 보고를 의사 일정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면 의장은 그것을 방위위원회에 회부한다.
- (2) 방위위원회는 연방의회에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 115 Beratung der Berichte des Wehrbeauftragten

- (1) Der Präsident erteilt dem Wehrbeauftragten in der Aussprache über die von ihm vorgelegten Berichte das Wort, wenn es von einer Fraktion oder von anwesenden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verlangt worden ist.

제115조 방위 수임자 보고의 심의

- (1) 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 출석의원 5%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방위 수임자가 제출한 보고에 대한 토의에서 그에게 발언권을 허용한다.

(2) Die Herbeirufung des Wehrbeauftragten zu den Sitzungen des Bundestages kann von einer Fraktion oder von anwesenden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verlangt werden; Absatz 1 findet entsprechende Anwendung.

(2) 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 출석의원 5%는 연방의회 회의에 방위 수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제1항이 준용된다.

XI. Beurkundung und Vollzug der Beschlüsse des Bundestages

XI. 연방의회 결의의 등록과 실시

§ 116 Plenarprotokolle

- (1) Über jede Sitzung wird ein Stenographischer Bericht (Plenarprotokoll) angefertigt.
- (2) Die Plenarprotokolle werden an die Mitglieder des Bundestages verteilt.
- (3) Alle anderen Aufnahmen der Verhandlungen des Bundestages, z.B. Tonbandaufnahmen, sind im Parlamentsarchiv niederzulegen.

제116조 회의록

- (1) 각 회의에 관한 속기록(회의록, Plenarprotokoll)을 작성한다.
- (2) 회의록은 연방의회 의원에게 배부한다.
- (3) 연방의회 의사의 모든 다른 작성 기록, 예를 들면 녹음 등은 회의 문서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117 Prüfung der Niederschrift durch den Redner

Jeder Redner erhält die Niederschrift seiner Rede zur Prüfung. Sie ist innerhalb von zwei Stunden an den Stenographischen Dienst zurückzugeben. Die Niederschrift wird in Druck gegeben, wenn der Redner sie nicht fristgerecht zurückgibt. Niederschriften von Reden dürfen vor ihrer Prüfung durch den Redner einem anderen als dem Präsidenten nur mit Zustimmung des Redners zur Einsicht überlassen werden.

제117조 발언자에 의한 원고의 심사

각 발언자는 자기 발언의 원고를 검토하기 위하여 입수한다. 그 원고는 2시간 이내에 속기록 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발언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 인쇄에 부쳐진다. 발언의 원고는 발언자의 동의에 의해서만 발언자가 검토하기 이전에 의장 이외의 다른 자에게 열람하도록 넘겨줄 수 있다.

§ 118 Korrektur der Niederschrift

- (1) Durch Korrekturen, die der Redner an der Niederschrift vornimmt, darf der Sinn der Rede oder ihrer einzelnen Teile nicht geändert werden. Ergeben sich hinsichtlich der Zulässigkeit einer Korrektur Zweifel und wird keine Verständigung zwischen dem Redner und dem Leiter des Stenographischen Dienstes erzielt, so ist die Entscheidung des amtierenden Präsidenten einzuholen.
- (2) Der Präsident kann alle Beweismittel heranziehen.

제118조 원고의 정정

- (1) 발언자가 원고에 대하여 행한 정정에 의하여 발언의 의미 또는 발언의 일부가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정정의 허용에 관하여 의심이 있거나 발언자와 속기록 직원 책임자 사이에 양해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사회 의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 (2) 의장은 모든 등록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 119 Niederschrift von Zwischenrufen

- (1) Ein Zwischenruf, der in die Niederschrift aufgenommen worden ist, wird Bestandteil des Plenarprotokolls, es sei denn, daß er mit Zustimmung des Präsidenten und der Beteiligten gestrichen wird.
- (2) Ein Zwischenruf, der dem Präsidenten entgangen ist, kann auch noch in der nächsten Sitzung gerügt werden.

제119조 발언중 함성에 대한 원고

- (1) 속기 원고에 기록된 발언중 함성(Zwischenruf)은 그것이 의장 또는 관계자의 동의에 의하여 해소되지 않으면 회의록 일부가 된다.
- (2) 의장이 파악하지 못한 발언중 함성은 다음 회의에서 역시 비난받을 수 있다.

§ 120 Beurkundung der Beschlüsse

Außer dem Plenarprotokoll wird über jede Sitzung ein Beschlußprotokoll (Amtliches Protokoll) gefertigt, das vom Präsidenten unterzeichnet wird. Das Amtliche Protokoll wird an die Mitglieder des Bundestages verteilt und gilt als genehmigt, wenn bis zu dem auf die Verteilung folgenden Sitzungstag kein Einspruch erhoben wird.

제120조 결의의 등록

총회 회의록 이외에 각 회의에 관해 의장이 서명한 결의문(공무상 회의록)(Amtliches Protokoll)을 작성한다. 공무상 회의록은 연방의회 의원에게 배부되며 배부 후 다음 회의일까지 아무런 이의제기가 제기되지 않을 때 동의된 것으로 본다.

§ 121 Einspruch gegen das Amtliche Protokoll

Wird gegen das Amtliche Protokoll Einspruch erhoben und dieser nicht durch die Erklärung der Schriftführer erledigt, so befragt der Präsident den Bundestag. Wird der Einspruch für begründet erachtet, so ist die neue Fassung der beanstandeten Stelle dem nächsten Amtlichen Protokoll beizufügen.

제121조 공무상 회의록에 대한 이의제기

공무상 회의록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고 이것이 서기의 해명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의장은 연방의회에 문의한다.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이의제기가 있는 부분의 새 문안이 다음 공무상 회의록에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p>§ 122 Übersendung beschlossener Gesetze</p> <p>(1) Der Präsident des Bundestages übersendet das beschlossene Gesetz unverzüglich dem Bundesrat (Artikel 77 Abs. 1 Satz 2 des Grundgesetzes).</p> <p>(2) Je einen Abdruck des Gesetzesbeschlusses übersendet der Präsident an den Bundeskanzler und an den federführenden Minister und teilt dabei mit, wann die Zuleitung des beschlossenen Gesetzes an den Bundesrat nach Artikel 77 Abs. 1 Satz 2 des Grundgesetzes erfolgt ist.</p> <p>(3) Werden vor Übersendung nach Absatz 1 in der vom Bundestag in der Schlußabstimmung angenommenen Fassung des Gesetzes Druckfehler oder andere offenbare Unrichtigkeiten festgestellt, kann der Präsident im Einvernehmen mit dem federführenden Ausschuß eine Berichtigung veranlassen. Ist das Gesetz gemäß Absatz 1 bereits übersandt, macht der Präsident nach Einwilligung des federführenden Ausschusses den Präsidenten des Bundesrates auf die Druckfehler oder andere offenbare Unrichtigkeiten mit der Bitte aufmerksam, sie im weiteren Gesetzgebungsverfahren zu berichtigen. Von dieser Bitte ist dem Bundeskanzler und dem federführenden Minister Mitteilung zu machen.</p>	<p>제122조 의결된 법률의 이송</p> <p>(1) 연방의회 의장은 의결된 법률을 지체 없이 연방참사원에 이송한다. (기본법 제77조 제1항제2문)</p> <p>(2) 의장은 의결된 법률의 모든 인쇄물을 연방수상과 기록담당 각료에게 송부하고 기본법 제77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의결된 법률의 이송이 언제 행하여지는지를 연방참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3) 제1항에 의한 이송 이전에 연방의회가 종결 표결에서 작성한 법률문 작성에서 오자(Druckfehler) 또는 다른 명백한 부정확성이 확인되었을 경우 의장은 기록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정을 유도할 수 있다. 법률이 제1항에 의하여 이미 이송되었을 경우 의장은 기록위원회와 합의한 바에 따라 연방참사원 의장에게 오자 또는 다른 명백한 부정확성에 대해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정정하도록 청원하여 논여겨 보도록 한다. 이와 같은 청원에 관해 연방수상 또는 기록담당 각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 122a Elektronische Dokumente</p> <p>(1) Soweit für die Einbringung von Vorlagen Schriftform vorgesehen ist, genügt dieser Form die Aufzeichnung als elektronisches Dokument, wenn dieses für die weitere Bearbeitung geeignet ist.</p> <p>(2) Das Dokument muss mit einer elektronischen Signatur nach dem Signaturgesetz versehen sein. Das Nähere regeln Ausführungsbestimmungen, die vom Ältestenrat zu erlassen sind.</p>	<p>제122a조 전자 문서</p> <p>(1) 의안을 제출하기 위하여 인쇄본 형태로 준비하는 하는 경우 이것이 추가 작업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형식을 전자 문서로 기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p> <p>(2) 문서는 서명법에 따라서 전자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자세한 것은 원로회가 공포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p>
<p>§ 123 Fristberechnung</p> <p>(1) Bei Fristen wird der Tag der Verteilung der Drucksache nicht eingerechnet; sie gilt als verteilt, wenn sie für die Mitglieder des Bundestages elektronisch abrufbar oder in ihre Fächer verteilt worden ist.</p> <p>(2) Die Fristen gelten auch dann als gewahrt, wenn infolge technischer Schwierigkeiten oder aus zufälligen Gründen für einzelne Mitglieder des Bundestages eine Drucksache erst nach der allgemeinen Verteilung elektronisch abrufbar oder in ihre Fächer verteilt worden ist.</p>	<p>제123조 기간의 계산</p> <p>(1) 인쇄물의 배부일은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으며, 인쇄물을 연방의회 의원이 전자식으로 불러오거나 함(□cher)에 배부되었을 때 배부된 것으로 본다.</p> <p>(2) 기술적 장애 또는 우발적 이유로 인하여 연방의회의 개별 의원이 일 반적 배부 후에 비로소 인쇄물을 전자식으로 불러오거나 그들의 함에 배부되었을 때 기간이 지켜진 것으로 본다.</p>
<p>§ 124 Wahrung der Frist</p> <p>Bei Berechnung einer Frist, innerhalb der eine Erklärung gegenüber dem Bundestag abzugeben oder eine Leistung zu bewirken ist, wird der Tag, an dem die Erklärung oder Leistung erfolgt, nicht mitgerechnet. Ist danach die Erklärung oder Leistung an einem Sonnabend, Sonntag oder einem am Sitz des Bundestages gesetzlich anerkannten Feiertag zu bewirken, so tritt an dessen Stelle der nächstfolgende Werktag. Die Erklärung oder Leistung ist während der üblichen Dienststunden, spätestens aber um 18 Uhr, zu bewirken.</p>	<p>제124조 기간의 존중</p> <p>기간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기간 이내에 연방의회에 대해 해명 또는 이행(Leistung)을 행하는 경우 해명 또는 이행을 행하는 그 날은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명 또는 이행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연방 의회에서 법적으로 인정한 공휴일에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이 이를 대신한다. 해명 또는 이행은 보통 근무시간중에는 늦어도 오후 6시까지 행하여야 한다.</p>
<p>§ 125 Unerledigte Gegenstände</p> <p>Am Ende der Wahlperiode des Bundestages gelten alle Vorlagen als erledigt. Dies gilt nicht für Petitionen und für Vorlagen, die keiner Beschlußfassung bedürfen.</p>	<p>제125조 미결의 안건</p> <p>연방의회의 임기가 끝날 때 모든 의안은 처리된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결의문 작성이 필요하지 않는 청원과 의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XII. Abweichungen und Auslegung dieser Geschäftsordnung	XII. 의사규칙의 예외와 해석
<p>§ 126 Abweichungen von dieser Geschäftsordnung</p> <p>Abweichungen von den Vorschriften dieser Geschäftsordnung können im einzelnen Fall mit Zweidrittelmehrheit der anwesenden Mitglieder des Bundestages beschlossen werden, wenn die Bestimmungen des Grundgesetzes dem nicht entgegenstehen.</p> <p>Fußnote (+++ Zur Nichtanwendung vgl. § 126a Abs. 2 +++)</p>	<p>제126조 의사규칙의 예외</p> <p>의사규칙의 규정에서 예외(Abweichung)는 기본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때 개별적인 경우에 연방의회 출석의원 3분의 2로 의결될 수 있다.</p> <p>각주 (+++ 적용하지 않는 조항 제126a조 제2항 +++)</p>
<p>§ 126a Besondere Anwendung von Minderheitsrechten in der 18. Wahlperiode</p> <p>(1) Für die Dauer der 18. Wahlperiode gelten folgende Regelunge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uf Antrag von 120 seiner Mitglieder setzt der Bundestag einen Untersuchungsausschuss gemäß Artikel 44 des Grundgesetzes ein. Die Zahl der Mitglieder des Untersuchungsausschusses wird nach dem vom Bundestag beschlossenen Verteilverfahren (Bundestagsdrucksache 18/212) so bestimmt, dass die Fraktionen, die nicht die Bundesregierung tragen, gemeinsam ein Viertel der Mitglieder stellen. 2. Der Verteidigungsausschuss stellt sicher, dass auf Antrag aller Ausschussmitglieder der Fraktionen, die nicht die Bundesregierung tragen, gemäß Artikel 45a Absatz 2 des Grundgesetzes eine Angelegenheit der Verteidigung zum Gegenstand seiner Untersuchung gemacht wird und die Rechte, die nach dem Untersuchungsausschussgesetz einem Viertel der Ausschussmitglieder zustehen, von diesen Mitgliedern entsprechend geltend gemacht werden können. 3. Auf Antrag von 120 Mitgliedern des Bundestages beruft der Präsident den Bundestag ein. 4. Auf Antrag von 120 seiner Mitglieder erhebt der Bundestag wegen Verstoßes eines Gesetzgebungsakts der Europäischen Union gegen das Subsidiaritätsprinzip Klage vor dem Gerichtshof der Europäischen Union entsprechend Artikel 23 Absatz 1a des Grundgesetzes. 5. Auf Antrag von 120 seiner Mitglieder macht der Bundestag deren Auffassung entsprechend § 12 Absatz 1 des Integrationsverantwortungsgesetzes in Verbindung mit § 93d in der Klageschrift deutlich, sofern sie die Erhebung einer Klage wegen Verstoßes eines Gesetzgebungsakts der Europäischen Union gegen das Subsidiaritätsprinzip vor dem Gerichtshof der Europäischen Union nicht stützen. 6. Einem Verlangen, die Bundesregierung möe nach § 8 Absatz 5 des Gesetzes über die Zusammenarbeit von Bundesregierung und Deutschem Bundestag in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die Gründe erläutern, aus denen nicht alle Belange einer Stellungnahme des Bundestages berücksichtigt wurden, tritt der Bundestag dann bei, wenn es von 120 seiner Mitglieder erhoben wird. 	<p>제126a조 18. 임기에서 소수자 권리의 특별한 적용</p> <p>(1) 18. 임기 기간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유효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방의회는 120명의 의원의 제안에 따라서 기본법 제44조에 의한 조사위원회(Untersuchungsausschuss)를 설치한다. 조사위원회의 의원수는 연방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교섭단체와 의원 4분의 1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연방의회가 의결한 분할 절차(연방의회 관보 18/212)에 따라 결정한다. 2. 기본법 제45a조 제2항에 따라 연방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교섭단체의 모든 위원회 위원의 제안에 이들의 조사 대상인 국방 업무와 조사위원회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4분의 1이 권한이 있고 이들 위원들이 유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하여 국방위원회가 설치된다. 3. 연방의회의 120명 의원의 제안에 의장은 연방의회를 소집한다. 4. 기본법 제23조 제1a항에 해당하는 유럽연합 법원의 지원원칙 소송에 대하여 유럽연합의 입법 조항이 충돌하기 때문에 연방의회의 120명 의원의 제안에 연방의회가 요청한다. 5. 유럽연합 법원의 지원원칙에 대하여 유럽연합의 입법 조항이 충돌하기 때문에 소송의 조사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연방의회의 120명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소송장에 제93d조와 연계하여 통합책임법의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의견을 연방의회가 명확히 하였다. 6. 연방의회의 120명 의원이 제안하는 경우에 유럽연합의 업무에서 연방정부와 독일 연방의회의 공동작업에 관한 법의 제8조 제5항에 따라서 연방정부는 그 원인을 설명하고 연방의회의 입장 표명에 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 7. Einem Verlangen nach Unterrichtung des Haushaltsausschusses gemäß § 5 Absatz 4 des ESM-Finanzierungsgesetzes durch den von Deutschland nach Artikel 5 Absatz 1 des Vertrags zur Einrichtung des Europäischen Stabilitätsmechanismus ernannten Gouverneur und dessen Stellvertreter wird der Haushaltsausschuss dann beitreten, wenn es von allen Ausschussmitgliedern der Fraktionen, die nicht die Bundesregierung tragen, erhoben wird.
- 8. Bei Anträgen oder Vorlagen der Bundesregierung gemäß § 5 Absatz 6 des ESM-Finanzierungsgesetzes oder § 4 Absatz 5 des Stabilisierungsmechanismusgesetzes führt der Haushaltsausschuss auf Verlangen aller Ausschussmitglieder der Fraktionen, die nicht die Bundesregierung tragen, eine öffentliche Anhörung entsprechend § 70 Absatz 1 Satz 2 durch.
- 9. Bei überwiesenen Vorlagen führt der federführende Ausschuss auf Verlangen aller Ausschussmitglieder der Fraktionen, die nicht die Bundesregierung tragen, eine öffentliche Anhörung entsprechend § 70 Absatz 1 Satz 2 durch.
- 10. Eine Plenarberatung statt einer erweiterten öffentlichen Ausschusssitzung (§ 69a Absatz 5) findet statt, wenn es von allen Mitgliedern des Ausschusses, die nicht die Bundesregierung tragen, verlangt wird.
- 11. Auf Antrag von 120 seiner Mitglieder setzt der Bundestag entsprechend § 56 Absatz 1 eine Enquete-Kommission ein.

(2) Auf die Regelungen nach Absatz 1 findet § 126 keine Anwendung.

§ 127 Auslegung dieser Geschäftsordnung

- (1) Während einer Sitzung des Bundestages auftretende Zweifel über die Auslegung dieser Geschäftsordnung entscheidet der Präsident für den Einzelfall. Im übrigen obliegt die Auslegung dieser Geschäftsordnung dem Ausschuss für Wahlprüfung, Immunität und Geschäftsordnung; der Präsident, ein Ausschuss, eine Fraktion, ein Viertel der Mitglieder des Ausschusses für Wahlprüfung, Immunität und Geschäftsordnung oder fünf vom Hunder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können verlangen, daß die Auslegung dem Bundestag zur Entscheidung vorgelegt wird.
- (2) Wird ein entsprechendes Verlangen gemäß Absatz 1 Satz 2 nicht vorgebracht, entscheidet der Ausschuss für Wahlprüfung, Immunität und Geschäftsordnung, in welcher Form seine Auslegung bekanntzumachen ist.

§ 128 Rechte des Ausschusses für Wahlprüfung, Immunität und Geschäftsordnung

Der Ausschuss für Wahlprüfung, Immunität und Geschäftsordnung kann Fragen aus seinem Geschäftsbereich beraten und dem Bundestag Empfehlungen unterbreiten (§ 75 Abs. 1 Buchstabe h).

Anlage 1 Verhaltensregeln fü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Text siehe: BTGO1980Anl 1)

Anlage 2 Registrierung von Verbänden und deren Vertreter (Text siehe: BTGO1980Anl 2)

Anlage 3 Geheimschutz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Text siehe: BTGO1980Anl 3)

7. 연방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교섭단체의 모든 위원회 위원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계약의 제5조 제1항에 따른 독일의 ESM-재정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예산위원회의 통지에 따른 요구는 유럽 안정화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임명한 주지사와의 대표자는 예산위원회에 가입한다.

8. ESM-재정법의 제5조 제6항 또는 안정화기구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연방정부의 제안과 요청에서 교섭단체의 모든 위원회 위원의 요청에 의한 예산위원회가 설치되며, 교섭단체는 연방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며 제70조 제1항 제2문에 해당하는 공공 청취를 실시한다.

9. 연방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며 제70조 제1항 제2문에 해당하는 공공 청취를 실시하는 교섭단체의 모든 위원회 위원의 요청으로 소관위원회가 설치된다.

10. 연방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 확장된 공공 위원회 회의(제69a조 제5항) 대신에 전체 협의가 개최된다.

11. 연방의회의 120명 의원의 제안에 의하여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연방의회는 조사 위원회(Enquete-Kommission)를 설치한다.

(2) 제1항에 따른 규정에서 제126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27조 이 의사규칙의 해석

(1) 연방의회의 회의 중에 제기되는 이 의사규칙의 해석에 관한 의문은 의장이 개별적인 경우에 결정한다. 그밖의 경우 이 의사규칙의 해석은 선거심사(Wahlprüfung), 면책특권(Immunität) 및 의사규칙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의장, 위원회, 교섭단체, 선거심사, 면책특권 및 의사규칙 위원회 위원 4분의 1 또는 연방의회 의원 5%는 해석이 연방의회에서 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 제2문에 따른 상응한 요청이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선거심사, 면책특권 및 의사규칙 위원회는 어떤 형식에서 해석이 공시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제128조 선거심사, 면책특권 및 의사규칙 위원회의 권리

선거심사, 면책특권 및 의사규칙 위원회는 의사 업무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심의할 수 있고 또한 연방의회에 권고를 제출할 수 있다.(제75조 제1항 h)

부록 1. 독일 연방의회 의원 행위규칙(참조: BTGO1980Anl 1)

부록2. 단체의 등록과 그의 대표자(참조: BTGO1980Anl 2)

부록 3. 독일 연방의회 비밀유지규칙(참조: BTGO1980Anl 3)

Anlage 4 Richtlinien für die Fragestunde und für die schriftlichen Einzel- fragen (Text siehe: BTGO1980Anl 4)	부록 4. 질문 시간과 서면상 개별질문을 위한 지침(참조: BTGO- 1980Anl 4)
Anlage 5 Richtlinien für Aussprachen zu Themen von allgemeinem aktuellen Interesse (Text siehe: BTGO1980Anl 5)	부록 5. 일반적인 당면관심사의 주체에 대한 토의를 위한 지침(참조: BTGO1980Anl 5)
Anlage 6 Grundsätze in Immunitätsangelegenheiten und in Fällen der Genehmigung gemäß § 50 Abs. 3 StPO und § 382 Abs. 3 ZPO sowie bei Ermächtigungen gemäß § 90b Abs. 2, § 194 Abs. 4 StGB (Text siehe: BTGO1980Anl 6)	부록 6. 면책특권 문제 및 형사소송법(StPO) 제50조 제3항과 민사소송 법(ZPO) 제382조 제3항에 의한 승인의 경우 또한 형법(StGB) 제90b조 제2항과 제194조 제4항에 의한 수권의 경우의 원칙 (참조: BTGO1980Anl 6)
Anlage 6 Beschluß des Deutschen Bundestages betr. Aufhebung der Immunität von Mitgliedern des Bundestages (Text siehe: BT- GO1980Bes)	부록 6. 연방의회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관한 독일 연방의회의 의결 (참조: BTGO1980Bes)
Anlage 7 Befragung der Bundesregierung (Text siehe: BTGO1980Anl 7)	부록 7. 연방정부의 문의(참조: BTGO1980Anl 7)
Anlage 8 (weggefallen)	부록 8. (삭제함)

(2) 일본 국회법

国会法 (昭和二十二年四月三十日法律第七十九号)	국회법 (1947년 4월 30일 법률 제79호)
最終改正：平成二六年六月二七日法律第八六号	최종 개정: 2014년 6월 27일 법률 제86호
第一章 国会の召集及び開会式	제1장 국회의 소집 및 개회식
<p>第一条 国会の召集詔書は、集会の期日を定めて、これを公布する。</p> <p>2 常会の召集詔書は、少なくとも十日前にこれを公布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3 臨時会及び特別会(日本国憲法第五十四条により召集された国会をいう)の召集詔書の公布は、前項によることを要しない。</p>	<p>제1조 국회 소집 조서는 집회 기일을 정하여 이를 공포한다.</p> <p>2. 정기국회의 소집 조서는, 적어도 10일 전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p> <p>3. 임시국회 및 특별국회(일본국 헌법 제54조에 의해 소집된 국회를 말한다)의 소집 조서 공포는 전항에 따른 것을 요하지 않는다.</p>
<p>第二条 常会は、毎年一月中に召集するのを常例とする。</p> <p>第二条の二 特別会は、常会と併せてこれを召集することができる。</p> <p>第二条の三 衆議院議員の任期満了による総選挙が行われたときは、その任期が始まる日から三十日以内に臨時会を召集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その期間内に常会が召集された場合又はその期間が参議院議員の通常選挙を行うべき期間にかか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p> <p>2 参議院議員の通常選挙が行われたときは、その任期が始まる日から三十日以内に臨時会を召集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その期間内に常会若しくは特別会が召集された場合又はその期間が衆議院議員の任期満了による総選挙を行うべき期間にかか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p>	<p>제2조 정기국회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는 것을 상례(常例)로 한다.</p> <p>제2조의2 특별국회는, 정기국회와 함께 이를 소집할 수 있다.</p> <p>제2조의3 중의원 의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총선거가 실시되었을 때에는, 그 임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그 기간 내에 정기국회가 소집된 경우, 또는 그 기간이 참의원 의원의 통상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기간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참의원 의원의 통상 선거가 실시되었을 때에는, 그 임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그 기간 내에 정기국회 혹은 특별국회가 소집된 경우, 또는 그 기간이 중의원 의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기간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第三条 臨時会の召集の決定を要求するには、いずれかの議院の総議員の四分の一以上の議員が連名で、議長を経由して内閣に要求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제3조 임시국회 소집의 결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중 어느 한 쪽 의원의 총 의원 4분의 1 이상 의원이 연명하고, 의장을 경유하여 내각에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p>
<p>第四条 削除</p>	<p>제4조 삭제</p>
<p>第五条 議員は、召集詔書に指定された期日に、各議院に集会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제5조 의원은 소집 조서에 지정된 기일에 각 의원에 집회하여야 한다.</p>
<p>第六条 各議院において、召集の当日に議長若しくは副議長がないとき、又は議長及び副議長が共にないときは、その選挙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p>	<p>제6조 각 의원에서 소집 당일에 의장 혹은 부의장이 없을 때, 또는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없을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p>
<p>第七条 議長及び副議長が選挙されるまでは、事務総長が、議長の職務を行う。</p>	<p>제7조 의장 및 부의장이 선거될 때까지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이행한다.</p>
<p>第八条 国会の開会式は、会期の始めにこれを行う。</p>	<p>제8조 국회의 개회식은 회기 개시 시에 실시한다.</p>
<p>第九条 開会式は、衆議院議長が主宰する。</p> <p>2 衆議院議長に事故があるときは、参議院議長が、主宰する。</p>	<p>제9조 개회식은 중의원 의장이 주재한다.</p> <p>2. 중의원 의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 의장이 주재한다.</p>
第二章 国会の会期及び休会	제2장 국회의 회기 및 휴회
<p>第十条 常会の会期は、百五十日間とする。但し、会期中に議員の任期が満限に達する場合には、その満限の日をもつて、会期は終了するものとする。</p>	<p>제10조 정기국회의 회기는 150일로 한다. 단, 회기 중에 의원의 임기가 만료에 달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로 회기가 종료한다.</p>
<p>第十一条 臨時会及び特別会の会期は、両議院一致の議決で、これを定める。</p>	<p>제11조 임시국회 및 특별국회의 회기는 양 의원의 일치한 의결로 이를 정한다.</p>

<p>第十二条 国会の会期は、両議院一致の議決で、これを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p> <p>2 会期の延長は、常会にあつては一回、特別会及び臨時会にあつては二回を超えてはならない。</p>	<p>제12조 국회의 회기는 양 의원의 일치하는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p> <p>2. 회기의 연장은 정기국회에서는 1회, 특별국회 및 임시국회에는 2회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p>
<p>第十三条 前二条の場合において、両議院の議決が一致しないとき、又は参議院が議決しないときは、衆議院の議決したところによる。</p>	<p>제13조 전 2조의 경우, 양 의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또는 참 의원이 의결하지 않을 때에는 중의원의 의결에 따른다.</p>
<p>第十四条 国会の会期は、召集の当日からこれを起算する。</p>	<p>제14조 국회의 회기는 소집 당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p>
<p>第十五条 国会の休会は、両議院一致の議決を必要とする。</p> <p>2 国会の休会中、各議院は、議長において緊急の必要があると認めたととき、又は総議員の四分の一以上の議員から要求があつたときは、他の院の議長と協議の上、会議を開くことができる。</p> <p>3 前項の場合における会議の日数は、日本国憲法及び法律に定める休会の期間にこれを算入する。</p> <p>4 各議院は、十日以内においてその院の休会を議決することができる。</p>	<p>제15조 국회의 휴회는 양 의원의 일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p> <p>2. 국회의 휴회 중, 각 의원은 의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또는 총 의원의 4분의 1이상의 의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른 원의 의장과 협의한 후, 회의를 열 수 있다.</p> <p>3. 전항의 경우의 회의 일수는, 일본국 헌법 및 법률에 정하는 휴회 기간에 이를 산입한다.</p> <p>4. 각 의원은 10일 이내에 그 원의 휴회를 의결할 수 있다.</p>
<p>第三章 役員及び経費</p>	<p>제3장 임원 및 경비</p>
<p>第十六条 各議院の役員は、左の通りとする。</p> <p>一 議長 二 副議長 三 仮議長 四 常任委員長 五 事務総長</p>	<p>제16조 각 의원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p> <p>1. 의장 2. 부의장 3. 임시의장 4. 상임위원장 5. 사무총장</p>
<p>第十七条 各議院の議長及び副議長は、各々一人とする。</p>	<p>제17조 각 의원의 의장 및 부의장은 각각 1인으로 한다.</p>
<p>第十八条 各議院の議長及び副議長の任期は、各々議員としての任期による。</p>	<p>제18조 각 의원의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각각 의원으로서의 임기에 따른다.</p>
<p>第十九条 各議院の議長は、その議院の秩序を保持し、議事を整理し、議院の事務を監督し、議院を代表する。</p>	<p>제19조 각 의원의 의장은 그 의원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의원의 사무를 감독하고, 의원을 대표한다.</p>
<p>第二十条 議長は、委員会に出席し発言することができる。</p>	<p>제20조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第二十一条 各議院において、議長に事故があるとき又は議長が欠けたときは、副議長が、議長の職務を行う。</p>	<p>제21조 각 의원에서 의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이행한다.</p>
<p>第二十二条 各議院において、議長及び副議長に共に事故があるときは、仮議長を選挙し議長の職務を行わせる。</p> <p>2 前項の選挙の場合には、事務総長が、議長の職務を行う。</p> <p>3 議院は、仮議長の選任を議長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p>	<p>제22조 각 의원에서 의장 및 부의장에게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거하여 의장의 직무를 이행하도록 한다.</p> <p>2. 전항의 선거의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이행한다.</p> <p>3. 의원은 임시의장의 선임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第二十三条 各議院において、議長若しくは副議長が欠けたとき、又は議長及び副議長が共に欠けたときは、直ちにその選挙を行う。</p>	<p>제23조 각 의원에서 의장 혹은 부의장이 없을 때, 또는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없을 때에는 즉시 선거를 실시한다.</p>
<p>第二十四条 前条前段の選挙において副議長若しくは議長に事故がある場合又は前条後段の選挙の場合には、事務総長が、議長の職務を行う。</p>	<p>제24조 전조 전단의 선거에서 부의장 혹은 의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또는 전조 후단의 선거의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이행한다.</p>
<p>第二十五条 常任委員長は、各議院において各々その常任委員の中からこれを選挙する。</p>	<p>제25조 상임위원장은 각 의원에서 각각 상임위원 중에서 선거한다.</p>
<p>第二十六条 各議院に、事務総長一人、参事その他必要な職員を置く。</p>	<p>제26조 각 의원에 사무총장 1인, 참사,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p>
<p>第二十七条 事務総長は、各議院において国会議員以外の者からこれを選挙する。</p>	<p>제27조 사무총장은 각 의원에서 국회의원 이외의 자로부터 선거한다.</p>

<p>2 参事その他の職員は、事務総長が、議長の同意及び議院運営委員会の承認を得てこれを任免する。</p>	<p>2. 참사, 그 밖의 직원은 사무총장이 의장의 동의 및 의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임면한다.</p>
<p>第二十八条 事務総長は、議長の監督の下に、議院の事務を統理し、公文に署名する。</p> <p>2 参事は、事務総長の命を受け事務を掌理する。</p>	<p>제28조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 하에 의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공문에 서명한다.</p> <p>2. 참사는 사무총장의 명령을 받아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p>
<p>第二十九条 事務総長に事故があるとき又は事務総長が欠けたときは、その予め指定する参事が、事務総長の職務を行う。</p>	<p>제29조 사무총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또는 사무총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참사가 사무총장의 직무를 이행한다.</p>
<p>第三十条 役員は、議院の許可を得て辞任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閉会中は、議長において役員を辞任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p>	<p>제30조 임원은 의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단, 폐회 중에는 의장이 임원의 사임을 허가할 수 있다.</p>
<p>第三十条之二 各議院において特に必要があるときは、その院の議決をもつて、常任委員長を解任することができる。</p>	<p>제30조의2 각 의원에서 특히 필요할 때에는, 그 원의 의결로 상임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p>
<p>第三十一条 役員は、特に法律に定めのある場合を除いては、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公務員と兼ねることができない。</p> <p>2 議員であつて前項の職を兼ねている者が、役員に選任されたときは、その兼ねている職は、解かれたものとする。</p>	<p>제31조 임원은 특별히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과 겸임할 수 없다.</p> <p>2. 의원으로서 전항의 직을 겸하는 자가 임원에 선임되었을 때에는, 겸하던 직은 해임된 것으로 한다.</p>
<p>第三十二条 兩議院の経費は、独立して、国の予算にこれを計上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2 前項の経費中には、予備金を設けることを要する。</p>	<p>제32조 양 의원의 경비는 독립적으로 국가 예산에 이를 계상해야 한다.</p> <p>2. 전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p>
<p>第四章 議員</p>	<p>제4장 의원</p>
<p>第三十三条 各議院の議員は、院外における現行犯罪の場合を除いては、会期中その院の許諾がなければ逮捕されない。</p>	<p>제33조 각 의원의 의원은 원외에서의 현행범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그 원의 허락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p>
<p>第三十四条 各議院の議員の逮捕につきその院の許諾を求めるときは、内閣は、所轄裁判所又は裁判官が令状を發する前に内閣へ提出した要求書の受理後速かに、その要求書の写を添えて、これ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p>	<p>제34조 각 의원의 의원 체포에 대해서, 그 원의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각은 관할재판소 또는 재판관이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내각에 제출한 요구서의 수리 후, 신속하게 그 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요구해야 한다.</p>
<p>第三十四条之二 内閣は、会期前に逮捕された議員があるときは、会期の始めに、その議員の属する議院の議長に、令状の写を添えてその氏名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2 内閣は、会期前に逮捕された議員について、会期中に拘留期間の延長の裁判があつたときは、その議員の属する議院の議長に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제34조의2 내각은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회기 개시시에 그 의원이 속하는 의원의 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그 성명을 통지해야 한다.</p> <p>2. 내각은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에 대해서, 회기 중에 구류 기간 연장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속하는 의원의 의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p>
<p>第三十四条之三 議員が、会期前に逮捕された議員の釈放の要求を發議するには、議員二十人以上の連名で、その理由を附した要求書をその院の議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제34조의3 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의원 20인 이상의 연명으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그 원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第三十五条 議員は、一般職の国家公務員の最高の給与額(地域手当等の手当を除く。)より少なくない歳費を受ける。</p>	<p>제35조 의원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최고 급여액(지역수당 등의 수당을 제외함.)보다 적지 않은 세비(歳費)를 받는다.</p>
<p>第三十六条 議員は、別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退職金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p>	<p>제36조 의원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p>
<p>第三十七条 削除</p>	<p>제37조 삭제</p>
<p>第三十八条 議員は、公の書類を發送し及び公の性質を有する通信をなす等のため、別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手当を受ける。</p>	<p>제38조 의원은 공문서를 발송하고, 그리고 공적 성질을 가지는 통신을 하는 등을 위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p>
<p>第三十九条 議員は、内閣総理大臣その他の國務大臣、内閣官房副長官、内閣総理大臣補佐官、副大臣、大臣政務官、大臣補佐官及び別に法律で定めた場合を除いては、その任期中國又は地方公共団体の公務員と兼ね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兩議院一致の議決に基づき、その任期中内閣行政各部における各種の委員、顧問、参与その他これらに準ずる職に就く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p>	<p>제39조 의원은 내각총리대신, 기타 국무대신, 내각관방부장관, 내각총리대신보좌관, 부대신, 대신정무관, 대신보좌관 및 별도로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에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과 겸할 수 없다. 단, 양 의원 일치 의결에 근거하여, 그 임기 중 내각행정각부의 각종 위원, 고문, 참여, 기타 이들에 준하는 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第五章 委員会及び委員	제5장 위원회 및 위원
<p>第四十条 各議院の委員会は、常任委員会及び特別委員会の二種とする。</p>	<p>제40조 각 의원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2종류로 한다.</p>
<p>第四十一条 常任委員会は、その部門に属する議案(決議案を含む。)、請願等を審査する。</p> <p>2 衆議院の常任委員会は、次のとおりとする。</p> <ol style="list-style-type: none"> 一 内閣委員会 二 総務委員会 三 法務委員会 四 外務委員会 五 財務金融委員会 六 文部科学委員会 七 厚生労働委員会 八 農林水産委員会 九 経済産業委員会 十 国土交通委員会 十一 環境委員会 十二 安全保障委員会 十三 国家基本政策委員会 十四 予算委員会 十五 決算行政監視委員会 十六 議院運営委員会 十七 懲罰委員会 <p>3 参議院の常任委員会は、次のとおりとする。</p> <ol style="list-style-type: none"> 一 内閣委員会 二 総務委員会 三 法務委員会 四 外交防衛委員会 五 財政金融委員会 六 文教科学委員会 七 厚生労働委員会 八 農林水産委員会 九 経済産業委員会 十 国土交通委員会 十一 環境委員会 十二 国家基本政策委員会 十三 予算委員会 十四 決算委員会 十五 行政監視委員会 十六 議院運営委員会 十七 懲罰委員会 	<p>제41조 상임위원회는 그 부문에 속하는 의안(결의안을 포함한다。), 청원 등을 심사한다.</p> <p>2. 중의원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각위원회 2 총무위원회 3 법무위원회 4 외무위원회 5 재무금융위원회 6 문부과학위원회 7 후생노동위원회 8 농림수산위원회 9 경제산업위원회 10 국토교통위원회 11 환경위원회 12 안전보장위원회 13 국가기본정책위원회 14 예산위원회 15 결산행정감시위원회 16 의원운영위원회 17 징벌위원회 <p>3. 참의원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각위원회 2 총무위원회 3 법무위원회 4 외교방위위원회 5 재무금융위원회 6 문부과학위원회 7 후생노동위원회 8 농림수산위원회 9 경제산업위원회 10 국토교통위원회 11 환경위원회 12 국가기본정책위원회 13 예산위원회 14 결산위원회 15 행정감시위원회 16 의원운영위원회 17 징벌위원회
<p>第四十二条 常任委員は、会期の始めに議院において選任し、議員の任期中その任にあるものとする。</p> <p>2 議員は、少なくとも一箇の常任委員となる。ただし、議長、副議長、内閣総理大臣その他の国务大臣、内閣官房副長官、内閣総理大臣補佐官、副大臣、大臣政務官及び大臣補佐官は、その割り当てられた常任委員を辞することができる。</p> <p>3 前項但書の規定により常任委員を辞した者があるときは、その者が属する会派の議員は、その委員を兼ねることができる。</p>	<p>제42조 상임위원은, 회기 개시에 의원에서 선임하고, 의원의 임기 중에 임기하는 것으로 한다.</p> <p>2. 의원은 적어도 1개의 상임위원이 된다. 단, 의장, 부의장, 내각총리대신, 기타 국무대신, 내각관방부장관, 내각총리대신 보좌관, 부대신, 대신정무관 및 대신보좌관은 그 할당된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p> <p>3. 전 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 상임위원을 사임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가 속하는 회파의 의원은 그 위원을 겸할 수 있다.</p>
<p>第四十三条 常任委員会には、専門の知識を有する職員(これを専門員という)及び調査員を置くことができる</p>	<p>제43조 상임위원회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이를 전문원이라 함) 및 조사원을 둘 수 있다.</p>
<p>第四十四条 各議院の常任委員会は、他の議院の常任委員会と協議して合同審査会を開くことができる。</p>	<p>제44조 각 의원의 상임위원회는 다른 의원의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합동심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p>

<p>第四十五条 各議院は、その院において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た案件又は常任委員会の所管に属しない特定の案件を審査するため、特別委員会を設けることができる。</p> <p>2 特別委員は、議院において選任し、その委員会に付託された案件がその院で議決されるまで、その任にあるものとする。</p> <p>3 特別委員長は、委員会においてその委員がこれを互選する。</p>	<p>제45조 각 의원은 그 원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 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특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p> <p>2. 특별위원은 의원에서 선임하고, 그 위원회에 부탁된 안건이 그 원에서 의결될 때까지 그 임기에 있는 것으로 한다.</p> <p>3. 특별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그 위원이 호선한다.</p>
<p>第四十六条 常任委員及び特別委員は、各会派の所属議員数の比率により、これを各会派に割り当て選任する。</p> <p>2 前項の規定により委員が選任された後、各会派の所属議員数に異動があつたため、委員の各会派割当数を変更する必要があるときは、議長は、第四十二条第一項及び前条第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議院運営委員会の議を経て委員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p>	<p>제46조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은, 각 회파의 소속 의원수의 비례에 따라서 이를 각 회파에 할당하여 선임한다.</p> <p>2. 전 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이 선임된 후, 각 회파의 소속 의원수에 이동이 있어서 위원의 각 회파 할당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제42조제1항 및 전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p>
<p>第四十七条 常任委員会及び特別委員会は、会期中に限り、付託された案件を審査する。</p> <p>2 常任委員会及び特別委員会は、各議院の議決で特に付託された案件(懲罰事犯の件を含む。)については、閉会中もなお、これを審査することができる。</p> <p>3 前項の規定により懲罰事犯の件を閉会中審査に付する場合には、その会期中に生じた事犯にかか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ぬ。</p> <p>4 第二項の規定により閉会中もなお審査することに決したときは、その院の議長から、その旨を他の議院及び内閣に通知する。</p>	<p>제47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회기 중에 한해서 부탁된 안건을 심사한다.</p> <p>2.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각 의원의 의결로 특별히 부탁된 안건(징벌 사범의 건을 포함함.)에 대해서는 폐회 중에도 또한 이를 심사할 수 있다.</p> <p>3. 전항의 규정에 따라서 징벌 사범의 건을 폐회 중 심사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 회기 중에 발생한 사범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p> <p>4.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폐회 중에도 또한 심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원의 의장으로부터 그 취지를 다른 의원 및 내각에 통지한다.</p>
<p>第四十八条 委員長は、委員会の議事を整理し、秩序を保持する。</p>	<p>제48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한다.</p>
<p>第四十九条 委員会は、その委員の半数以上の出席がなければ、議事を開き議決することができない。</p>	<p>제49조 위원회는 그 위원의 반수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의사를 열어서 의결할 수 없다.</p>
<p>第五十条 委員会の議事は、出席委員の過半数でこれを決し、可否同数のときは、委員長の決するところによる。</p> <p>第五十条之二 委員会は、その所管に属する事項に関し、法律案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p> <p>2 前項の法律案については、委員長をもつて提出者とする。</p>	<p>제50조 위원회의 의사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이를 결정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50조의2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p> <p>2. 전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제출자로 한다.</p>
<p>第五十一条 委員会は、一般的關心及び目的を有する重要な案件について、公聴会を開き、真に利害關係を有する者又は學識經驗者等から意見を聴くことができる。</p> <p>2 総予算及び重要な歳入法案については、前項の公聴会を開かなければならぬ。但し、すでに公聴会を開いた案件と同一の内容のもの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p>	<p>제51조 위원회는, 일반적 관심 및 목적을 가지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고, 진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또는 학식 경험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2. 총 예산 및 중요한 세입 법안에 대해서는, 전항의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단, 이미 공청회를 열었던 안건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第五十二条 委員会は、議員の外傍聴を許さない。但し、報道の任務にあたる者その他の者で委員長の許可を得たもの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p> <p>2 委員会は、その決議により秘密会とすることができる。</p> <p>3 委員長は、秩序保持のため、傍聴人の退場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p>	<p>제52조 위원회는 의원 외의 방청을 허락하지 않는다. 단, 보도 임무가 있는 자, 그밖의 자로서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위원회는 그 의결에 따라서 비밀회를 할 수 있다.</p> <p>3. 위원장은 질서유지를 위해,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第五十三条 委員長は、委員会の経過及び結果を議院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제53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경과 및 결과를 의원에게 보고해야 한다.</p>

<p>第五十四条 委員会において廃棄された少数意見で、出席委員の十分の一以上の賛成があるものは、委員長に報告に次いで、少数意見者がこれを議院に報告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少数意見者は、その賛成者と連名で簡明な少数意見の報告書を議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2 議長は、少数意見の報告につき、時間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p> <p>3 第一項後段の報告書は、委員会の報告書と共にこれを会議録に掲載する。</p>	<p>제54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소수 의견으로서, 출석 위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것은,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서 소수 의견자가 이를 의원에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수 의견자는 그 찬성자와 연명으로 간단명료한 소수 의견의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2. 의장은 소수의견의 보고에 대해서,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p> <p>3. 제1항 후단의 보고서는, 위원회의 보고서와 함께 이를 회의록에 게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五章の二 参議院の調査会</p> <p>第五十四条の二 参議院は、国政の基本的事項に関し、長期的かつ総合的な調査を行うため、調査会を設けることができる。</p> <p>2 調査会は、参議院議員の半数の任期満了の日まで存続する。</p> <p>3 調査会の名称、調査事項及び委員の数は、参議院の議決でこれを定める。</p> <p>第五十四条の三 調査会の委員は、議院において選任し、調査会が存続する間、その任にあるものとする。</p> <p>2 調査会の委員は、各会派の所属議員数の比率により、これを各会派に割り当て選任する。</p> <p>3 前項の規定により委員が選任された後、各会派の所属議員数に異動があつたため、委員の各会派割当数を変更する必要があるときは、議長は、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議院運営委員会の議を経て委員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p> <p>4 調査会長は、調査会においてその委員がこれを互選する。</p> <p>第五十四条の四 調査会については、第二十条、第四十七条第一項、第二項及び第四項、第四十八条から第五十条の二まで、第五十一条第一項、第五十二条、第六十条、第六十九条から第七十三条まで、第一百四十四条から第一百五十五条まで、第二十條、第二十一條第二項並びに第二十四條の規定を準用する。</p> <p>2 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五十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調査会が提出する法律案については、第五十七條の三の規定を準用する。</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의2 参의원의 조사회</p> <p>제54조의2 参의원은, 국정의 기본적 사항에 관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조사회를 설치할 수 있다.</p> <p>2. 조사회는 参의원 의원의 반수의 임기만료일까지 존속한다.</p> <p>3. 조사회의 명칭, 조사사항 및 위원은 参의원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p> <p>제54조의3 조사회의 위원은, 의원에서 선임하고, 조사회가 존속하는 동안 그 임기로 한다.</p> <p>2. 조사회의 위원은, 각 회파의 소속 의원수의 비례에 따라서, 이를 각 회파에 할당하여 선임한다.</p> <p>3. 전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이 선임된 후, 각 회파의 소속 의원수에 이동이 있어서 위원의 각 회파 할당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p> <p>4. 조사회장은 조사회에서 그 위원이 호선한다.</p> <p>제54조의4 조사회에 대해서는, 제20조, 제4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1조제1항, 제52조, 제60조,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104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20조, 제121조제2항, 및 제1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2.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회가 제출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5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六章 会議</p> <p>第五十五条 各議院の議長は、議事日程を定め、予めこれを議院に報告する。</p> <p>2 議長は、特に緊急の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会議の日時だけを議員に通知して会議を開くことができる。</p> <p>第五十五条の二 議長は、議事の順序その他必要と認める事項につき、議院運営委員長及び議院運営委員会が選任する議事協議員と協議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意見が一致しないときは、議長は、これを裁定することができる。</p> <p>2 議長は、議事協議会の主宰を議院運営委員長に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p> <p>3 議長は、会期中であると閉会中であると問わず、何時でも議事協議会を開くことができる。</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회의</p> <p>제55조 각 의원의 의장은, 의사일정을 정하고, 이를 미리 의원에게 보고한다.</p> <p>2. 의장은 특히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p> <p>제55조의2 의장은, 의사의 순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운영위원장 및 의원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의사협의회원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재정(裁定)할 수 있다.</p> <p>2. 의장은 의사협의회회의 주재를 의원운영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3. 의장은 회기중과 폐회중을 묻지 않고, 언제든지 의사협의회를 열 수 있다.</p>

第五十六条 議員が議案を發議するには、衆議院においては議員二十人以上、參議院においては議員十人以上の賛成を要する。但し、予算を伴う法律案を發議するには、衆議院においては議員五十人以上、參議院においては議員二十人以上の賛成を要する。

- 2 議案が發議又は提出されたときは、議長は、これを適當の委員会に付託し、その審査を経て會議に付する。但し、特に緊急を要するものは、發議者又は提出者の要求に基き、議院の議決で委員会の審査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
- 3 委員会において、議院の會議に付するを要しないと決定した議案は、これを會議に付さない。但し、委員会の決定の日から休会中の期間を除いて七日以内に議員二十人以上の要求があるものは、これを會議に付さなければならない。
- 4 前項但書の要求がないときは、その議案は廃案となる。
- 5 前二項の規定は、他の議院から送付された議案については、これを適用しない。

第五十六条之二 各議院に發議又は提出された議案につき、議院運営委員会が特にその必要を認めた場合は、議院の會議において、その議案の趣旨の説明を聴取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五十六条之三 各議院は、委員会の審査中の案件について特に必要があるときは、中間報告を求められることができる。

- 2 前項の中間報告があつた案件について、議院が特に緊急を要すると認めるときは、委員会の審査に期限を附け又は議院の會議において審議することができる。
- 3 委員会の審査に期限を附けた場合、その期間内に審査を終らなかつたときは、議院の會議においてこれを審議するものとする。但し、議院は、委員会の要求により、審査期間を延長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五十六条之四 各議院は、他の議院から送付又は提出された議案と同一の議案を審議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五十七条 議案につき議院の會議で修正の動議を議題とするには、衆議院においては議員二十人以上、參議院においては議員十人以上の賛成を要する。但し、法律案に対する修正の動議で、予算の増額を伴うもの又は予算を伴うこととなるものについては、衆議院においては議員五十人以上、參議院においては議員二十人以上の賛成を要する。

第五十七条之二 予算につき議院の會議で修正の動議を議題とするには、衆議院においては議員五十人以上、參議院においては議員二十人以上の賛成を要する。

第五十七条之三 各議院又は各議院の委員会は、予算總額の増額修正、委員会の提出若しくは議員の發議にかかる予算を伴う法律案又は法律案に対する修正で、予算の増額を伴うもの若しくは予算を伴うこととなるものについては、内閣に対して、意見を述べる機会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十八条 内閣は、一の議院に議案を提出したときは、予備審査のため、提出の日から五日以内に他の議院に同一の案を送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十九条 内閣が、各議院の會議又は委員会において議題となつた議案を修正し、又は撤回するには、その院の承諾を要する。但し、一の議院で議決した後は、修正し、又は撤回することはできない。

제56조 議員이 의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에서는 의원 20인 이상, 참의원에서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단, 예산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에서는 의원 50인 이상, 참의원에서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2.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심사를 거쳐 회의에 부친다. 단,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것은, 발의자 또는 제출자의 요구에 근거하여 의원의 의결로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위원회에서 의원이 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은 회의에 부치지 않는다. 단, 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휴회중 기간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의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것은 이를 회의에 부쳐야 한다.
4. 전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5. 전 2항의 규정은, 다른 의원으로부터 송부된 의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56조의2 각 의원에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의원운영위원회가 특히 그 필요를 인정한 경우에는, 의원의 회의에서 그 의안의 취지의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제56조의3 각 의원은,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안건에 대해서 특히 필요할 때에는,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중간보고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 의원이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기한을 두거나 또는 의원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심사에 기한을 둔 경우, 그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않았을 때에는, 의원 회의에서 이를 심의한다. 단,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의4 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부터 송부 또는 제출된 의안과 동일한 의안을 심사할 수 없다.

제57조 의안에 대해서 의원 회의에서 수정 동의(動議)를 의제로 하기 위해서는, 중의원에서는 의원 20인 이상, 참의원에서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단, 법률안에 대한 수정 동의로서, 예산의 증액을 수반하는 것 또는 예산을 수반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중의원에서는 의원 50인 이상, 참의원에서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57조의2 예산에 대해서 의원 회의에서 수정 동의를 의제로 하기 위해서는, 중의원에서는 의원 50인 이상, 참의원에서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57조의3 각 의원 또는 각 의원의 위원회는, 예산 총액의 증액 수정, 위원회의 제출 혹은 의원 발의와 관련된 예산을 수반하는 법률안, 또는 법률안에 대한 수정으로서 예산의 증액을 수반하는 것 혹은 예산을 수반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각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8조 내각은 한 의원에 의안을 제출했을 때에는, 예비심사를 위해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른 의원에 동일한 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59조 내각이 각 의원 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수정하거나, 또는 철회하기 위해서는, 그 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단, 한 의원에서 의결한 후에는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p>第六十条 各議院が提出した議案については、その委員長(その代理者を含む)又は発議者は、他の議院において、提案の理由を説明することができる。</p>	<p>제60조 각 의원이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는, 그 위원장(그 대리자를 포함) 또는 발의자는 다른 의원에서 제안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p>
<p>第六十一条 各議院の議長は、質疑、討論その他の発言につき、予め議院の議決があつた場合を除いて、時間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p> <p>2 議長の定めた時間制限に対して、出席議員の五分の一以上から異議を申し立てたときは、議長は、討論を用いなくて、議院に諮らなければならない。</p> <p>3 議員が時間制限のため発言を終らなかつた部分につき特に議院の議決があつた場合を除いては、議長の認める範囲内において、これを会議録に掲載する。</p>	<p>제61조 각 의원의 의장은 질의, 토론, 기타 발언에 대해서, 미리 의원의 의결이 있던 경우를 제외하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p> <p>2. 의장이 정한 시간제한에 대해서, 출석의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토론을 이용하지 않고 의원과 상의해야 한다.</p> <p>3. 의원이 시간제한 때문에 발언을 끝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의원의 의결이 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한다.</p>
<p>第六十二条 各議院の會議は、議長又は議員十人以上の發議により、出席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議決があつたときは、公開を停めることができる。</p>	<p>제62조 각 의원의 회의는, 의장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p>
<p>第六十三条 秘密會議の記録中、特に秘密を要するものとその院において議決した部分は、これを公表しないうことができる。</p>	<p>제63조 비밀회의의 기록 중, 특히 비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그 원에서 의결한 부분은 이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p>
<p>第六十四条 内閣は、内閣総理大臣が欠けたとき、又は辞表を提出したときは、直ちにその旨を兩議院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제64조 내각은 내각총리대신이 없을 때, 또는 사표를 제출했을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양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p>
<p>第六十五条 国会の議決を要する議案について、最後の議決があつた場合にはその院の議長から、衆議院の議決が国会の議決となつた場合には衆議院議長から、その公布を要するものは、これを内閣を経由して奏上し、その他のものは、これを内閣に送付する。</p> <p>2 内閣総理大臣の指名については、衆議院議長から、内閣を経由してこれを奏上する。</p>	<p>제65조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의안에 대해서, 최후의 의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원의 의장으로부터, 중의원의 의결이 국회의 의결이 된 경우에는 중의원 의장으로부터, 그 공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를 내각을 경유하여 주상(奏上)하고, 그 밖의 것은 이를 내각에 송부한다.</p> <p>2. 내각총리대신의 지명에 대해서는, 중의원 의장으로부터 내각을 경유하여 이를 주상한다.</p>
<p>第六十六条 法律は、奏上の日から三十日以内にこれを公布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제66조 법률은 주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p>
<p>第六十七条 一の地方公共団体のみに適用される特別法については、国会において最後の可決があつた場合は、別に法律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地方公共団体の住民の投票に付し、その過半数の同意を得たときに、さきの国会の議決が、確定して法律となる。</p>	<p>제67조 하나의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최후 가결이 있던 경우에는 별도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투표에 부치고,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 앞선 국회의 의결이 확정되어 법률이 된다.</p>
<p>第六十八条 會期中に議決に至らなかつた案件は、後會に継続しない。但し、第四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閉會中審査した議案及び懲罰事犯の件は、後會に継続する。</p>	<p>제68조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 계속되지 않는다. 단,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회 중 심사한 의안 및 징벌 사범의 건은 다음 회기에 계속한다.</p>
<p>第六章の二 日本国憲法の改正の發議</p>	<p>제6장외2 일본국 헌법의 개정 발의</p>
<p>第六十八条の二 議員が日本国憲法 の改正案(以下「憲法改正案」という。)の原案(以下「憲法改正原案」という。)を發議するには、第五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衆議院においては議員百人以上、參議院においては議員五十人以上の賛成を要する。</p>	<p>제68조외2 의원이 일본국 헌법의 개정안(이하 '헌법개정안'이라 함.)의 원안(이하 '헌법개정원안'이라 함.)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의원에서는 의원 100인 이상, 참의원에서는 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p>
<p>第六十八条の三 前条の憲法改正原案の發議に当たつては、内容において関連する事項ごとに区分して行うものとする。</p>	<p>제68조외3 전조의 헌법개정원안의 발의에 있어서는, 내용에 관련된 사항별로 구분해서 한다.</p>
<p>第六十八条の四 憲法改正原案につき議院の會議で修正の動議を議題とするには、第五十七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衆議院においては議員百人以上、參議院においては議員五十人以上の賛成を要する。</p>	<p>제68조외4 헌법개정원안에 대해서 의원 회의에서 수정 동의를 의제로 하기 위해서는, 제5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의원에서는 의원 100인 이상, 참의원에서는 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p>

第六十八條の五 憲法改正原案について国会において最後の可決があつた場合には、その可決をもつて、国会が日本国憲法第九十六條第一項に定める日本国憲法の改正(以下「憲法改正」という。)の発議をし、国民に提案したものとす。この場合において、兩議院の議長は、憲法改正の発議をした旨及び発議に係る憲法改正案を官報に公示する。

2 憲法改正原案について前項の最後の可決があつた場合には、第六十五條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院の議長から、内閣に対し、その旨を通知するとともに、これを送付する。

第六十八條の六 憲法改正の発議に係る国民投票の期日は、当該発議後速やかに、国会の議決でこれを定める。

第七章 國務大臣等の出席等

第六十九條 内閣官房副長官、副大臣及び大臣政務官は、内閣総理大臣その他の國務大臣を補佐するため、議院の会議又は委員会に出席することができる。

2 内閣は、国会において内閣総理大臣その他の國務大臣を補佐するため、兩議院の議長の承認を得て、人事院総裁、内閣法制局長官、公正取引委員会委員長、原子力規制委員会委員長及び公害等調整委員会委員長を政府特別補佐人として議院の会議又は委員会に出席させることができる。

第七十條 内閣総理大臣その他の國務大臣並びに内閣官房副長官、副大臣及び大臣政務官並びに政府特別補佐人が、議院の会議又は委員会において発言しようとするときは、議長又は委員長に通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七十一條 委員会は、議長を経由して内閣総理大臣その他の國務大臣並びに内閣官房副長官、副大臣及び大臣政務官並びに政府特別補佐人の出席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七十二條 委員会は、議長を経由して会計検査院長及び検査官の出席説明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2 最高裁判所長官又はその指定する代理者は、その要求により、委員会の承認を得て委員会に出席説明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七十三條 議院の会議及び委員会の会議に関する報告は、議員に配付すると同時に、これを内閣総理大臣その他の國務大臣並びに内閣官房副長官、副大臣及び大臣政務官並びに政府特別補佐人に送付する。

第八章 質問

第七十四條 各議院の議員が、内閣に質問しようとするときは、議長の承認を要する。

2 質問は、簡明な主意書を作り、これを議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議長の承認しなかつた質問について、その議員から異議を申し立てたときは、議長は、討論を用いないで、議院に諮らなければならない。

4 議長又は議院の承認しなかつた質問について、その議員から要求があつたときは、議長は、その主意書を会議録に掲載する。

第七十五條 議長又は議院の承認した質問については、議長がその主意書を内閣に転送する。

제68조의5 헌법개정원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최후 가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가결로 국회가 일본국 헌법 제96조제1항에 정하는 일본국 헌법의 개정(이하 '헌법개정'이라 함.)을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양 의원의 의장은 헌법 개정을 발의한 취지 및 발의에 관련된 헌법개정안을 관보에公示한다.

2. 헌법개정원안에 대해서 전항의 최후 가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원의 의장으로부터 내각에 대해서 그 취지를 통지하는 동시에 이를 송부한다.

제68조의6 헌법 개정의 발의에 관련된 국민투표 기일은, 그 발의 후에 신속하게 국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제7장 국무대신 등의 출석 등

제69조 내각관방부장관, 부대신 및 대신정무관은, 내각총리대신 기타 국무대신을 보좌하기 위해서, 의원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다.

2. 내각은, 국회에서 내각총리대신 기타 국무대신을 보좌하기 위해서, 양 의원의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인사원총재, 내각법제국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원자력규제위원회위원장 및 공해등조정위원회위원장을 정부특별보좌인으로 의원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시킬 수 있다.

제70조 내각총리대신 기타 국무대신, 및 내각관방부장관, 부대신 및 대신정무관, 및 정부특별보좌인이 의원 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제71조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내각총리대신 기타 국무대신, 및 내각관방부장관, 부대신 및 대신정무관, 및 정부특별보좌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회계감사원장 및 감사관의 출석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최고재판소장관 또는 그 지정하는 대리인은, 요구에 따라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73조 의원 회의 및 위원회 회의에 관한 보고는, 의원에 배부하는 동시에, 이를 내각총리대신 기타 국무대신, 및 내각관방부장관, 부대신 및 대신정무관, 및 정부특별보좌인에게 송부한다.

제8장 질문

제74조 각 의원의 의원이 내각에 질문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2. 질문은 간단명료한 주의서(主意書)를 만들어 이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의장이 승인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그 의원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었을 때에는, 의장은 토론을 하지 않고 의원과 상의해야 한다.

4. 의장 또는 의원이 승인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그 의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주의서를 회의록에 게재한다.

제75조 의장 또는 의원이 승인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장이 그 주의서를 내각에 전송한다.

<p>2 内閣は、質問主意書を受け取った日から七日以内に答弁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期間内に答弁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その理由及び答弁をすることができる期限を明示することを要する。</p>	<p>2. 내각은 질문 주의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유 및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명시할 것을 요한다.</p>
<p>第七十六条 質問が、緊急を要するときは、議院の議決により口頭で質問することができる。</p>	<p>제76조 질문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의원의 의결에 따라서 구두로 질문할 수 있다.</p>
<p>第七十七条 削除</p>	<p>제77조 삭제</p>
<p>第七十八条 削除</p>	<p>제78조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第九章 請願</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청원</p>
<p>第七十九条 各議院に請願しようとする者は、議員の紹介により請願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제79조 각 의원에 청원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에 의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p>
<p>第八十条 請願は、各議院において委員会の審査を経た後これを議決する。</p> <p>2 委員会において、議院の会議に付するを要しないと決定した請願は、これを会議に付さない。但し、議員二十人以上の要求があるものは、これを会議に付さなければならない。</p>	<p>제80조 청원은 각 의원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 이를 의결한다.</p> <p>2. 위원회에서 의원의 회의에 부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청원은, 이를 회의에 부치지 않는다. 단, 의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것은 이를 회의에 부쳐야 한다.</p>
<p>第八十一条 各議院において採択した請願で、内閣において措置するを適当と認めたものは、これを内閣に送付する。</p> <p>2 内閣は、前項の請願の処理の経過を毎年議院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제81조 각 의원에서 채택한 청원으로, 내각에서 조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은 이를 내각에 송부한다.</p> <p>2. 내각은 전항의 청원의 처리 경과를 매년 의원에게 보고해야 한다.</p>
<p>第八十二条 各議院は、各別に請願を受け互に干預しない。</p>	<p>제82조 각 의원은 각각 별도로 청원을 받고 서로 관여하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十章 兩議院關係</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장 양의원 관계</p>
<p>第八十三条 国会の議決を要する議案を甲議院において可決し、又は修正したときは、これを乙議院に送付し、否決したときは、その旨を乙議院に通知する。</p> <p>2 乙議院において甲議院の送付案に同意し、又はこれを否決したときは、その旨を甲議院に通知する。</p> <p>3 乙議院において甲議院の送付案を修正したときは、これを甲議院に回付する。</p> <p>4 甲議院において乙議院の回付案に同意し、又は同意しなかつたときは、その旨を乙議院に通知する。</p>	<p>제83조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의안을 갑 의원에서 가결하거나, 또는 수정했을 때에는, 이를 을 의원에게 송부하고, 부결되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을 의원에게 통지한다.</p> <p>2. 을 의원에서 갑 의원의 송부안에 동의하거나 또는 이를 부결한 때에는 그 취지를 갑 의원에게 통지한다.</p> <p>3. 을 의원에서 갑 의원의 송부안을 수정한 때에는 이를 갑 의원에게 회부한다.</p> <p>4. 갑 의원에서 을 의원의 회부안에 동의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은 때에는 그 취지를 을 의원에게 통지한다.</p>
<p>第八十三条之二 參議院は、法律案について、衆議院の送付案を否決したときは、その議案を衆議院に返付する。</p> <p>2 參議院は、法律案について、衆議院の回付案に同意しないで、兩院協議会を求めたが衆議院がこれを拒んだとき、又は兩院協議会を求めないときは、その議案を衆議院に返付する。</p> <p>3 參議院は、予算又は衆議院先議の条約を否決したときは、これを衆議院に返付する。衆議院は、參議院先議の条約を否決したときは、これを參議院に返付する。</p>	<p>제83조의2 참의원은 법률안에 대해서 중의원의 송부안을 부결한 때에는 그 의안을 중의원에 환부한다.</p> <p>2. 참의원은 법률안에 대해서 중의원의 회부안에 동의하지 않고, 양원 협의회를 요구했지만 중의원이 이를 거부한 때, 또는 양원 협의회를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의안을 중의원에 환부한다.</p> <p>3. 참의원은 예산 또는 중의원 선의(先議) 조약을 부결한 때에는 이를 중의원에 환부한다. 중의원은 참의원 선의 조약을 부결한 때에는 이를 참의원에 환부한다.</p>
<p>第八十三条之三 衆議院は、日本国憲法第五十九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參議院が法律案を否決したものとみなしたときは、その旨を參議院に通知する。</p> <p>2 衆議院は、予算及び条約について、日本国憲法第六十条第二項又は第六十一条の規定により衆議院の議決が国会の議決となつたときは、その旨を參議院に通知する。</p>	<p>제83조의3 중의원은 일본국 헌법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참의원이 법률안을 부결한 것으로 본 때에는 그 취지를 참의원에 통지한다.</p> <p>2. 중의원은 예산 및 조약에 대해서, 일본국 헌법 제60조제2항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중의원의 의결이 국회의 의결로 된 때에는, 그 취지를 참의원에 통지한다.</p>

<p>3 前二項の通知があつたときは、参議院は、直ちに衆議院の送付案又は回付案を衆議院に返付する。</p> <p>第八十三條の四 憲法改正原案について、甲議院の送付案を乙議院が否決したときは、その議案を甲議院に返付する。</p> <p>2 憲法改正原案について、甲議院は、乙議院の回付案に同意しなかつた場合において両院協議会を求めないときは、その議案を乙議院に返付する。</p> <p>第八十三條の五 甲議院の送付案を、乙議院において継続審査し後の会期で議決したときは、第八十三條による。</p>	<p>3. 전2항의 통지가 있던 때에는, 참의원은 즉시 중의원의 송부안 또는 회부안을 중의원에 환부한다.</p> <p>제83조의4 헌법개정원안에 대해서, 갑 의원의 송부안을 을 의원이 부결한 때에는 그 의안을 갑 의원에 환부한다.</p> <p>2. 헌법개정원안에 대해서, 갑 의원은 을 의원의 회부안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양원 협의회를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의안을 을 의원에 환부한다.</p> <p>제83조의5 갑 의원의 송부안을 을 의원에서 계속 심사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결했을 때에는 제83조에 따른다.</p>
<p>第八十四條 法律案について、衆議院において参議院の回付案に同意しなかつたとき、又は参議院において衆議院の送付案を否決し及び衆議院の回付案に同意しなかつたときは、衆議院は、両院協議会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p> <p>2 参議院は、衆議院の回付案に同意しなかつたときに限り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通知と同時に両院協議会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但し、衆議院は、この両院協議会の請求を拒むことができる。</p>	<p>제84조 법률안에 대해서, 중의원에서 참의원의 회부안에 동의하지 않은 때, 또는 참의원에서 중의원의 송부안을 부결하고 중의원의 회부안에 동의하지 않은 때에는, 중의원은 양원 협의회를 요구할 수 있다.</p> <p>2. 참의원은 중의원의 회부안에 동의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와 동시에 양원 협의회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중의원은 이 양원 협의회를 청구할 수 없다.</p>
<p>第八十五條 予算及び衆議院先議の条約について、衆議院において参議院の回付案に同意しなかつたとき、又は参議院において衆議院の送付案を否決したときは、衆議院は、両院協議会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p> <p>2 参議院先議の条約について、参議院において衆議院の回付案に同意しなかつたとき、又は衆議院において参議院の送付案を否決したときは、参議院は、両院協議会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p>	<p>제85조 예산 및 중의원 선의 조약에 대해서, 중의원에서 참의원의 회부안에 동의하지 않은 때, 또는 참의원에서 중의원의 송부안을 부결한 때에는, 중의원은 양원 협의회를 요구해야 한다.</p> <p>2. 참의원 선의 조약에 대해서, 참의원에서 중의원의 회부안에 동의하지 않은 때, 또는 중의원에서 참의원의 송부안을 부결한 때에는, 참의원은 양원 협의회를 요구해야 한다.</p>
<p>第八十六條 各議院において、内閣総理大臣の指名を議決したときは、これを他の議院に通知する。</p> <p>2 内閣総理大臣の指名について、兩議院の議決が一致しないときは、参議院は、両院協議会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p> <p>第八十六條の二 憲法改正原案について、甲議院において乙議院の回付案に同意しなかつたとき、又は乙議院において甲議院の送付案を否決したときは、甲議院は、両院協議会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p> <p>2 憲法改正原案について、甲議院が、乙議院の回付案に同意しなかつた場合において両院協議会を求めなかつたときは、乙議院は、両院協議会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p>	<p>제86조 각 의원에서 내각총리대신의 지명을 의결한 때에는, 이를 다른 의원에 통지한다.</p> <p>2. 내각총리대신의 지명에 대해서, 양의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참의원은 양원 협의회를 요구해야 한다.</p> <p>제86조의2 헌법개정원안에 대해서, 갑 의원에서 을 의원의 회부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 또는 을 의원에서 갑 의원의 송부안을 부결한 때에는, 갑 의원은 양원 협의회를 요구할 수 있다.</p> <p>2. 헌법개정원안에 대해서, 갑 의원이 을 의원의 회부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양원 협의회를 요구하지 않았을 때에는 을 의원은 양원 협의회를 요구할 수 있다.</p>
<p>第八十七條 法律案、予算、条約及び憲法改正原案を除いて、国会の議決を要する案件について、後議の議院が先議の議院の議決に同意しないときは、その旨の通知と共にこれを先議の議院に返付する。</p> <p>2 前項の場合において、先議の議院は、両院協議会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p>	<p>제87조 법률안, 예산 및 헌법개정원안을 제외하고,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서 후의 의원이 선의 의원의 의결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취지의 통지와 함께 이를 선의 의원에 환부한다.</p> <p>2. 전항의 경우, 선의 의원은 양원 협의회를 요구할 수 있다.</p>
<p>第八十八條 第八十四條第二項但書の場合を除いては、一の議院から兩院協議会を求められたときは、他の議院は、これを拒むことができない。</p>	<p>제88조 제84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의원에서 양원 협의회를 요구한 때에는, 다른 의원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p>
<p>第八十九條 兩院協議会は、各議院において選挙された各々十人の委員でこれを組織する。</p>	<p>제89조 양원 협의회는 각 의원에서 선거된 각각 10인의 위원으로 이를 조직한다.</p>
<p>第九十條 兩院協議会の議長には、各議院の協議委員において夫々互選された議長が、毎会交代してこれに当る。その初会の議長は、くじでこれを定める。</p>	<p>제90조 양원 협의회 의장에는 각 의원의 협의회위원에서 각각 호선된 의장이 매회 교대로 담당한다. 최초 의장은 추첨으로 이를 정한다.</p>

<p>第九十一条 両院協議会は、各議院の協議委員の各々三分の二以上の出席がなければ、議事を開き議決することができない。</p> <p>第九十一条の二 協議委員が、正当な理由がなくて欠席し、又は両院協議会の議長から再度の出席要求があつてもなお出席しないときは、その協議委員の属する議院の議長は、当該協議委員は辞任したものとみなす。</p> <p>2 前項の場合において、その協議委員の属する議院は、直ちにその補欠選挙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p>	<p>제91조 양원 협의회는 각 의원의 협의위원의 각각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개회하여 의결할 수 없다.</p> <p>제91조의2 협의 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하거나, 또는 양원 협의회의 의장으로 부터 다시 출석 요구가 있었음에도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그 협의 위원이 속하는 의원의 의장은 그 협의 위원은 사임한 것으로 본다.</p> <p>2. 전항의 경우, 그 협의 위원이 속하는 의원은 즉시 그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p>
<p>第九十二条 両院協議会においては、協議案が出席協議委員の三分の二以上の多数で議決されたとき成案となる。</p> <p>2 両院協議会の議事は、前項の場合を除いては、出席協議委員の過半数でこれを決し、可否同数のときは、議長の決するところによる。</p>	<p>제92조 양원 협의회에서는 협의안이 출석 협의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의결되었을 때 성안(成案)된다.</p> <p>2. 양원 협의회의 의사는,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협의위원의 과반수로 이를 결정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p>
<p>第九十三条 両院協議会の成案は、両院協議会を求めた議院において先ずこれを議し、他の議院にこれを送付する。</p> <p>2 成案については、更に修正することができない。</p>	<p>제93조 양원 협의회의 성안은, 양원 협의회를 요구한 의원에서 먼저 심의하고, 다른 의원에 이를 송부한다.</p> <p>2. 성안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할 수 없다.</p>
<p>第九十四条 両院協議会において、成案を得なかつたときは、各議院の協議委員議長は、各々その旨を議院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제94조 양원 협의회에서 성안을 얻지 못했을 때에는, 각 의원의 협의위원 의장은 각각 그 취지를 의원에 보고하여야 한다.</p>
<p>第九十五条 各議院の議長は、両院協議会に出席して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p>	<p>제95조 각 의원의 의장은 양원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第九十六条 両院協議会は、内閣総理大臣その他の國務大臣並びに内閣官房副長官、副大臣及び大臣政務官並びに政府特別補佐人の出席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p>	<p>제96조 양원 협의회는 내각총리대신, 기타 국무대신, 및 내각관방부장관, 부대신 및 대신정무관, 및 정부특별보좌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p>
<p>第九十七条 両院協議会は、傍聴を許さない。</p>	<p>제97조 양원 협의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p>
<p>第九十八条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外、両院協議会に関する規程は、両議院の議決によりこれを定める。</p>	<p>제98조 이 법률에 정하는 것 외에, 양원 협의회에 관한 규정은 양 의원의 의결에 따라 이를 정한다.</p>
<p>第十一章 參議院の緊急集会</p>	<p>제11장 참의원의 긴급집회</p>
<p>第九十九条 内閣が參議院の緊急集会を求めるには、内閣総理大臣から、集会の期日を定め、案件を示して、參議院議長にこれを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2 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があつたときは、參議院議長は、これを各議員に通知し、議員は、前項の指定された集会の期日に參議院に集会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제99조 내각이 참의원의 긴급집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집회 기일을 정하여 안건을 제시하고, 참의원 의장에게 이를 청구해야 한다.</p> <p>2. 전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 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 통지하고, 의원은 전항에 지정된 집회 기일에 참의원에 집회하여야 한다.</p>
<p>第一百条 參議院の緊急集会中、參議院の議員は、院外における現行犯罪の場合を除いては、參議院の許諾がなければ逮捕されない。</p> <p>2 内閣は、參議院の緊急集会前に逮捕された參議院の議員があるときは、集会の期日の前日までに、參議院議長に、令狀の写を添えてその氏名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3 内閣は、參議院の緊急集会前に逮捕された參議院の議員について、緊急集会中に勾留期間の延長の裁判があつたときは、參議院議長に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4 參議院の緊急集会前に逮捕された參議院の議員は、參議院の要求があれば、緊急集会中これを釈放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5 議員が、參議院の緊急集会前に逮捕された議員の釈放の要求を發議するには、議員二十人以上の連名で、その理由を附した要求書を參議院議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제100조 참의원의 긴급집회 중, 참의원의 의원은 원외에서의 현행범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의원의 허락이 없이는 체포되지 않는다.</p> <p>2. 내각은, 참의원의 긴급집회 전에 체포된 참의원 의원이 있는 때에는, 집회 기일 전일까지 참의원 의장에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그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p> <p>3. 내각은, 참의원의 긴급집회 전에 체포된 참의원 의원에 대해서, 긴급집회 중에 구류기간 연장 재판이 있을 때에는, 참의원 의장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p> <p>4. 참의원의 긴급집회 전에 체포된 참의원 의원은 참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긴급집회 중에 이를 석방해야 한다.</p> <p>5. 의원이 참의원의 긴급집회 전에 체포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의원 20인 이상의 연명으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참의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第一百一条 参議院の緊急集会においては、議員は、第九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示された案件に関連のあるものに限りに、議案を發議することができる。</p>	<p>제101조 参의원의 긴급집회에서는, 의원은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시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것에 한하여 의견을 발의할 수 있다.</p>
<p>第一百二条 参議院の緊急集会においては、請願は、第九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示された案件に関連のあるものに限りに、これを行うことができる。</p>	<p>제102조 参의원의 긴급집회에서는, 청원은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시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것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p>
<p>第一百二条之二 緊急の案件がすべて議決されたときは、議長は、緊急集会が終つたことを宣告する。</p>	<p>제102조의2 긴급 안건이 모두 의결된 때에는, 의장은 긴급집회가 종료되었음을 선고한다.</p>
<p>第一百二条之三 参議院の緊急集会において案件が可決された場合には、参議院議長から、その公布を要するものは、これを内閣を経由して奏上し、その他のものは、これを内閣に送付する。</p>	<p>제102조의3 参의원의 긴급집회에서 안건이 가결된 경우에는, 参의원의 장으로부터 그 공포를 요하는 것은 이를 내각을 경유하여 추상하고, 그 밖의 것은 이를 내각에 송부한다.</p>
<p>第一百二条之四 参議院の緊急集会において採られた措置に対する衆議院の同意については、その案件を内閣から提出する。</p>	<p>제102조의4 参의원의 긴급집회에서 채택된 조치에 대한 衆議院의 동의에 대해서는, 그 안건을 내각에서 제출한다.</p>
<p>第一百二条之五 第六條、第四十七條第一項、第六十七條及び第六十九條第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これらの規定中「召集」とあるのは「集会」と、「会期中」とあるのは「緊急集集中」と、「国会において最後の可決があつた場合」とあるのは「参議院の緊急集会において可決した場合」と、「国会」とあるのは「参議院の緊急集会」と、「兩議院」とあるのは「参議院」と読み替え、第二十一条の二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会期の終了日又はその前日」とあるのは「参議院の緊急集会の終了日又はその前日」と、「閉会中審査の議決に至らなかつたもの」とあるのは「委員会の審査を終了しなかつたもの」と、「前の国会の会期」とあるのは「前の国会の会期終了後の参議院の緊急集会」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p>	<p>제102조의5 제6조, 제47조제1항, 제67조 및 제69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이들 규정 중 “소집”은 “집회”로, “회기 중”은 “긴급집회 중”으로, “국회에서 최후 가결이 있었던 경우”는 “参의원의 긴급집회에서 가결한 경우”로, “국회”는 “参의원의 긴급집회”로, “양 의원”은 “参의원”으로 대체하고, 제121조의2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회기 종료일 또는 그 전일”은 “参의원의 긴급집회 종료일 또는 그 전일”로, “폐회 중 심사 의결에 이르지 않은 것”은 “위원회 심사를 종료하지 않은 것”으로, “전 국회의 회기”는 “전 국회의 회기종료 후의 参의원의 긴급집회”로 대체한다.</p>
<p>第十一章之二 憲法審査會</p>	<p>제11장의2 헌법심사회</p>
<p>第一百二条之六 日本国憲法 及び日本国憲法 に密接に関連する基本法制について広範かつ総合的に調査を行い、憲法改正原案、日本国憲法に係る改正の發議又は国民投票に関する法律案等を審査するため、各議院に憲法審査會を設ける。</p>	<p>제102조의6 일본국 헌법 및 일본국 헌법에 밀접하게 관련된 기본법제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종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헌법개정원안, 일본국 헌법과 관련된 개정의 발의, 또는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각 의원에 헌법심사회를 설치한다.</p>
<p>第一百二条之七 憲法審査會は、憲法改正原案及び日本国憲法 に係る改正の發議又は国民投票に関する法律案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ける憲法改正原案の提出については、第六十八條の三の規定を準用する。</p>	<p>제102조의7 헌법심사회는 헌법개정원안 및 일본국 헌법과 관련된 개정의 발의 또는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헌법개정원안의 제출에 대해서는, 제68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p>
<p>2 前項の憲法改正原案及び日本国憲法 に係る改正の發議又は国民投票に関する法律案については、憲法審査會の會長をもつて提出者とする。</p>	<p>2. 전항의 헌법개정원안 및 일본국 헌법과 관련된 개정의 발의 또는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헌법심사회의 회장을 제출자로 한다.</p>
<p>第一百二条之八 各議院の憲法審査會は、憲法改正原案に関し、他の議院の憲法審査會と協議して合同審査會を開くことができる。</p>	<p>제102조의8 각 의원의 헌법심사회는, 헌법개정원안에 관해서 다른 의원의 헌법심사회와 협의하여 합동심사회를 열 수 있다.</p>
<p>2 前項の合同審査會は、憲法改正原案に関し、各議院の憲法審査會に勸告することができる。</p>	<p>2. 전항의 합동심사회는, 헌법개정원안에 관하여 각 의원의 헌법심사회에 권고할 수 있다.</p>
<p>3 前二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第一項の合同審査會に関する事項は、兩議院の議決によりこれを定める。</p>	<p>3. 전2항에 정하는 것 외에, 제1항의 합동심사회에 관한 사항은 양 의원의 의결에 따라 이를 정한다.</p>
<p>第一百二条之九 第五十三條、第五十四條、第五十六條第二項本文、第六十條及び第八十條の規定は憲法審査會について、第四十七條(第三項を除く。)、第五十六條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第五十七條の三及び第七章の規定は日本国憲法 に係る改正の發議又は国民投票に関する法律案に係る憲法審査會について準用する。</p>	<p>제102조의9 제53조, 제54조, 제56조제2항본문, 제60조 및 제80조의 규정은 헌법심사회에 대해서, 제47조(제3항을 제외함.), 제5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7조의3 및 제7장의 규정은 일본국 헌법과 관련된 개정의 발의 또는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안에 관련된 헌법심사회에 대해서 준용한다.</p>

- 2 憲法審査会に付託された案件についての第六十八条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条ただし書中「第四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閉会中審査した議案」とあるのは、「憲法改正原案、第四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閉会中審査した議案」とする。

第百二条の十 第百二条の六から前条までに定めるもののほか、憲法審査会に関する事項は、各議院の議決によりこれを定める。

第十一章の三 国民投票広報協議会

第百二条の十一 憲法改正の発議があつたときは、当該発議に係る憲法改正案の国民に対する広報に関する事務を行うため、国会に、各議院においてその議員の中から選任された同数の委員で組織する国民投票広報協議会を設ける。

- 2 国民投票広報協議会は、前項の発議に係る国民投票に関する手続が終了するまでの間存続する。
- 3 国民投票広報協議会の会長は、その委員がこれを互選する。

第百二条の十二 前条に定めるもののほか、国民投票広報協議会に関する事項は、別に法律でこれを定める。

第十一章の四 情報監視審査会

第百二条の十三 行政における特定秘密(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平成二十五年法律第八号。以下「特定秘密保護法」という。))第三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特定秘密をいう。以下同じ。)の保護に関する制度の運用を常時監視するため特定秘密の指定(同項の規定による指定をいう。))及びその解除並びに適性評価(特定秘密保護法第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適性評価をいう。)の実施の状況について調査し、並びに各議院又は各議院の委員会若しくは参議院の調査会からの第百四条第一項(第五十四条の四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特定秘密の提出の要求に係る行政機関の長(特定秘密保護法第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行政機関の長をいう。以下同じ。)の判断の適否等を審査するため、各議院に情報監視審査会を設ける。

第百二条の十四 情報監視審査会は、調査のため、特定秘密保護法第十九条の規定による報告を受ける。

第百二条の十五 各議院の情報監視審査会から調査のため、行政機関の長に対し、必要な特定秘密の提出(提示を含むものとする。以下第百四条の三までにおいて同じ。)を求めたときは、その求めに応じなければならない。

- 2 前項の場合における特定秘密保護法第十条第一項及び第二十三条第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特定秘密保護法第十条第一項第一号イ中「各議院又は各議院の委員会若しくは参議院の調査会」とあるのは「各議院の情報監視審査会」と、「第百四条第一項(同法第五十四条の四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議院における証人の宣誓及び証言等に関する法律(昭和二十二年法律第二百二十五号)第一条」とあるのは「第百二条の十五第一項」と、「審査又は調査であつて、国会法第五十二条第二項(同法第五十四条の四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六十二条の規定により公開しないこととされたもの」とあるのは「調査(公開しないで行われるものに限る。))と、特定秘密保護法第二十三条第二項中「第十条」とあるのは「第十条(国会法第百二条の十五第二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場合を含む。))とする。
- 3 行政機関の長が第一項の求めに応じないときは、その理由を疎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理由をその情報監視審査会において受諾し得る場合には、行政機関の長は、その特定秘密の提出をする必要がない。

2. 헌법심사회에 부탁된 안건에 대한 제68조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조단서 중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회중 심사한 의안”은 “헌법개정원안,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회중 심사한 의안”으로 한다.

제102조의10 제102조의6부터 전조까지 정하는 것 외에, 헌법심사회에 관한 사항은 각 의원의 의결에 따라 이를 정한다.

제11장의3 국민투표홍보협의회

제102조의11 헌법 개정의 발의가 있던 때에는, 그 발의와 관련되는 헌법개정안의 국민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 각 의원에서 그 의원 중 선임된 같은 수의 위원으로 조직하는 국민투표홍보협의회를 설치한다.

2. 국민투표홍보협의회는, 전항의 발의와 관련되는 국민투표에 관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존속한다.
3. 국민투표홍보협의회회의 회장은 그 위원이 호선한다.

제102조의12 전조에 정하는 것 외에, 국민투표홍보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11장의4 정보감시심사회

제102조의13 행정에서의 특정 비밀(특정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108호. 이하 ‘특정비밀보호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에 관한 제도의 운용을 상시 감시하기 위해 특정비밀의 지정(동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말한다.) 및 그 해제, 및 적성평가(특정비밀보호법 제12조제1항에 규정하는 적성평가를 말한다.)의 실시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리고 각 의원 또는 각 의원의 위원회 혹은 참의원의 조사회로부터의 제104조제1항(제54조의4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특정비밀의 제출 요구와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특정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 규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판단의 적법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각 의원에 정보감시심사회를 설치한다.

제102조의14 정보감시심사회는, 조사를 위해 특정비밀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는다.

제102조의15 각 의원의 정보감시심사회로부터 조사를 위해서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필요한 특정비밀의 제출(고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제104조의2까지 같다.)을 요구한 때에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의 특정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특정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제1호나. 중 “각 의원 또는 각 의원의 위원회 혹은 참의원의 조사회”는 “각 의원의 정보감시심사회”로, “제104조제1항(동법 제54조의4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의원에서의 증인의 선서 및 증언 등에 관한 법률(1947년 법률 제225호) 제1조”는 “제102조의15제1항”으로, “심사 또는 조사로서, 국회법 제52조제2항(동법 제54조의4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은 “조사(공개하지 않고 실시되는 것에 한한다.)”로, 특정비밀보호법 제23조제2항 중 “제10조”는 “제10조(국회법 제102조의15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3.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때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그 이유를 정보감시심사회에서 수락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특정비밀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4 前項の理由を受諾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は、その情報監視審査会は、更にその特定秘密の提出が我が国の安全保障に著しい支障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旨の内閣の声明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その声明があつた場合は、行政機関の長は、その特定秘密の提出をする必要がない。
- 5 前項の要求後十日以内に、内閣がその声明を出さないときは、行政機関の長は、先に求められた特定秘密の提出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二条の十六 情報監視審査会は、調査の結果、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行政機関の長に対し、行政における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制度の運用について改善すべき旨の勧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2 情報監視審査会は、行政機関の長に対し、前項の勧告の結果とられた措置について報告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百二条の十七 情報監視審査会は、第百四条の二(第五十四条の四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審査の求め又は要請を受けた場合は、各議院の議決により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れについて審査するものとする。

- 2 各議院の情報監視審査会から審査のため、行政機関の長に対し、必要な特定秘密の提出を求めたときは、その求めに応じなければならない。
- 3 前項の場合における特定秘密保護法第十条第一項及び第二十三条第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特定秘密保護法第十条第一項第一号イ中「各議院又は各議院の委員会若しくは参議院の調査会」とあるのは「各議院の情報監視審査会」と、「第百四条第一項(同法第五十四条の四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議院における証人の宣誓及び証言等に関する法律(昭和二十二年法律第二百二十五号)第一条」とあるのは「第百二条の十七第二項」と、「審査又は調査であつて、国会法第五十二条第二項(同法第五十四条の四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第六十二条の規定により公開しないこととされたもの」とあるのは「審査(公開しないで行われるものに限る。)と、特定秘密保護法第二十三条第二項中「第十条」とあるのは「第十条(国会法第百二条の十七第三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場合を含む。)」とする。
- 4 第百二条の十五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は、行政機関の長が第二項の求めに応じない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 5 情報監視審査会は、第一項の審査の結果に基づき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行政機関の長に対し、当該審査の求め又は要請をした議院又は委員会若しくは参議院の調査会の求めに応じて報告又は記録の提出をすべき旨の勧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勧告は、その提出を求める報告又は記録の範囲を限定して行うことができる。
- 6 第百二条の十五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は、行政機関の長が前項の勧告に従わない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三項及び第四項中「その特定秘密の提出」とあり、並びに同条第五項中「先に求められた特定秘密の提出」とあるのは、「その勧告に係る報告又は記録の提出」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7 情報監視審査会は、第一項の審査の結果を、当該審査の求め又は要請をした議院又は委員会若しくは参議院の調査会に対して通知するものとする。

4. 전항의 이유를 수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정보감시심사회는 다시 그 특정비밀의 제출이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취지의 내각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성명이 있던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특정비밀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5. 전항의 요구 후 10일 이내에 내각이 성명을 내지 않을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먼저 요구받은 특정비밀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2조의16 정보감시심사회는,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 행정의 특정비밀보호에 관한 제도의 운용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취지의 권고를 할 수 있다.

2. 정보감시심사회는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 전항 권고의 결과로 된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2조의17 정보감시심사회는, 제104조의2(제54조의4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심사의 요구 또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각 의원의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대해서 심사한다.

2. 각 의원의 정보감시심사회로부터 심사를 위해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 필요한 특정비밀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경우의 특정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특정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제1호나. 중 “각 의원 또는 각 의원의 위원회 혹은 참의원의 조사회”는 “각 의원의 정보감시심사회”로, “제104조제1항(동법 제54조의4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의원에서의 증인의 문서 및 증언 등에 관한 법률(1947년 법률 제225호) 제1조”는 “제102조의17제2항”으로, “심사 또는 조사로서, 국회법 제52조제2항(동법 제54조의4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은 “심사(공개하지 않고 실시되는 것에 한한다.)”로, 특정비밀보호법 제23조제2항 중 “제10조”는 “제10조(국회법 제102조의17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4. 제2조의1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준용한다.

5. 정보감시심사회는, 제1항의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 그 심사의 요구 또는 요청을 한 의원 또는 위원회 혹은 참의원의 조사회의 요구에 응하여, 보고 또는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취지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고는 제출을 요구하는 보고 또는 기록의 범위를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6. 제102조의1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행정기관의 장이 전항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3항 및 제4항 중 “그 특정비밀의 제출”, 그리고 동조제5항 중 “먼저 요구받은 특정비밀의 제출”은 “그 권고와 관련된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로 대체한다.

7. 정보감시심사회는 제1항의 심사결과를, 그 심사의 요구 또는 요청을 한 의원 또는 위원회 혹은 참의원의 조사회에 대해서 통지한다.

第百二条の十八 各議院の情報監視審査会の事務は、その議院の議長が別に法律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実施する適性評価(情報監視審査会の事務を行った場合に特定秘密を漏らすおそれがないことについての職員又は職員になることが見込まれる者に係る評価をいう。)においてその事務を行った場合に特定秘密を漏らすおそれがないと認められた者でなければ、行つてはならない。

第百二条の十九 第百二条の十五及び第百二条の十七の規定により、特定秘密が各議院の情報監視審査会に提出されたときは、その特定秘密は、その情報監視審査会の委員及び各議院の議決により定める者並びにその事務を行う職員に限り、かつ、その調査又は審査に必要な範囲で、利用し、又は知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第百二条の二十 情報監視審査会については、第六十九条から第七十二条まで及び第百四条の規定を準用する。

第百二条の二十一 この法律及び他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情報監視審査会に関する事項は、各議院の議決によりこれを定める。

第十二章 議院と国民及び官庁との関係

第百三条 各議院は、議案その他の審査若しくは国政に関する調査のために又は議院において必要と認めた場合に、議員を派遣することができる。

第百四条 各議院又は各議院の委員会から審査又は調査のため、内閣、官公署その他に対し、必要な報告又は記録の提出を求めたときは、その求めに応じなければならない。

2 内閣又は官公署が前項の求めに応じないときは、その理由を疎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理由をその議院又は委員会において受諾し得る場合には、内閣又は官公署は、その報告又は記録の提出をする必要がない。

3 前項の理由を受諾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は、その議院又は委員会は、更にその報告又は記録の提出が国家の重大な利益に悪影響を及ぼす旨の内閣の声明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その声明があつた場合は、内閣又は官公署は、その報告又は記録の提出をする必要がない。

4 前項の要求後十日以内に、内閣がその声明を出さないときは、内閣又は官公署は、先に求められた報告又は記録の提出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百四条の二 各議院又は各議院の委員会が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その内容に特定秘密である情報が含まれる報告又は記録の提出を求めた場合において、行政機関の長が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理由を疎明してその求めに応じなかつたときは、その議院又は委員会は、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内閣の声明を要求することに代えて、その議院の情報監視審査会に対し、行政機関の長がその求めに応じないことについて審査を求め、又はこれを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

第百四条の三 第百四条の規定により、その内容に特定秘密である情報を含む報告又は記録が各議院又は各議院の委員会に提出されたときは、その報告又は記録は、その議院の議員又は委員会の委員及びその事務を行う職員に限り、かつ、その審査又は調査に必要な範囲で、利用し、又は知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第百五条 各議院又は各議院の委員会は、審査又は調査のため必要があるときは、会計検査院に対し、特定の事項について会計検査を行い、その結果を報告するよう求めることができる。

제102조의18 각 의원의 정보감시심사회의 사무는, 그 의원의 의장이 별도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적성평가(정보감시심사회의 사무를 이행한 경우에 특정비밀을 누설할 우려가 없는 것에 대한 직원 또는 직원이 될 예정인 자와 관련되는 평가를 말한다.)에서 그 사무를 이행한 경우에, 특정비밀을 누설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자가 아니라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102조의19 제102조의15 및 제102조의17의 규정에 따라, 특정비밀이 각 의원의 정보감시심사회에 제출된 때에는, 그 특정비밀은 그 정보감시심사회의 위원 및 각 의원의 의결에 따라 정하는 자, 및 그 사무를 이행하는 직원에 한하고, 또 그 조사 또는 심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102조의20 정보감시심사회에 대해서는,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10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조의21 이 법률 및 다른 법률에 정하는 것 외에, 정보감시심사회에 관한 사항은 각 의원의 의결에 따라 이를 정한다.

제12장 의원과 국민 및 관청과의 관계

제103조 각 의원은, 의안 기타 심사 혹은 국정에 관한 조사를 위해서, 또는 의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4조 각 의원 또는 각 의원의 위원회로부터 심사 또는 조사를 위해, 내각, 관공서, 그 밖에 대해서 필요한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2. 내각 또는 관공서가 전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때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그 이유를 그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수락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각 또는 관공서는 그 보고 또는 기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3. 전항의 이유를 수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의원 또는 위원회는 다시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취지의 내각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성명이 있던 경우에는, 내각 또는 관공서는 그 보고 또는 기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전항의 요구 후 10일 이내에 내각이 그 성명을 내지 않을 때에는, 내각 또는 관공서는 먼저 요구받은 보고 또는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 각 의원 또는 각 의원의 위원회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에 특정비밀인 정보가 포함되는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유를 소명하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그 의원 또는 위원회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내각의 성명을 요구하는 대신에, 그 의원의 정보감시심사회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장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사를 구하거나, 또는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4조의3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에 특정비밀인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 또는 기록이 각 의원 또는 각 의원의 위원회에 제출된 때에는, 그 보고 또는 기록은 그 의원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 및 그 사무를 이행하는 직원에 한하고, 또 그 심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하거나 알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105조 각 의원 또는 각 의원의 위원회는, 심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회계감사원에 대해서 특정 사항에 대해 회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p>第百六条 各議院は、審査又は調査のため、証人又は参考人が出頭し、又は陳述したときは、別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旅費及び日当を支給する。</p>	<p>제106조 각 의원은, 심사 또는 조사를 위해 증인 또는 참고인이 출두하거나 또는 진술한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여비 및 일당을 지급한다.</p>
<p>第十三章 辞職、退職、補欠及び資格争訟</p>	<p>제13장 사직, 퇴직, 보결 및 자격쟁송</p>
<p>第百七条 各議院は、その議員の辞職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閉会中は、議長においてこ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p>	<p>제107조 각 의원은 그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p>
<p>第百八条 各議院の議員が、他の議院の議員となつたときは、退職者となる。</p>	<p>제108조 각 의원의 의원이 다른 의원의 의원이 된 때에는 퇴직자가 된다.</p>
<p>第百九条 各議院の議員が、法律に定めた被選の資格を失つたときは、退職者となる。</p>	<p>제109조 각 의원의 의원이 법률에 정한 피선 자격을 잃었을 때에는 퇴직자가 된다.</p>
<p>第百九条の二 衆議院の比例代表選出議員が、議員となつた日以後において、当該議員が衆議院名簿登載者(公職選挙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百号)第八十六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衆議院名簿登載者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であつた衆議院名簿届出政党等(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以外の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で、当該議員が選出された選挙における衆議院名簿届出政党等であるもの(当該議員が衆議院名簿登載者であつた衆議院名簿届出政党等(当該衆議院名簿届出政党等に係る合併又は分割(二以上の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の設立を目的として一の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が解散し、当該二以上の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が設立されることをいう。次項において同じ。)が行われた場合における当該合併後に存続する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若しくは当該合併により設立された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又は当該分割により設立された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を含む。)を含む二以上の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の合併により当該合併後に存続するものを除く。)に所属する者となつたとき(議員となつた日において所属する者である場合を含む。)は、退職者となる。</p> <p>2 参議院の比例代表選出議員が、議員となつた日以後において、当該議員が参議院名簿登載者(公職選挙法第八十六条の三第一項に規定する参議院名簿登載者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であつた参議院名簿届出政党等(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以外の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で、当該議員が選出された選挙における参議院名簿届出政党等であるもの(当該議員が参議院名簿登載者であつた参議院名簿届出政党等(当該参議院名簿届出政党等に係る合併又は分割が行われた場合における当該合併後に存続する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若しくは当該合併により設立された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又は当該分割により設立された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を含む。)を含む二以上の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の合併により当該合併後に存続するものを除く。)に所属する者となつたとき(議員となつた日において所属する者である場合を含む。)は、退職者となる。</p>	<p>제109조의2 중의원의 비례대표선출의원이, 의원이 된 날 이후에, 그 의원이 중의원명부등재자(공직선거법(1950년 법률 제100호) 제86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중의원명부등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였던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외의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로, 그 의원이 선출된 선거에서의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그 의원이 중의원명부등재자였던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그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과 관련되는 합병 또는 분할(2 이상의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여 하나의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가 해산하고, 2 이상의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가 설립되는 것을 말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이 이루어진 경우의 그 합병 후에 존속하는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 혹은 그 합병에 의해 설립된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 또는 그 분할에 의해 설립된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를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2 이상의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합병에 의해 그 합병 후에 존속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자가 되었을 때(의원이 된 날에 소속하는 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퇴직자가 된다.</p> <p>2. 참의원의 비례대표선출의원이, 의원이 된 날 이후에, 그 의원이 참의원명부등재자(공직선거법 제86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참의원명부등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였던 참의원명부신고정당 등(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외의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로, 그 의원이 선출된 선거에서의 참의원명부신고정당 등(그 의원이 참의원명부등재자였던 참의원명부신고정당 등(그 참의원명부신고정당 등과 관련되는 합병 또는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의 그 합병 후에 존속하는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 혹은 그 합병에 따라 설립된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 또는 그 분할에 의해 설립된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를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2 이상의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합병에 의해 그 합병 후에 존속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소속하는 자가 되었을 때(의원이 된 날에 소속하는 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퇴직자가 된다.</p>
<p>第百十条 各議院の議員に欠員が生じたときは、その院の議長は、内閣総理大臣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제110조 각 의원의 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원의 의장은 내각총리대신에 통지해야 한다.</p>
<p>第百十一条 各議院において、その議員の資格につき争訟があるときは、委員会の審査を経た後これを議決する。</p> <p>2 前項の争訟は、その院の議員から文書でこれを議長に提起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제111조 각 의원에서 그 의원의 자격에 대해 쟁송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이를 의결한다.</p> <p>2. 전항의 쟁송은, 그 원의 의원으로부터 문서로 이를 의장에게 제기하여야 한다.</p>
<p>第百十二条 資格争訟を提起された議員は、二人以内の弁護人を依頼することができる。</p> <p>2 前項の弁護人の中一人の費用は、国費でこれを支弁する。</p>	<p>제112조 자격쟁송이 제기된 의원은, 2인 이내의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p> <p>2. 전항의 변호인 중 1인의 비용은 국비로 이를 지불한다.</p>

<p>第百十三条 議員は、その資格のないことが証明されるまで、議院において議員としての地位及び権能を失わない。但し、自己の資格争訟に関する会議において弁明はできるが、その表決に加わることができない。</p>	<p>제113조 의원은 그 자격이 없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의원에서 의원으로서의 지위 및 권능을 잃지 않는다. 단, 자기의 자격쟁송에 관한 회의에서 변명은 할 수 있지만, 그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p>
<p>第十四章 紀律及び警察</p>	<p>제14장 기율(紀律) 및 경찰</p>
<p>第百十四条 国会の会期中各議院の紀律を保持するため、内部警察の権は、この法律及び各議院の定める規則に従い、議長が、これを行う。閉会中もまた、同様とする。</p>	<p>제114조 국회 회기 중, 각 의원의 기율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 경찰의 권한은 이 법률 및 각 의원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서, 의장이 이를 이행한다. 폐회중에도 또한 마찬가지이다.</p>
<p>第百十五条 各議院において必要とする警察官は、議長の要求により内閣がこれを派出し、議長の指揮を受ける。</p>	<p>제115조 각 의원에서 필요로 하는 경찰관은 의장의 요구에 의해 내각이 이를 파견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는다.</p>
<p>第百十六条 會議中議員がこの法律又は議事規則に違ひその他議場の秩序をみだし又は議院の品位を傷けるときは、議長は、これを警戒し、又は制止し、又は発言を取り消させる。命に従わないときは、議長は、当日の會議を終るまで、又は議事が翌日に継続した場合はその議事を終るまで、発言を禁止し、又は議場の外に退去させることができる。</p>	<p>제116조 회의 중 의원이 이 법률 또는 의사규칙을 어기고, 기타 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또는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때에는, 의장은 이를 경계하거나 또는 제지하고, 또는 발언을 취소시킨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의장은 당일 회의를 마칠 때까지, 또는 의사가 다음날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의사를 마칠 때까지 발언을 금지하거나 또는 의장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p>
<p>第百七条 議長は、議場を整理し難いときは、休憩を宣告し、又は散会することができる</p>	<p>제117조 의장은 의장을 정리하기 어려울 때에는, 휴식을 선고하거나 산회할 수 있다.</p>
<p>第百八条 傍聴人が議場の妨害をするとき、議長は、これを退場させ、必要な場合は、これを警察官庁に引渡すことができる。</p>	<p>제118조 방청인이 의장을 방해할 때에는, 의장은 이를 퇴장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경찰관청에 인도할 수 있다.</p>
<p>2 傍聴席が騒がしいときは、議長は、すべての傍聴人を退場させることができる。</p>	<p>2. 방청석이 소란스러울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p>
<p>第百八条の二 議員以外の者が議院内部において秩序をみだしたときは、議長は、これを院外に退去させ、必要な場合は、これを警察官庁に引渡すことができる。</p>	<p>제118조의2 의원 이외의 자가 의원 내부에서 질서를 어지럽힌 때에는, 의장은 이를 원외로 퇴거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경찰관청에 인도할 수 있다.</p>
<p>第百九条 各議院において、無礼の言を用い、又は他人の私生活にわたる言論をしてはならない。</p>	<p>제119조 각 의원에서 무례한 말을 사용하거나 또는 타인의 사생활을 퍼뜨리는 언론을 해서는 안 된다.</p>
<p>第百二十条 議院の會議又は委員会において、侮辱を被つた議員は、これを議院に訴えて処分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p>	<p>제120조 의원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이를 의원에 제소하여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p>
<p>第十五章 懲罰</p>	<p>제15장 징벌</p>
<p>第百二十一条 各議院において懲罰事犯があるときは、議長は、先ずこれを懲罰委員会に付し審査させ、議院の議を経てこれを宣告する。</p>	<p>제121조 각 의원에서 징벌사범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먼저 이를 징벌 위원회에 부치고 심사시켜서 의원의 심의를 거쳐 선고한다.</p>
<p>2 委員会において懲罰事犯があるときは、委員長は、これを議長に報告し処分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p>	<p>2. 위원회에서 징벌사범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처분을 구하여야 한다.</p>
<p>3 議員は、衆議院においては四十人以上、參議院においては二十人以上の賛成で懲罰の動議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動議は、事犯があつた日から三日以内にこれ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3. 의원은 중의원에서는 40인 이상, 참의원에서는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징벌의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동의는, 사범이 있던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p>
<p>第百二十一条の二 会期の終了日又はその前日に生じた懲罰事犯で、議長が懲罰委員会に付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もの並びに懲罰委員会に付され、閉会中審査の議決に至らなかつたもの及び委員会の審査を終了し議院の議決に至らなかつたものについては、議長は、次の国会の召集の日から三日以内にこれを懲罰委員会に付することができる。</p>	<p>제121조의2 회기 종료일 또는 그 전일에 발생한 징벌사범으로, 의장이 징벌위원회에 부칠 수 없었던 것, 그리고 징벌위원회에 부쳐지고 폐회중 심사의 의결에 이르지 않았던 것 및 위원회의 심사를 종료하고 의원의 의결에 이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의장은 다음 국회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징벌위원회에 부칠 수 있다.</p>

<p>2 議員は、会期の終了日又はその前日に生じた事犯で、懲罰の動議を提出するいとまがなかつたもの及び動議が提出され議決に至らなかつたもの並びに懲罰委員会に付され、閉会中審査の議決に至らなかつたもの及び委員会の審査を終了し議院の議決に至らなかつたものについては、前条第三項に規定する定数の議員の賛成で、次の国会の召集の日から三日以内に懲罰の動議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p> <p>3 前二項の規定は、衆議院にあつては衆議院議員の総選挙の後最初に召集される国会において、参議院にあつては参議院議員の通常選挙の後最初に召集される国会において、前の国会の会期の終了日又はその前日における懲罰事犯については、それぞれこれを適用しない。</p> <p>第百二十一条の三 閉会中、委員会その他議院内部において懲罰事犯があるときは、議長は、次の国会の召集の日から三日以内にこれを懲罰委員会に付することができる。</p> <p>2 議員は、閉会中、委員会その他議院内部において生じた事犯について、第百二十一条第三項に規定する定数の議員の賛成で、次の国会の召集の日から三日以内に懲罰の動議を提出することができる。</p>	<p>2. 의원은, 회기 종료일 또는 그 전날에 발생한 사범으로, 징벌의 동의를 제출할 시간이 없었던 것, 및 동의를 제출되고 의결에 이르지 않았던 것, 그리고 징벌위원회에 부처지고 폐회중 심사의 의결에 이르지 않았던 것 및 위원회의 심사를 종료하고 의원의 의결에 이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전조제3항에 규정하는 정수의 의원의 찬성으로 다음 국회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징벌의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p> <p>3. 전2항의 규정은, 중의원에서는 중의원 의원의 총선거 후 최초로 소집되는 국회에서, 참의원에서는 참의원 의원의 통상선거 후 최초로 소집되는 국회에서, 전 국회의 회기종료일 또는 그 전일의 징벌 사범에 대해서는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p> <p>제121조의3 폐회 중, 위원회, 그 밖의 의원 내부에서 징벌사범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다음 국회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징벌위원회에 부칠 수 있다.</p> <p>2. 의원은, 폐회 중, 위원회 그 밖의 의원 내부에서 발생한 사범에 대해서, 제121조제3항에 규정하는 정수의 의원의 찬성으로 다음 국회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징벌의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p>
<p>第百二十二条 懲罰は、左の通りとす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一 公開議場における戒告 二 公開議場における陳謝 三 一定期間の登院停止 四 除名 	<p>제122조 징벌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개의장에서의 계고(戒告) 2 공개의장에서의 사과 3 일정기간 등원 정지 4 제명
<p>第百二十三条 両議院は、除名された議員で再び当選した者を拒むことができない。</p>	<p>제123조 양 의원은, 제명된 의원으로 다시 당선된 자를 거부할 수 없다.</p>
<p>第百二十四条 議員が正当な理由がなくて召集日から七日以内に召集に応じないため、又は正当な理由がなくて会議又は委員会に欠席したため、若しくは請暇の期限を過ぎたため、議長が、特に招状を發し、その招状を受け取つた日から七日以内に、なお、故なく出席しない者は、議長が、これを懲罰委員会に付する。</p>	<p>제124조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 또는 위원회에 결석했기 때문에, 혹은 청원휴가 기한을 넘었기 때문에, 의장이 특별히 소장을 발하고, 그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자는, 의장이 이를 징벌위원회에 부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十五章の二 政治倫理</p> <p>第百二十四条の二 議員は、各議院の議決により定める政治倫理綱領及びこれにのつとり各議院の議決により定める行為規範を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第百二十四条の三 政治倫理の確立のため、各議院に政治倫理審査会を設ける。</p> <p>第百二十四条の四 前条に定めるもののほか、政治倫理審査会に関する事項は、各議院の議決によりこれを定める。</p>	<p style="text-align: center;">제15장의2 정치윤리</p> <p>제124조의2 의원은, 각 의원의 의결에 의해 정하는 정치윤리강령 및 이를 기준으로 각 의원의 의결에 의해 정하는 행위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124조의3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해, 각 의원에 정치윤리심사회를 설치한다.</p> <p>제124조의4 전조에 정하는 것 외에, 정치윤리심사회에 관한 사항은 각 의원의 의결에 따라 이를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十六章 弾劾裁判所</p> <p>第百二十五条 裁判官の弾劾は、各議院においてその議員の中から選挙された同数の裁判員で組織する弾劾裁判所がこれを行う。</p> <p>2 弾劾裁判所の裁判長は、裁判員がこれを互選する。</p> <p>第百二十六条 裁判官の罷免の訴追は、各議院においてその議員の中から選挙された同数の訴追委員で組織する訴追委員会がこれを行う。</p> <p>2 訴追委員会の委員長は、その委員がこれを互選する。</p> <p>第百二十七条 弾劾裁判所の裁判員は、同時に訴追委員となることができない。</p>	<p style="text-align: center;">제16장 탄핵재판소</p> <p>제125조 재판관의 탄핵은, 각 의원에서 그 의원 중에서 선거된 같은 수의 재판원으로 조직하는 탄핵재판소가 이를 행한다.</p> <p>2. 탄핵재판소의 재판장은 재판원이 이를 호선한다.</p> <p>제126조 재판관의 파면 소추는, 각 의원에서 그 의원 중에서 선거된 같은 수의 소추위원으로 조직하는 소추위원회가 이를 행한다.</p> <p>2. 소추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이 이를 호선한다.</p> <p>제127조 탄핵재판소의 재판원은 동시에 소추위원이 될 수 없다.</p>

<p>第二百二十八条 各議院は、裁判員又は訴追委員を選挙する際、その予備員を選挙する。</p>	<p>제128조 각 의원은, 재판원 또는 소추위원을 선거할 때, 그 예비원을 선거한다.</p>
<p>第二百二十九条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外、弾劾裁判所及び訴追委員会に関する事項は、別に法律でこれを定める。</p>	<p>제129조 이 법률에 정하는 것 외에, 탄핵재판소 및 소추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법률로 이를 정한다.</p>
<p>第十七章 国会図書館、法制局、議員秘書及び議員会館</p>	<p>제17장 국립국회도서관, 재판국, 의원비서 및 의원회관</p>
<p>第三十条 議員の調査研究に資するため、別に定める法律により、国会に国立国会図書館を置く。</p>	<p>제130조 의원의 조사연구에 이바지하기 위해, 별도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국회에 국립국회도서관을 둔다.</p>
<p>第三十一条 議員の法制に関する立案に資するため、各議院に法制局を置く。</p> <p>2 各法制局に、法制局長一人、参事その他必要な職員を置く。</p> <p>3 法制局長は、議長が議院の承認を得てこれを任免する。但し、閉会中は、議長においてその辞任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p> <p>4 法制局長は、議長の監督の下に、法制局の事務を統理する。</p> <p>5 法制局の参事その他の職員は、法制局長が議長の同意及び議院運営委員会の承認を得てこれを任免する。</p> <p>6 法制局の参事は、法制局長の命を受け事務を掌理する。</p>	<p>제131조 의원의 법제에 관한 입안에 이바지하기 위해, 각 의원에 법제국을 둔다.</p> <p>2. 각 법제국에 법제국장 1인, 참사,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p> <p>3. 법제국장은, 의장이 의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임명한다. 단, 폐회 중에는 의장이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다.</p> <p>4. 법제국장은, 의장의 감독 하에 법제국의 사무를 통리한다.</p> <p>5. 법제국의 참사, 그 밖의 직원은, 법제국장이 의장의 동의 및 의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를 임명한다.</p> <p>6. 법제국의 참사는, 법제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p>
<p>第三十二条 各議員に、その職務の遂行を補助する秘書二人を付する。</p> <p>2 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主として議員の政策立案及び立法活動を補助する秘書一人を付することができる。</p> <p>第三十二条の二 議員の職務の遂行の便に供するため、議員会館を設け、各議員に事務室を提供する。</p>	<p>제132조 각 의원에게 그 직무의 수행을 보좌하는 비서 2인을 둔다.</p> <p>2. 전항에 정하는 것 외에, 주로 의원의 정책입안 및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비서 1인을 둘 수 있다.</p> <p>제132조의2 의원의 직무 수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원회관을 마련하고, 각 의원에게 사무실을 제공한다.</p>
<p>第十八章 補則</p>	<p>제18장 보칙</p>
<p>第三十三条 この法律及び各議院の規則による期間の計算は、当日から起算する。</p>	<p>제133조 이 법률 및 각 의원의 규칙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당일부터 기산한다.</p>
<p>附則 抄</p>	<p>부칙 초록</p>
<p>1 この法律は、日本国憲法施行の日から、これを施行する。</p> <p>2 議院法は、これを廃止する。</p> <p>6 平成二十三年三月十一日に発生した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に伴う原子力発電所の事故について、東京電力福島原子力発電所事故調査委員会の委員長及び委員の推薦、その要請を受けて国政に関する調査を行うこと等のため、附則第十項の法律がその効力を有する間、国会に、東京電力福島原子力発電所事故に係る両議院の議院運営委員会の合同協議会(以下「両院合同協議会」という。)を置く。</p> <p>7 両院合同協議会は、東京電力福島原子力発電所事故調査委員会の要請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要請に係る事項について、国政に関する調査を行うことができる。</p> <p>8 第四百四条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国政に関する調査を行う場合における両院合同協議会について準用する。</p> <p>9 前二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両院合同協議会の組織、運営その他の事項については、両議院の議決によりこれを定める。</p> <p>10 国会に、別に法律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東京電力福島原子力発電所事故調査委員会を置く。</p>	<p>1. 이 법률은 일본국 헌법 시행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p> <p>2. 의원법은 이를 폐지한다.</p> <p>6.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북지방 태평양 앞바다 지진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해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추천, 그 요청을 받고 국정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을 위해, 부칙 제10항의 법률이 그 효력을 가지는 동안, 국회에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관련된 양 의원의 의원운영위원회 합동협의회(이하 “양원합동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p> <p>7. 양원합동협의회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조사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국정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8. 제104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국정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양원합동협의회에 대해서 준용한다.</p> <p>9. 전2항에 정하는 것 외에, 양원합동협의회의 조직, 운영,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양 의원의 의결에 따라 이를 정한다.</p> <p>10. 국회에, 별도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조사위원회를 둔다.</p>

<p>11 内閣は、当分の間毎年、国会に、前項の法律の規定により送付を受けた東京電力福島原子力発電所事故調査委員会の報告書を受けて講じた措置に関する報告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11. 내각은, 당분간 매년, 국회에 전항의 법률 규정에 따라 송부된 도쿄 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받아서 강구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p>
<p>附則(昭和二十三年七月五日法律第八七号) 抄 1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これを施行する。</p>	<p>부칙(1948년 7월 5일 법률 제87호) 초록 1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p>
<p>附則(昭和三〇年一月二八日法律第三号) 抄 1 この法律は、第二十二回国会の召集の日から施行する。</p>	<p>부칙(1955년 1월 28일 법률 제3호) 초록 1 이 법률은 제22회 국회 소집일로부터 시행한다.</p>
<p>附則(昭和二十二年六月一日法律第一五八号) 抄 (施行期日) 1 この法律は、昭和三十二年八月一日から施行する。</p>	<p>부칙(1957년 6월 1일 법률 제158호) 초록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195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附則(昭和三三年四月一八日法律第六五号)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第一条の規定は、第二十九回国会の召集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昭和三四年三月三一日法律第七〇号) 抄 1 この法律は、昭和三十四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p>	<p>부칙(1958년 4월 18일 법률 제65호)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의 규정은 제29회 국회 소집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59년 3월 31일 법률 제70호) 초록 1 이 법률은 195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附則(昭和三八年三月三〇日法律第三五号) この法律は、昭和三十八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則(昭和四〇年五月一八日法律第六九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九十日をこえない範囲内で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p>	<p>부칙(1963년 3월 30일 법률 제35호) 이 법률은 196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65년 5월 18일 법률 제69호) 초록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시행한다.</p>
<p>附則(昭和四一年六月二八日法律第八九号) 抄 (施行期日) 1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p>	<p>부칙(1966년 6월 28일 법률 제89호) 초록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p>
<p>附則(昭和五五年四月七日法律第二二号) この法律は、第九十二回国会の召集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昭和五八年一二月二日法律第八〇号) 抄 (施行期日) 1 この法律は、総務庁設置法(昭和五十八年法律第七十九号)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p>	<p>부칙(1980년 4월 7일 법률 제22호) 이 법률은 제92회 국회 소집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년 12월 2일 법률 제80호) 초록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총무청설치법(1983년 법률 제79호)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p>
<p>附則(昭和六〇年六月二八日法律第八二号) この法律は、次の常会の召集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昭和六一年五月二六日法律第六八号) 抄 1 この法律は、第百五回国会の召集の日から施行する。</p>	<p>부칙(1985년 6월 28일 법률 제82호) 이 법률은 다음 정기국회 소집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년 5월 26일 법률 제68호) 초록 1 이 법률은 제105회 국회 소집일로부터 시행한다.</p>
<p>附則(昭和六二年四月一日法律第二六号) この法律は、昭和六十二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則(昭和六三年一二月二六日法律第八九号) 抄 (施行期日) 1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p>	<p>부칙(1987년 4월 1일 법률 제26호) 이 법률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년 11월 26일 법률 제89호) 초록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附則(平成三年五月一五法律第七二号)</p> <p>この法律は、第百二十一回国会の召集の日から施行する。</p> <p>附則(平成三年九月一九日法律第八六号)抄</p> <p>(施行期日) 1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p>	<p>부칙(1991년 5월 15일 법률 제72호)</p> <p>이 법률은 제121회 국회 소집일로부터 시행한다.</p> <p>부칙(1991년 9월 19일 법률 제86호) 초록</p> <p>(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p>
<p>附則(平成三年一〇月五日法律第九二号)</p> <p>この法律は、第百二十二回国会の召集の日から施行する。</p> <p>附則(平成五年五月七日法律第三九号)抄</p> <p>1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p>	<p>부칙(1991년 10월 5일 법률 제92호)</p> <p>이 법률은 제122회 국회 소집일로부터 시행한다.</p> <p>부칙(1993년 5월 7일 법률 제39호) 초록</p> <p>1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p>
<p>附則(平成八年六月二六日法律第一〇三号)抄</p> <p>(施行期日) 1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p>	<p>부칙(1996년 6월 26일 법률 제103호) 초록</p> <p>(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p>
<p>附則(平成九年一二月一七七日法律第一二二号)</p> <p>この法律は、次の常会の召集の日から施行する。</p> <p>附則(平成九年一二月一九日法律第一二六号)抄</p> <p>(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次の常会の召集の日から施行する。</p>	<p>부칙(1997년 12월 17일 법률 제122호)</p> <p>이 법률은 다음 정기국회의 소집일로부터 시행한다.</p> <p>부칙(1997년 12월 19일 법률 제126호) 초록</p> <p>(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다음 정기국회 소집일로부터 시행한다.</p>
<p>附則(平成一一年七月三〇日法律第一一六号)抄</p> <p>(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p> <p>一 第二条及び附則第五条の規定 第百四十六回国会の召集の日 二 第三条の規定 次の常会の召集の日 三 第四条並びに附則第四条及び第六条の規定 内閣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十一年法律第八十八号)の施行の日</p>	<p>부칙(1999년 7월 30일 법률 제116호) 초록</p> <p>(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 호에 드는 규정은 각각 그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1 제2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 제146회 국회 소집일 2 제3조의 규정 다음 정기국회 소집일 3 제4조, 및 부칙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9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p>
<p>附則(平成一一年八月四日法律第一一八号)抄</p> <p>1 この法律は、次の常会の召集の日から施行する。</p>	<p>부칙(1999년 8월 4일 법률 제118호) 초록</p> <p>1 이 법률은 다음 정기국회의 소집일로부터 시행한다.</p>
<p>附則(平成一二年五月一七七日法律第六三三号)抄</p> <p>(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p> <p>(適用区分) 第二条 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国会法第百九条の二の規定は、この法律の施行の日(以下「施行日」という。)以後その期日を公示される総選挙又は当該総選挙に係る再選挙若しくは補欠選挙において選出される衆議院の比例代表選出議員及び施行日以後その期日を公示される通常選挙又は当該通常選挙に係る再選挙若しくは補欠選挙において選出される参議院の比例代表選出議員について適用し、施行日の前日までにその期日を公示された総選挙又は当該総選挙に係る再選挙若しくは補欠選挙において選出される衆議院の比例代表選出議員及び施行日の前日までにその期日を公示された通常選挙又は当該通常選挙に係る再選挙若しくは補欠選挙において選出される参議院の比例代表選出議員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p>	<p>부칙(2000년 5월 17일 법률 제63호) 초록</p> <p>(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p> <p>(적용구분) 제2조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국회법 제109조의2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일(이하 “시행일”이라 한다.) 이후, 그 기일이 공시되는 총선거 또는 그 총선거와 관련되는 재선거 혹은 보궐선거에서 선출되는 중의원의 비례대표 선출의원 및 시행일 이후, 그 기일이 공시되는 통상선거 또는 그 통상선거와 관련되는 재선거 혹은 보궐선거에서 선출되는 참의원의 비례대표 선출의원 및 시행일 전일까지 그 기일이 공시된 통상선거 또는 그 통상선거와 관련되는 재선거 혹은 보궐선거에서 선출되는 중의원의 비례대표 선출의원 및 시행일 전일까지 그 기일이 공시된 통상선거 또는 그 통상선거와 관련되는 재선거 혹은 보궐선거에서 선출되는 참의원의 비례대표 선출의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p>

第三条 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公職選挙法の規定は、衆議院の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については施行日以後その期日を公示される総選挙並びに当該総選挙に係る再選挙及び補欠選挙について、参議院の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については施行日以後その期日を公示される通常選挙並びに当該通常選挙に係る再選挙及び補欠選挙について適用し、施行日の前日までにその期日を公示された衆議院の比例代表選出議員の総選挙並びに当該総選挙に係る再選挙及び補欠選挙並びに施行日の前日までにその期日を公示された参議院の比例代表選出議員の通常選挙並びに当該通常選挙に係る再選挙及び補欠選挙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附則(平成一二年一二月六日法律第一三七号)

この法律は、平成十三年一月六日以後初めて召集される国会の召集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一七年一一月七日法律第一〇九号)抄

この法律は、平成十八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一八年一二月二日法律第一一八号)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三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附則第三十二条第二項の規定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一九年五月一八日法律第五一号)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三年を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第六章の規定(国会法第十一章の二の次に一章を加える改正規定を除く。)並びに附則第四条、第六条及び第七条の規定は公布の日以後初めて召集される国会の召集の日から、附則第三条第一項、第十一条及び第十二条の規定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この法律の施行までの間の国会法の適用に関する特例)

第四条 第六章の規定による改正後の国会法第六章の二、第八十三条の四、第八十六条の二、第二百二条の六、第二百二条の七及び第二百二条の九第二項の規定は、同法第六十八条の二に規定する憲法改正原案については、この法律が施行されるまでの間は、適用しない。

附則(平成二三年一〇月七日法律第一一一号)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十日を経過した日(その日において国会が閉会中の場合又は衆議院が解散されてい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日後初めて召集される国会の召集の日から起算して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二四年六月二七日法律第四七号)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三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附則(平成二六年四月一八日法律第二二号)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一 次条及び附則第三十九条から第四十二条までの規定 公布の日

제3조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중의원의 비례대표 선출위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그 기일이 공시되는 총선거 및 그 총선거와 관련되는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대해서, 참의원의 비례대표 선출위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그 기일이 공시되는 통상선거 및 그 통상선거와 관련되는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대해서 적용하고, 시행일 전일까지 그 기일이 공시된 중의원의 비례대표 선출위원의 총선거 및 그 총선거와 관련되는 재선거 및 보궐선거 및 시행일 전일까지 그 기일이 공시된 참의원의 비례대표 선출위원의 통상선거 및 그 통상선거와 관련되는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중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2000년 12월 6일 법률 제137호)

이 법률은 2001년 1월 6일 이후 처음 소집되는 국회의 소집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년 11월 7일 법률 제109호) 초록

이 법률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년 12월 22일 법률 제118호) 초록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3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년 5월 18일 법률 제51호) 초록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6장의 규정(국회법 제11장의2 다음에 1장을 더하는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공포일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국회의 소집일부터, 부칙 제3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률의 시행까지의 국회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4조 제6장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국회법 제6장의2, 제83조의4, 제86조의2, 제102조의6, 제102조의7 및 제102조의9제2항의 규정은, 동법 제68조의2에 규정하는 헌법개정원안에 대해서는, 이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동안은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2011년 10월 7일 법률 제111호) 초록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0일을 경과한 날(그 날에 국회가 폐회 중인 경우 또는 중의원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날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국회 소집일부터 기산하여 1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년 6월 27일 법률 제47호) 초록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3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년 4월 18일 법률 제22호) 초록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 호에 드는 규정은, 그 각 호에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 다음 조 및 부칙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공포일

<p>(検討)</p> <p>第四十二条 政府は、平成二十八年度までに、公務の運営の状況、国家公務員の再任用制度の活用状況、民間企業における高年齢者の安定した雇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の実施の状況その他の事情を勘案し、人事院が国会及び内閣に平成二十三年九月三十日に申し出た意見を踏まえつつ、国家公務員の定年の段階的な引上げ、国家公務員の再任用制度の活用拡大その他の雇用と年金の接続のための措置を講ずることについて検討するものとする。</p>	<p>(검토)</p> <p>제42조 정부는, 2016년도까지, 공무원의 운영상황, 국가공무원의 재임용 제도의 활용 상황, 민간기업의 고연령자의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실시상황,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인사원이 국회 및 내각에 2011년 9월 30일에 신청한 의견에 입각하면서, 국가공무원의 정년의 단계적 인상, 국가공무원의 재임용 제도 활용의 확대, 그 밖의 고용과 연금의 접속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한다.</p>
<p>附則(平成二六年六月二〇日法律第七五号)抄</p> <p>(施行期日)</p> <p>1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p>	<p>부칙(2014년 6월 20일 법률 제75호) 초록</p> <p>(시행기일)</p> <p>1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p>
<p>附則(平成二六年六月二七日法律第八六号)抄</p> <p>(施行期日)</p> <p>1 この法律は、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平成二十五年法律第八八号)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第三条及び次項の規定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p> <p>(準備行為)</p> <p>2 情報監視審査会の委員の選任のために必要な行為その他情報監視審査会の設置のために必要な準備行為は、この法律の施行前においても行うことができる。</p> <p>(検討)</p> <p>3 この法律の施行後、我が国が国際社会の中で我が国及び国民の安全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海外の情報を収集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行政機関が設置される場合には、国会における当該行政機関の監視の在り方について検討が加えられ、その結果に基づいて必要な措置が講ぜられるものとする。</p> <p>4 情報監視審査会における調査スタッフの能力の向上、効果的な調査手法の開発その他情報監視審査会の調査機能の充実強化のための方策については、国会において、常に検討を加え、その結果に基づいて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p> <p>5 政府は、この法律の施行後速やかに、行政機関が保有する特定秘密以外の公表しないこととされている情報の取扱いの適正を確保するための仕組みを整備するものとし、当該情報の提供を受ける国会における手続及びその保護に関する方策については、国会において、検討を加え、その結果に基づいて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p>	<p>부칙(2014년 6월 27일 법률 제86호) 초록</p> <p>(시행기일)</p> <p>1 이 법률은,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108호)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및 다음 항의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p> <p>(준비행위)</p> <p>2 정보감시심사회의 위원의 선임을 위해 필요한 행위, 그 밖의 정보감시심사회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실시할 수 있다.</p> <p>(검토)</p> <p>3 이 법률의 시행 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나라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관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그 행정기관 감시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검토가 더해지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가 강구된다.</p> <p>4 정보감시심사회의 조사 스태프의 능력 향상, 효과적인 조사방법의 개발, 기타 정보감시심사회의 조사기능의 충실 강화를 위한 방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항상 검토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p> <p>5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신속하게,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특정비밀 이외의 공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정보 취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정비하고, 그 정보의 제공을 받는 국회의 절차 및 그 보호에 관한 방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p>

2. 통계자료

미국 의회기별 법률안 제출 수 및 법률 성립 수·성립률

의회기(기간)	제출 수			성립 수			성립률		
	상원의원	하원의원	합계	상원의원	하원의원	합계	상원의원	하원의원	합계
제 80 의회기 (1947~1948)	3,186	7,611	10,797	459	905	1,364	14.4%	11.9%	12.6%
제 81 의회기 (1949~1950)	4,486	10,502	14,988	684	1,340	2,024	15.2%	12.8%	13.5%
제 82 의회기 (1951~1952)	3,665	9,065	12,730	588	1,029	1,617	16.0%	11.4%	12.7%
제 83 의회기 (1953~1954)	4,077	10,875	14,952	659	1,124	1,783	16.2%	10.3%	11.9%
제 84 의회기 (1955~1956)	4,518	13,169	17,687	675	1,246	1,921	14.9%	9.5%	10.9%
제 85 의회기 (1957~1958)	4,532	14,580	19,112	666	1,054	1,720	14.7%	7.2%	9.0%
제 86 의회기 (1959~1960)	4,149	14,112	18,261	470	822	1,292	11.3%	5.8%	7.1%
제 87 의회기 (1961~1962)	4,048	14,328	18,376	552	1,017	1,569	13.6%	7.1%	8.5%
제 88 의회기 (1963~1964)	3,457	14,022	17,479	277	749	1,026	8.0%	5.3%	5.9%
제 89 의회기 (1965~1966)	4,129	19,874	24,003	404	879	1,283	9.8%	4.4%	5.3%
제 90 의회기 (1967~1968)	4,400	22,060	26,460	430	572	1,002	9.8%	2.6%	3.8%
제 91 의회기 (1969~1970)	4,867	21,436	26,303	309	632	941	6.3%	2.9%	3.6%
제 92 의회기 (1971~1972)	4,408	18,561	22,969	285	483	768	6.5%	2.6%	3.3%
제 93 의회기 (1973~1974)	4,524	18,872	23,396	300	472	772	6.6%	2.5%	3.3%
제 94 의회기 (1975~1976)	4,115	16,982	21,097	250	479	729	6.1%	2.8%	3.5%
제 95 의회기 (1977~1978)	3,800	15,587	19,387	279	525	804	7.3%	3.4%	4.1%
제 96 의회기 (1979~1980)	3,480	9,103	12,583	249	487	736	7.2%	5.3%	5.8%
제 97 의회기 (1981~1982)	3,396	8,094	11,490	210	319	529	6.2%	3.9%	4.6%

의회기(기간)	제출 수			성립 수			성립률		
	상원의원	하원의원	합계	상원의원	하원의원	합계	상원의원	하원의원	합계
제 98 의회기 (1983~1984)	3,454	7,105	10,559	284	391	675	8.2%	5.5%	6.4%
제 99 의회기 (1985~1986)	3,386	6,499	9,885	304	384	688	9.0%	5.9%	7.0%
제 100 의회기 (1987~1988)	3,325	6,263	9,588	301	460	761	9.1%	7.3%	7.9%
제 101 의회기 (1989~1990)	3,669	6,664	10,333	277	389	666	7.5%	5.8%	6.4%
제 102 의회기 (1991~1992)	3,738	6,775	10,513	199	411	610	5.3%	6.1%	5.8%
제 103 의회기 (1993~1994)	2,805	5,739	8,544	172	301	473	6.1%	5.2%	5.5%
제 104 의회기 (1995~1996)	2,266	4,542	6,808	82	255	337	3.6%	5.6%	5.0%
제 105 의회기 (1997~1998)	2,718	5,014	7,732	141	263	404	5.2%	5.2%	5.2%
제 106 의회기 (1999~2000)	3,343	5,815	9,158	194	410	604	5.8%	7.1%	6.6%
제 107 의회기 (2001~2002)	3,242	5,892	9,134	71	312	383	2.2%	5.3%	4.2%
제 108 의회기 (2003~2004)	3,078	5,547	8,625	148	356	504	4.8%	6.4%	5.8%
제 109 의회기 (2005~2006)	4,163	6,540	10,703	151	332	483	3.6%	5.1%	4.5%
제 110 의회기 (2007~2008)	3,787	7,441	11,228	142	318	460	3.7%	4.3%	4.1%
제 111 의회기 (2009~2010)	4,101	6,677	10,778	120	265	385	2.9%	4.0%	3.6%
제 112 의회기 (2011~2012)	3,767	6,845	10,612	79	205	284	2.1%	3.0%	2.7%
제 113 의회기 (2013~2014)	3,067	6,030	9,097	77	219	296	2.5%	3.6%	3.3%

주 1: 법률안 제출 건수에는 양 의원 공동결의안이 포함

주 2: 성립 수는 양 의원에서 가결된 법률안으로서 대통령이 서명하여 법률로서 성립된 수

출처: "Résumé of Congressional Activity." United States Senate website <http://www.senate.gov/pagelayout/reference/two_column_table/Resumes.htm>

영국 의회기별 법률안 제출수·의원입법 비율 및 법률 성립수·성립률

의회기	기간	제출			성립			
		정부제출	의원제출	의원입법 비율	정부제출	의원제출	정부제출 법률안 성립률	의원입법 성립률
제38의회기	1947~1948	70	0	0.0%	68	0	97.1%	-
	1948~1949	103	23	18.3%	101	5	98.1%	21.7%
	1950	39	1	2.5%	39	0	100.0%	0.0%
제39의회기	1950~1951	60	32	34.8%	58	9	96.7%	28.10%
제40의회기	1951~1952	61	32	34.4%	56	12	91.8%	37.50%
	1952~1953	42	28	40.0%	41	13	97.6%	46.4%
	1953~1954	64	27	29.7%	61	13	95.3%	48.1%
	1954~1955	32	34	51.5%	25	5	78.1%	14.7%
제41의회기	1955~1956	68	39	36.4%	65	18	95.6%	46.20%
	1956~1957	53	28	34.6%	51	12	96.2%	42.9%
	1957~1958	52	47	47.5%	52	24	100.0%	51.1%
	1958~1959	56	45	44.6%	55	22	98.0%	48.9%
제42의회기	1959~1960	53	42	44.2%	53	19	100.0%	45.20%
	1960~1961	48	55	53.4%	45	20	93.8%	36.4%
	1961~1962	39	53	57.6%	39	20	100.0%	37.7%
	1962~1963	43	50	53.8%	42	18	97.7%	36.0%
제43의회기	1963~1964	64	86	57.3%	63	34	98.4%	39.50%
	1964~1965	66	80	54.8%	65	17	98.5%	21.3%
	1965~1966	36	38	51.4%	21	0	58.3%	0.0%
제44의회기	1966~1967	103	107	51.0%	103	24	100.0%	22.40%
	1967~1968	65	77	54.2%	63	13	96.9%	16.9%
	1968~1969	54	94	63.5%	51	12	94.4%	12.8%
	1969~1970	63	81	56.3%	38	15	60.3%	18.5%
제45의회기	1970~1971	76	67	46.9%	76	13	100.0%	19.40%
	1971~1972	59	82	58.2%	59	17	100.0%	20.7%
	1972~1973	57	85	59.9%	57	15	100.0%	17.6%
	1973~1974	33	42	56.0%	15	0	45.5%	0.0%
제46의회기	1974	39	39	50.0%	35	7	89.7%	17.90%

의회기	기간	제출			성립			
		정부제출	의원제출	의원입법 비율	정부제출	의원제출	정부제출 법률안 성립률	의원입법 성립률
제47의회기	1974~1975	81	86	51.5%	73	10	90.1%	11.60%
	1975~1976	76	85	52.8%	72	16	94.7%	18.8%
	1976~1977	49	89	64.5%	42	11	85.7%	12.4%
	1977~1978	49	89	64.5%	49	11	100.0%	12.4%
	1978~1979	55	58	51.3%	44	3	80.0%	5.2%
제48의회기	1979~1980	71	125	63.8%	71	10	100.0%	8.00%
	1980~1981	58	80	58.0%	57	14	98.3%	17.5%
	1981~1982	47	93	66.4%	46	10	97.9%	10.8%
제49의회기	1982~1983	48	81	62.8%	41	10	85.4%	12.30%
	1983~1984	60	118	66.3%	60	13	100.0%	11.0%
	1984~1985	56	98	63.6%	54	21	96.4%	21.4%
	1985~1986	51	114	69.1%	49	21	96.1%	18.4%
	1986~1987	39	85	68.5%	36	15	92.3%	17.6%
제50의회기	1987~1988	49	119	70.8%	49	13	100.0%	10.90%
	1988~1989	37	142	79.3%	37	9	100.0%	6.3%
	1989~1990	36	128	78.0%	34	11	94.4%	8.6%
	1990~1991	52	121	69.9%	49	20	94.2%	16.5%
제51의회기	1991~1992	38	59	60.8%	33	13	86.8%	22.00%
	1992~1993	52	168	76.4%	52	16	100.0%	9.5%
	1993~1994	25	117	82.4%	25	16	100.0%	13.7%
	1994~1995	39	117	75.0%	37	17	94.9%	14.5%
	1995~1996	44	103	70.1%	43	17	97.7%	16.5%
	1996~1997	37	84	69.4%	37	22	100.0%	26.2%
제52의회기	1997~1998	53	149	73.8%	52	10	98.1%	6.70%
	1998~1999	31	104	77.0%	27	8	87.1%	7.7%
	1999~2000	40	104	72.2%	39	6	97.5%	5.8%
	2000~2001	26	63	70.8%	21	0	80.8%	0.0%
제53의회기	2001~2002	39	123	75.9%	39	8	100.0%	6.50%
	2002~2003	36	102	73.9%	33	13	91.7%	12.7%
	2003~2004	36	95	72.5%	33	5	91.7%	5.3%
	2004~2005	32	56	63.6%	21	0	65.6%	0.0%

의회기	기간	제출			성립			
		정부제출	의원제출	의원입법 비율	정부제출	의원제출	정부제출 법률안 성립률	의원입법 성립률
제54의회기	2005~2006	58	121	67.6%	53	3	91.4%	2.50%
	2006~2007	34	97	74.0%	30	3	88.2%	3.1%
	2007~2008	32	106	76.8%	30	3	93.8%	2.8%
	2008~2009	26	112	81.2%	22	5	84.6%	4.5%
	2009~2010	23	69	75.0%	23	7	100.0%	10.1%
제55의회기	2010~2012	47	230	73.0%	43	6	91.5%	2.60%
	2012~2013	34	103	75.2%	28	10	82.4%	9.7%
	2013~2014	31	149	82.8%	25	5	80.6%	3.4%
	2014~2015	26	136	74.0%	26	10	100.0%	7.4%
제56의회기	2015~2016	26	118	81.9%	23	6	88.5%	5.10%

주 1: 사법률안 및 상원에 제출된 법률안으로서 하원 제1독회에 이르지 않은 것은 포함시키지 않음

주 2: 1986~1987 회기 이전의 통계에서는 공법률안은 정부제출법률안 외에 Other Public Bills, Provisional Order Bills 및 Order Confirmation Bills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기간에는 Other Public Bills를 의원제출법률안의 수치로서 표에 기재. Provisional Order Bills 및 Order Confirmation Bills는 양쪽 모두 정부 명령의 의회승인에 관한 의안임

주 3: 성립한 법률 수는 양 의원에서 가결되어 국왕의 재가를 얻은 수치로서 이전회기에서 계속법률안이 성립한 경우를 포함

출처: "Sessional Returns." UK Parliament website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cmsesret.htm>>(1997년 이후); "Sessional Returns." ProQuest U.K. Parliamentary Papers database(1997년 이전)

독일 의회기별 법률안 제출 수·의원입법의 비율 및 법률 성립 수·성립률

의회기 (기간)	제출					성립						
	정부	하원 의원단	하원 의원단 제출 법률안 비율	상원	상원 제출 법률안 비율	정부	정부 제출 법률안 성립률	하원 의원단	하원 의원단 제출 법률안 성립률	상원	상원 제출 법률안 성립률	공동 제출 등
제1의회기 (1949~1953)	472	301	37.4%	32	4.0%	392	83.1%	141	46.8%	12	37.5%	-
제2의회 (1953~1957)	446	414	47.2%	17	1.9%	368	82.5%	132	31.9%	7	41.2%	-
제3의회기 (1957~1961)	401	207	33.8%	5	0.8%	348	86.8%	74	35.7%	2	40.0%	-
제4의회기 (1961~1965)	378	245	38.6%	12	1.9%	329	87.0%	96	39.2%	2	16.7%	-
제5의회기 (1965~1969)	417	227	34.1%	21	3.2%	368	88.2%	76	33.5%	9	42.9%	-
제6의회기 (1969~1972)	362	171	29.6%	44	7.6%	259	71.5%	58	33.9%	13	29.5%	5
제7의회기 (1972~1976)	461	136	20.3%	73	10.9%	427	92.6%	62	45.6%	17	23.3%	10
제8의회기 (1976~1980)	322	111	22.9%	52	10.7%	288	89.4%	39	35.1%	15	28.8%	12
제9의회기 (1980~1983)	146	58	24.0%	38	15.7%	104	71.2%	16	27.6%	8	21.1%	11
제10의회기 (1983~1987)	280	183	35.1%	59	11.3%	237	84.6%	42	23.0%	32	54.2%	9
제11의회기 (1987~1990)	321	227	38.2%	47	7.9%	267	83.2%	68	30.0%	15	31.9%	19
제12의회기 (1990~1994)	407	297	37.1%	96	12.0%	346	85.0%	92	31.0%	28	29.2%	41
제13의회기 (1994~1998)	443	329	35.6%	151	16.4%	403	91.0%	102	31.0%	36	23.8%	25
제14의회기 (1998~2002)	443	328	38.0%	93	10.8%	394	88.9%	108	32.9%	22	23.7%	35

의회기 (기간)	제출					성립						
	정부	하원 의원단	하원 의원단 제출 법률안 비율	상원	상원 제출 법률안 비율	정부	정부 제출 법률안 성립률	하원 의원단	하원 의원단 제출 법률안 성립률	상원	상원 제출 법률안 성립률	공동 제출 등
제15의회기 (2002~2005)	320	211	32.8%	112	17.4%	281	87.8%	85	40.3%	17	15.2%	17
제16의회기 (2005~2009)	537	264	29.2%	104	11.5%	488	90.9%	89	33.7%	19	18.3%	20
제17의회기 (2009~2013)	484	278	32.9%	82	9.7%	434	89.7%	88	31.7%	17	20.7%	14

주 1: 제출수는 하원에 제출된 법률안의 전체수

주 2: 공동제출 등으로는 심의과정에서 예를 들어 동종 내용의 정부제출법률안과 하원의원단 제출법률안이 통합되어 공동제출법률안으로 변경되어 성립된 것 등이 포함. 다만 성립률 산출시 공동제출 등의 수는 포함되지 않음

출처: Peter Schindler, Hrsg., *Datenhandbuch zur Geschichte des Deutschen Bundestages 1949 bis 1999*, Baden-Baden: Nomos Verlagsgesellschaft, 1999, pp.2386-2395; “Kapitel 10.1 Statistik zur Gesetzgebung,” *Datenhandbuch zur Geschichte des Deutschen Bundestages*, 26.9.2014. Deutscher Bundestag website <https://www.bundestag.de/blob/196202/3aa6ee34b546e9ee58d0759a0cd71338/kapitel_10_01_statistik_zur_gesetzgebung-data.pdf>; Michael F. Feldkamp, “Deutscher Bundestag 1994 bis 2014: Parlaments- und Wahlstatistik für die 13. bis 18. Wahlperiode,” *ZParl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 Heft 1, 2014, pp.3-16.

프랑스 연도별 법률안 제출 수·의원입법비율 및 법률 성립 수·성립률

의회기	회기	제출				성립					
		정부 제출	하원 의원	상원 의원	의원 입법 비율	정부 제출	정부 제출 법률안 성립률	하원 의원	하원 의원 제출 법률안 성립률	상원 의원	상원 의원 제출 법률안 성립률
제5의회기	1973	91	589	33	87.2%	58	63.7%	21	3.6%	1	3.0%
	1974	111	789	41	88.2%	64	57.7%	11	1.4%	3	7.3%
	1975	174	926	41	84.8%	130	74.7%	39	4.2%	4	9.8%
	1976	180	1,040	45	85.8%	93	51.7%	26	2.5%	9	20.0%
	1977	204	1,221	44	86.1%	144	70.6%	26	2.1%	9	20.5%
	1978~1979	114	484	25	81.7%	83	72.8%	9	1.9%	2	8.0%
제6의회기	1979~1980	121	756	34	86.7%	69	57.0%	10	1.3%	2	5.9%
	1980	124	1,024	42	89.6%	74	59.7%	12	1.2%	8	19.0%
	1981	62	1,047	34	94.6%	5	8.1%	0	0.0%	0	0.0%
제7의회기	1981	77	387	33	84.5%	49	63.6%	2	0.5%	1	3.0%
	1982	154	539	36	78.9%	104	67.5%	7	1.3%	4	11.1%
	1983	159	614	40	80.4%	116	73.0%	17	2.8%	2	5.0%
	1984	157	693	42	82.4%	112	71.3%	8	1.2%	3	7.1%
	1985	157	826	41	84.7%	122	77.7%	3	0.4%	0	0.0%
	1986	35	831	41	96.1%	1	2.9%	0	0.0%	0	0.0%
제8의회기	1986	81	370	23	82.9%	51	63.0%	4	1.1%	4	17.4%
	1987	123	632	27	84.3%	90	73.2%	27	4.3%	9	33.3%
	1988	38	644	18	94.6%	2	5.3%	0	0.0%	0	0.0%
제9의회기	1988	71	350	16	83.8%	45	63.4%	2	0.6%	1	6.3%
	1989	124	534	27	81.9%	85	68.5%	15	2.8%	2	7.4%
	1990	138	727	27	84.5%	95	68.8%	17	2.3%	3	11.1%
	1991	141	878	37	86.6%	80	56.7%	10	1.1%	4	10.8%
	1992	156	1,056	38	87.5%	91	58.3%	5	0.5%	1	2.6%
	1993	65	1,067	37	94.4%	0	0.0%	0	0.0%	0	0.0%
제10의회기	1993	117	518	34	82.5%	69	59.0%	14	2.7%	6	17.6%
	1994	162	891	31	85.1%	121	74.7%	33	3.7%	3	9.7%
	1995~1996	150	1,269	33	89.7%	94	62.7%	20	1.6%	4	12.1%
	1996~1997	119	1,422	45	92.5%	40	33.6%	12	0.8%	6	13.3%

의회기	회기	제출				성립					
		정부 제출	하원 의원	상원 의원	의원 입법 비율	정부 제출	정부 제출 법률안 성립률	하원 의원	하원 의원 제출 법률안 성립률	상원 의원	상원 의원 제출 법률안 성립률
제11의회기	1997	66	210	39	79.0%	5	7.6%	0	0.0%	0	0.0%
	1997~1998	152	551	16	78.9%	80	52.6%	17	3.1%	6	37.5%
	1998~1999	165	743	24	82.3%	74	44.8%	14	1.9%	5	20.8%
	1999~2000	162	980	42	86.3%	98	60.5%	37	3.8%	6	14.3%
	2000~2001	133	1,138	50	89.9%	48	36.1%	33	2.9%	5	10.0%
	2001~2002	106	1,217	62	92.3%	48	45.3%	15	1.2%	6	9.7%
제12의회기	2002	70	131	49	72.0%	24	34.3%	0	0.0%	0	0.0%
	2002~2003	159	497	66	78.0%	82	51.6%	7	1.4%	11	16.7%
	2003~2004	187	767	62	81.6%	78	41.7%	3	0.4%	5	8.1%
	2004~2005	224	1,022	63	82.9%	97	43.3%	7	0.7%	5	7.9%
	2005~2006	215	1,351	70	86.9%	69	32.1%	5	0.4%	7	10.0%
	2006~2007	180	1,529	69	89.9%	61	33.9%	2	0.1%	8	11.6%
제13의회기	2007	63	96	33	67.2%	32	50.8%	0	0.0%	0	0.0%
	2007~2008	127	521	42	81.6%	89	70.1%	9	1.7%	5	11.9%
	2008~2009	148	824	48	85.5%	73	49.3%	6	0.7%	5	10.4%
	2009~2010	181	1,153	60	87.0%	90	49.7%	11	1.0%	11	18.3%
	2010~2011	180	1,512	76	89.8%	84	46.7%	9	0.6%	15	19.7%
	2011~2012	125	1,760	74	93.6%	49	39.2%	14	0.8%	5	6.8%
제14의회기	2012	55	133	50	76.9%	9	16.4%	0	0.0%	1	2.0%
	2012~2013	166	624	75	80.8%	71	42.8%	7	1.1%	12	16.0%
	2013~2014	158	848	86	85.5%	73	46.2%	18	2.1%	9	10.5%
	2014~2015	202	407	27	66.8%	72	35.6%	6	1.5%	6	22.2%

주 1: 프랑스에서는 조약승인안, 헌법개정안 및 예산법률안 등도 다른 일반적인 법률안과 같이 통계에 포함

주 2: 제출법률안수에는 상원에서 심의되지 않은 상원의원 제출법률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주 3: 하원에서는 법률안은 의회기 중 계속되므로 동일한 의회기 중 전의 회기에 제출된 법률안으로서 철회되지 않은 것도 다음 회기의 제출법률안의 수치에 포함

주 4: 의회기 초년과 말년을 제외하고 1994년까지는 연도별로 통계가 공표되어 있으나 1995년 이후에는 매년 10월에 개시하는 정기회부터 다음 정기회 전까지의 1년 통계가 공표되어 있으며, 표에는 1995년 1~9월의 통계가 빠져있음

출처: "Statistiques," Bulletin de l'Assemblée nationale (1973-1994 年版); "Statistiques de l'activité parlementaire." Assemblée nationale website <<http://www2.assemblee-nationale.fr/14/statistiques-de-l-activite-parlementaire>>(빠진 부분은 프랑스 의회 하원으로부터의 회답에 기초하였음). 2014-2015<http://www.senat.fr/fileadmin/Fichiers/Images/seance/tableaux_de_bord/tableau_de_bord_anneeparlementaire-2014-2015.pdf>

일본 국회 회차별 법률안 제출 수 및 법률 성립 수·성립률

국회회차	소집일	회기종료일	각 법					중 법					참 법				
			제출	계속 제출	성립	계속 성립	성립률	제출	계속 제출	성립	계속 성립	성립률	제출	계속 제출	성립	계속 성립	성립률
1 (特)	1947.5.20.	1947.12.9.	161		150		93.2%	20		8		40.0%	2		0		0.0%
2 (常)	1947.12.10.	1948.7.5.	225		190		84.4%	21		20		95.2%	10		3		30.0%
3 (臨)	1948.10.11.	1948.11.30.	40	8	32		66.7%	5		4		80.0%	3		1		33.3%
4 (常)	1948.12.1.	1948.12.23.	23		22		95.7%	5		5		100.0%	9		6		66.7%
5 (特)	1949.2.11.	1949.5.31.	212		198		93.4%	22		14		63.6%	11		7		63.6%
6 (臨)	1949.10.25.	1949.12.3.	60	3	51	2	84.1%	11	2	10		76.9%	4	1	2		40.0%
7 (常)	1949.12.4.	1950.5.2.	196		187		95.4%	32		29		90.6%	11		8		72.7%
8 (臨)	1950.7.12.	1950.7.31.	20		17		85.0%	14		11		78.6%	2	1	0		0.0%
9 (臨)	1950.11.21.	1950.12.9.	43	2	37	2	86.7%	11	2	8	2	76.9%	3	1	2		50.0%
10 (常)	1950.12.10.	1951.6.5.	181		173		95.6%	70		59		84.3%	27		22		81.5%
11 (臨)	1951.8.16.	1951.8.18.	1	6	0		0.0%	0	4	0		0.0%	0	5	0		0.0%
12 (臨)	1951.10.10.	1951.11.30.	54	6	51	1	86.7%	8	4	6		50.0%	3	5	3		37.5%
13 (常)	1951.12.10.	1952.7.31.	249	5	236	5	94.9%	80	4	61	3	76.2%	19	4	11		47.8%
14 (常)	1952.8.26.	1952.8.28.	0	8	0		0.0%	1	6	0		0.0%	0	2	0		0.0%
긴급집회	1952.8.31.	1952.8.31.	0		0			0		0			0		0		
15 (特)	1952.10.24.	1953.3.14.	187		50		26.7%	59		25		42.4%	16		2		12.5%
긴급집회	1953.3.18.	1953.3.20.	4		4		100.0%	0		0			0		0		
16 (特)	1953.5.18.	1953.8.10.	169		159		94.1%	88		54		61.4%	20		13		65.0%
17 (臨)	1953.10.29.	1953.11.7.	15	2	15		88.2%	13	12	2		8.0%	0	5	0		0.0%
18 (臨)	1953.11.30.	1953.12.8.	10	2	9		75.0%	3	18	3		14.3%	1	5	1	1	33.3%
19 (常)	1953.12.10.	1954.6.15.	183	2	176	2	96.2%	51	14	21		32.3%	22	4	6		23.1%
20 (臨)	1954.11.30.	1954.12.9.	11	6	10		58.8%	22	22	9	2	25.0%	2	15	1	2	17.6%
21 (常)	1954.12.10.	1955.1.24.	0		0			16		4		25.0%	3		0		0.0%
22 (特)	1955.3.18.	1955.7.30.	150		135		90.0%	78		35		44.9%	28		6		21.4%
23 (臨)	1955.11.22.	1955.12.16.	10	2	10	1	91.7%	9	4	5		38.5%	1	12	0		0.0%
24 (常)	1955.12.20.	1956.6.3.	172	1	141		81.5%	71	6	16	3	24.7%	13	13	7	1	30.8%
25 (臨)	1956.11.12.	1956.12.13.	10	21	4	2	19.4%	10	26	2	4	16.7%	1	9	0		0.0%
26 (常)	1956.12.20.	1957.5.19.	158	24	145	9	84.6%	50	25	15	5	26.7%	17	10	3		11.1%
27 (臨)	1957.11.1.	1957.11.14.	5	20	5	2	28.0%	13	35	2	1	6.3%	2	16	0		0.0%
28 (常)	1957.12.20.	1958.4.25.	159	16	144	1	82.9%	27	41	12	3	22.1%	19	15	4	1	14.7%
29 (特)	1958.6.10.	1958.7.8.	5		5		100.0%	16		0		0.0%	1		0		0.0%
30 (臨)	1958.9.29.	1958.12.7.	41		6		14.6%	13	8	0		0.0%	6	1	0		0.0%
31 (常)	1958.12.10.	1959.5.2.	185		171		92.4%	69		12		17.4%	14		0		0.0%
32 (臨)*	1959.6.22.	1959.7.3.	2	7	2		22.2%	1	25	0		0.0%	0	4	0		0.0%
33 (臨)	1959.10.26.	1959.12.27.	33	7	32	2	85.0%	26	26	2	2	7.7%	2	4	0		0.0%

국회회차	소집일	회기종료일	각 법					중 법					참 법				
			제출	계속 제출	성립	계속 성립	성립률	제출	계속 제출	성립	계속 성립	성립률	제출	계속 제출	성립	계속 성립	성립률
34(常)	1959.12.29.	1960.7.15.	155	4	124	1	78.6%	48	26	9	4	17.6%	4	6	2		20.0%
35(臨)	1960.7.18.	1960.7.22.	0	25	0	4	16.0%	1	35	1		2.8%	0	4	0		0.0%
36(臨)	1960.10.17.	1960.10.24.	0	21	0		0.0%	7	35	0		0.0%	0	4	0		0.0%
37(特)	1960.12.5.	1960.12.22.	25		23		92.0%	7		4		57.1%	1		0		0.0%
38(常)	1960.12.26.	1961.6.8.	211		150		71.1%	60	2	8		12.9%	35	1	2		5.6%
39(臨)	1961.9.25.	1961.10.31.	75	1	68	1	90.8%	34	1	8		22.9%	12	7	1		5.3%
40(常)	1961.12.9.	1962.5.7.	160	6	138	2	84.3%	49	17	7		10.6%	17	8	0		0.0%
41(臨)*	1962.8.4.	1962.9.2.	3	15	3	8	61.1%	11	32	2	1	7.0%	9	1	0	1	10.0%
42(臨)	1962.12.8.	1962.12.23.	11	4	2	1	20.0%	1	35	0		0.0%	0	6	0		0.0%
43(常)	1962.12.24.	1963.7.6.	185		158		85.4%	53		7		13.2%	34		2		5.9%
44(臨)	1963.10.15.	1963.10.23.	36		1		2.8%	7		1		14.3%	1		0		0.0%
45(特)	1963.12.4.	1963.12.18.	13		11		84.6%	5		2		40.0%	0			0	
46(常)	1963.12.20.	1964.6.26.	174	2	156	2	89.8%	62	1	12	1	20.6%	18		1		5.6%
47(臨)	1964.11.9.	1964.12.18.	10	9	10	2	63.2%	9	19	1		3.6%	0	5	0		0.0%
48(常)	1964.12.21.	1965.6.1.	134	5	124	1	89.9%	45	19	10		15.6%	19	5	4		16.7%
49(臨)*	1965.7.22.	1965.8.11.	5	5	3	1	40.0%	0	24	0		0.0%	0		0		
50(臨)	1965.10.5.	1965.12.13.	15	6	3		14.3%	0	24	0		0.0%	3		0		0.0%
51(常)	1965.12.20.	1966.6.27.	156		136		87.2%	60		11		18.3%	18		0		0.0%
52(臨)	1966.7.11.	1966.7.30.	0	11	0	2	18.2%	0	23	0		0.0%	0	3	0		0.0%
53(臨)	1966.11.30.	1966.12.20.	11	7	11	1	66.7%	1	22	1	2	13.0%	2	3	0		0.0%
54(常)	1966.12.27.	1966.12.27.	0	3	0		0.0%	0	20	0		0.0%	0	2	0		0.0%
55(特)	1967.2.15.	1967.7.21.	152		131		86.2%	43		6		14.0%	13		0		0.0%
56(臨)	1967.7.27.	1967.8.18.	2	11	1		7.7%	2	15	0		0.0%	1		0		0.0%
57(臨)	1967.12.4.	1967.12.23.	8	7	7	1	53.3%	4	8	1		8.3%	0		0		
58(常)	1967.12.27.	1968.6.3.	108	7	90	5	82.6%	45	9	7		13.0%	15		2		13.3%
59(臨)*	1968.8.1.	1968.8.10.	0	7	0		0.0%	0	19	0		0.0%	0		0		
60(臨)	1968.12.10.	1968.12.21.	9	6	7		46.7%	3	18	0		0.0%	0		0		
61(常)	1968.12.27.	1969.8.5.	113	6	63	3	55.5%	58	18	4		5.3%	22		0		0.0%
62(臨)	1969.11.29.	1969.12.2.	33		26		78.8%	2		1		50.0%	11		0		0.0%
63(特)	1970.1.14.	1970.5.13.	109		98		89.9%	39		17		43.6%	22		1		4.5%
64(臨)	1970.11.24.	1970.12.18.	27	4	27	1	90.3%	5	6	2		18.2%	0		0		
65(常)	1970.12.26.	1971.5.24.	105	3	93	3	88.9%	35	4	15		38.5%	19		0		0.0%
66(臨)*	1971.7.14.	1971.7.24.	0	6	0		0.0%	0	12	0		0.0%	0		0		
67(臨)	1971.10.16.	1971.12.27.	22	6	14	1	53.6%	8	12	4		20.0%	0		0		
68(常)	1971.12.29.	1972.6.16.	115	13	95	9	81.3%	48	8	14		25.0%	10		0		0.0%
69(臨)	1972.7.6.	1972.7.12.	0	11	0		0.0%	0	16	0		0.0%	0	1	0		0.0%
70(臨)	1972.10.27.	1972.11.13.	9	11	9	3	60.0%	4	16	3		15.0%	0	1	0		0.0%
71(特)	1972.12.22.	1973.9.27.	128		103		80.5%	65		14		21.5%	25		1		4.0%

국회회차	소집일	회기종료일	각 법					중 법					참 법				
			제출	계속 제출	성립	계속 성립	성립률	제출	계속 제출	성립	계속 성립	성립률	제출	계속 제출	성립	계속 성립	성립률
72(常)	1973.12.1.	1974.6.3.	95	20	79	15	81.7%	44	21	13	1	21.5%	10	13	0		0.0%
73(臨)*	1974.7.24.	1974.7.31.	0	8	0		0.0%	3	26	0		0.0%	0		0		
74(臨)	1974.12.9.	1974.12.25.	14	8	14		63.6%	4	25	1		3.4%	10		1		10.0%
75(常)	1974.12.27.	1975.7.4.	68	8	43	5	63.2%	40	22	19		30.6%	29	8	0		0.0%
76(臨)	1975.9.11.	1975.12.25.	31	7	30		78.9%	7	32	1		2.6%	13		0		0.0%
77(常)	1975.12.27.	1976.5.24.	69	7	58	1	77.6%	24	31	10		18.2%	20	6	0		0.0%
78(臨)	1976.9.16.	1976.11.4.	9	15	8	6	58.3%	5	41	1		2.2%	6	22	1		3.6%
79(臨)○	1976.12.24.	1976.12.28.	0		0			0		0			0		0		
80(常)	1976.12.30.	1977.6.9.	76		65		85.5%	52		11		21.2%	19		0		0.0%
81(臨)*	1977.7.27.	1977.8.3.	0	8	0		0.0%	0	29	0		0.0%	0		0		
82(臨)	1977.9.29.	1977.11.25.	13	8	7	2	42.9%	7	29	1		2.8%	1		0		0.0%
83(臨)	1977.12.7.	1977.12.10.	8	4	2		16.7%	3	26	3		10.3%	0	1	0		0.0%
84(常)	1977.12.19.	1978.6.16.	82	10	74	9	90.2%	33	26	10		16.9%	14	1	1	1	13.3%
85(臨)	1978.9.18.	1978.10.21.	13	8	12	1	61.9%	6	41	4		8.5%	3	6	1		11.1%
86(臨)	1978.12.6.	1978.12.12.	0	8	0		0.0%	0	35	0		0.0%	0	7	0		0.0%
87(常)	1978.12.22.	1979.6.14.	68	8	42	3	59.2%	36	35	7	1	11.3%	11	5	0		0.0%
88(臨)	1979.8.30.	1979.9.7.	30		3		10.0%	22		0		0.0%	9		0		0.0%
89(特)	1979.10.30.	1979.11.16.	0		0			7		0		0.0%	0		0		
90(臨)	1979.11.26.	1979.12.11.	25		15		60.0%	4	7	1		9.1%	0		0		
91(常)	1979.12.21.	1980.5.19.	92	10	66	9	73.5%	58	10	9		13.2%	17		1		5.9%
92(特)*	1980.7.17.	1980.7.26.	2		0		0.0%	0		0			0		0		
93(臨)	1980.9.29.	1980.11.29.	31	2	23	2	75.8%	18		5		27.8%	2		0		0.0%
94(常)	1980.12.22.	1981.6.6.	74	8	69	3	87.8%	54	10	15	1	25.0%	14	1	1		6.7%
95(臨)	1981.9.24.	1981.11.28.	5	8	3	2	38.5%	2	38	1		2.5%	1	6	0		0.0%
96(常)	1981.12.21.	1982.8.21.	81	4	77	2	92.9%	41	34	17		22.7%	10	7	1	1	11.8%
97(臨)	1982.11.26.	1982.12.25.	5	6	4		36.4%	1	42	0	1	2.3%	0	3	0		0.0%
98(常)	1982.12.28.	1983.5.26.	58	5	51	1	82.5%	18	41	6	2	13.6%	7	3	0		0.0%
99(臨)*	1983.7.18.	1983.7.23.	0	11	0		0.0%	0	47	0		0.0%	0		0		
100(臨)	1983.9.8.	1983.11.28.	13	11	13	5	75.0%	4	47	1	2	5.9%	5		0		0.0%
101(特)	1983.12.26.	1984.8.8.	84		70		83.3%	45		8		17.8%	18		0		0.0%
102(常)	1984.12.1.	1985.6.25.	84	10	77	8	90.4%	39	24	14		22.2%	7	9	1		6.3%
103(臨)	1985.10.14.	1985.12.21.	12	7	10	6	84.2%	3	43	3		6.5%	1	11	0		0.0%
104(常)	1985.12.24.	1986.5.22.	87	3	73		81.1%	23	36	9		15.3%	11	10	2		9.5%
105(臨)	1986.6.2.	1986.6.2.	0	16	0		0.0%	0	45	0		0.0%	0		0		
106(特)*	1986.7.22.	1986.7.25.	0		0			0		0			0		0		
107(臨)	1986.9.11.	1986.12.20.	28		24		85.7%	9		1		11.1%	3		0		0.0%
108(常)	1986.12.29.	1987.5.27.	100	1	72		71.3%	21	4	9		36.0%	4		0		0.0%
109(臨)	1987.7.6.	1987.9.19.	9	22	8	12	64.5%	11	15	2	3	19.2%	3	2	0		0.0%

국회회차	소집일	회기종료일	각 법					중 법					참 법				
			제출	계속 제출	성립	계속 성립	성립률	제출	계속 제출	성립	계속 성립	성립률	제출	계속 제출	성립	계속 성립	성립률
110 (臨)	1987.11.6.	1987.11.11.	0	11	0		0.0%	0	18	0		0.0%	0	5	0		0.0%
111 (臨)	1987.11.27.	1987.12.12.	5	11	5	3	50.0%	1	18	0		0.0%	1	5	1		16.7%
112 (常)	1987.12.28.	1988.5.25.	83	8	75		82.4%	15	19	9		26.5%	3	5	0		0.0%
113 (臨)	1988.7.19.	1988.12.28.	17	14	17	7	77.4%	8	22	6		20.0%	0	8	0		0.0%
114 (常)	1988.12.30.	1989.6.22.	78	7	60		70.6%	10	24	4		11.8%	2	8	0		0.0%
115 (臨)*	1989.8.7.	1989.8.12.	0	24	0		0.0%	0	27	0		0.0%	0		0		
116 (臨)	1989.9.28.	1989.12.16.	8	24	8	17	78.1%	10	27	4	1	13.5%	14		1		7.1%
117 (常)	1989.12.25.	1990.1.24.	5	6	0		0.0%	0	25	0		0.0%	2	3	1		20.0%
118 (特)	1990.2.27.	1990.6.26.	70		66		94.3%	16		8		50.0%	8		0		0.0%
119 (臨)	1990.10.12.	1990.11.10.	2	3	1		20.0%	0	4	0		0.0%	0	6	0		0.0%
120 (常)	1990.12.10.	1991.5.8.	93	3	83	1	87.5%	18	4	10		45.5%	3	6	0		0.0%
121 (臨)	1991.8.5.	1991.10.4.	6	12	1	6	38.9%	9	9	4		22.2%	1	6	0		0.0%
122 (臨)	1991.11.5.	1991.12.21.	14	8	14		63.6%	4	9	2		15.4%	1	6	0		0.0%
123 (常)	1992.1.24.	1992.6.21.	84	8	80	3	90.2%	12	10	7		31.8%	6	6	0		0.0%
124 (臨)*	1992.8.7.	1992.8.11.	0	9	0		0.0%	0	13	0		0.0%	0	1	0		0.0%
125 (臨)	1992.10.30.	1992.12.10.	10	9	10	3	68.4%	12	13	7		28.0%	5	1	0		0.0%
126 (常)	1993.1.22.	1993.6.18.	76	6	72		87.8%	26	15	6		14.6%	16	5	1		4.8%
127 (特)	1993.8.5.	1993.8.28.	0		0			0		0			0		0		
128 (臨)	1993.9.17.	1994.1.29.	20		17		85.0%	11		4		36.4%	6		3		50.0%
129 (常)	1994.1.31.	1994.6.29.	75	3	67	2	88.5%	13	2	10		66.7%	5		3		60.0%
130 (臨)	1994.7.18.	1994.7.22.	0	8	0		0.0%	0	5	0		0.0%	0		0		
131 (臨)	1994.9.30.	1994.12.9.	19	8	19	8	100.0%	7	4	4	1	45.5%	1		0		0.0%
132 (常)	1995.1.20.	1995.6.18.	102		102		100.0%	20	4	7	2	37.5%	6		2		33.3%
133 (臨)*	1995.8.4.	1995.8.8.	0		0			13	1	0		0.0%	0	1	0		0.0%
134 (臨)	1995.9.29.	1995.12.15.	17		17		100.0%	22	1	6		26.1%	0	1	0	1	100.0%
135 (臨)	1996.1.11.	1996.1.13.	0		0			0	13	0		0.0%	0		0		
136 (常)	1996.1.22.	1996.6.19.	99		99		100.0%	16	13	10		34.5%	5		1		20.0%
137 (臨)	1996.9.27.	1996.9.27.	0		0			2	2	0		0.0%	0	1	0		0.0%
138 (特)	1996.11.7.	1996.11.12.	0		0			0		0			0		0		
139 (臨)	1996.11.29.	1996.12.18.	12		9		75.0%	18		1		5.6%	2		0		0.0%
140 (常)	1997.1.20.	1997.6.18.	92	3	90		94.7%	45	8	10	1	20.8%	11		3		27.3%
141 (臨)	1997.9.29.	1997.12.12.	20	5	20	4	96.0%	22	7	3		10.3%	6	2	1		12.5%
142 (常)	1998.1.12.	1998.6.18.	117	1	97	1	83.1%	44	9	6	4	18.9%	6	4	1		10.0%
143 (臨)*	1998.7.30.	1998.10.16.	10	20	7	10	56.7%	20	32	14	1	28.8%	10	1	1	1	18.2%
144 (臨)	1998.11.27.	1998.12.14.	6	11	6		35.3%	7	34	3		7.3%	5		0		0.0%
145 (常)	1999.1.19.	1999.8.13.	124	11	110	10	88.9%	38	34	13		18.1%	22		5		22.7%
146 (臨)	1999.10.29.	1999.12.15.	74	15	74	6	89.9%	19	18	5	1	16.2%	7	2	2		22.2%
147 (常)	2000.1.20.	2000.6.2.	97	9	90	7	91.5%	35	23	17	1	31.0%	20	2	2		9.1%

국회회차	소집일	회기종료일	각 법					중 법					참 법							
			제출	계속 제출	성립	계속 성립	성립률	제출	계속 제출	성립	계속 성립	성립률	제출	계속 제출	성립	계속 성립	성립률			
148(特)	2000.7.4.	2000.7.6.	0		0				3		0		0.0%	0		0				
149(臨)	2000.7.28.	2000.8.9.	0		0				1	3	0		0.0%	8		0				0.0%
150(臨)	2000.9.21.	2000.12.1.	21		20		95.2%		25	3	11		39.3%	17		1				5.9%
151(常)	2001.1.31.	2001.6.29.	99	1	92	1	93.0%		64	6	17	1	25.7%	22		1				4.5%
152(臨)*	2001.8.7.	2001.8.10.	0	7	0		0.0%		0	36	0		0.0%	0		0				
153(臨)	2001.9.27.	2001.12.7.	28	7	28	5	94.3%		29	36	9	3	18.5%	11		1				9.1%
154(常)	2002.1.21.	2002.7.31.	104	2	88	1	84.0%		47	44	12	3	16.5%	22	2	1				4.2%
155(臨)	2002.10.18.	2002.12.13.	71	17	71	7	88.6%		9	56	5	4	13.8%	11	4	0				0.0%
156(常)	2003.1.20.	2003.7.28.	121	5	118	4	96.8%		51	41	12	2	15.2%	18	4	2				9.1%
157(臨)	2003.9.26.	2003.10.10.	6	4	6	1	70.0%		3	59	2		3.2%	5	1	0				0.0%
158(特)	2003.11.19.	2003.11.27.	0		0				0		0			0		0				
159(常)	2004.1.19.	2004.6.16.	127		120		94.5%		59		14		23.7%	24		1				4.2%
160(臨)*	2004.7.30.	2004.8.6.	0	7	0		0.0%		4	21	0		0.0%	4		0				0.0%
161(臨)	2004.10.12.	2004.12.3.	20	7	19	5	88.9%		19	21	7	1	20.0%	2		0				0.0%
162(常)	2005.1.21.	2005.8.8.	89	2	75	1	83.5%		39	22	17	2	31.1%	10		1				10.0%
163(特)	2005.9.21.	2005.11.1.	24		21		87.5%		25		6		24.0%	3		1				33.3%
164(常)	2006.1.20.	2006.6.18.	91	3	82	2	89.4%		40	11	10		19.6%	21		4				19.0%
165(臨)	2006.9.26.	2006.12.19.	12	10	12	6	81.8%		8	26	2	3	14.7%	8	4	2				16.7%
166(常)	2007.1.25.	2007.7.5.	97	2	89	1	90.9%		54	23	19	1	26.0%	14	4	3				16.7%
167(臨)*	2007.8.7.	2007.8.10.	0	9	0		0.0%		0	31	0		0.0%	2		0				0.0%
168(臨)	2007.9.10.	2008.1.15.	10	9	10	4	73.7%		24	31	11		20.0%	14		1				7.1%
169(常)	2008.1.18.	2008.6.21.	80	4	63		75.0%		32	33	14		21.5%	27	8	3				8.6%
170(臨)	2008.9.24.	2008.12.25.	15	19	10	4	41.2%		3	37	1		2.5%	13	5	0				0.0%
171(常)	2009.1.5.	2009.7.21.	69	14	62	4	79.5%		55	36	17	1	19.8%	29	11	1				2.5%
172(特)	2009.9.16.	2009.9.19.	0		0				0		0			0		0				
173(臨)	2009.10.26.	2009.12.4.	12		10		83.3%		13		4		30.8%	4		1				25.0%
174(常)	2010.1.18.	2010.6.16.	64	2	35	1	54.5%		35	7	8		19.0%	18		2				11.1%
175(臨)*	2010.7.30.	2010.8.6.	0	17	0		0.0%		3	23	2		7.7%	1		0				0.0%
176(臨)	2010.10.1.	2010.12.3.	20	17	11	3	37.8%		17	24	10		24.4%	10	1	0				0.0%
177(常)	2011.1.24.	2011.8.31.	90	19	72	10	75.2%		32	28	24		40.0%	24	4	4				14.3%
178(臨)	2011.9.13.	2011.9.30.	0	22	0		0.0%		2	27	2		6.9%	2	10	0				0.0%
179(臨)	2011.10.20.	2011.12.9.	16	22	10	3	34.2%		1	25	0		0.0%	8	10	0	1			5.6%
180(常)	2012.1.24.	2012.9.8.	83	23	55	6	57.5%		39	26	24		36.9%	38	9	7				14.9%
181(臨)	2012.10.29.	2012.11.16.	10	33	5	2	16.3%		4	33	1	1	5.4%	2	19	0	1			4.8%
182(特)	2012.12.26.	2012.12.28.	0		0				0		0			2		0				0.0%
183(常)	2013.1.28.	2013.6.26.	75		63		84.0%		49		7		14.3%	32		3				9.4%
184(臨)*	2013.8.2.	2013.8.7.	0	8	0		0.0%		0	27	0		0.0%	0	1	0				0.0%
185(臨)	2013.10.15.	2013.12.8.	23	8	20	7	87.1%		29	27	8	2	17.9%	16	1	2				11.8%

국회회차	소집일	회기종료일	각 법					중 법					참 법				
			제출	계속 제출	성립	계속 성립	성립률	제출	계속 제출	성립	계속 성립	성립률	제출	계속 제출	성립	계속 성립	성립률
186 (常)	2014.1.24.	2014.6.22.	81	4	79	3	96.5%	46	42	18		20.5%	29		3		10.3%
187 (臨)	2014.9.29.	2014.11.21.	31	2	21	2	69.7%	21	37	7	3	17.2%	7	6	1		7.7%
188 (特)	2014.12.24.	2014.12.26.	0		0			4		0		0.0%	0		0		
189 (常)	2015.1.26.	2015.9.27.	75		66		88.0%	46	4	9		18.0%	26		3		11.5%
190 (常)	2016.1.4.	2016.6.1.	56	9	50	4	83.1%	61	25	16	2	20.9%	11	3	2		14.3%
191 (臨)*	2016.8.1.	2016.8.3.	0	11	0		0.0%	0	54	0		0.0%	0		0		

- 주 1: (常)은 통상회, (臨)은 임시회, (特)은 특별회의 약칭이며, 통상회에는 음영처리
- 주 2: *는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직후의 임시회, ○는 임기만료에 의한 중의원 의원 총선거 직후의 임시회
- 주 3: 계속제출은 전 회기부터의 계속안건을, 계속성립은 그 중 성립된 안건을 표시
- 주 4: 주민투표로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때에 성립한 지방자치특별법(헌법 제95조)은 법률안이 양 의원을 통과한 회기의 성립 법률로 포함
- 주 5: 성립률은 당해 기간 중 신규 제출법률안 및 계속법률안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성립 법률 수(계속 성립 법률안 포함)의 비율
- 주 6: 중의원 의원의 임기마다 실선으로 구분
- 출처: 중의원·참의원 편, 「의회제도 백년사 자료편」, 1990, p.226-234; 「참의원 선례 제표 2010년판」, 참의원사무국, 2010, pp.540-580; 「부록 의안경과일람」, 『중의원공보』(각 국회회차)

일본 중의원 의원의 임기별 법률안 제출 수·위원입법의 비율 및 성립 수·성립률

총선거 회차	총선거 후 국회회차	시기	제출법률안				성립법률				
			각법	중법	참법	의원 입법 비율	각법	중법	참법	각법 성립률	의원 입법 성립률
제23회	1 - 4	1947~1948	449	51	24	14.3%	394	37	10	87.8%	62.7%
제24회	5 - 14	1949~1952	1,016	249	80	24.5%	960	203	55	94.5%	78.4%
제25회	15	1952~1953	187	59	16	28.6%	50	25	2	26.7%	36.0%
제26회	16 - 21	1953~1955	392	193	48	38.1%	375	95	24	95.7%	49.4%
제27회	22 - 28	1955~1958	664	258	81	33.8%	599	103	22	90.2%	36.9%
제28회	29 - 36	1958~1960	421	181	27	33.1%	347	30	2	82.4%	15.4%
제29회	37 - 44	1960~1963	706	222	109	31.9%	555	38	6	78.6%	13.3%
제30회	45 - 54	1963~1966	518	182	60	31.8%	463	40	5	89.4%	18.6%
제31회	55 - 62	1967~1969	425	157	62	34.0%	334	19	2	78.6%	9.6%
제32회	63 - 70	1970~1972	387	139	51	32.9%	353	55	1	91.2%	29.5%
제33회	71 - 78	1972~1976	414	192	113	42.4%	362	60	3	87.4%	20.7%
제34회	79 - 88	1976~1979	290	159	57	42.7%	220	37	3	75.9%	18.5%
제35회	89 - 91	1979~1980	117	69	17	42.4%	90	10	1	76.9%	12.8%
제36회	92 - 100	1980~1983	269	138	39	39.7%	255	51	3	94.8%	30.5%
제37회	101 - 105	1983~1986	267	110	37	35.5%	244	34	3	91.4%	25.2%
제38회	106 - 117	1986~1990	333	85	32	26.0%	308	39	3	92.5%	35.9%
제39회	118 - 126	1990~1993	355	97	40	27.8%	340	44	1	95.8%	32.8%
제40회	127 - 137	1993~1996	332	104	23	27.7%	331	44	10	99.7%	42.5%
제41회	138 - 147	1996~2000	552	248	89	37.9%	541	80	16	98.0%	28.5%
제42회	148 - 157	2000~2003	450	232	114	43.5%	442	81	6	98.2%	25.1%
제43회	158 - 162	2003~2005	236	121	40	40.6%	220	41	2	93.2%	26.7%
제44회	163 - 171	2005~2009	398	241	131	48.3%	370	85	15	93.0%	26.9%
제45회	172 - 181	2009~2012	295	146	107	46.2%	223	76	16	75.6%	36.4%
제46회	182 - 187	2012~2014	210	145	86	52.4%	195	45	9	92.9%	23.4%
제47회	188 -	2014~	131	111	37	53.0%	120	27	5	91.6%	21.6%

주 1: 성립률은 당해 기간 중 제출법률안의 합계에서 성립법률이 차지하는 비율

주 2: 참의원 긴급집회에 제출된 법률안 수 및 가결된 법률 수는 다음 중의원 의원의 임기중에 제출된 법률안 및 가결된 법률 수와 합산하였고, 1952년의 긴급집회는 제25회 총선거 후의 국회회차에, 1953년의 긴급집회는 제26회 총선거 후의 국회회차에 포함

출전: 중의원·참의원 편, 「의회제도 백년사 자료편」, 1990, p/226-234; 「참의원 선례 제표 2010년판」, 참의원 사무국, 2010, pp.540-580; 「부록 의안경과일람」, 『중의원공보』(각 국회회차)

현안분석 Issue Paper 2017-02



2017 7 31

15(,)

T. 044)861-0300

1981. 8. 11. 2014-000009

<http://www.klri.re.kr>

-
1. 轉載 譯載 禁 .
 2. 가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el. 044-861-0300 www.klri.re.kr